

麟蹄縣地圖

朝鮮王朝實錄

朝鮮王朝實錄으로 본

朝鮮時代의 麟蹄

최병헌 편저

인제문화원

春川牧界

豆色箱裏湯界

조선왕조실록으로 본

조선시대의 인제

발행일: 2009년 11월 20일

인쇄일: 2009년 11월 20일

발행인: 정병석

편저자: 최병헌

편 집: 백창현

편집·디자인: 씨웍스디자인(031-903-1711)

발행처: 인제문화원

주 소: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5-3 (우)252-807

전 화: 033-461-6678

팩 스: 033-461-0220

홈페이지: www.inje-culture.com

©2009 인제문화원

<비매품>

●● 발간사



정 병 석 인제문화원장

우리나라는 예부터 특히 기록을 매우 중히 여겼습니다. 다양한 사관과 역사서술 방식의 발전으로 소중한 기록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인제군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조선시대의 인제실록’은 단순한 기록의 집대성이 아닙니다. 선조들께서 가꾸어온 정신의 면면한 흐름이고 그 숭고함과 영광스런 조우입니다. 인제문화원으로서도 정신문화 함양 사업이 실제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더없이 소중한 저작입니다.

건설공사처럼 치적이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준비와 꾸준한 노력으로 성과를 볼 수 있는 여러 문화사업 중에서 한가지가 새롭게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수단을 가리지 않고 뱃속의 고깃살에 관심이 있는 현 세대에 과거의 기록을 통해서나마 잊었던 삶의 방식을 찾아내는 것은 더 없이 소중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원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 우리의 사상을 살찌우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기록의 소중함을 멀리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를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부툰섬은 독자적인 역사와 언어를 갖고 있음에도 기록할 문자가 없어 문화유산과 역사적 가치를 잃어버린 채 인도네시아에 속해서 평범한 섬으로 전락

했습니다.

늦게나마 한글을 공식문자로 채택해 새로운 부흥을 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이란 지난 유산으로서 단순히 존재했던 것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중한 양식입니다.

인제군에 관한 기록들을 통해 지역의 소중함을 깨닫고 국가 행정의 차원에서 혹시 있을 지도 모를 지역통합 작업에 정체성을 확립하고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소중한 저작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풍요로운 현재를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작은 조약돌 하나 옷깃을 스치는 바람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잇기 쉬운 것까지 일일이 챙겨 일깨워주시는 저자 최병현 님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투박한 몇 마디 말로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박삼래 인제군수

우리 인제는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조상의 따뜻한 체취가 물씬 풍기고 있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속예술과 전설이 깃들어 살아숨쉬는 고장입니다.

선조들께서 남기신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여 후손들에게 전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종의 으뜸인 과제입니다.

이것을 그동안 우리고장의 지명유래등 여러 소중한 책자를 발간하여 전통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있는 인제문화원에서 조선왕조실록을 토대로 우리고장의 실록을 발간한다고하니 기쁨마음 감출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선왕조실록에서 인제지역과 관계된 기사를 발췌 해석하는 일은 선현들의 자랑스러운 일을 오늘에 되살려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나아갈바를 밝히는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고장은 광복과 함께 38선으로 분단되고 6.25사변을 한가운데에서 겪으며 현대사를 지나왔습니다.

이같은 변화를 겪으며 살아온 시대를 넘어 다음세대에게 우리고장의 뿌리를 찾는 길잡이로서 애항심을 돈독히 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인제실록의 발간을 축하하며 자라나는 세대와 인제군민에게 우리고장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줄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이번 발간을 계기로 향토의 뿌리와 역사를 밝혀 그 맥을 이어가고 새로운 출발의 전기가 되는 기록유산으로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 축사



한 의 동 인제군의회장

조선시대는 500년의 긴 역사동안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로 알려진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성리학과 실학의 발달과 수준높은 인쇄술로 인하여 화려한 유교문화가 꽃핀 시대였습니다.

또한 조선 말기인 1896년(고종 32년)에는 인제지역이 춘천부 인제현에서 현재의 강원도 인제군으로 탄생한 역사적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역사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 후대를 이어갈 세대들에게 그 시대의 문화를 소중히 알고 우리 것을 재창조하는 근원이라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인제군의 역사를 숨쉬게 하고 담아내는데 열정과 소중한 시간을 쏟아 일궈낸 '조선시대 인제실록'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무쪼록 '조선시대 인제실록'이 세대를 걸쳐 내려온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그 몫을 다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고 한 시대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길 기대합니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한 지도 어느새 9년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추구하는 21세기라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달라질 기미조차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운 비전과 확고한 정체성을 지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웬만한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듯이, 우리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의식을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또 한 세계화를 향한 발전과 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새로운 비전이란 꿈같은 일입니다.

요즘 나라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놓고 강경한 자세로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변죽만 울릴 것입니까? 저들의 역사를 왜곡한다고 목청은 높이면서 왜 우리 역사에는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지 않는 것입니까?

개발과 건설이란 미명하에 많은 유적지가 훼손되고, 그나마 보존되고 있는 문화유산마저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비록 배운 것은 없지만 나만이라도 우리 것을 지켜보겠다고 결심한 것이 십 수 년이 되고 보니, 본의 아니게 향토사연구위원이란 호칭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으니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굳이 눈 비비고 찾아본다면 『인제군지명총람』(국역), 『인제읍지』, 『인제군사』, 『조선왕조실록인제편초록』 등이 있기는 하지만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일들이 지방단위에서 활발히, 그리고 꾸준히 이어져 나간다면, 향토사와 문화가 새롭게 조명되고,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한국사나 문화 또한 올바르게 정립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금번에 내놓는 『조선시대의 인제』는 20여 년 전에 내놓은 『조선왕조실록인제편초록』의 내용과 별로 다를 바 없으나, 전자의 것은 지나치게 약술하다보니 당시의 정황이 분명치 못하고, 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완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지만 지역적인 특수성 때문에 옛적에 이 땅에 사시던 선조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못하였지만 부끄러움보다는 애정 어린 눈길로 돌아보고, 현재의 생활에 지표로 삼는다면 우리 인제 군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나아가서는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09년 10월

표계 (瓢溪) 최 병 현

말간사

축사

머리글

제 1부. 조선왕조 실록

태조편(太祖: 1392-1398)

전세 수납 감면을 청하다23

도명(道名)을 개칭하다24

재목을 비운 뒤 뗏목으로 운반할 것을 아뢰다24

각 도의 이름을 고치고 관리를 임명하다25

각도의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쌀 2곡씩을 하사하다25

각 도의 효자·순손·의부를 추천하게 하다25

장생전의 재목을 감독하게 하다26

도성을 쌓게하다26

폭풍우로 인한 강원도 9개 고을의 피해 상황27

축성 인부를 징발하다27

태종편(太宗: 1401-1418)

각도의 부역을 균일하게 할 것을 건의·승인하다28

태상왕 행재소에 문안하다29

요동에서 도망 온 사람들을 강원도와 동북면에 나누어 두다29

기근을 구제할 것을 의정부에 보고하다30

의정부에서 각도의 전답과 호구 수를 아뢰다30

강원도에 우박이 내려 농사에 피해가 있다31

재해를 입은 강원도에 조세를 감면하다31

효자· 열녀를 포상하고, 환과고독을 구휼하다	31
강원도의 여러 고을에 황충이 일다	32
충청· 강원도 백성을 부역에 동원하지 말 것을 청하다	32
충청· 강원도의 장정 3천명이 궁궐 수축을 위해 올라오다	33
공안부 소윤 신임을 강원도에 보내 벌목과 운반을 감독케 하다	33
강원도 기민을 진휼하다	33
기린현에 싸락눈이 내리다	33
전지를 측량하다	34
호주에서 여러 도의 호구 수를 아뢰다	34
여러 고을의 복을 빌던 절을 명찰로 대신 지정하다	35
각도에서 처녀를 선발하다	36
메뚜기의 피해가 발생하다	37
강원도 양주 등에 우박이 내리다	37
강원도에 큰비가 내려 곡식을 망치다	38
강원도의 기민을 구제하다	38
실농한 고을에 국고의 곡식을 내어 종자에 쓰게 하였다	38
처녀를 간택하는 사의를 아뢰다	39
각도 시위 정군의 수목을 올리다	39
경기· 강원도에 기근을 진휼하다	40
강원도의 춘주 등지에 커다란 우박이 내리다	40
비상시를 대비, 강원도 진명창 이북 등의 곡식을 길주· 의주로 옮기다	40
성안에 장량을 짓도록 하였다	41
강원도 백성으로 재목을 베는 역사에 참여하는 자는 군기를 면제하다	41
미곡 수납 사의를 올리다	41
지방행정 구역의 명칭을 개정하다	42
각도 각 고을 향교 노비의 수를 정하다	43
농장의 울타리 둘레를 법으로 정하다	43
각도의 환과고독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를 진휼하다	44
중외의 기민을 구제하다	44
각도 관찰사에게 현량을 찾아내어 아뢰게 하다	45
재인 오덕해를 강원도에 보내어 나무를 베다	45

세종편(世宗: 1418-1450)

우박이 내려 기러기가 맞아 죽고, 벼가 상하다	46
강원도 원주 등지 기민의 조세를 면제해 주니 변제량이 이의를 제기하다	46
강원도에 기근이 드니 구제하도록 명하다	47
역의 위전을 역에 다시 돌려줄 것을 청하다	47
경원창의 쌀로 강원도 기민을 구휼하다	48
농사에 실패한 자의 조세 감감을 명하다	48
강원도 관찰사가 향시의 원래 정원대로 뽑기를 청하다	48
강원 · 황해 · 평안도 등에 공물을 감해준다	49
강원도에서 기르는 국마를 충청도에 옮겨 기르게 하다	49
강원도에 진제미를 내려준다	49
강원도내 실농한 향교 생도들을 방학케 하다	50
조운 · 민폐구제 등에 관한 상소문	50
회양과 춘천 경내 군 · 현의 소속 변경에 대해 아뢰다	53
강원도에 서리가 내리다	53
강원도에 서리가 내리다	53
노비를 증여 받은 대신들을 벌준다	54
수원부 관관을 다시 두는 문제를 논의하다	56
강원도 영동의 소금 4백 석을 영서에 나누어 꾸어 주게 하다	57
인제 · 청양 · 예산의 현감들이 하직하니, 구휼을 명하다	57
민효환 · 정포 · 황곤 등이 하직하다	58
강원도와 전라도에서 천둥치고 우박이 내리다	59
전국적으로 지진이 일다	59
바람으로 강원 지역 농사가 손상되었음을 보고하다	59
강원도에서 큰바람으로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혔다	59
소나무를 함부로 작별 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아뢰다	60
농사에 실패한 각 고을 향교의 생도들을 가을까지 번을 나누어 독서하게 할 것을 아뢰다	60
경기도 · 강원도가 가뭄에 비오기를 빌었다	61
하직하는 김이상 · 이임 · 정윤신 등을 인건하다	61
강원 영서지방이 수재로 인한 벼의 피해가 심하다고 아뢰다	61
강원도 영서 각 고을에 진제장을 설치하고 구휼할 것을 건의하다	62
강원도에 봄보리 · 귀밀 종자를 나누어주어 심게 할 것을 건의하다	62

전제를 고쳐 상정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상신하다	63
흉년을 구제할 쌀·콩을 요청하니 명하여 주게 하다	68
강원도와 경기도의 일대에 황충이 발생하다	68
강원도에 보리 종자를 제시하였다.	69
강원도에 메밀 종자를 내리다	69

문종편(文宗: 1450-1452)

의정부에서 염초를 구워내도록 아뢰다	70
강원도 내 각 읍성을 수축하도록 하다	73

단종편(端宗: 1452-1455)

재목을 운반하다 죽은 선군에게 복호해 줄 것과 황해도와 진흥을 청하다	75
도회소에서 만드는 군기의 일정액수를 정하기를 청하다	75
기우제를 지내기를 청하다	78
강원도가 살충하니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보충군 노예들을 놓아보내서 흉년에 대비하게 하다	79

세조편(世祖: 1455-1468)

거진을 설치하고 인근 고을을 익에 분속 시킬 것을 청하다	80
각도의 중·좌·우익을 혁파하고 거진을 설치하다	85
군자창의 쌀로 강원도의 기민을 진휼하게 하다	87
하삼도인의 이사에 대해 전지하다	87
올적합 아인첩목가가 귀국시 연변의 관리들에게 그들을 후히 대접할 것을 치서하다	89
호조에서 부족한 참선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진술하다	89
각도의 역·참을 파하고 역로를 정비하여 찰방과 역승을 두다	91
병조에서 군기를 상정하여 아뢰다	93

예종편(睿宗: 1468-1469)

회양·금성·강화·평강·이천 등 7고을의 전세를 경창에 납입케 하다	96
--	----

성종편(成宗: 1469-1494)

병조에서 지금의 군역 및 분번할 수와 3도 군정의 감액할 수 등을 기록하여 아뢰다	98
---	----

강원도 인재의 아전·관노비에 대해 아뢰다	105
강원도 백성들의 별채금지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다	106
가뭄 해소를 위하여 향축을 내려 강원도의 명산과 대천에 기도하다	108
강원도의 급년 전조를 감면하기로 하고 개간지를 검핵하기로 하다	109
강원도 조세의 반을 감하도록 하다	109
이극중의 계본에 따라 공수위전을 대로의 예에 따르게 하다	110
강원도의 토지를 양전할 수 없음을 제의하다	110
향교에 학전을 지급하라고 하다	112
학교를 일으키는 방도를 꼭진하게 하도록 하다	114
가뭄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을 경계하게 하다	115
가뭄에 대해 홍문관에 내린 어서와 부제학 안처량의 상소문	115
방축 쌓는 역사의 참뜻을 백성들에게 효유하라고 전교하다	121
흉년을 만난 백성을 진구하는데 노력하라고 하서하다	122
관에서 지원하여 시집가지 못한 사람을 혼인시키라고 하서하다	122
강원도관찰사 이유인이 도내의 장마 피해상황을 치계하다	123
양로에 정성을 다할 것을 유시하다	123
강원도 고성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다	124
효자·열부를 치계하도록 하다	124
환곡을 돌보고 나이 든 처녀에게 자장을 주도록 한 법을 밝혀 시행할 것을 명하다	125
강원도 안협·인제·영월 등지 수령의 불법을 아뢰다	125
양맥을 저축하는데 힘쓸 것을 하서하다	126
관사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다	126
북정 일정을 통지하다	126

연산군편(燕山君: 1495-1504)

각종 산나물은 강원도에서 올리게 하다	130
기우제를 지내게 하다	130
충청도·강원도 여러 고을에 우박이 내리다.	131

중종편(中宗: 1506-1544)

안윤손이 서적을 향교에 비치할 것을 청하다	132
-------------------------------	-----

경기·충청·강원도 관찰사에게 군사를 일으켜 왜적을 치라는 교지	132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이 백성의 쌓인 불합리성을 말하다	133
강원도 원주 등지에 지진이 발생하다	140
각도의 잔음을 열거하고, 수령을 체차할 때에 가려서 보내라고 이조에 하교하다	140
강원도에 큰비가 내려 곡식을 해치다.	141
강원도에 폭풍우가 일어 곡식이 상하다	141
강원도의 양전을 증지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141
역여 앵비 등의 계복을 듣다	142
강원도에 눈이 내린 재변을 염려하다	142
강원도의 춘천 등의 고을에 서리가 내리다	143
가뭄으로 농사 걱정을 하다	143
강원도 양구·인제와 평안도 박천에 우박이 내리다	145
강원도에 우박이 내리다	145
강원도 회양 등지에 눈이 내리다	145
경기도·황해도·강원도에 서리가 내리다	145
강원도 간성·인제 등지에 폭설이 내리다	146
강원도의 일부 고을에 우박이 내리다	146
강원도 강릉 등의 고을에 충해가 발생하다	146
경빈 박씨 소생의 왕자군·옹주의 처우에 대한 인제 훈도 최억령의 상소문	146
강원도·황해도·충청도의 여러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다	148
정선·영월·인제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148
강릉·춘천·인제 등지에 황충이 발생하다	149
헌부에서 정랑 오흠 등을 체직하도록 건의 하다	149
강원도 관찰사의 서장	150
왕자의 제택이 크다는 것, 혼인의 사치·인담 등의 일에 대하여 전교하다	151
강원도의 황창목을 남벌한 사람에 대해 경옥까지 잡아오지 말도록 의금부에 말하게 하다	153

명종편(明宗: 1545-1567)

서울·경상·강원도 등지에 우박과 눈이 내리다	155
각도의 환과고독을 조사하고 각별히 구휼하도록 전교하다	155
팔도 관찰사에게 인정을 베풀라는 하서	156

중종·인종의 상에 복을 입은 개성의 박성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57
강원도에 전염병이 돌아 2백 29명이 죽다	157
인제현감 유언겸의 자금을 올리고 현직에 임용토록 하다	157
경기와 강원도에 여역이 만연하여 죽은 자가 많다	158
강원도에서 사람이 압사 당한 사건에 대해 살펴볼 것을 명하다	158
정조의 방물을 봉진하지 말 것을 명하다	159
실농이 심한 강원도의 감사에게 염장을 계속 대주도록 전교하다	159
토목 공사를 계속할 뜻을 전교하다	159
강원도에 전염병이 치성하다	160
구황을 미리 조치하도록 해조에 이르라고 정원에 전교하다	160
밤에 화기가 있고 경기, 강원 지역에 비와 우박이 내리다	161
정원에 실농한 이유로 방물을 면제하도록 전교하다	161
강원도에서 발생한 별레의 해에 대한 대책을 조치하라고 전교하다	161
풍재와 수재가 심한 강원도에 홀전을 거행하라고 전교하다	162
흉년 피해가 큰 경기·강원 등에 다음해 대전·중궁의 탄일 등에 물건을 봉진하지 말도록 하다	162

선조편(宣祖: 1568-1608)

재상 담협에 착오를 범한 수령을 파직시켰다	164
도내의 역질이 발생한 고을을 보고하다	164
각 도에 있는 병마의 수	165
왜노에게 침탈 당한 도와 침범 당하지 않은 도에 대한 상세한 기록	167
강원도에 서리가 내려 벼가 모두 말라죽다	169
장연·청양의 현감과 배천 군수 등의 임명에 대해 이비에 전교하다	169
사간원이 시임 대간을 외방에 차임하지 말 것을 아뢰다	170
춘추관에서 〈실록〉 관각에 쓸 주자에 대해 아뢰다	171
강원도에 서리와 우박이 내리다	172
강원도 관찰사가 관내에 재해가 심해 구황 준비를 해야함을 보고하다	172
강원도 어사 송보가 서계하였다	173
사헌부가 수령이 법을 어긴 예를 아뢰다	174
황시·이효원·최철건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75
헌부가 송관 등의 파직 추고를 청하다	175

유근·박홍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178
관동에 유례에 없던 홍수가 지다	179
강원도의 수재 상황을 열거하다	179
영월·춘천·인제 등 폭우로 인한 참상을 한덕원이 아뢰다	181
수재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아뢰다	182
정선·인제 지역의 홍수 피해 상황을 아뢰다	183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고하다	184
수재로 사망한 자들에게 여제 지내줄 것을 아뢰다	185
호조에서 각 지방의 곡식 피해를 조사하도록 하유할 것을 건의하다	186
강원도 관찰사 유인길이 바람에 곡식이 망가진 사실을 보고하다	187
벌목의 노역에 폐단이 극심함을 아뢰는 상소	188

광해군편(光海君: 1608-1623)

강원도 어사 정광성의 서계로 인하여 전교하다	191
장령 박건이 관물을 도둑질한 상황 등에 대해 아뢰다	191
지평 윤인이 장오죄의 형벌을 엄하게 할 것을 아뢰다	193
강원도관찰사가 목재를 운반하는 일로 건의하다	195
강원도에 의원과 제사를 위한 시종신을 파견하도록 전교하다	195
시사청에 나가 경상감사 장만을 인견하다	196
체포하지 못한 죄인을 속히 체포하도록 전교하다	201
신궐 도감이 홍수로 떠내려오는 재목의 습득을 아뢰다	201
단양·춘천·인제 등 14개 읍의 조세 실수를 책으로 작성할 것을 명하다	202

인조편(仁祖: 1623-1649)

강원도에 홍수가 쳐서 산이 무너지고 민가가 떠내려가다	204
황치경을 탄핵하는 인제현감 윤행각의 상소	204
강원도 원주·홍천 등지에 연일 비바람이 치다	206
사헌부가 군관을 사칭하고 민간을 노략질한 일로 아뢰다	206
이관 최명길이 관리등용의 시정을 요구하자, 이조에서 거행 시목을 올리다	207
강원도에 서리가 내리다	214
강원도 흠곡·인제 등에 연일 눈이 내리다	214

강원도 일대에 우박이 내리다	214
인제현에 지진이 일다	215
강원도에서 오천국이 어사를 사청하다	215
강원도의 열 네 고을에 큰물이 지다	215
강원도와 전남도에 큰물이 지다	215
강원도에 큰 가뭄이 들고 서리가 내리다	216
강원도에 큰물이 지다	216

효종편(孝宗: 1649-1659)

강원도에 황충이 발생하다	217
강원도에 큰물이 지다	217
강원도에 전염병이 크게 번지자 약물을 보내고 진곡을 나눠주게 하다	217
강원도에 큰바람이 불다	218
강원도에 황충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얼마 뒤에는 큰물이 지다	218
강원도에 오얏과 복숭아 꽃이 피다	218
강원도·전남도에서 우박이 내리다	219
황해·평안·강원 세 도에 우박이 내리다	219
강원도에 기근이 들다	219
강원도에 큰바람이 불다	219
강원도와 경상도에 우박이 내리다	220
강원도와 함경도에 큰물이 지다	220
강원도에 기근이 들다	220
강원도에 비바람이 심하게 불다	220
강원도에 큰바람이 불다	221
강원도에 홍수가 나다	221

현종편(顯宗: 1659-1674)

강원감사 이홍연이 비와 황충의 피해를 치계하다	222
강원도와 충청도에 우역이 들다	222
강원도에 우역이 들다	223
강원도에 전염병이 번지다	223
강원도에 염병이 들었다	223

강원도 강릉 등에 염병이 크게 번지다	223
원양감사 정익의 장계로 재해 입은 지역의 부담을 감해준다	224
강원감사 김익경이 진흙을 청하다	224
원양도에서 여역으로 사람이 죽다	224
원양도에서 여역으로 사람과 소가 죽다	225
서울의 여역이 가리았다	225

숙종편(肅宗: 1674-1719)

함경도·강원도 등 여러 도에 황충이 일어나다	226
강원도와 평안도에 흙비가 내리다	226
강원도 여러 고을에서 지진이 일어나다	227
강원도 고을의 진흙에 관한 비국의 복주	227
재해를 입은 강원도 고을의 신역을 감하다	228
인제현에 서리가 내리다	228
강양도의 인제 등 네 고을에 황충이 성하다	229
인제현과 철원부에 비와 우박이 내렸다는 장계가 들어오다	229
강원도·충청도에 밤마다 서리가 내리다	230
강원도에 장마가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되었다	230
성현 등의 네 자리에는 승문원·성균관의 참서관을 차임하여 파견하게 하다.	230
지진이 있었다	231
이조판서 이유가 수령의 도목정을 고칠 것을 청하다	231
경기도 등에 천둥 번개가 치고, 숙천에 지진이 있었다	232
인제의 서화전에 흐르는 물이 끊어졌으므로 도신이 알리다	232
강원도에서 서리와 눈으로 인한 재해를 장계로 알리다	232
정언 조명검이 양구현 백성들이 백토를 채굴하는 폐단에 대해 상소하다	233
강원도 일대에 서리가 내리다	233
강원도 수재민에게 홀전을 거행하다	234
강원도의 염병으로 죽은 자의 수효를 도신이 아뢰다	234
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와 환자의 수효를 도신이 아뢰다	234
강원도에서 민가가 물에 잠기다	235

경종편(景宗: 1720-1724)

대사헌 이재의 상소	236
처사 김창흡의 줄기	240
강원도에 세 차례 큰 눈이 내리다	241
경기·강원도에 황충이 일다	241
강원도에 큰물이 지고 황충이 발생하다	241

영조편(英祖: 1725-1774)

강원도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전세를 감해주다	242
강원도에 서리와 큰 눈이 내리다	242
강원도에 가뭄과 우박의 피해가 있었다	243
사간 김중윤이 감찰 이우명의 정배 토산현감 백태운과 박태번의 일을 아뢰다	243
강춘도 양양에 서리가 내려 보리를 손상시키다	244
강춘도에 서리가 내리다	244
장령 최규태가 상소하여 관리의 신칙과 관동의 공삼·황장목의 남벌을 논하다	244
장령 민수언과 사간 유언술이 명리 추구를 비판하고 피험 등을 진달하다	245
강원감사가 장계하여 호환과 불에 타 죽은 자를 보고하다	247
지중추 부사 이재의 줄기	247
장례원의 업무와 황장목에 대해 아뢰다	248
관동지방의 인삼 결역과 상정법에 속한 연호전을 감하고 선혜청에서 총당하는 절목	249
홍봉한이 직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고, 이장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250
인제·회양 등의 고을에 대해 조세 징수를 연기할 것을 명하다	251
김상복이 인제의 조를 소미로 절가하여 대신 받을 것 등을 청하다	252
팔도에 유시를 내려 백성에게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다	253
새로 임명한 수령·변장과 처음 벼슬하는 사람들을 소견하다	253

정조편(正祖: 1776-1800)

수재가 있었던 관동에 수의를 보내 위로하다	254
경기·호서·영남·관동 4도의 진휼을 마치다	254
강원도를 원춘도로 명칭을 바꾸다	255
원춘도 봄철 조련을 정지하다	256

관동의 진흥을 마치다	256
대사간 김익휴를 순흥부사로 특보하다	256
정언 이명연과 김달순에게 서경을 받기 전에 공무를 집행하라고 명하다	257
인제현의 전세를 돈으로 납부하게 하다	257
향교·서원의 위전에 대한 면세를 청하다	258

순조편(純祖: 1801-1833)

강원도 암행어사 이상우가 이종효·홍경두 등의 실정을 탄핵하다	259
강원도 암행어사 홍학연이 서계를 올리다	259
암행어사 홍희석이 서계하다	260

철종편(哲宗: 1849-1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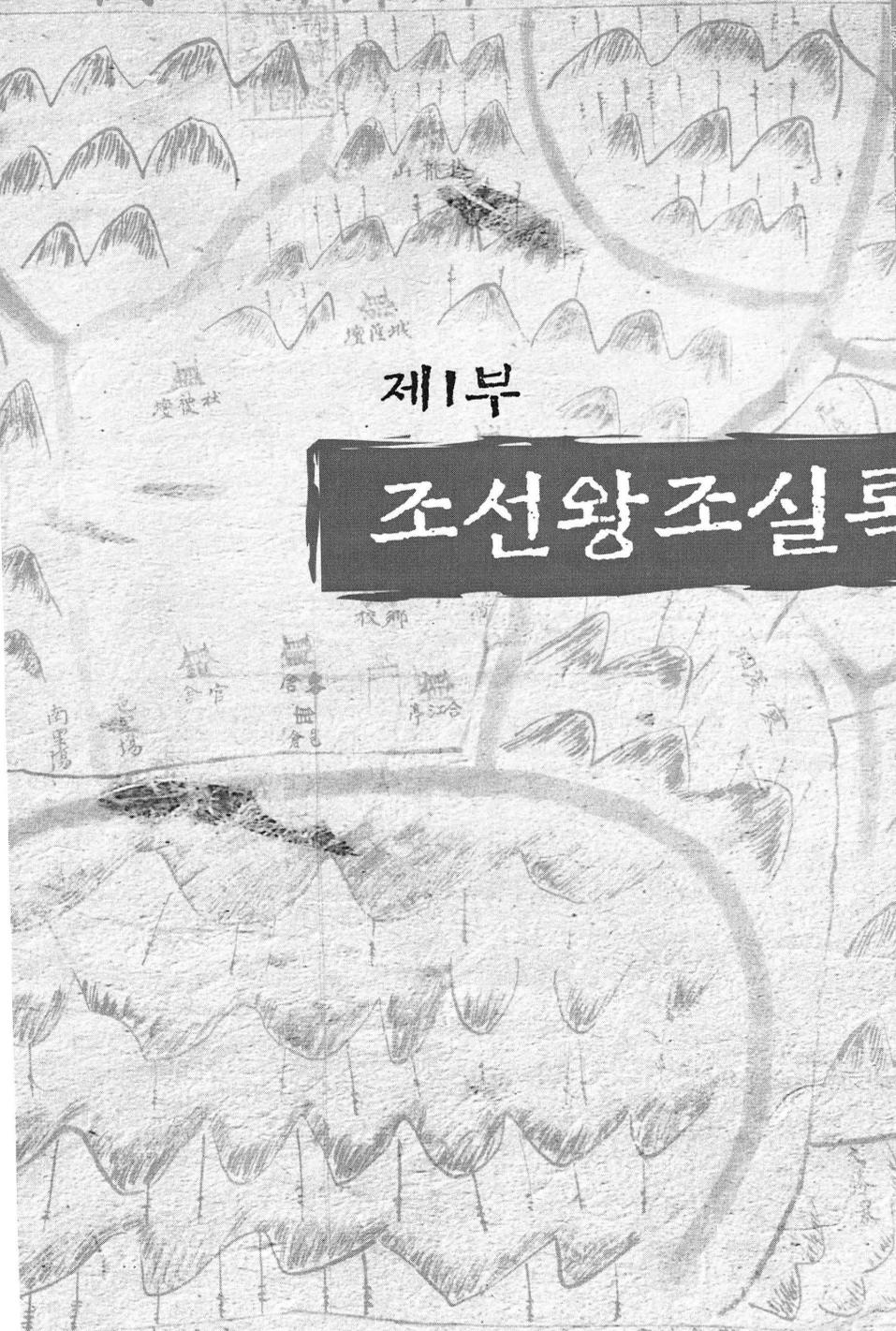
김상우 등을 탄핵한 황해도 암행어사 신석회를 불러 보다	261
강원도 암행어사 이경호를 불러 보다	261

제 2부. 세종지리지

강원도	265
춘천도호부	269
양양도호부	271
인제현	273
양구현	275
간성군	277
경기	279

麟蹄縣地圖

麟蹄縣地圖



제1부

조선왕조실록

春川牧界

五色箱襄湯界

태조편

태조 1년 1392년10월 1일(己酉)

전세 수납 감면을 청하다

시중(侍中) 조준(趙浚)이

“신이 듣건대, 금년에 논밭의 곡식이 풍년이 들지 않았다고 하니, 마땅히 전세의 징수를 가볍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갓 명령만 내리고 실지의 효과가 없다면 도리어 간사한 이속(吏屬)의 농간(弄奸)만 되고 백성은 이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특별히 조관(朝官)을 파견하여 밝게 바로잡아 시행하소서.”

하고 청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금년에 논밭의 곡식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강릉·삭방도(江陵 朔方道)¹⁾ 등의 도(道)에는 논은 적고 밭은 많으니, 더욱 감면(減免)을 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1집 32면

1) 강릉삭방도: 강원도의 이명(異名)이다. 왕건의 고려 건국으로 복속되고, 성종14(995)년 관제개혁으로 전국이 10개 도로 분할될 때 삭방도라 호칭되었고, 이듬해 연해명주도(沿海溟州道) 개칭하였다. 뒤에는 춘주도(春州道)·동주도(東州道)·교주도(交州道)·회양도(淮陽道)·강릉삭방도·강릉도·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등으로 불리워졌다.

태조 3년 1394년6월23일(辛卯)

도명(道名)을 개칭하다

도평의사사에서 경기도 각 고을의 쇠하고 성한 것과 넓고 좁은 것에 따라 좌우도(左右道)로 고치자고 청하니, 장단(長湍)·파평(坡平)·현주(見州)·사천(沙川)·포주(抱州)·풍양(豊壤)·서원(瑞原)·행주(幸州)·심악(深岳)·한양(漢陽)·부원(富原)·과주(果州)·철원(鐵原)·영평(永平)·승령(僧嶺)·삭녕(朔寧)·적성(赤城)·임강(臨江)·마전(麻田)·송림(松林)·연주(漣州)·고봉(高峯)·교하(交河)·금주(衿州)·양천(陽川)·남양(南陽)·안산(安山)·인주(仁州)·토산(免山)·안협(安峽)을 좌도로, 개성(開城)·강음(江陰)·해풍(海豊)·배주(白州)·연안부(延安府)·평주(平州)·재령(載寧)·강화(江華)·진강(鎭江)·하음(河陰)·교동(喬桐)·서흥(瑞興)·우봉(牛峯)·신은(新恩)·협계(俠溪)·수안(遂安)·곡주(谷州)·부평(富平)·동성(童城)·통진(通津)·수안(守安)·김포(金浦)·덕수(德水)를 우도에 소속시키고서, 양광도(楊廣道)를 충청도로, 강릉교주도(江陵交州道)를 강원도로 고치고, 서해도(西海道)를 풍해도(豊海道)로 고쳤다.

〈원전〉 1집 65면

태조 4년 1395년2월19일(癸未)

재목을 비은 뒤 뗏목으로 운반할 것을 아뢰다

교주도 작목별감(斫木別監) 노상(盧湘)이 아뢰었다.

“벌채해 놓은 재목 1만여 개를 지금 곧 운반하려면 그 폐단이 매우 클 것이오니, 원하옵건대, 비은 뒤에 뗏목을 만들어서 강으로 내려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1집 75면

태조 4년 1395년6월13일(乙亥)

각 도의 이름을 고치고 관리를 임명하다

개성부를 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로 고치고, 양광도(楊廣道)를 충청도로, 서해도를 풍해도로 고치고, 강릉도(江陵道)와 교주도(交州道)를 합하여 강원도(江原道)라 하고, 성석린(成石麟)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정신의(鄭臣義)를 한성부윤(漢城府尹)·우인열(禹仁烈)을 개성유후사 유후(留後)·노숭(盧崇)과 정남진(鄭南晉)은 부유후(副留後)를 삼았다.

〈원전〉 1집 79면

태조 4년 1395년7월26일(丁巳)

각도의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쌀 2곡씩을 하사하다

각도로 하여금 나이 70세 이상인 사람을 방문하여 존비(尊卑)여하를 물론하고, 쌀 2곡(斛)씩 하사하게 하였다.

〈원전〉 1집 81면

태조 4년 1395년7월26일(丁巳)

각 도의 효자·순손·의부를 추천하게 하다

임금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게 명하여 각도로 하여금 효자·순손(順孫)·의부(義夫)로 실행이 있는 자를 추천하게 하되, 성명을 같이 계문(啓聞)하여 발탁 임용하는 데에 빙거(憑據)를 삼으라고 하였다.

〈원전〉 1집 81면

태조 4년 1395년8월8일(己巳)

장생전의 재목을 감독하게 하다

판교서감사(判校書監事) 함부림(咸傅霖)을 강원도에 보내어 장생전(長生殿)²⁾의 재목을 감독하게 하고, 이어서 원주목사 조박(趙璞)에게 문병하도록 명하고 아울러 궁내에서 쓰는 약을 하사하였다.

〈원전〉 1집 82면

태조 5년 1396년1월19일(戊辰)

도성을 쌓게하다

경상·전라·강원도와 서북면의 안주(安州) 이남과 동북면의 함주(咸州) 이남의 민정(民丁) 11만8천70여명을 징발하여 처음으로 도성을 쌓게 했다. 이미 성터를 측량하여 자호(字號)를 나누어 정하였는데, 백악(白岳)의 동쪽에서 천자(天字)로 시작하여 백악의 서쪽으로 조자(弔字)에서 그치게 하였다. 서쪽 산 들재(石嶺)까지 합해서 땅의 척수가 무릇 5만9천5백 척(尺)으로, 6백 척마다 한 자호(字號)를 붙였으니, 모두 97자(字)이며, 한 글자마다 6호(號)로 나누고, 2자마다 감역판사(監役判事)·부판사(副判事) 각각 1명을 두고, 사(使)·부사(副使) 판관(判官) 12명중에서 각도 주군(州郡)의 민호(民戶)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천자(天字)로부터 일자(日字)까지는 동북면이, 월자(月字)에서 한자(寒字)까지는 강원도가, 내자(來字)에서 진자(珍字)까지는 경상도가, 이자(李字)에서 용자(龍字)까지는 전라도가, 사자(師字)에서 조자(弔字)까지는 서북면이 맡게 하였다. 역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낮이나 밤을 가리지 않고 시키니, 임금이 날씨가 심히 춥다고 밤의 역사는 못하게 하였다.

〈원전〉 1집 89면

2) 장생전(長生殿): 조선시대에 공신(功臣)의 화상(畫像)과 관재(棺槨)인 동원비기(東園秘器)를 보관하던 곳

태조 5년 1396년7월8일(癸亥)

폭풍우로 인한 강원도 9개 고을의 피해 상황

폭풍우로 인하여 강원도의 춘주(春州)·금성(金城) 흥천 등 아홉 주현(州縣)에 산이 무너지고 물이 넘치어, 인가(人家)가 표몰(漂沒)된 것이 1백5십여 채나 되었으며, 물에 빠져 죽은 자가 1백8명, 소가 10두, 말이 9필이었다.

〈원전〉 1집 94면

태조 5년 1396년8월6일(辛卯)

축성 인부를 징발하다

경상·전라·강원도에서 축성 인부 7만 9천 4백 명을 징발하였다.

〈원전〉 1집 95면

태종편

태종 1년 1401년5월3일(辛卯)

각도의 부역을 균일하게 할 것을 건의·승인하다

상정도감(詳定都監)에서 상소하기를

“각도의 부역은 균일하게 하여야 합니다. 경기의 민호(民戶)는 수일의 노정(路程)에서 시탄과 마초(馬草)를 배와 말(馬)의 싯을 지급하여 가며 서울에 수납하는데, 1년 동안에 세네 번에 이르기 때문에, 그 부역을 견딜 수 없어 옮겨다니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충청·풍해·강원도의 정상탄(正常炭)을 정속시킨 외의 각호와 경상·전라도의 각호에서 상오승포(常五升布)를 거두고, 대호(大戶)는 2필, 중호(中戶)는 1필, 소호(小戶)는 2호에서 1필을 거두어, 시탄(柴炭)이 강(江)에 이르거든 말 싯을 주고, 또 공상(供上)외의 시탄은 포(布)로써 대가(代價)를 지급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하였다.

〈원전〉 1집 203면

태종 1년 1401년12월17일(辛未)

태상왕 행재소에 문안하다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 정용수(鄭龍壽)·승녕부윤(承寧府尹) 유창(劉敞) 등이 소요산의 태상왕(太上王) 행재소(行在所)³⁾에 나아갔다. 용수 등이 문안하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신 등이 오래 머물러 영선(營繕)의 폐단을 갖추어 진달 하였더니, 태상왕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만 장차 나의 후사(後事)를 닦으려는 것이다. 경들은 돌아가라. 내가 치재(致齋)하겠다. 경의 주상(主上)은 설 뒤에 와서 보는 것이 좋다.’ 하셨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소요산에 가려 하다가, 이 말을 듣고 정지하고 설 뒤를 기다렸다.

태상왕이 소요산에 이르러 근처의 본궁(本宮) 노예(奴隸)와 좌도(左道)·강원도·충청도의 가까운 고을의 사람들을 징발하였는데, 날은 차고 얼음이 얼어 썩을 불피워 가며 땅을 파서 터를 쌓고 대궐을 경영하여 연말에 이르니, 백성들이 몹시 괴롭게 여기었다.

〈원전〉 1집 220면

태종 2년 1402년3월14일(丁酉)

요동에서 도망 온 사람들을 강원도와 동북면에 나누어 두다

요동에서 도망하여 온 사람들을 강원도와 동북면에다 나누어 두었다. 처음에 요동 사람 남녀 90명이 의주(義州)로 도망하여 왔고, 또 백성 1백 50호가 떼(桴)를 타고 강을 건너 이성(泥城)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연군(燕軍)이 크게 일어남에 위령군(衛領軍) 양 대인(楊大人)이 성(城)을 버리고 연(燕)에 항복하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쳐 온 것이다.”

3) 행재소(行在所): 임금이 대궐을 멀리 떠나 거동할 때에 임시로 머무르는 곳

라고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에 명하여 나누어 두게 하고, 양식도 주었다. 또 서북면 각 고을에 옮긴, 기묘년 이후에 우리 나라로 도망해 온 사람들을 하삼도(下三道) 각 고을로 안치(安置)하고 양식을 주었다.

〈원전〉 1집 227면

태종 2년 1402년5월7일(己丑)

기근을 구제할 것을 의정부에 보고하다

강원도관찰사 박은(朴崧)이 의정부에 보고하여 창고를 풀어 굶주림을 구제하려고 하였으나, 의정부에서 회보(回報)하지 않았다.

〈원전〉 1집 234면

태종 2년 1404년4월25일(乙未)

의정부에서 각도의 전답과 호구 수를 아뢰다

의정부에서 각도의 전답(田畞)과 호구수(戶口數)를 올리었다. 충청도는 전지(田地)가 22만 3천 90결(結). 호(戶)가 1만 9천 5백 61호. 인구는 4만 4천 4백76명이고, 전라도는 전지 17만 3천 9백 90결. 호가 1만 5천 7백 3호. 인구는 3만 9천 1백 51명이었다. 경상도는 전지 22만 천 6백 25결. 호가 4만 8천 9백 92호. 인구는 9만 8천 9백 15명이고, 풍해도는 전지 9만 9백 22결. 호가 1만 4천 1백 70호. 인구는 2만 9천 4백 41명이고, 강원도(江原道)는 전지 5만 9천 9백 89결. 호는 1만 5천 8백 79호. 인구는 2만 9천 2백 38명이었다. 동북면은 전지 3천 2백 71결. 호가 1만 1천 3백 11호. 인구는 2만 8천 6백 93명이고, 서북면은 전지가 6천 6백 48결. 호가 2만 7천 7백 88호. 인구는 5만 2천 8백 72명으로, 합계가 전지 78만 2천 5백 43결. 호가 15만 3천 4백 4호. 인구는 32만 2천 7백 86명이었다.

〈원전〉 1집 294면

태종 4년 1404년5월 12일(壬子)

강원도에 우박이 내려 농사에 피해가 있다

강원도에 우박이 내려서 보리와 콩의 싹이 상하였다.

〈원전〉 1집 296면

태종 4년 1404년9월25일(癸亥)

재해를 입은 강원도에 조세를 감면하다

강원도의 금년 전조(田租)의 수량을 감하였다. 관찰사가 상언(上言)하기를
“본 도의 전지가 척박하여 화곡(禾穀)의 결실이 다른 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전(水田) 1결에 조미(糙米) 26두 5승(升)을, 한전(旱田) 1결에
보리 25두를 거두고, 차고, 궁사(宮司)의 전조(田租)는 유밀(油蜜)과 포화
(布貨)를 자원(自願)하여 수납하게 하는 것은 고례(古例)입니다. 임오년부터
조세를 거두는 수량을 이에 다른 도의 예로 하여, 수전 1결에 쌀 30두를
거두고, 한전 1결에 보리 30두를 거두니, 백성들이 심히 괴로워합니다. 금년
에 또 큰바람과 큰물로 인하여 손상이 심히 많으니, 원하옵건대 전에 있었던
과식(科式)대로 수조(收租)하게 하고, 포화(布貨), 유밀(油蜜)도 또한 자원
하여 수납하게 하여, 백성을 위로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택하였다.

〈원전〉 1집 308면

태종 5년 1405년3월20일(乙卯)

효자·열녀를 포상하고, 환과고독을 구휼하다

효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 등을 포상하도록 하교(下教)하고, 또

나이 80세의 노인파 환과고독(鰥寡孤獨)을 모두 구휼(救恤)하도록 명하였으니, 강원도 관찰사의 청을 따른 것이었다.

〈원전〉 1집 322면

태종 5년 1405년7월14일(丁未)

강원도의 여러 고을에 황충이 일다

강원도(江原道)의 여러 고을에 황충(蝗虫)이 일었다.

〈원전〉 1집 331면

태종 5년 1405년8월26일(己丑)

충청·강원도 백성을 부역에 동원하지 말 것을 청하다

사간원에서 충청도·강원도의 백성을 징발하여 부역시키지 말 것을 청하였다. 소(疏)의 내용은 대략 이러하였다.

“금년 봄. 여름에 한재(旱災)가 너무 심하여, 전하께서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어 창고를 열어 진휼 구제하시고, 승여(乘輿)⁴⁾가 들에 나가서 화가(禾稼)를 친히 살펴보고 측연히 눈물을 흘리시었으니,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부지런하신 정성이 어떻게 더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신도(新都)의 수증(修葺)하는 역사는 가까운 도의 승도(僧徒)를 징발하여 돕게 하고, 두도의 백성은 징발하지 않도록 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소서.”

의정부에 내리어 의논하니, 정부에서 경기(京畿)의 백성들이 천도(遷都)로 인하여 역사가 번다하니 이궁(離宮)의 역사에 참여시키지 말자고 청하므로 윤허하였다.

〈원전〉 1집 334면

4) 승여(乘輿): 임금에 타는 수레 · 어가(御駕) · 보가(寶駕) · 봉가(鳳駕) · 용가(龍駕)라고도 한다.

태종 6년 1406년1월16일(丁未)

충청·강원도의 장정 3천명이 궁궐 수축을 위해 올라오다

충청도와 강원도 정부(丁夫) 3천 여명이 도성(都城)에 이르렀다. 덕수궁과 창덕궁에 부역하는 이가 각각 1천명씩이고, 한성부에 6백 명인데, 개천을 파는 일을 맡았고, 군자감(軍資監)·풍저창(豊儲倉)·광흥창(廣興倉)·사은서(司醞署)에 각각 1백 명씩인데, 공해(公廩)를 수리하는 일을 맡았다.

〈원전〉 1집 347면

태종 6년 1406년2월1일(壬戌)

공안부 소윤 신임을 강원도에 보내 벌목과 운반을 감독케 하다

공안부 소윤(恭安府少尹) 신임(申臨)을 강원도에 보내어, 벌목(伐木)하고 운반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원전〉 1집 348면

태종 6년 1406년3월28일(戊午)

강원도 기민을 진휼하다

강원도 기민(飢民)을 진휼(賑恤)하였다.

〈원전〉 1집 352면

태종 6년 1406년5월3일(壬辰)

기린현에 싸락눈이 내리다

춘주(春州) 기린현(麒麟縣)에 씨락논이 내렸다.

〈원전〉 1집 356면

태종 6년 1406년9월8일(甲子)

전지를 측량하다

경차관(敬差官) 김구덕(金九德)등 60여 명을 나누어 보내어 전지(田地)를 측량하게 하였다. 경기·풍해·강원도에 모두 측량을 마치라고 명하니, 의정부에서 그 경계(境界)가 바르지 못하다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원전〉 1집 376면

태종 6년 1406년10월30일(丙辰)

호조에서 여러 도의 호구 수를 아뢰다

호조에서 금년 제도의 호구 수(戶口數)를 올렸는데, 경기좌도는 1만 7백 39호에, 정(丁)이 1만 9천 3백 19명이고, 경기우도는 9천 9백 90호에, 정(丁)이 1만 8천 8백 19명이며, 충청도는 1만 9천 5백 60호에, 정(丁)이 4만 4천 4백 76명. 경상도는 4만 8천 9백 93호에 정(丁)이 9만 8천 9백 15명. 전라도는 1만 5천 7백 14호에 정(丁)이 3만 9천 1백 67명. 풍해도는 1만 4천 1백 70호에, 정(丁)이 2만 9천 4백 41명. 강원도는 1만 5천 8백 79호에, 정(丁)이 2만 9천 2백 24명. 동북면(東北面)은 1만 1천 3백 11호에, 정(丁)이 2만 8천 6백 83명. 서북면(西北面)은 3만 3천 8백 90호에, 정(丁)이 6만 2천 3백 21명이었다.

〈원전〉 1집 378면

5) 정(丁): 스무살 전후의 사내로 곧 성년자를 일컫음

태종 7년 1407년12월2일(辛巳)

여러 고을의 복을 빌던 절을 명찰로 대신 지정하다

의정부에서 명찰(名刹)로서 여러 고을의 자복사(資福寺)에 대신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지난해에 사사(寺社)를 혁파하여 없앨 때에 삼한(三韓) 이래의 대가람(大伽藍)이 도리어 태거(汰去)하는 예에 들고, 망하여 폐지된 사사(寺社)에 주지를 차하(差下)하는 일이 간혹 있었으니, 승도(僧徒)가 어찌 원망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만일 산수 좋은 곳의 대가람을 택하여 망하여 폐지된 사원(寺院)에 대신한다면, 거의 승도들로 하여금 거주할 곳을 얻게 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여러 고을의 자복사를 모두 명찰(名刹)로 대신하였는데, 조계종에는 양주(梁州)의 통도사(通度寺)·송생(松生)의 쌍암사(雙巖寺)·창녕의 연화사(蓮花寺)·지평의 보리갑사(菩提岬寺)·의성의 빙산사(氷山寺)·영주의 정각사(鼎覺寺)·언양의 석남사(石南寺)·의흥의 인각사(麟角寺)·장흥의 가지사(迦智寺)·낙안의 정광사(澄光寺)·곡성의 동리사(桐裏寺)·감음(減陰)의 영각사(靈覺寺)·군위의 법주사(法住寺)·기천(基川)의 정림사(淨林寺)·영암의 도갑사(道岬寺)·영춘의 덕천사(德泉寺)·남양의 홍법사(弘法寺)·인동의 가림사(嘉林寺)·산음의 지곡사(地谷寺)·옥천의 지록사(智勒寺)·탐진의 만덕사(萬德寺)·청양의 장곡사(長谷寺)·직산의 천흥사(天興寺)·안성의 석남사(石南寺)를,

천태종에는 충주의 엄정사(嚴正寺)·초계의 백암사(白巖寺)·태산의 흥룡사(興龍寺)·정산(定山)의 계봉사(鷄鳳寺)·영평의 백운사(白雲寺)·광주의 청계사(淸溪寺)·영해의 우장사(雨長寺)·대구의 용천사(龍泉寺)·도강의 무위사(無爲寺)·운봉의 원수사(原水寺)·대흥의 송림사(松林寺)·문화의 구업사(區業寺)·김산의 진흥사(眞興寺)·무안의 대굴사(大崛寺)·잔사의 선운사(禪雲寺)·제주의 장락사(長樂寺)·용구의 서봉사(瑞峰寺)를,

화엄종으로는 장흥의 금장사(金藏寺)·밀양의 엄광사(嚴光寺)·원주의 법천사(法泉寺)·청주의 원흥사(原興寺)·의창의 웅신사(熊神寺)·강화의 전향사(梅香寺)·양

주의 성불사(成佛寺)·안변의 비사사(毗沙寺)·순천의 향림사(香林寺)·청도의 칠엽사(七葉寺)·신령(新寧)의 공덕사(功德寺)를,

자은종에는 승령(僧嶺)의 관음사(觀音寺)·양주의 신혈사(神穴寺)·개령의 사자사(獅子寺)·양근의 백암사(白巖寺)·남포의 성주사(聖住寺)·임주(林州)의 보광사(普光寺)·의령의 웅인사(熊仁寺)·하동의 양경사(陽景寺)·능성(綾城)의 공림사(公林寺)·봉주의 성불사(成佛寺)·여흥의 신이사(神異寺)·김해의 감로사(甘露寺)·선주(善州)의 원흥사(原興寺)·함양의 엄천사(嚴川寺)·수원의 창성사(彰聖寺)·진주의 법륜사(法倫寺)·광주의 진국사(鎭國寺)이고,

중신종(中神宗)에는 임실의 진구사(珍丘寺)·함흥의 군니사(君尼寺)·이주(牙州)의 동림사(桐林寺)·청주의 보경사(普慶寺)·봉화의 태자사(太子寺)·고성(固城)의 법천사(法泉寺)·배주(白州)의 견불사(見佛寺)·익주의 미륵사(彌勒寺)를,

총남종(摠南宗)에는 강음의 천신사(天神寺)·임진의 창화사(昌和寺)·삼척의 삼화사(三和寺)·회순의 만연사(萬淵寺)·나주의 보광사(普光寺)·창평의 서봉사(瑞峰寺)·인제(麟蹄)의 현고사(玄高寺)·계림의 천왕사(天王寺)를,

시흥종(始興宗)에는 연주(漣州)의 오봉사(五峰寺)·연풍의 하거사(霞居寺)·고흥의 적조사(寂照寺)이다. 성석린(成石璘)이 본래 부처에게 아첨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칭이 있었는데, 식자(識者)들이 비난하였다.

(원전) 1집 425면

태종 8년 1408년7월3일(己酉)

각도에서 처녀를 선발하다

각도에 순찰사를 나누어 보내어 다시 처녀를 선발하게 하고, 또 내관(內官) 한 사람씩을 따라가게 하였는데, 이름을 경차내관(敬差內官)이라 하였다. 경기좌도·강원도·동북면은 서천군(西川君) 한상경(韓尙敬)과 내관 김용기(金龍奇)를, 경기우도·풍해도·서북면은 전 도순문사(都巡問使) 여칭(呂稱)과 내관 이원봉(李元鳳)을, 충청도는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이내(李來)와 내관 윤백안(尹伯顔). 전라도는 참찬의 정부사(參贊議政府事) 이귀령(李貴齡)과 내관 염유치(廉有恥). 경상도는 철성군(鐵城君) 이원(李原)과 내관 박유(朴輿)였다. 의정부에서 각도에 이첩하기를

“지난번에 도관찰사(都觀察使), 도순문사(都巡問使)와 경차관(敬差官) 등이 도내의 처녀들을 용심(用心)하여 추쇄(推刷)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에 빠진 자가 많이 있다. 다시 대소 수령(守令)과 품관(品官)·향리(鄕吏)·일수양반(日守兩班)⁶⁾·향교생도(鄕校生徒) 및 백성 각 호에 만일 자색(姿色)이 있거든 일체 모두 채택하여 정결(精潔)하게 빗질하고 단장시켜 천사(天使)의 사열(査閱)을 기다리고, 만일 여자를 숨기고 내놓으려 하지 않거나, 혹은 침구(針灸)하거나 머리를 자르고 약(藥)을 붙이고 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피를 써서 선택을 피하려고 피하는 자는, 통정(通政)이하는 직접 처단하고, 가선(嘉善) 이상은 신문(申聞)하여 모두 ‘왕지(王旨)를 따르지 않는 죄’로 논하고,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가산(家産)을 적몰(籍沒)하라.”

하였다.

〈원전〉 1집 445면

태종 8년 1408년7월15일(辛酉)

메뚜기의 피해가 발생하다

강원도의 원주·정선·인제(麟蹄)와 풍해도의 봉주(鳳州)·장연(長淵)에 황충(蝗虫)이 일었다.

〈원전〉 1집 446면

태종 8년 1408년9월20일(乙丑)

강원도 양주 등에 우박이 내리다

강원도 양주(襄州) 등 다섯 고을에 우박이 내려 깊이가 5촌(寸)이나 되었다.

〈원전〉 1집 451면

6) 일수양반(日守兩班): 지방 각 역에서 천한 일을 하던 하인

태종 8년 1408년9월29일(甲戌)

강원도에 큰비가 내려 곡식을 망치다

강원도에 큰비가 내려서 화곡(禾穀)을 손상하였다.

〈원전〉 1집 454면

태종 9년 1409년3월16일(己未)

강원도의 기민을 구제하다

강원도의 기민(飢民)을 진제(賑濟)하였다. 도관찰사가 상언(上言)하기를,
“굶주린 백성이 도토리를 주어 연명하는데, 도토리가 이미 다 없어졌고, 의창(義倉)에 저장한 곡식도 구제하기에 부족합니다. 원컨대 국고(國庫)의 곡식을 내어 흉년을 구제하고 농사를 권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1집 477면

태종 9년 1409년4월13일(乙酉)

실농한 고을에 국고의 곡식을 내어 종자에 쓰게 하였다

강원도의 실농(失農)한 고을에 국고의 곡식을 내어 종자(種子)와 농량(農糧)에 이바지하게 하였다.

“의창에 저장한 곡식은 겨우 굶주림을 구제할 만 하옵고, 종자와 농량은 전연 의뢰할 데가 없습니다. 만약 의정부의 정식(定式)대로 행이(行移)하여 지급하면, 집집의 전지에 파종(播種)을 마치지 못할 형편입니다. 원컨대 국고의 쌀과 콩을 적당하게 나누어주어 넉넉하게 하여 실농(失農)하지 않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1집 481면

태종 9년 1409년7월5일(乙亥)

처녀를 간택하는 사의를 아뢰다

진헌색제조(進獻色提調) 이귀령(李貴齡)등이 처녀를 선택하는 사의(事宜)를 아뢰었다.

“서울 안의 처녀는 이미 두루 살펴보았는데 입격(入格) 할 만한 자가 없으니, 의정부에 명하여 편의한 대로 시행하소서.”

하였다. 이에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유후사(留後司)와 풍해도, 강원도, 전라도에서 각각 2인, 경상도에서 4인, 경기 좌. 우도에서 3인을 뽑되, 이미 보았거나 아직 보지 못한 처녀 중에서 연령 17세 이하 13세 이상으로 잘 생긴 사람을 선택하여 전년에 입격한 처녀 27인과 합하여 올려보내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옹계 여גיע어 지인(知印)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고, 정부에 전지(傳旨)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중외(中外)의 처녀가 금령(禁令)으로 인해 혼가(婚嫁)의 대를 잃으니, 천도(天道)가 두렵다. 그러나 대국(大國)의 요구를 소국(小國)이 또한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사신을 보내어 입조(入朝)할 적에 마땅히 부주(附奏)를 행하라.”

〈원전〉 1집 497면

태종 10년 1410년2월4일(辛丑)

각도 시위 정군의 수목을 올리다

의흥부(義興府)에서 각도 시위정군(侍衛正軍)의 수목(數目)을 올렸는데, 경상도는 4천 2백 38명이고, 전라도는 1천 3백 78명. 충청도는 1천 5백 39명. 강원도는 1천 2백 48명이었다. 임금이 각도의 군사를 3번(番)으로 나누어 3월부터 5월까지 교대로 번상(番上) 시위(侍衛)하게 하였다가, 조금 뒤에 다시 전과 같이 하라고 명하였는데,

경상도는 2백, 나머지 3도는 1백 명씩 번상(番上)하게 하였다.

〈원전〉 1집 528면

태종 10년 1410년2월15일(壬子)

경기·강원도에 기근을 진휼하다

경기·강원도의 기근(飢饉)을 진휼(賑恤)하였다.

〈원전〉 1집 529면

태종 10년 1410년5월7일(癸酉)

강원도의 춘주 등지에 커다란 우박이 내리다

강원도에 우박이 내렸다. 춘주(春州)·고성·홍천(洪川)에는 큰 것이 탄환(彈丸)만 하고, 정선에는 큰 것이 주먹 만 하여 3일이 지나도 녹지 않았다.

〈원전〉 1집 547면

태종 11년 1411년3월6일(丙寅)

비상시를 대비, 강원도 진명창 이북 등의 곡식을 길주·의주로 옮기다

강원도 진명창(鎭溟倉) 이북의 주군(州郡) 곡식을 길주(吉州) 등으로 옮기고, 서북면 안주(安州) 이북의 주군(州郡) 곡식을 의주(義州) 등 처로 옮겼으니, 정부(政府)의 청에 따라 뜻하지 않은 근심에 대비한 것이었다.

〈원전〉 1집 577면

태종 11년 1411년12월13일(己巳)

성안에 장랑을 짓도록 하였다

성(城) 안에 장랑(長廊)을 지으라고 명하고, 강원도 군정(軍丁) 1만 3천 명으로써 재목(材木)을 베었다.

〈원전〉 1집 616면

태종 12년 1412년1월16일(辛丑)

강원도 백성으로 재목을 베는 역사에 참여하는 자는 군기를 면제하다

강원도의 춘등월과(春等月課⁷⁾의 군기(軍器)를 면제하였다.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도내 인민이 올 봄에 행랑(行廊)의 재목을 베는 역사에 나가야 하니, 청컨
대 월과(月課)의 군기를 면제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1집 622면

태종 13년 1413년10월1일(丁未)

미곡 수납 사의를 올리다

좌정승 하윤(河嶽)등이 풍해도·충청도·강원도의 미곡(米穀)을 수납할 사의(事宜)를 올렸다. 계문(啓聞)은 이리하였다.

“풍해도의 녹전미(祿轉米)는 마땅히 그 고을에 거두어들이도록 하여 군량에
충당하고, 광흥창(光興倉)의 반록(頒祿⁸⁾)은 마땅히 군사감(軍資監)의 묵은

7) 춘등월과(春等月課): 춘기(春期)에 정례적으로 하는 일

쌀을 쓰도록 하며, 또 충청도·강원도 양도의 속미(粟米)는 매양 얼음이 얼기 전에 상납하는데, 이러한 연유로 벼가 미쳐 익지 않아도 갑자기 베어 내니, 이것이 여러 해 쌓인 폐단입니다. 빌건대 다른 도의 예에 의하여 첫봄까지 기다려 전납(轉納)하게 하여서 민폐를 없애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1집 690면

태종 13년 1413년10월15일(辛酉)

지방행정 구역의 명칭을 개정하다

각도 각 고을의 이름을 고쳤다. 임금이 하운(河崙)에게 이르기를,

“전주(全州)를 이제 완산부(完山府)라고 고치고서도 오히려 ‘전라도’라고 칭하고, 경주(慶州)를 이제 계림부(鷄林府)라고 고치고서도 오히려 ‘경상도’라고 칭하니,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다.”

하니, 하운(河崙)이 말하기를,

“유독 이 곳만이 아니라, 동북면(東北面)·서북면(西北面)도 또한 이름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옳도다.”

하였다.

드디어 완산을 다시 ‘전주’라고 칭하고, 계림을 다시 ‘경주’라고 칭하고, 서북면을 ‘평안도(平安道)’로, 동북면을 ‘영길도(永吉道)’로 하였으니, 평양·안주(安州)·영흥(永興)·길주(吉州)가 계수관(界首官)이기 때문이다. 또 각도의 단부(單府) 고을을 도호부(都護府)로 고치고, 감무(監務)를 현감(縣監)으로 고치고, 무릇 군(郡)·현(縣)의 이름 가운데 주(州)자를 떼는 것은 모두 산(山)자, 천(川)자로 고쳤으니, 영주(寧州)를 영산(寧山)으로 고치고, 금주(衿州)를 금산(衿山)으로 고친 것이 그 예이다.

<원전> 1집 690면

8) 반록(頒錄): 나라에서 관리들에게 녹봉(祿俸)을 내려줌

태종 13년 1413년11월11일(丁亥)

각도 각 고을 향교 노비의 수를 정하다

각도 각 고을의 향교(鄕校)의 노비 수를 정하였다. 강원도 도관찰사가 아뢰었다.

“외방(外方) 각 고을의 노비는 유수관(留守官)에는 20호씩으로, 대도호부(大都護府)·목관(牧官)에는 15호씩으로, 도호부(都護府)에는 10호씩으로, 지관(知官)에는 7호씩으로, 현령(縣令)·현감(縣監)에는 5호씩으로 하고, 정한 액수 이외의 노비는 모두 노비가 없는 향교에 이속(移屬)하여 그 액수를 충원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1집 694면

태종 13년 1413년11월11일(丁亥)

농장의 울타리 둘레를 법으로 정하다

각품(各品)의 농사(農舍) 울타리 둘레를 보수(步數)로 정하였다. 죽은 참찬(參贊) 최유경(崔有慶)의 아내 이씨(李氏)가 정부에 고소하였다.

“죽은 남편의 장지(葬地)를 용구현(龍駒縣)의 진 장군(將軍) 김소남(金召南)의 농사(農舍) 곁에 복택(卜宅)하였는데, 영구(靈柩)가 이르니, 김소남이 이를 저지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었다.

“1품 이하에서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분묘(墳墓) 영내 장승에는 모두 정한 제도가 있으나, 농사(農舍)의 울타리 둘레는 아직 정한 제도가 없습니다. 부강(富強)한 자가 산과 들을 넓게 점령하여 시지(柴地)로 삼기에 이르매, 가난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주할 수도 없게 하며, 심지어 달관(達官)의 장사에도 또한 땅을 얻을 수가 없어서 서로 다투어 소송하나 관리는 이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빌건대 1품의 농사(農舍)의 울타리 둘레는 사방 1백 보로 하

고, 매 품(品)마다 10보를 내려서, 서인(庶人)에 이르러 사방 10보로 하여, 정한 제도로 삼아서 함부로 점령하고 서로 소송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원전〉 1집 694면

태종 14년 1414년5월7일(己卯)

각 도의 환과고독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를 진휼하다

노인을 진휼(賑恤)하였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경차관(敬差官)이 추천한 환과고독(鰥寡孤獨)으로서 스스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자는 1천1백 56명인 가운데, 1백 1세의 2인에게는 쌀·콩 각각 7석씩을, 90세 이상의 7인에게는 쌀·콩 각각 5석씩을, 80세 이상에게는 쌀·콩 각각 3석씩을 진휼(賑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강원도 경차관(敬差官)이 추천한 나이 30세가 지나도록 시집가지 못한 여자 12명을 각 고을에 있는 수속(收贖)⁹⁾한 물색(物色)으로써 자장(資裝)을 보태 주어서, 금년 안에 성혼(成婚)을 끝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의 그대로 따랐다.

〈원전〉 2집 15면

태종 16년 1416년3월19일(辛亥)

중외의 기민을 구제하다

중외(中外)의 창고를 열어서 기민(飢民)들을 구제하고, 또 농사 종자를 주니, 경기도관찰사 우희열(禹希烈)의 장계(狀啓)에 의한 것이었다.

명하여 강창(江倉)에 저장한 황두(黃豆) 7백 40석을 꺼내고, 유후사(留後司)에 저

9) 수속(收贖): 죄인이 죄를 벗어나려고 바치는 돈(벌금)을 거두어들임

장한 묵은 쌀·콩 1만 석을 조운(漕運)하여 진제(賑濟)하게 하였다. 충청도 각 고을의 조세(租稅) 8천 석과 콩 4천 9백 60석, 강원도 각 고을의 콩 8백 석을 조운(漕運)하고, 전농시(典農寺)의 조세(租稅) 3천 석을 나누어주고, 아울러 경중(京中)에 저장한 콩 5천 석을 종자로 주었다.

〈원전〉 2집 107면

태종 18년 1418년3월20일(庚午)

각도 관찰사에게 현량을 찾아내어 아뢰게 하다

각도 관찰사에게 명하여 현량(賢良)을 찾아내어 이름을 자세히 써서 아뢰게 하니, 강원도에서는 40인이고, 경상도에서는 51인, 전라도에서는 86인, 충청도에서는 8인, 평안도에서는 112인, 함길도에서는 20인, 경기도에서는 50인, 황해도에서는 2인이었다.

〈원전〉 2집 210면

태종 18년 1418년6월14일(癸巳)

재인 오덕해를 강원도에 보내어 나무를 베다

재인(桀人)¹⁰ 오덕해(吳德海)를 강원도에 보내어 선군(船軍) 6백 명을 거느리고 원주·영월·인제(麟蹄) 등지에서 나무를 베었으니, 장차 창덕궁(昌德宮)을 수증(修葺)하려는 때문이었다.

〈원전〉 2집 235면

10) 재인(桀人): 목수의 우두머리

세종편

세종 원년 1418년9월9일(丙辰)

우박이 내려 기러기가 맞아 죽고, 벼가 상하다

함길도 함흥·화주(和州)·의천(宜川)에 우박이 와서 이를 맞은 기러기는 다 죽었다. 강원도의 춘천·횡천(橫川)·인제(麟蹄)·양구에도 우박이 와서 벼를 상하게 하였다.

〈원전〉 2집 267면

세종 1년 1419년1월6일(辛亥)

강원도 원주 등지 기민의 조세를 면제해 주니 변계량이 이의를 제기하다

강원도 행대감찰(行臺監察) 김종서(金宗瑞)가 장계를 올리기를

“원주·영월·홍천·인제(麟蹄)·양구·금성·평강·춘천·낭천(狼川)·이천·회양(淮陽)·횡성(橫城) 등지의 기민(飢民) 7백 29명에게 조세(租稅)를 면제해 주소서.”

하니, 임금은 그대로 따랐다.

변계량(卞季良)은 그에 대하여 옳지 않게 여기니, 임금은 말하기를,

“임금으로 있으면서 백성이 주리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조세를 징수하는 것은 진실로 차마 못할 일이다. 하물며 지금 목은 곡식이 이미 다 떨어졌다고 하니,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준다해도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되거늘, 도리어 주린 백성에게 조세를 부담시켜서 되겠는가. 더욱이 감찰을 보내어 백성의 굶주리는 상황을 살펴보게 하고서 조세조차 면제를 안 해 준다면, 백성을 위하여 혜택을 줄 일이 또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원전〉 2집 296면

세종 1년 1419년12월19일(己丑)

강원도에 기근이 드니 구제하도록 명하다

강원도에 기근(飢饉)이 들었으므로 창곡(倉穀)으로 구제할 것을 명하였다.

〈원전〉 2집 352면

세종 3년 1421년1월13일(丙子)

역의 위전을 역에 다시 돌려줄 것을 청하다

강원도 관찰사가 계(啓)하기를,

“도내의 여러 역(驛)에 급여하여 주는 토지가 모두 돌밭이어서, 메마르고 토박하여 쓰지 못할 땅이라 두어 달의 경비에도 부족하여서, 역리(驛吏)들이 모두 자비(自備)하여 써 왔는데, 정유년에 인마(人馬)의 위전(位田)을 비로소 모두 공용으로 정하여, 급여해 주는 것을 보충하였으나, 그래도 아직 부족하는데, 이제 경차관이 또 남은 위전(位田)을 모두 군사감(軍資監)으로 이속(移屬)시키었으니, 마땅히 여러 역(驛)에 돌려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2집 420면

세종 4년 1422년7월2일(丁巳)

경원창의 쌀로 강원도 기민을 구휼하다

경원창(慶原倉)의 쌀 3만 석을 풀어서 강원도 기민(飢民)을 구휼(救恤)하고, 경창(京倉)의 보리 종자를 실어다 나누어주었다.

〈원전〉 2집 486면

세종 4년 1422년11월30일(癸未)

농사에 실패한 자의 조세 경감을 명하다

교지(教旨)하기를,

“농사를 실패한 각도의 인민이 실제로 50짐(卜)¹¹⁾ 이하를 경작하면 꾸어준 것을 재촉하여 받지 말게 하고, 강원도의 영서(嶺西) 인민은 실제로 이하의 땅뿐이면 밭 세(稅)를 거두지 말라.”

고 하였다.

〈원전〉 2집 513면

세종 4년 1422년12월5일(戊子)

강원도 관찰사가 향시의 원래 정원대로 뽑기를 청하다

강원도 관찰사가 계(啓)하기를,

“앞서 본 도는 땅이 궁벽하고 사람이 없어, 문과(文科)와 생원(生員)의 향시(鄉試)에 정원을 채우기 쉽지 않아 각각 그 수를 감하였으나, 이제 교도(教導)를 널리 보내어 학교를 세우고 방도가 있게 교양(教養)하여, 인재가 많이 나오

11) 짐(卜); 조세(租稅)를 계산하기 위한 논밭의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로 한 짐은 열 뭇, 곧 백(百)줌을 말 함.

니, 원컨대 향시의 본디 정한 인원수대로 시험 보아 뽑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2집 515면

세종 4년 1422년12월9일(壬辰)

강원·황해·평안도 등에 공물을 감해준다

교지(教旨)로 말하기를,

“강원·황해·평안·함길도 네 도에 굶주리는 사람이 다른 도보다 배나 되
니, 앞서 각 사(各司)의 공물(貢物)을 감면(減免)하여 준 가운데 다 감하여
주지 않은 것은 일체 모두 감면하여 주라.”

하였다.

〈원전〉 2집 515면

세종 4년 1422년12월28일(辛亥)

강원도에서 기르는 국마를 충청도에 옮겨 기르게 하다

강원도의 이천·평강(平康)·회양(淮陽)·금성·김화(金化)·낭천(狼川)·양구(楊
口)·인제(麟蹄)·홍천(洪川)·춘천·횡성(橫城)·원주·영월·평창(平昌)·정선에 나
누어 기르는 국마(國馬)를 모두 충청도에 옮겨 기르게 하고, 또 지난해에 바치지 않
은 공물(貢物)을 면제하여 주니, 이는 그 도 관찰사의 청을 따른 것이다.

〈원전〉 2집 516면

세종 5년 1423년1월 17일(己亥)

강원도에 진저미를 내려준다

강원도 감사가 계(啓)하기를,

“도내의 각 고을에서 실농(失農)한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으니, 햇곡식이 익
기까지 창고를 열어 진대(賑貸)해 주기를 청합니다.”

라고 하니, 진제(賑濟) 미두(米豆) 8천 4백 석과 환상(還上) 미두(米豆) 2만 2천 석
을 주도록 명하였다.

〈원전〉 2집 521면

세종 5년 1423년8월21일(己巳)

강원도내 실농한 향교 생도들을 방학케 하다

예조에서 강원도 감사의 관문(關文)에 의하여 계(啓)하기를,

“도내에서 실농(失農)한 각 고을의 향교(鄕校) 생도(生徒)들을 방학(放學)하
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2집 553면

세종 5년 1423년12월20일(丁卯)

조운·민폐구제 등에 관한 상소문

전 지순안현사(知順安縣事) 박진(朴甸)이 민폐를 구제하는 상소 48조를 올린 것을 의
정부에 내려, 여러 조(曹)와 같이 논의하여 가히 시행할 만한 조건을 채택하여 아뢰니,

“一. 옛날에 감사 한상경(韓尙敬)이 건의하기를, ‘재령군(載寧郡)은 그 도의
중양이며, 옛부터 큰 고을이니, 모름지기 거기에 본영(本營)을 두어 여러
군의 왕래하는 폐단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 고 하고, 또 말하기를, ‘평산
(平山)은 지역이 넓으니, 그 지역을 나누어 관(官)을 설치한다 해도 또한
가하다.’ 하여, 평산으로부터 재령에 이르는 사이에 비로소 기린역(麒麟

驛)을 설치하였던 것입니다. 신도 또한 일찍이 보니, 평산의 남면이 연안(延安) 땅으로 넘어 들어가서 그 거리가 6사(舍)¹²⁾나 되었으며, 또 들으니, 춘천(春川) 관내의 기린현(麒麟縣)과 거리가 7사나 된다 하오며, 회양(淮陽) 관내의 서화현(瑞和縣)과는 거리가 12사나 된다 하고, 해안(亥安). 이포(伊布)의 두 고을도 양구(楊口)로 넘어 들어가서, 그 거리가 7사나 되어, 백성의 왕래가 심히 곤란하고, 환상곡의 대여와 보상으로 농사를 폐하는 일이 또 한 많다 하오니, 이는 모두 민간의 적폐(積弊)입니다. 원컨대 그도 감사로 하여금 원근(遠近)의 거리를 분간하여 편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 一. 풍천(豐川)의 지역이 문화(文化)·신천(信川)·송화(松禾)의 지경까지 넘어 들어가서, 이미 일찍이 쪼개어 나누어서 세 고을에 붙였으나, 대저 그 잡공(雜貢)은 아직 계산하여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풍천에서 지금까지 납부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민생의 폐단이 남아 있사오니, 청컨대 그도 감사로 하여금 이를 상고하여 옮겨 정하도록 할 것이며,
- 一. 토지의 세금과 노비(奴婢)의 공물(貢物)은 모두 1년에 한 번씩 거두고 있는데, 다만 경사(經師)와 무격(巫覡)의 공물은 1년에 두 번씩, 남녀의 맹인 무당도 또한 모두 세(稅)를 거두니, 진실로 불쌍합니다. 원컨대 경사와 무격은 1년에 한번만 받아들이게 하도록 하고, 맹인·무당의 세는 전부 면제하도록 할 것이며,
- 一. 학교는 풍화(風化)¹³⁾의 근원인데, 각 고을 향교의 성전(聖殿)의 위판(位版)과 제기(祭器)가 혹 정결하지 못한 곳도 있어, 도리어 승려들이 부처를 공경히 받드는 정성만 같지 못하니 실로 부끄러운 일이오니, 비옵건대, 모두 법도에 의하여 만들어 정성과 존경을 다하도록 할 것이며,
- 一. 사람이 역질(疫疾)에 걸려 죽으면 산간에 갖다 놓고 풀로 덮어 장사하고, 혹은 싸서 나무 가지에 매달아 두었다가, 지금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향도(香徒)들과 결합하여 매장하게 하는데, 지손이 있고 부유한 집

12) 사(舍): 옛날 중국의 군제(軍制)에서 군대의 하루 행정(行程)인 30리를 일컫던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50리에 해당함

13) 풍화(風化): 교육의 힘으로 풍습을 잘 교화하는 일

의 장사에는 다투어 모여들어 묻어주고 있으나, 자손도 없고 가난한 집 장사에는 내버려두고 돌아보지 않아서, 혹은 산화(山火)에 사체(死體)가 타기도 하고, 혹은 호리(狐狸)가 뜯어먹기도 하여, 화기(和氣)를 손상하게 하오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곤궁한 사람의 장사도 전부 향도에 게 붙여, 이를 감독하여 매장하도록 할 것이며,

- 一. 무식한 무리들이 가뭄이 드는 농사철에 초피(草皮)와 초엽(草葉)을 절구에 쪼개 냇물에 풀어서 수족(水族)을 다 죽이니, 식자(識者)들이 마음 아파하는 바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만물을 생육하는 어진 마음으로 보면 그 잔인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일절 엄금할 것이고, 또 생물을 해방하는 영(命)을 내릴 것이며, 방치되어 있는 삭아버린 뼈와 썩고 있는 시체(屍體) 등이 있으면 한결같이 경중(京中)의 예에 의하여 착한 마음이 있는 중으로 하여금 수습 매장하게 하여, 마르고 삭은 남은 뼈로 하여금 땅위에 그냥 버려 둬를 면하도록 할 것이며,
- 一. 선군(船軍)은 본래 물위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만일 일신이 곤고(困苦)할 뿐만 아니라, 만약 배가 노후하여 파손되면 선재(船材)의 운반에 모두 자기 집 소를 사용하여 운반하므로 농사철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농사는 그 때를 잃어서 그 노고가 적지 않은 데다가 전토(田土)의 세금과 부역을 아울러 배정하고 있으니, 원컨대 다시 굳게 금단하고, 더욱 무휼(撫恤)을 가하여 요역(徭役)을 감면하도록 할 것이며,
- 一. 정부의 양곡을 물위로 수송할 때에, 혹은 풍랑(風浪)의 변으로 인하여 식량이 떨어져 기아의 곤란을 받으니 진실로 불쌍한 일입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그 도착한 곳의 고을로 하여금 식량을 적당히 주는 것으로서 향식(恒式)¹⁴⁾을 삼도록 할 것이며,
- 一. 황해도 장산곶(長山串) 이북의 각 해변은 수로(水路)가 험하고, 양곡의 해상 수송도 희소하여, 선군(船軍)들도 약간 휴식할 가급(加給)¹⁵⁾이 있으나, 이남에 있는 각 포구는 조운(漕運)의 복무에 곤고(困苦)를 받고 있사오니, 청컨대 그 잡무(雜務)를 그 도로 하여금 조사 고찰하여 적당히 이북

14) 향식(恒式): 항상 따라야 할 형식

15) 가급(加給): 정해진 수보다 더 보태줌

각 포구에 나누어서 수고스럽고 편한 것을 고르게 조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2집 568면

세종 6년 1424년7월29일(壬寅)

회양과 춘천 경내 군·현의 소속 변경에 대해 아뢰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회양(淮陽) 경내의 서화(瑞和), 춘천(春川) 경내의 이포(伊布)는 마땅히 가까운 인제현(麟蹄縣)에 소속시키고, 회양 경내의 방산(方山)과 춘천 경내의 해안(亥安)은 가까운 양구현(楊口縣)에 소속시킬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2집 616면

세종 6년 1424년8월21일(癸亥)

강원도에 서리가 내리다

강원도에 서리가 내렸다.

〈원전〉 2집 618면

세종 6년 1424년8월22일(甲子)

강원도에 서리가 내리다

강원도에 서리가 내렸다.

〈원전〉 2집 619면

세종 8년 1426년3월4일(戊戌)

노비를 증여 받은 대신들을 벌준다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김도련(金道鍊)은 지방의 미천한 인물이며, 또 한 자식이 있는 사람으로, 자기가 송사(訟事)한 노비를 각처의 권력가에게 증여하였으니, 그의 본심을 캐어 보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제 힘으로는 소송(訴訟)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 있는 사람에게 의탁하여 그것을 인연으로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의 정상이 명백하오니 앞에 제시한대로 증여한 노비는 마땅히 모두 관가에 소속시켜야 할 것이오나, 노비 중에는 양민도 있고, 천민도 있을 것이므로, 다시 관가에 판결을 받고, 양민인지 천민인지 알기 어려운 것은 담당관 관원으로 하여금 판결을 내리게 하여 처리하고, 그 증여를 받은 우의정 정탁(鄭擢)·평성부원군 조견·공조참의 조승덕은 벌써 모두 죽었으며, 우의정 조연(趙涓)은 15명을 받았고, 곡산부원군 연사종(延嗣宗)은 10명을 받고, 병조판서 조말생은 24명을 받았습시다. 그들이 증여를 받은 것이 비록 사(赦)¹⁶⁾를 내리기 이전에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부려먹고 있으니 용서할 수 있는 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조연과 사종(嗣宗)은 모두 공신으로서 부귀가 극진한데도 그의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공공연히 증여를 받았으니, 마음이 청렴하지 못하여 대신의 의사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조말생은 갑오년에 형방 대언(代言)으로 있으면서 노비에 대한 소송문제를 도맡아서 왕명을 출납하였는데, 그 때에 도련이 변정도감(辨正都監)에 소송할 때에, 말생은 뒤에서 몰래 그를 조종하였고, 또 그를 위하여 청탁하여 주었으며, 판결을 받은 뒤에 증여를 받았습시다. 임인년에 도련이 또 김득경(金得卿)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이 때에는 말생이 병조판서로 있었는데, 정사를 잡은 대신으로서 또 증여를 받고 소송을 판결하는 관리로 하여금 어물어물하며 판결을 내려주지 아니하게 하여 억울하게 하였으며, 또 도련의 아들에게 좋은 관직인 대부(隊副)를 시켜주었으니, 기탄 없이 욕심을 부릴 뿐만 아니라 재상의 체통에 합당하지 못하오니, 비록 법에 의

16) 사(赦): 죄나 허물을 덮어두거나 용서하여줌

하여 죄를 다스리어 뒷사람에게 경계가 되게 하소서. 그때의 형조참의 박고(朴翽)와 방장정랑(房掌正郎) 김영(金寧)은 세력이 두려워서 여러 해가 지나도록 미루며 판결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음이 아침스러워 법관으로서의 취지에 어그러집니다. 바라옵건대 아울러 법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어 관리의 기풍을 바로 잡게 하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이것은 일이 큰 것이다. 내가 어떻게 혼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여러 대신과 상의한 뒤에 이를 처리하겠다.”

하니, 집의 정연(鄭淵)이 아뢰기를,

“연(淵)은 수상(首相)이었으며, 말쟁은 권력 있고 중요한 지위에 있었으며, 사종은 작위가 1품이면서도 그들의 정신이 이러하였으니, 바라옵건대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밝으신 판단을 내리소서.”

하니, 좌사간(左司諫) 허성(許誠)이 아뢰기를,

“신 등은 속으로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을 짐작하긴 하였으나 정계할 길이 없으므로, 전일 고신(告身)에 서경(署經)하는 법을 말하기를 청하였던 것입니다. 정연(鄭淵)의 말을 받아들이소서.”

하니, 임금의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감히 덮어두고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하였다.

모든 신하가 다 나가니,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대신으로서 이러한 일이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뇌물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니 작은 문제가 아니다. 연(淵)은 수상이 되었고, 말쟁에게는 그를 중하게 기대하던 것이 판서로 있을 때 뿐 아니라 대언으로 있을 때부터 태종께서도 신임하셨고, 나도 신임하기를 다른 신하의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이제 마침내 이러하였으니, 이는 옛적 정치가 잘 되던 세상에서는 절대로 없었던 일이다. 대체로 위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가 있으면, 곧 대신이 보고 감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니, 나 자신에게 관계가 된 문제다.”

하고, 곧 명을 내리어 조연은 황해도 수안(遂安)에 부처하고, 연사종은 강원도 인

제(麟蹄)에 부처하고, 조말생은 직첩을 도로 빼앗고 충청도 회인(懷仁)에 부처하고, 연과 사중은 공신이므로 특별히 감면하였다.

(원전) 3집 12면

세종 13년 1431년11월5일(丙寅)

수원부 판관을 다시 두는 문제를 논의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지금 수원부 판관을 다시 두는 것이 편리한가 편리하지 않은가를 상정소(想定所)에 의논하니, 제조 맹사성(孟思誠)은 말하기를, ‘더 설치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고, 허조(許稠)는 말하기를, ‘만약 판관을 더 설치한다면 관원 한 사람의 이록(衙祿)¹⁷⁾이 반드시 더 들것이며, 이웃 고을 진위(振威) 같은 데는 민호(民戶)가 매우 적어서 장차 자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수원 관내의 영신(佞臣)을 떼어 내려고 했으나 되지 않고 도리어 정호역리(筭好驛里)를 얻었는데, 또 과객(過客)을 접대하는 폐해가 참가되었으므로 이후로 진위는 더욱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지나치게 많은 민호(民戶)를 떼어서 진위로 옮겨 주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황희(黃喜)는 말하기를, ‘수원의 사무(事務)가 번잡한 것은 옛날도 지금과 같았습니다. 그곳에 판관을 혁파한 것은 나라를 세운 이후로 거의 40년이나 되었는데도, 능히 서무(庶務)를 처리하여 기한을 어긴 책망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다시 설치하여 한갓 능록(廩祿)만 허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릇 제도를 세우고 곧 폐지했다가 다시 회복함은, 일정한 제도가 없는 것 같아, 백성들에게 신의를 보이는 뜻에 어긋남이 있을 것이오니, 원컨대, 조종의 성헌(成憲)에 의거하여 회복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수원은 속현(屬縣)이 상당히 많아서 땅이 크고, 백성이 많으니, 한사람이 능히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어찌 유독 수원에만 치우쳐서 후하게 하고, 땅이 협착(狹窄)한 옆 고을에는 박하게 하여, 가난한

17) 아록(衙祿): 지방 수령에 속해 있는 식구들에게 주던 료(祿)

고을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부유한 고을은 더욱 부유하게 만들겠습니까. 반드시 그 백성이 많아서 사무가 번잡한 폐단을 구제하고자 한다면, 미땅히 그 부근의 땅으로써 좁고 작은 옆 고을에 떼어 붙이는 것도 또한 옳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수원(水原)이 감사의 본영이므로 더욱 부유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옆 고을도 이미 오랑캐의 땅이 아니고 또한 한 도 안의 하루 길의 노정에 있을 뿐입니다. 신이 지난해에 강원감사로 봉직했을 때에, 춘천의 해안(亥安)과 회양(淮陽)의 문등·방산·서화(瑞和)를 그 부근의 협소한 양구·인제(麟蹄) 등 현(縣)에 떼어 붙여서, 도리의 멀고 가까운 것과 사무의 번잡하고 간략한 것이 거의 적중하게 되었으므로 백성들이 이를 편하게 여겼습니다.”

하니, 호조에 내리어 황희(黃喜)와 허조(許稠) 등의 의논을 경기감사에게 이문(移聞)하여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점을 조사해서 아뢰도록 하였다.

〈원전〉 3집 354면

세종17년 1435년 5월 6일(丁丑)

강원도 영동의 소금 4백 석을 영서에 나누어 꾸어 주게 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의 영동(嶺東) 각 고을 회계의 소금 4백 석을 영서(嶺西) 각 고을 민호(民戶)에 나누어 꾸어 주고, 가을을 기다려서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시가(時價)에 의하여 잡곡으로 수납하여 회계에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3집 626면

세종 17년 1435년 7월 11일(庚辰)

인제·청양·예산의 현감들이 하직하니, 구휼을 명하다

인제현감(麟蹄縣監) 김신지(金愼之)·청양현감 권영(權寧)·예산현감 김상례(金尙

禮) 등이 하직하니, 임금의 불러 보고 말하기를,

“잇달라 해마다 흉년이 들어서 백성이 굶주리는 사람이 많으니, 금년은 비록 풍년이지만은 어찌 능히 여러 해 동안의 빈곤을 구제할 수가 있겠는가. 그대들은 가서 이 백성들을 구휼(救恤)하여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라. 또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 도적이 매우 성하게 되니, 형벌을 비록 폐지할 수는 없지마는, 미땅히 이를 신중히 해야 될 것이야.”

하였다.

〈원전〉 3집 641면

세종 18년 1436년7월7일(庚子)

민효환 · 정포 · 황곤 등이 하직하다

충청도 경력(經歷) 민효환(閔孝權) · 전라도 도사(都事) 정포(鄭抱) · 인제현감 황곤(黃坤) · 결성현감 한자이(韓自邇) · 청하현감 안경직(安敬直) 등이 하직하니, 임금이 불러 말하기를,

“우리 나라가 지난 해 가을부터 가물어 이제까지 비가 오지 아니하였는데, 경상·전라·충청 세도가 더욱 심하여 네 번이나 비오기를 빌었으나, 아직껏 비가 오지 아니하니, 다만 벼곡이 말라죽을 뿐만 아니라 흉년을 구제할 물자도 또 한 얻기 어렵게 되었다. 대개 평상시와 다른 일이면 이를 다 재변(災變)이라 이르나니, 지금의 이 같은 가뭄은 곧 하늘이 견책(譴責)하여 알리는 큰 재변이다. 혹시 형벌이 적중함을 잃어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한 것이 있는가. 또 백성을 옹기고 곡식을 옹기는 일은 흉년을 구제하는 정책으로 폐할 수 없는 것이매, 이미 감사로 하여금 그 편하고 편치 않음을 서로 의논 확정하여 아뢰라고 하였으니, 처치(處置)하는 방법은 그 지경에 가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가서 그대의 마음을 다하여 백성들에게 굶주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4집 22면

세종 18년 1436년11월9일(庚子)

강원도와 전라도에서 천둥치고 우박이 내리다

강원도와 전라도에서 천둥하고 우박이 내렸다.

〈원전〉 4집 40면

세종 19년 1437년1월24일(甲寅)

전국적으로 지진이 일다

서울안과 경기도·경상도의 안동(安東)·상주(尙州) 등 25 고을, 강원도의 양양(襄陽) 등 11 고을, 충청도의 충주(忠州) 등 43 고을, 전라도의 전주(全州) 등 26 고을에 지진(地震)이 일었다.

〈원전〉 4집 51면

세종 19년 1437년8월29일(丙戌)

바람으로 강원 지역 농사가 손상되었음을 보고하다

강원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도내의 벼농사가 바람으로 인하여 손상되었습니다.”

고 하였다.

〈원전〉 4집 102면

세종 20년 1438년10월11일(壬戌)

강원도에서 큰바람으로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혔다

강원도에서는 초 10일부터 이날에 이르기까지 큰바람이 불어 집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혔다.

〈원전〉 4집 167면

세종 21년 1439년2월6일(乙卯)

소나무를 함부로 작벌 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도성(都城) 안에 집을 짓지 못한 자가 자못 많사온데, 경기·강원도의 소나무는 작벌(斫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법이 <속전등록(續典騰錄)>에 기재되었으나, 다른 도의 경우인즉, 비록 말라죽은 나무라든가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라 하더라도 함부로 작벌 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범법한 자를 추고하여 핵문(核聞)하지 아니한 수령은 모두 율(律)에 의하여 처벌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집 186면

세종 21년 1439년3월11일(己未)

농사에 실패한 각 고을 향교의 생도들을 가을까지 번을 나누어 독서하게 할 것을 아뢰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백성이 농사에 실패하였으니, 각 고을 향교(鄕校)의 생도들을 가을이 될 때까지는 번(番)을 나누어서 독서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집 195면

세종 23년 1441년6월21일(丙戌)

경기도·강원도가 가물어 비오기를 빌었다

경기도·강원도가 가물어 비오기를 빌었다.

〈원전〉 4집 347면

세종 23년 1441년7월29일(癸亥)

하직하는 김이상·이임·정운신 등을 인견하다

지곤양군사(知昆陽郡事) 김이상(金異常)·철원현감 이임(李臨)·청양현감 김팽로(金彭老)·인제현감 정운신(鄭允愼)·산음현감 우훈(禹訓)·강릉판관(江陵判官) 강희(姜曦)·나주판관 최수로(崔壽老)가 하직하니, 인견하고 말하기를,

“무릇 수령된 자는 직책이 권농(勸農)에 있다. 누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인 줄 모르겠는가. 절기(節氣)의 이르고 늦음을 살펴서 백성에게 농상(農桑)을 권장하는 것이 너희들의 당무(當務)이다. 또 의창(義倉)의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나누어주는 것도 역시 진휼(賑恤)의 근본이니, 거두어 드릴 때에 침노(侵擄)하고 독려하지 말게 하라. 이제 들으니 하삼도(下三道)는 농사가 좀 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함길도에 입거(入居)하는 것으로 하여혹 소요(騷擾)한 것 같으니, 너희들은 가서 마음을 다하여 곡진(曲盡)히 조치(措處)하여 나의 마음에 합하게 하라.”하였다.

〈원전〉 4집 353면

세종 24년 1442년7월13일(辛未)

강원 영사지방이 수재로 인한 벼의 피해가 심하다고 아뢰다

강원도 관찰사가 치계(馳啓)하기를,

“영서(嶺西)의 각 고을이 수재(水災)로 벼를 많이 손상하였습니다. 특히 인제(麟蹄)·양구(楊口)·낭천(狼川)은 더욱 심합니다.”

하였다.

〈원전〉 4집 420면

세종 24년 1442년10월15일(壬寅)

강원도 영서 각 고을에 진제장을 설치하고 구휼할 것을 건의하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강원도 영서(嶺西)의 각 고을은 모두 실농(失農)하였으니, 오는 계해년 정월부터 시작하여 옛 제도에 따라 진제장(賑濟場)¹⁸⁾을 설치하고 구휼(救恤)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집 441면

세종 27년 1445년2월8일(壬子)

강원도에 봄보리·귀밀 종자를 나누어주어 심게 할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正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원도에 봄보리 종자 6백 60섬과 귀밀 종자 9백 99섬을 민간에 나누어주어서 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집 606면

18) 진제장(賑濟場):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곳

세종 27년 1445년 7월 13일(乙酉)

전제를 고쳐 상정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상신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이제 전제(田制)를 고쳐 상정(詳定)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고사(考査) 연구하여 아래와 같이 기록합니다.

一. 전에는 각 도의 전지(田地)를 경중(京中)의 각사(各司)와 외군자(外軍資)의 위전(位田)에 나누어 붙여 항공(恒貢)의 수량에 충당하였으나, 해마다 결손(缺損)과 실염(實愆)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외군자(外軍資)로 추이(推移)하여 보충하게 되니, 이 때문에 산수(算數)가 심히 복잡하여, 비록 공법(貢法)으로 계산하여도 산수가 역시 복잡합니다. 이제는 주군(州郡)의 역관(驛館)·공아(公衙)·공수(公須) 등 위전(位田) 이외의 경중의 두 창(倉)과 각사(各司)의 위전(位田)을 일체 없애고, 아울러 국용전(國用田)이라 명칭하고는 각각 그 고을에서 경중의 각사(各司)에 바치던 일정한 수량을 계산하여, 민호(民戶)에 나누어 배정하여 수납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 고을 국고(國庫)에 들이게 할 것. 이와 같이 하면 다만 산수가 편리하여 쉬울 뿐만 아니라, 민간의 미곡(米穀)·밀랍(蜜蠟)·포화(布貨)의 어렵고 쉬운 것과 괴롭고 험(歇)한 것이 고르고 공평함을 얻을 것.

一. 전날의 각사(各司) 위전(位田)에서 비친 수량을 상고하여 보면, 정포(正布) 1필에 하전(下田)은 1겨(結) 20복(卜)인데, 전지의 소출로 계산하면 콩은 19두 2승(升), 백미(白米)는 15두에 정미 3두를 병(並)하고, 하수전(下水田)은 1결 12복 5속(束)에 소출이 쌀은 18두, 기름은 1두이고, 하전(下田) 61복에 소출은 콩 9두 7승 6홉, 납(蠟) 1근이고, 하전 1결 21복 9속에 소출이 콩 19두 5승 4작(勺)인데,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아서, 홉(合)·작(勺)까지 계산하였으니 심히 번쇄(煩瑣)하므로, 홉·작의 수는 지금 없앨 것.

一. 전에는 1결에 대하여 정세(定稅)가 3두이고, 각품(各品) 과전(科田)과

외방(外方) 각위(各位)의 사전(私田)은 1결에 2두이었는데, 지금 1결의 극한(極限) 수를 20두로 개정하여, 세(稅)의 쌀·콩은 본세(本稅)의 수에 의하여 계산하여 제(除)하고, 그 1결에 대한 2두는 예전 그대로 할 것.

- 一. 전에는 전품(田品)을 3등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산위, 산허리, 산밑의 밭을 보통 밭에 비하여 배수(倍數)로 계산하였는데, 지금은 3등 밑에 또 3등을 가하였으니, 가령 산 위 밭으로 6등을 삼으면, 전의 10결 55복의 땅이 지금은 1결이 되어, 그 땅이 대단히 넓고, 또 하삼도(下三道)는 비록 산 위의 밭이라도 혹은 배수(倍數)를 쓰지 않아서, 그 법이 한결같지 않으니, 윗 항의 산전(山田)은 지금 배수의 법을 없애고, 그 밭의 복(卜)·결(結) 원수(元數)에 따르고, 그 지품(地品)의 고하에 따라 그 품등(品等)을 나눌 것.
- 一. 지금 공법(貢法)을 시험함에 있어 각역(各驛) 위전의 영축(盈縮)하는 수를 상고하면, 청안현의 시화역(時和驛) 밭은 1백 결인데, 지금 2결 88복이 늘었고, 함안군의 춘곡(春谷)·파수(巴水) 두 역전(驛田)은 본래 1백 60결인데, 지금 5결 46복이 줄어서, 늘고 준 것이 이와 같이 각각 다르니, 늘은 것은 국용전(國用田)에 옮겨 붙이고, 줄은 것은 8도의 지품(地品)을 고쳐 측량한 뒤를 기다려서 마땅히 다시 잇대어 의논하고, 아직 원래 정한 복(卜)·결의 수에 따라 추이(推移)해 준(准)하여 줄 것.
- 一. 향교의 위전(位田)이 제도가 없어,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으니, 지금 밭의 수를 참작하여 개성부(開城府)는 20결, 유수부(留守府)는 15결, 목(牧)·대도호부(大都護府)는 10결, 도호부(都護府)·지관(知官)은 4결, 현관(縣官)은 2결을 절급(折給)할 것.
- 一. 이록 위전(衙祿位田)은 지금 유수부는 60결, 목·대도호부는 55결, 도호부는 50결, 지관·목판관은 45결, 현관은 40결로 정할 것.
- 一. 공수위전(公須位田)은 지금 대·중·소로 나누어 유수부·대도호부·목판의 대로(大路)는 30결, 중로(中路)는 25결, 도호부·지관의 대로(大路)는 25결, 중로(中路)는 15결, 소로(小路)는 10결을 절급(折給)하고, 각 고을 안의 공수전(公須田)은 모두 다 혁파(革罷)하여 없앨 것. 함길도, 평안도를 제외하고 6도의 주(州)·부(府)·군(郡)·현(縣)을 대·중·소로 나

누는데, 전주·청주·충주·공주·상주·황주(黃州)·수원·원평(原平)·회양·선산·양주·천안·여산(礪山)·봉산·용인·죽산(竹山)·진위·금성·금화·함창(咸昌)·문경·개령(開寧)·포천은 대로로 하고, 경주·광주·홍주(洪州)·나주·해주·원주·강릉·안동·진주·남원·평산(平山)·서흥(瑞興)·춘천·창원·김해·밀양·담양·부(古阜)·단양·온양·옥천·순창·무진(茂珍)·재령·합천·청도·영천(榮川)·영천(永川)·울산·양산·함안·금산·대구·괴산(槐山)·영암·영평·과천·금천·음성·진천·신창·예산·전의(全義)·연기·영동(永同) 황간(黃澗)·문의(文義)·해미(海美)·강진·남평·장성·임실·해남·금구(金溝)·창평·태인·정읍·경산(慶山)·동래·의성·기천(基川)·삼가(三嘉)·언양·고령·군위·의흥(義興)·신령(新寧)·진원(珍原)·고양·영산·양지(陽智)·직산(稷山)·연풍(延豐)·은진·이산(尼山)은 중로로 하고, 남양·강화·여흥·이천·순천·연안·삼척·양양·철원·영해·순흥·장흥·풍덕·안산·인천·안성·삭녕·양근·임천·청풍·태안·한산·서천·면천(沔川)·서산(瑞山)·익산·진도·금산·진산·김제·곡산·안악·수안·풍천·배천(白川)·평해·통천·정선·고성(高城)·간성·영월·평창·함양·초계·예천·홍해·청송·곤양(昆陽)·보성·낙안·영광·부평·양천·김포·장단·지평·적성(積城)·연천·천녕(川寧)·교동(喬桐)·임진·교하(交河)·임강(臨江)·마전(麻田)·음죽·양성(陽城)·가평·통진(通津)·홍산(鴻山)·제천·평택·회인(懷仁)·정산(定山)·청양·청안·회덕·진감·부여·석성(石成)·비임(庇仁)·남포·결성·보령·당진·영춘·보은·청산·목천·용담·연산(連山)·임피(臨陂)·만경·능성(綾城)·광양·용안·함열(咸悅)·부안·함평·옥과(玉果)·고산·옥구·흥덕·고창·무장(茂長)·무안·구례·곡성·운봉·장수·진안·무주·동복(同福)·회순·홍양·신은(新恩)·웅진·문화·우봉·장련(長連)·신천·송화(松禾)·장연(長淵)·강령·강음·토산(兔山)·은율·울진·흡곡·이천·평강·흥천·횡성·양구·인제(麟蹄)·안협·영덕·고성(固城)·거제·남해·가창·의령·하양·용궁·봉화·청하(淸河)·칠원(漆原)·진해·하동·인동·진보(眞寶)·지례(知禮)·안음(安陰)·현풍·산음·단성(丹城)·비안(比安)·예안·영일·장기(長鬐)·창녕·사천·기장·대흥·낭천(狼川)·덕산(德山)·아산은 소로로 할 것.

- 一. 원위전(院位田)은 홍무(洪武)¹⁹⁾ 24년 10월에 도평의사(都評議司)의 상정으로 실시하였는데, 대로에는 매 1원(院)에 2결, 중로에는 매 1원에 2결 50복·소로에는 매 1원에 1결이었는데, 그 뒤에 대로·중로·소로를 구분하지 않아서 밭의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으니, 지금 대로의 원에는 1결 50복·중로의 원에는 1결, 소로의 원에는 50복으로 정하고, 모두 원 옆의 가까운 밭으로 절급(折給)하되, 경도(京都)로부터 죽산(竹山)·직산(稷山)·개성부·포천에 가는 것을 대로로 하고, 죽산으로부터 상주(尙州)까지, 진천으로부터 성주(星州)까지, 직산으로부터 여산(礪山)까지, 개성부로부터 중화(中和)까지, 포천으로부터 회양(淮陽)까지, 경도(京都)로부터 광주·도미진(渡迷津)까지를 중로로 하고, 그 나머지 원(院)은 모두 소로로 할 것.
- 一. 한강도(漢江渡)·삼전도(三田渡)·노도(路渡)·양화도(楊花渡)·임진도(臨津渡) 승(丞)의 늑급위전(廩給位田)은 모두 8결 50복인데, 지금 8결을 주고, 진척(津尺)의 위전은 본래 32결인데, 지금 20결을 주고, 노도는 본래 32결 50복인데 지금 15결을 주고, 삼전도는 본래 11결인데 지금 10결을 주고, 양화도는 본래 19결 50복이고, 임진도는 본래 22결이고, 벽란도(碧瀾渡)는 본래 33인데, 위의 3도는 대로로 하여 지금 10결을 주고, 광진(廣津)·낙하(洛河)는 본래 3결이고, 조강(阻江)·금강(錦江)은 본래 12결인데 위의 4도는 중로로 하여 지금 3결을 주고, 그 나머지 진도(津渡)는 소로로 모두 1결을 줄 것.
- 一. 수참(水站)의 수부위전(水夫位田)은 본래 매양 한 사람을 2결이었는데, 지금 육등전(六等田) 법으로 결복(結卜)을 고치면 반드시 감축이 될 것이니, 지금 1결 50복을 줄 것.
- 一. 서울 안의 각사와 외방(外方)의 전세(田稅) 공안(貢案)은 그 도의 밭의 품등(品等)을 다 분간한 뒤에 9등급으로 전세의 많고 적은 것을 다시 고사(考査)를 가하여 적(籍)을 만들고, 이번 가을 등(等)의 전품(田品)의 도행장(導行帳)과 분류장(分類帳) 3질을 즉시 만들어서 그 관(官)과 호조

19) 홍무(洪武): 명(明)나라의 연호로 홍무 24년은 1391년 고려 공양왕 3년이 됨

(戶曹)·감사(監司)에게 나누어 둘 것.

- 一. 전주(全州) 경기전(慶基殿)의 제위전(祭位田)은 8결 99복 6속이고, 그 나머지 여러 도의 진전(眞殿)에는 없는데, 지금 위전을 개혁하고 국고(國庫)에서 공판(供辦)할 것.
- 一. 사직(社稷)과 문선왕(文宣王)의 제위전은 잡사(雜祠)의 예로 위전을 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고, 도 사전(祀典)에 실려있는 악(嶽)·해(海)·독(瀆)·산천(山川)·성황(城隍)의 제위전도 혹은 있고 혹은 없으니, 지금 아울러 혁파하여 모두 국고에서 공판 할 것.
- 一. 경기도 각 관의 인리(人吏)의 위전(位田)이 매양 1결에 대하여 세(稅) 2두를 광흥창(廣興倉)에 납부하고, 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도 각 관의 인리(人吏) 위전은 매양 5결 내에, 2결은 광흥창에 속하고 3결은 구분전(口分田)이 되나, 광흥창에 2결의 세 60두를 납부하면 매년 부족이 되어 구분(口分)으로 보충하니, 위전이 이름은 있으나 실상이 없고, 하물며 다른 군역(軍役)에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도 또 한 모두 위전이 없으니, 지금 모두 혁파하고, 병정(兵正)·창정(倉正)·옥정(獄正)·객사정(客舍正)·국고직(國庫直)·지장(紙匠)의 위전도 또 한 아울러 혁파 할 것.
- 一. 경기도의 수원·양주·진위의 약점위전(藥店位田) 8결 78복 1속은 다른 도에 없는 것이니 아울러 혁파 할 것.
 - 一. 동서요(東西窯)의 와장(瓦匠) 위전 17결은 처음에 망새(鶯頭)²⁰⁾를 전습(傳習)하는 공(功)으로 절급(折給)하고, 그 나머지 와장과 제색(諸色) 장인(匠人)은 모두 위전이 없으니 지금 혁파 할 것.
 - 一. 종묘간(宗廟干)은 처음에 양민으로 시키고 위전 12결을 주었는데 지금 소속 노비가 심히 많아서 그 일에 이바지하고, 도 봉상시(奉常寺) 제단직(祭壇直)의 위전이 9결 43복인데, 지금 단직(壇直)을 도관노(都官奴)로 시키고, 위 향의 위전을 모두 혁파 할 것.
 - 一. 교동(喬桐) 수군(水軍)의 구분전이 4백 28결 52복이고, 강화(江華)수군의

20) 망새(鶯頭): 차례로 쓰이는 기와의 일종으로, 주로 전각(殿閣)이나 문루(門樓)등 큰 건물의 용마루나 지붕골의 끝에 얹는다.

구분전이 3백 50결 25복 8속인데, 처음에 전라도 백성을 옮기어 수군을 삼았기 때문에 밭을 주어 구휼할 것인데, 지금 생업을 편안히 한 지가 이미 오래고, 또 다른 선군(船軍)은 또 한 밭을 주지 않으니 지금 혁파할 것.

- 一. 이에 앞서 각 사 공해전(公廩田)을 모두 다 혁파하고 오직 부마부(駙馬府) 2백 50결, 치사기로스(致仕耆老所) 1백결, 도화원(圖書院) 30결, 충호위(忠扈衛) 1백결, 혜민국(惠民局) 20결, 제생원(濟生院)· 전의감(典醫監) 각 30결, 동활인원(東活人院) 25결, 서활인원 30결, 사역원(司譯院) 80결은 예전과 같은데, 무릇 각 사의 점심(點心)을 모두 일의 긴하고 한만(閑漫)한 것을 구분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부마부와 기로소를 제외한 외에는 위 향 각 사의 공해전(公廩田)을 혁파 할 것
- 一. 영서정간(迎曙亭干)의 위전이 1결인데, 지금 위전을 혁파하고 그 잡역(雜役)을 덜어 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집 624면

세종 28년 1446년1월5일(癸酉)

홍년을 구제할 쌀 · 콩을 요청하니 명하여 주게 하다

강원도 감사가 홍년에 구제할 쌀 · 콩 9만 석(石)을 요청하니, 명하여 1만 9천 6백 석을 주게 하였다.

〈원전〉 4집 649면

세종 28년 1446년7월21일(丁亥)

강원도와 경기도의 일대에 황충이 발생하다

강원도의 춘천과 낭천(狼川) · 양구 · 인제(麟蹄) · 정선 · 평창 · 원주 · 울진 · 경기도

의 양주·양근·지평·가평·포천·연천·마전(麻田)·적성(積城)에 황충(蝗虫)이 발생하였다.

〈원전〉 4집 694면

세종 28년 1446년9월6일(辛未)

강원도에 보리 종자를 제사하였다.

의정부에서 호조(戶曹)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신주(申奏)하기를,
“강원도에 보리 종자 1천 1백 43석을 제사(題辭)²¹⁾를 매겨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집 700면

세종 30년 1448년5월18일(壬寅)

강원도에 메밀 종자를 내리다

강원도 감사가 메밀 종자 4천 5백 60석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5집 69면

21) 제사(題辭): 관부(官府)에서 백성들의 소장(訴狀)이나, 원서(願書)에 대하여 적절한 처리를 내리는 판결이나 지령(指令)

문종편

문종 원년 1450년9월19일(庚申)

의정부에서 염초를 구워내도록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에서 염초(焰硝)²²⁾를 구워내는 방법은 이보다 먼저 각 도에서 도회(都會)를 두고 일정한 장소로 정하였으니, 다만 도회(都會)의 읍(邑)만 해마다 폐해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된 군현(郡縣)이 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무릇 염초에 소용되는 흙과 준비해 두었다가 쓰는 잡물을 수송 운반하는 즈음에는 온 경내(境內)가 소요(騷擾)하여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다단(多端)하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각기 그 부근 지방에 도회를 나누어 두고는, 해마다 봄·가을에 1도의 1도회에서 염초(焰硝)를 구워내게 하고, 한 차례 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번갈아가면서 휴식하도록 하소서.

경기도는 양천·김포·통진·강화·교동(喬桐)은 배로 실어 나르기가 편이(便易)하고, 과천·금천·인천·고양·부평·안산은 길이 멀지 않으니 모두 사포국(司豹局)²³⁾에 흙을 운반하게 하고, 수원부(水原府)를 1도회(都會)로

22) 염초(焰硝): 박토를 개어 만든 약. 초석(硝石)·화약(火藥)

23) 사포국(司豹局): 세종 27년(1445)에 궁내 내사복사(內司僕司) 남쪽 편에 비밀리에 설치하였던 염초(焰硝) 굽던 곳

삼아서 남양·진위·양성·죽산·용인·양지·음죽을 이에 소속시키고, 광주를 1도회로 삼아서 여흥·양근·가평·천녕(川寧)·지평·이천을 이에 소속시키고, 양주부(楊州府)를 1도회로 삼아서 포천·영평·연천·삭녕·임강과 강원도의 철원을 이에 소속시키고, 원평부(原平府)를 1도회로 삼아서 교하·임진·장단·적성·마전을 이에 소속시키고, 개성부(開城府)는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 의거하여 해마다 염초를 구워 내게 하고, 부근에 있는 풍덕군을 이에 소속시키소서.

강원도에서는 삼척부를 1도회로 삼아서 울진·평해·강릉을 이에 소속시키고, 양양부를 1도회로 삼아서 간성·고성·통천·흡곡을 이에 소속시키고, 원주 임내(任內)의 주천현(酒泉縣)을 1도회로 삼아서 정선·평창·영월·원주·횡성·홍천을 이에 소속시키고, 춘천부를 1도회로 삼아서 양구·남천·인제(麟蹄)·회양·금성·평강·금화를 이에 소속시키소서.

충청도에서는 공주를 1도회로 삼아서 이산·은진·진잠(鎭岑)·연산·부여·석성·임천·서천·한산·홍산·청양·비인(庇仁)을 이에 소속시키고, 충주를 1도회로 삼아서 괴산·연풍·음성·영춘·단양·진천·제천·청풍을 이에 소속시키고, 청주를 1도회로 삼아서 문의·회덕·청안·연기·전의·목천·옥천·영동·황간·청산·회인·보은·직산·천안을 이에 소속시키고, 남포현(藍浦縣)을 1도회로 삼아서 보령·태안·면천·서산·당진·덕산·평택·온양·아산·정산·대흥·결성·해미(海美)·신창·예산·홍주를 이에 소속시키소서.

전라도에서는 고산현(高山縣)을 1도회로 삼아서 전주·금산·진산·무주·용담·진안·여산·부안·금구·옥구·임피·함열·용안·익산·정읍·홍덕·고부·김제·태인·만경을 이에 소속시키고, 무진군(茂珍郡)을 1도회로 삼아서 남평·영암·무안·함평·장성·고창·영광·무장·담양·창평·진원·회순·나주를 이에 소속시키고, 남원부를 1도회로 삼아서 순창·임실, 운봉·구례·곡성·옥과·동복·장수를 이에 소속시키고, 장흥부를 1도회로 삼아서 능성·강진·해남·진도·광양·낙안·보성·순천·홍양을 이에 소속시키소서.

경상도에서는 경주 임내(任內)의 자인현(慈仁縣)을 1도회로 삼아서 영일·

홍해·영천·하양·결산·신녕·의흥·양산·기장·동래·울산·장기·연양·영산·밀양·청하·경주를 이에 소속시키고, 안동부를 1도회로 삼아서 봉화·예안·영천·순흥·풍기·용궁·비안·의성·예천·군위·영해·영덕·진보·청송을 이에 소속시키고, 성주를 1도회로 삼아서 무경·한창·선산·개령·금산·인동·상주·현풍·거창·고령·함천·초계·지례·대구·창령·청도를 이에 소속시키고, 진주를 1도회로 삼아서 함양·하동·단성·안음·남해·산음·삼가·곤양·거제·고성(固城)·사천·창원·칠원·김해·함안·의령·진해로서 이에 소속시키소서.

황해도에서는 평산부(平山府)를 1도회로 삼아서 토산(兔山)·우봉·강음·백천(白川)과 강원도의 이천·안협 등의 고을을 이에 소속시키고, 서흥부(瑞興府)를 1도회로 삼아서 곡산·수안·신계·봉산·황주를 이에 소속시키고, 해주를 1도회로 삼아서 재령·연안·강령·웅진·장연·송화·신천을 이에 소속시키고, 안악군(安岳郡)을 1도회로 삼아서 풍천·은율·문화·장련 등의 고을을 이에 소속시키고는 도회의 고을로 하여금 큰 가마(大釜)·큰 구유통(大槽)·나무통(木桶)·바가지(瓢)·체(篩) 등을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염초(焰硝)를 굽는데 쓰도록 하고, 만약 일찍이 준비하지 않고서 시기에 임하여 백성의 그릇을 빼앗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또 흙은 가져올 적엔 공해(公廩)와 사사(寺社)·원관(院館)을 제외하고는 민호(民戶)에게서 흙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며, 그 소목(燒木)²⁴⁾은 시기에 임하여 나누어 정하여 갑자기 준비하여 운반해 바치게 하면 백성에게 끼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지금부터는 군기감에서 미리 병조(兵曹)에 보고하고는 차례에 당한 도회에 공문을 보내어 농한기에 소속된 각 고을로 하여금 수량에 의하여 운반해 바치도록 하고, 만약 도회소의 수량이 미리 먼저 조치하지 못하여도 또 한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또 취토장(取土匠)이 선물(膳物)을 받고자 공무(公務)를 핑계하고서 백성을 침해하여 다단(多端)한 폐해를 끼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백성들도 또 한 흙을 운반하는 일을 꺼려서 염초에 소용되는 흙을 던져버리고는 도회소에 와서 쓸모가

24) 소목(燒木): 대궐에서 연료로 쓰던 참나무 장작

없는 잡토(雜土)를 가지고 속여서 바치려고 피하는 사람이 자못 많으니, 청컨대 각 고을에서 일찍이 높은 직임(職任)을 지낸 강직하고 명민한 품관(品官)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친히 취토(取土)를 감독하여 봉함(封緘)해서 도회소로 압송하도록 하고, 그 작폐(作弊)한 장인(匠人)과 능히 고찰하지 못한 품관(品官)도 또 한 모두 죄주게 하소서. 역사(役事)의 기한은 봄에는 정월 15일부터 시작하여 3월 회일(晦日)에 마치도록 하고, 가을에는 8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월 회일(晦日)에 마치도록 하며, 염초의 많고 적은 것은 각도에서 구운 것과 이보다 먼저 구운 수량을 비교 징험(徵驗)하여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은 품계(品階)를 올려 권장 격려해 주고, 가장 적은 사람은 핵문(劾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6집 285면

문종 1년 1451년 11월 28일(壬戌)

강원도 내 각 읍성을 수축하도록 하다

강원도 감사가 아뢰기를,

“이전에 병조에서 관문(關文)을 보내기를, ‘각 고을의 읍성(邑城)은 정통(正統) 4년의 수교(受敎)에 의해, 해의 풍년과 흉년을 보아 임시에 아울러 조축(造築)하는 일을 이미 일찍이 행문(行文) 이첩하였는데, 금년은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었으므로 통천 읍성의 둘레 3천 7백 45척을 본 군과 철원·김화·평강·금성·낭천(狼川)의 군인 1천 9백 82명으로써 역사(役事)하게 하고, 흡곡 읍성 둘레 3천 3백 30척은 본 현과 회양·안협·이천의 군인 1천 6백 29명으로써 역사하게 하며, 양양읍성 둘레 2천 7백 24척은 본 부와 원주의 군인 1천 4백 75명으로써 역사하게 하고, 강릉 읍성 둘레 3천 7백 20척은 본부와 평창·영월·정선의 군인 1천 5백 56명으로써 역사하게 하며, 평해 읍성 둘레 2천 2백 29척은 본 군과 울진·삼척의 군인 8백 99명으로써 역사하게 하고, 간성 읍성 둘레 2천 7백 9척은 본 군과 홍천·횡성의 군인 1천 14명으로써 역사하게

하며, 고성 읍성 둘레 2천 2백 13척은 본 군과 춘천·양구·인제(麟蹄)의 군인 1천 5백 91명으로써 역사하게 하되, 모두 20일로 한정하여 쌓게 하고, 높이는 혹은 10여 척, 혹은 7. 8척, 혹은 5. 6척으로 하소서.”

하였다.

〈원전〉 6집 458면

단종편

단종 원년 1452년5월27일(己未)

재목을 운반하다 죽은 선군에게 복호해 줄 것과 황해도의 진휼을 청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원도 인제현(麟蹄縣) 선군(船軍) 이계(李桂)가 재목을 운반하다가 벼락을 맞아 죽었으니, 청컨대 예에 의하여 부의(賻儀)를 주고 복호(復戶)하여 주소서.”

하고, 또 호조(戶曹)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가 해를 연속하여 실농(失農)하였는데 지금 농사 때를 당하여 백성이 모두 먹을 것이 없으니, 청컨대 여러 고을의 군자(軍資)와 목은 간장을 나누어 진휼(賑恤)하고, 오는 가을에 황두(黃豆)로 수납하게 하소서.”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단종 1년 1453년6월9일(甲午)

도회소에서 만드는 군기의 일정액수를 정하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正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등 여러 도의 도회소에서 만드는 군기(軍器)가 일정한 액수가 없어서 감련관(監鍊官)의 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므로 혹은 지나치게 많아서 폐단이 백성들에게 미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매 1년에 경상도 좌도는 내상 도회소에서 밀양·울산·청도·연양·장기·영산 등 6개 고을이 함께 갑(甲) 4부, 주(胄) 4정, 각궁(角弓) 20장, 장편전(長片箭)·궁대(弓俵)·나도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이고, 우도는 내상 도회소에서 김해·창원·함안·의령·칠원·진해 등 6개 고을이 갑(甲) 5부, 주(胄) 5정, 각궁(角弓) 2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25부요, 경주 도회소에서 본 부와 영천·홍해·경산·신녕·의흥·영일·하양 등 8개 고을이 갑(甲) 6부, 주(胄) 6정, 각궁 30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30부요, 상주 도회에서 본 주와 선산·금산, 개령·문경·함창·인동 등 7개 고을이 갑(甲) 4부, 주(胄) 4정, 각궁(角弓) 20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20부요, 성주 도회소에서 본 주와 대구·합천·초계·창녕·현풍·거창·고령·지례 등 9개 고을이 갑(甲) 5부, 주(胄) 5정, 각궁(각궁) 2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25부요, 영해 도회소에서 본 부와 영덕·청송·진보·등 4개 고을이 갑(갑) 3부, 주(胄) 3정, 각궁(角弓) 1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5부요, 동래 도회소에서 본 현과 양산·기장 등 3개 고을이 갑(甲) 2부, 주(胄) 2정, 각궁(角弓) 10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0부요, 안동 도회소에서 본 부와 순흥·영천·예천·용궁·의성·군위·비안·풍기·예안·봉화 등 11개 고을이 갑(甲) 5부, 주(胄) 5정, 각궁(角弓) 2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25부요, 진주 도회소에서 본 주와 함양·삼가·남해·하동·안음·산음·단성 등 8개 고을이 갑(甲) 5부, 주(胄) 5정, 각궁(角弓) 2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25부요, 사천 도회소에서 본 현과 고성·곤양·거제·등 4개 고을이 갑(甲) 2부, 주(胄) 2정, 각궁(角弓) 10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0부입니다.

충청도는 충주 도회소에서 본 주와 진천·단양·청풍·괴산·제천·영춘·음성·연풍 등 9개 고을이 갑(甲) 4부, 주(胄) 4정, 각궁(角弓) 20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20부요, 옥천 도회소에서 본 군과 청주·보은·문의·

영동·회덕·전의·목천·청안·연기·황간·청산·회인 등 13개 고을이 갑(甲) 4부, 주(胄) 4정, 각궁(角弓) 20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20부요, 공주 도회소에서 본 주와 임천·은진·부여·연산·석성·이산·진잠 등 8개 고을이 갑(甲) 3부, 주(胄) 3정, 각궁(角弓) 1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5부요, 태안 도회소에서 본 군과 서산·면천·당진 등 4개 고을이 갑(甲) 2부, 주(胄) 2정, 각궁(角弓) 10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0부요, 내상 도회소에서 홍주·덕산·이산·해미·대홍·정산·신창·평택·결성·예산·온양·직산·천안 등 13개 고을이 갑(甲) 5부, 주(胄) 5정, 각궁(角弓) 2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25부입니다.

전라도는 전주 도회소에서 본 주와 금산·여산·고산·진산·무주·용담·진안·장수 등 9개 고을이 갑(甲) 5부, 주(胄) 5정, 각궁(角弓) 2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25부요, 남원 도회소에서 본 부와 광주·담양·순창·임실·곡성·구례·창평·동복·회순·진원·운봉·옥과 등 13개 고을이 갑(甲) 5부, 주(胄) 5정, 각궁(角弓) 2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25부요, 나주 도회소에서 본 주와 영암·무안·함평·남평·장성 등 6개 고을이 갑(甲) 4부, 주(胄) 4정, 각궁(角弓) 20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20부요, 순천 도회소에서 본 부와 낙안·보성·홍양·광양 등 5개 고을이 갑(甲) 3부, 주(胄) 3정, 각궁(角弓) 1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5부요, 옥구 도회소에서 본 현과 익산·임피·함열·금구·용안 등 6개 고을이 갑(甲) 2부, 주(胄) 2정, 각궁(角弓) 10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0부요, 부안 도회소에서 본 현과 김제·고부·태인·정읍·만경 등 6개 고을이 갑(甲) 2부, 주(胄) 2정, 각궁(角弓) 10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0부요, 무장 도회소에서 본 현과 영광·고창·홍덕·등 4개 고을이 갑(甲) 2부, 주(胄) 2정, 각궁(角弓) 10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0부요, 내상 도회소에서 장흥·강진·능성·해남·진도 등 5개 고을이 갑(甲) 3부, 주(胄) 3정, 각궁(角弓) 1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5부입니다.

강원도는 원주 도회소에서 본 주와 평창·횡성·홍천·영월 등 5개 고을이 갑(甲) 3부, 주(胄) 3정, 각궁(角弓) 1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5부요, 강릉 도회소에서 본 부와 양양·정선 등 3개 고을이 갑(甲) 3부, 주

(靑) 3정, 각궁(角弓) 1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5부요·삼척 도회소에서 본 부와 평해·울진 등 3개 고을이 갑(甲) 2부, 주(靑) 2정, 각궁(角弓) 10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0부요, 간성 도회소에서 본 군과 고성(高城)·통천·흡곡·인제(麟蹄)·양구·회양 등 7개 고을이 갑(甲) 4부, 주(靑) 4정, 각궁(角弓) 20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20부요, 춘천 도회소에서 본 부와 김화 금성·낭천·이천·평강·안협·철원 등 8개 고을이 갑(甲) 3부, 주(靑) 3정, 각궁(角弓) 15장, 장편전·궁대·나도통아 각각 15부입니다.

이로써 상액(常額)을 정하니, 관찰사로 하여금 군기감에서 상정한 식례(式例)를 상고하여 여러 고을과 도회소에 나누어 정하고, 법에 의하여 제조(製造)하게 하소서. 만약 견고하고 치밀하게 만들지 않은 것이 있으면 공장(工匠)과 해당 관리·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수령·감독관을 아울러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6집 597면

단종 1년 1453년7월4일(己未)

기우제를 지내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正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번 7월 초 3일에 북교(北郊)에서 기우(祈雨)하였으나, 아직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청컨대 다시 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과 한강·삼각(三角)·목멱(木覓)의 우사단(霽祀壇)에서 빌게 하소서. 또 들컨대, 경기·충청·강원·황해·전라도가 모두 가문다 하니, 청컨대 아울러 향(香)과 축문을 내려서 관찰사의 수령관 및 소재지의 관원으로 하여금 악(岳)·해(海)·독(瀆)과 명산대천에 빌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6집 604면

단종 2년 1454년2월9일(庚寅)

강원도가 실농하니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보충군 노여등을 놓아보내서 흉년에 대비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정문(正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강원도 제읍(諸邑)이 실농(失農)하여 백성들이 많이 먹을 것이 떨어졌사오
니, 이전(吏典) 제원(諸員)과 재랑(齋郎)·조례(阜隸)·장수(杖首)·소유(所
由)·갈도(喝道)·악공(樂工)·보충군(補充軍) 및 선상노자(選上奴子) 등 일
체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 이외에는
병인년의 예에 의하여 이른 곡식이 성숙할 때까지 한하여 놓아 보내어 흉년
에 대비하고, 제읍(諸邑)의 선군(船軍)을 모두 3번(番)으로 나누어서 교대하
여 방수(防戍)²⁵케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6집 670면

25) 방수(防戍): 물가에 살면서 국경을 지킴

세조편

세조 1년 1455년9월11일(癸未)

거진을 설치하고 인근 고을을 익에 분속 시킬 것을 청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각도(各道) 연해(沿海)의 요해지(要害地)에는 진(鎭)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현(州縣)에는 아직 진(鎭)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구적(寇賊)이 발생하여 변진(邊鎭)이 감히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마구 들어와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밟는 것처럼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내지(內地)에도 적당히 요량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근방의 여러 고을을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에 분속(分屬)시키도록 하소서. 그 익(翼)을 나눌 여러 고을과 절목(節目)은 뒤에 갖추어 기록하였습니다.

- 一. 경기의 광주도(廣州道)는 그 중익을 광주·이천·양근·양지로 하고, 좌익은 여흥·천녕·지평·음죽(陰竹)으로 하고, 우익은 안성·진위·양성·용인·죽산으로 합니다. 다음 양주도(楊州道)는 그 중익을 양주·원평·포천·적성·가평으로 하고, 좌익은 삭녕·마전·영평·연천으로 하고, 우익은 풍덕·장단·임진·임강으로 합니다. 부평도는 그 중익을 부평·인천·양천·금천·고양으로 하고, 좌익은 수원·남양·안산·과천으로 하며, 우

익은 김포·교하·통진독진(通津獨鎭)·교동·강화·개성부로 합니다.

충청도의 충주도는 그 중익을 충주·청풍·연풍으로 하고, 좌익은 단양·영춘·제천으로 하며, 우익은 괴산·음성으로 합니다. 다음 청주도는 그 중익을 청주·진천·문의·연기·회인·보은·청안으로 하고, 좌익은 옥천·황간·영동·청산으로 하며, 우익은 천안·온양·전의·평택·아산·목천·직산으로 합니다. 다음 홍주도(洪州道)는 그 중익을 홍주·청양·대흥으로 하고, 좌익은 신창·예산으로 하며, 우익은 면천·덕산으로 합니다. 다음 공주도는 그 중익을 공주·정산·니산(尼山)으로 하고, 좌익은 회덕·진잠·연산(連山)으로 하며, 우익은 부여·석성·은진(恩津)으로 합니다. 태안진(泰安津)은 그 중익을 태안으로 하고, 좌익은 서산·해미(海美)로 하며, 우익은 당진(唐津)으로 합니다. 남포진(藍浦津)은 그 중익을 남포·비인·홍산(鴻山)으로 하고, 좌익은 한산·서천·임천으로 하며, 우익은 보령·결성(結城)으로 합니다.

황해도의 황주도(黃州道)는 그 중익을 황주로 하고, 좌익은 봉산으로 하며 우익은 안악·장연으로 합니다. 해주도는 그 중익을 해주·재령으로 하고, 좌익은 연안(延安)으로 하며, 우익은 문화·신천·은율·송화로 합니다. 평산도(平山道)는 그 중익을 평산·베천(白川)으로 하고, 좌익은 우봉·토산으로 하며, 우익은 강음(江陰)으로 합니다. 수안도(遂安道)는 그 중익을 수안으로 하고, 좌익은 곡산·신계로 하며, 우익은 서흥독진(瑞興獨鎭)·풍천·장연·웅진·강령으로 합니다.

강원도의 강릉도는 그 중익을 강릉으로 하고, 좌익은 양양으로 하며, 우익은 삼척·평해·울진으로 합니다. 원주도는 그 중익을 원주·횡성으로 하고, 좌익은 영월·평창·정선으로 하며, 우익은 춘천·양구·홍천·인제(麟蹄)·낭천으로 합니다. 철원도는 그 중익을 철원·안협으로 하고, 좌익은 이천으로 하며, 우익은 평강으로 합니다. 회양도는 그 중익을 회양으로 하고, 좌익은 금화로 하며, 우익은 금성으로 합니다. 고성도는 그 중익을 고성(高城)으로 하고, 좌익은 통천·흡곡으로 하며, 우익은 간성으로 합니다.

경상도의 경주도는 그 중익을 경주·영천으로 하고, 좌익은 양산·언양으로 하며, 우익은 밀양으로 합니다. 상주도는 그 중익을 상주·개령으

로 하고, 좌익은 선산·김산으로 하며, 우익은 문경·함창으로 합니다. 성주도는 그 중익을 성주·고령으로 하고, 좌익은 합천·초계로 하며, 우익은 거창·지례·안음으로 합니다. 진주도는 그 중익을 진주·단성·삼가로 하고, 좌익은 의령으로 하며, 우익은 함양·산음(山陰)으로 합니다. 안동도는 그 중익을 안동·의성·의흥·진보·예안·청송·용궁·비안(比安)으로 하고, 좌익은 봉화로 하며, 우익은 순흥·예천·풍기·영천으로 합니다. 대구도는 그 중익을 대구·하양·경산으로 하고, 좌익은 청도·영산·창녕·현풍으로 하며, 우익은 인동·군위·신녕으로 합니다. 영해진(寧海鎭)은 그 중익을 영해로 하고, 좌익은 청하로 하며, 우익은 영덕으로 합니다. 영일진(迎日鎭)은 그 중익을 영일로 하고, 좌익은 장기로 하며, 우익은 흥해로 합니다. 동래진(東萊鎭)은 그 중익을 동래로 하고, 좌익은 기장으로 하며, 우익은 울산으로 합니다. 웅천진(熊川鎭)은 그 중익을 웅천으로 하고, 좌익은 김해로 하며, 우익은 창원·함안·칠원(漆原)으로 합니다. 사천진(泗川鎭)은 그 중익을 사천으로 하고, 좌익은 고성(固城)·진해로 하며, 우익은 곤양·하동독진(河東獨鎭)·거제·남해로 합니다.

전라도의 전주도는 그 중익을 전주·여산·익산·금구로 하고, 좌익은 금산·진산·무주·용담·고산으로 하며, 우익은 김제·만경·태인·정읍으로 합니다. 남원도는 그 중익을 남원·임실·구례·곡성으로 하고, 좌익은 진안·운봉·장수로 하며, 우익은 순창·옥과·동복으로 합니다. 순천진(順川鎭)은 그 중익을 순천으로 하고, 좌익은 평양으로 하며, 우익은 낙안(樂安)으로 합니다. 나주도는 그 중익을 나주·광주·남평·능성·영암으로 하고, 좌익은 담양·창평·회순·진원으로 하고, 우익은 고창·장성으로 합니다. 흥양진(興陽鎭)은 그 중익을 흥양으로 하고, 좌익은 보성으로 하며, 우익은 장흥·해남·강진으로 합니다. 옥구진(沃溝鎭)은 그 중익을 옥구로 하고, 좌익은 함열·용안을 하며, 우익은 임피(臨庇)로 합니다. 부안진(扶安鎭)은 그 중익을 부안으로 하고, 좌익은 고부로 하며, 우익은 흥덕으로 합니다. 무장진(茂長鎭)은 그 중익을 무장으로 하고, 좌익은 무안으로 하며, 우익은 영광·함평독진(咸平獨鎭)·진도로 합니다. 제주도는 그 중익을 제주로 하고, 좌익은 정의(旌義)로 하며, 우익은 대정(大靜)으로 합니다.

함길도의 함흥도는 그 중익을 함흥으로 하고, 좌익은 북청·홍원으로 하며, 우익은 정평(定平)으로 합니다. 영흥도는 그 중익을 영흥·고원으로 하고, 좌익은 예원·용진으로 하며, 우익은 안변·덕원·문천으로 합니다. 길주도는 그 중익을 길주로 하고, 좌익은 이성(利城)으로 하며, 우익은 단천으로 합니다. 경원도(慶原道)는 그 중익을 경원으로 하고, 좌익은 은성·경흥으로 하며, 우익은 회령·부령·종성독진(鍾城獨鎭)·경성·갑산으로 합니다.

평안도의 평양도는 그 중익을 평양·삼등(三登)·순안으로 하고, 좌익은 중화·상원으로 하며, 우익은 강서·용강·삼화·함중·증산(甌山)으로 합니다. 안주도(安州道)는 그 중익을 안주·숙천·영유로 하고, 좌익은 자산(慈山)으로 하며, 우익은 정주로 합니다. 영변도는 그 중익을 영변·가산(嘉山)으로 하고, 좌익은 회천·운산으로 하며, 우익은 태천·박천으로 합니다. 개천도(价川道)는 그 중익을 개천·성천으로 하고, 좌익은 덕천·맹산·양덕으로 하며, 우익은 순천·은산으로 합니다. 의주도는 그 중익을 의주·인산(麟山)으로 하고, 좌익은 정녕(定寧)·철산·용천으로 하며, 우익은 곡산·수천·선천으로 합니다. 삭주도는 그 중익을 삭주·귀성(龜城)으로 하고, 좌익은 벽동(碧潼)으로 하며, 우익은 창성(昌城)으로 합니다. 강계도는 그 중익을 강계로 하고, 좌익은 자성(慈城)으로 하며, 우익은 위원(渭原)·이산(理山)으로 합니다.

一. 중익 수령의 직함은 모도모진중익병마절제사(某道某鎭中翼兵馬節制使)라 일컫고, 당상관(堂上官)이 아니면 첨절제사(僉節制使)라고 일컬으며, 그 나머지의 좌·우익 수령의 직함은 모도모진모익병마단련사(某道某鎭某翼兵馬團練使)·부사(副使)·판관(判官)이라고 일컫습니다.

一.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총통위(銃筒衛)·근장(近仗)·섭육십(攝六十)·방패·별군(別軍)의 시위(侍衛)와 제영(諸營)·제진(諸鎭)·제포(諸浦)의 군사와 사옹원(司饔院)·사복시(司僕寺)·충호위(忠扈衛)·상의원(尙衣院) 등의 제원(諸員)과 응사(鷹師)는 모두 익(翼)에 속하여 당번이면 번(番)을 서며, 속산(屬散)된 사람과 이미 초모(招募)한 여러 고을의 효용향리(驍勇鄕吏)와 수성군(守城軍)·잡색군(雜色軍)도 역시 익

에 속하게 하고, 긴급한 사변(事變)을 제외하고는 사옹(司糴)이하의 군사는 습진(習陣)을 면제합니다.

- 一. 도성위(都城衛)에는 시골에 있는 자가 거의 반이나 되니, 갑사(甲士)의 예에 의하여 번상(番上)하고, 춘추로 행하는 의갑(衣甲)의 점열(點閱)도 역시 구례(舊例)에 의하여 서울에 올라와 점검을 받습니다.
- 一. 제색군사(諸色軍士)의 번상(番上)은 중익 절제사(節制使)가 점열하여도 절제사에게 보고하면, 도절제사는 다시 점열하지 말고, 이를 병조(兵曹)에 이첩합니다.
- 一. 익속군사(翼屬軍士)의 군안(軍案)은 3건을 성적(成績)하여 1건은 중익 절제사가 보관하고, 1건은 도절제사, 1건은 병조에서 보관합니다.
- 一. 제과(諸科)의 이업(肄業)을 제외하고, 성중관(成衆官)으로 들어가려는 자 및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총통위(銃筒衛)·근장(近仗)·방패·섭육십(攝六十)·사옹원(司糴院)·사복시(司僕寺)·충호위(忠扈衛)·상의원(上衣院) 등의 제원(諸員)과 봉상시 재랑(奉常寺 齋郎)·악생(樂生)·무공(舞工)과 여러 관사의 이전(吏典)·조례(皂隸)는 익금부의 나장(螺匠)·백호(百戶)·도부(都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익(翼)에 속하게 하고, 으레 취재(取才)할 만한 자는 모두 중익 절제사로 하여금 이를 관장케 하여, 입격한 자는 도절제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조에 이첩하여 다시 시험하여 서용(敍用)하게 합니다. 그 총통위·방패·섭육십·사옹원·사복시·충호위·상의원 등의 제원으로 들어간 자는 중익절제사의 문첩을 받아서 이를 이조(吏曹)에 바칩니다.
- 一. 무릇 취재하여 입격(入格)하였으나 빈자리가 없어 아직 서용(敍用)하지 않은 자와 일단 거관(去官)되어 산관(散官)에 귀속된 자는, 모두 그 고을의 익(翼)에 예속케 하였다가 빈자리를 기다려서 서용하게 합니다.
- 一. 매년 2월18일과 10월 18일에 중익을 모아 습진(習陣)하며, 겸하여서 의갑(衣甲)을 점열(點閱)하고, 11월 22일과 정월 22일에는 각각 그 익에서 수관(首官)이 되어 습진합니다.
- 一. 양계(兩界)·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은 그 수비와 방어가 가장 긴급(緊

重)하므로 군사들이 가볍게 본 읍을 이탈하지 못하며, 중익장은 각기 그 중익에서 습진할 때 친히 여러 고을로 가서 습진하고, 겸하여서 의갑(衣甲)을 점열하며, 좌·우익이 습진할 때에도 좌·우익장이 역시 각각 친히 그 고을로 가서 습진합니다.

- 一. 무릇 모든 호령(號令)은 중익 병마절제사가 도절제사의 호령을 듣고, 모든 익은 중익병마절제사의 호령을 듣되, 만약 연해의 여러 진(鎭)에 사변(事變)이 있을 경우, 그 익에 군병을 징집하며, 또 도절제사에게 보고하여 시기에 맞추어 사변에 대응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7집 86면

세조 3년 1457년10월20일(庚戌)

각도의 중·좌·우익을 혁파하고 거진을 설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지(傳旨)를 받들어 제도(諸道)의 중익·좌익·우익을 혁파하고, 양탁(量度)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소속된 바의 모든 고을을 마감하여 계문(啓聞)합니다.

평안도 평양진(平壤鎭)에는 중화(中和)·상원(祥原)·순안·삼등(三登)·성천·양덕·자산(慈山)을 속하게 하고, 용강진(龍岡鎭)에는 삼화(三和)·함중·중산(甌山)·강서를 속하게 하며, 안주진(安州鎭)에는 영유(永柔)·숙천(肅川)·순천을 속하게 하며, 정주진(定州鎭)에는 수천(隨川)·가산을 속하게 하고, 구성진(龜城鎭)에는 선천·곽산·태천·운산을 속하게 하며, 의주진(義州鎭)에는 철산·용천을 속하게 하고, 삭주진(朔州鎭)에는 창성·벽동을 속하게 하며, 영변진(寧邊鎭)에는 박천·개천·덕천·은산·맹산·회천을 속하게 하고, 강계진(江界鎭)에는 이산·위원(渭原)·자성(慈城)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함길도의 안변진(安邊鎭)에는 덕천·문천을, 영흥진(永興鎭)에는 용진·고원·예원을, 함흥진(咸興鎭)에는 정평·흥원·북청을, 길주진(吉州鎭)에는 이성(利城)·단천을, 경성진(結城鎭)에는 부령독진(富寧獨鎭)과 갑산·회령·중성·경원·경흥·은정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경상도의 안동진(安東鎭)에는 풍기·영천·봉화·의성·예안·진조·청송·군위·비안을, 경주진(慶州鎭)에는 영해·영덕·청하·홍해·영일·장기·영천·밀양을, 울산진(蔚山鎭)에는 기장·동래·양산·언양을, 창원진(昌原鎭)에는 김해·고성·웅천·칠원·함안·진해·거제를, 대구진(大邱鎭)에는 영산·창녕·현풍·인동·의흥·신녕·하양·경산·청도를, 진주진(晉州鎭)에는 사천·곤양·하동·남해·단성·산음·의령·함양·삼가·안음을, 성주진(星州鎭)에는 초계·합천·거창·고령·지례를, 상주진(尙州鎭)에는 선산·개령·금산·함창·용궁·문경·예천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전라도 나주진(羅州鎭)에는 무장·고창·영광·함평·무안·영암·남평을, 장흥진(長興鎭)에는 보성·강진·해남·진도를, 광주진(光州鎭)에는 담양·장성·진원·창평·화순·동북·능성을, 남원진(南原鎭)에는 임실·장수·순창·운봉·옥과·곡성·구례를, 부안진(扶安鎭)에는 임피·옥구·만경·김제·고부·정읍·홍덕을, 순천진(順川鎭)에는 낙안·홍양·광양을, 전주진(全州鎭)에는 야산·용안·함열·익산·고산·금산·무주·용담·진안·금구·태인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충청도의 공주진(公州鎭)에는 연기·회덕·진잠·연산·은진·이산·석성·임천·한산·부여·정산을, 홍주진(洪州鎭)에는 서천·비인·남포·홍산·보령·청양·대흥·더산·결성을, 태안진(泰安鎭)에는 서산·해미(海美)·당진·면천을, 천안진(天安鎭)에는 직산·평택·아산·온양·신창·예산·목천·전의를, 청주진(淸州鎭)에는 진천·문의·회인·보은·청산·황간·영동·옥천·청안을, 충주진(忠州鎭)에는 영춘·제천·단양·청풍·음성·괴산·영풍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경기의 수원진(水原鎭)에는 부평·인천·금천·안산·남양·진위·안성·양성을, 광주진(廣州鎭)에는 양근·지평·천녕·여흥·음죽·죽산·이천·양지·용인을, 양주진(楊州鎭)에는 영천·마전·적성·원평·교하·고양·수평·포

천·가평을, 강화진(江華鎭)에는 김포·양천·통진·교동을, 개성진(開城鎭)에는 삭녕·임진·풍덕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황해도의 해주진(海州鎭)에는 강음·백천(白川)·연안·강령·용진·장연·풍천·송화·은을을, 황주진(黃州鎭)에는 서흥·평산·봉산·채령·신천·안악·문화·장련을, 수안진(遂安鎭)에는 곡산·토산·신계·우봉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강원도의 강릉진(江陵鎭)에는 양양·정선을, 삼척진(三陟鎭)에는 울진·평해를, 간성진(杆城鎭)에는 고성·통천·흡곡을, 회양진(淮陽鎭)에는 김성·평강·이천·철원·김화·안협을, 춘천진(春川鎭)에는 낭천·양구·인제(麟蹄)·홍천을 속하게 하며, 원주진(原州鎭)에는 평창·영월·횡성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7집 230면

세조 6년 1460년3월19일(丙申)

군자창의 쌀로 강원도의 기민을 진휼하게 하다

호조(戶曹)에 명하여 군자창(軍資倉)의 쌀 1천 석(石)을 가지고 강원도의 기민(飢民)을 진휼(賑恤)하게 하였다.

〈원전〉 7집 382면

세조 6년 1460년11월9일(辛巳)

하삼도인의 이사에 대해 전지하다

병조(兵曹)에 전지(傳旨)하기를,

“하삼도(下三道) 여러 고을의 인호(人戶)내에서 취재(取才)에 입격(入格)한

경군사(京軍士) 외에 제색군사(諸色軍士) 및 양민(良民) 향호(鄉戶)중에 부실한 자를 경상도에서 2천 5백 호(戶), 전라도에서 1천 5백 호, 충청도에서 5백 호를 뽑아 정하여 평안도·황해도·강원도(江原道)의 한광(閑曠)한 땅에 옮겨 살게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지금 평안도·황해도·강원도에 억지로 이사하게 하는 하삼도 여러 고을의 인호(人戶)와 평안도·황해도·강원도·함길도 여러 고을에서 자원하여 이사한 사람 안에서 황해도의 배천·연안·해주·안악·풍천·웅진·문화·장련·신천·장연·송화·강령·은률·강원도의 원주·강릉·삼척·양양·평해·통천·정선·간성·영월·평창·고성·울진·흡곡·안협 등의 고을에 옮겨 사는 사람은 12년을 복호(復戶)하고, 9년을 면세(免稅)하게 하며, 황해도의 곡산·수안·재령·신계·우봉·토산·강음·평안도의 강서·용강·함중·영유·삼화·증산 등의 고을에 옮겨 사는 사람은 13년을 복호 하고, 10년을 면세하며, 황해도의 평산·서흥·봉산·황주, 평안도의 중화·평양·순안·상원·덕천·개천·자산·순천·삼등·은산·양덕·맹산·숙천·성천·강원도의 춘천·이천·낭천·홍천·횡성·양구·인제(麟蹄), 함길도의 안변·덕원·문천·고원·영흥·정평·함흥 등의 고을에 옮겨 사는 사람은 14년을 복호 하고, 11년을 면세하며, 평안도의 영변·안주·가산·수천·선천·정주·곽산·철산·용천·태천·회천·귀성, 강원도의 회양·금성·김화·철원·평강, 함길도의 홍원·북청·이성·단천·길주 등의 고을에 옮겨 사는 사람은 15년을 복호하고, 12년을 면세 하며, 평안도의 의주·삭주·창성·강계·이산·벽동·함길도의 경성·부령·종성·은성·경원·경흥·갑산 등의 고을에 옮겨 사는 사람은 16년을 복호 하고 13년을 면세하게 하고, 아울러 3년을 기다린 뒤에 군역(軍役)을 정하되, 그 복호(復戶)하는 기간에는 말 타고 싣고 영송(迎送)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 7년 1461년7월10일(戊申)

올적합 아인첩목가가 귀국시 연변의 관리들에게 그들을 후히 대접할 것을 치서하다

승정원에서 진지(傳旨)를 받들어 경기(京畿)·함길도·강원도(江原道) 길 연변에 여러 고을 수령과 여러 역(驛)의 찰방(察訪)에게 치서(致書)하기를,

“지금 가는 올적합(兀狄哈) 아인첩목가(阿仁帖木加) 등에게 관(官)에서 대접을 후하게 하고, 혹시 병이 들거든 데리고 가는 의원의 말을 들어 구료(求療)를 극진히 하고, 또 탈 말을 골라서 주라.”

하였다.

〈원전〉 7집 474면

세조 8년 1462년2월 30일(乙未)

호조에서 부족한 참선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진술하다

호조(戶曹)에서 아뢰기를,

“전라도·충청도의 전세(田稅)는 새로 만든 조선(漕船)으로 전운(轉運)하고, 충청상도(忠淸上道)와 강원도(江原道)·경상도의 전세와 포화(布貨)는 모두 좌도(左道)의 참선(站船)으로 운송하는데, 공선(公船)이 부족하여 사선(私船)을 사용하고 값을 주어서 조운(漕運)합니다.

신사년에 사선(私船)이 폐몰(敗沒)하여 미곡(米穀)을 모손(耗損)한 것이 8백여 석(石)에 이릅니다. 지금 본 도에 소속한 참선을 살펴보면 80척 가운데 경기(京畿)가 2척, 충청도가 6척, 강원도가 24척을 아직 판비(辦備)하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전에 파손된 배도 모두 32척입니다. 비록 매양 채족하여 조사하기를 더하나, 강원도의 여러 고을은 조잔(凋殘)하기가 심하여 판비(辦備)하여 만들 날을 바랄 수가 없으니, 마땅히 조선소(造船所)로 하여금

따로 조선(漕船) 20척을 만들게 하고, 도 아직 판비하지 못한 여러 고을에 대해서는 배의 재목을 수납하게 하여 이와 아울러 만들어 준 다음이라야 거의 <대전(大典)>의 조선(漕轉)조의 뜻과 부합하겠습니다. 재목을 낼 곳과 배를 만드는 조건을 갖추어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 一. 조선 1척에 들어가는 재목은 7, 8조를 넘지 않는데, 만약 아직 판비하지 못한 여러 고을로 하여금 값을 민간에게 거두어 이를 대납하게 한다면 1척의 값이 거의 수 백여 필(匹)에 이를 것이니, 민폐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청컨대 여러 고을로 하여금 재목을 베어서 힘써 경편(輕便)하게 만들어 조선소(造船所)에 운송하여 교부하게 하고, 그 즉시 배를 만들게 하소서.
- 一. 조선소에서는, 청컨대 물가에 재목을 쉽게 수송할 곳으로 원주(原州)의 흥원창(興原倉) 앞과 가평현(加平縣) 앞 두 곳으로 나누게 하소서.
- 一. 강원도의 영서(嶺西)에서는 소금이 매우 귀하니, 경기의 회계(會計)에 붙인 소금 2백 석을 여러 고을로 하여금 차례차례 인제(麟蹄)·양구·홍천·춘천·원주·정선 등지에 전수(轉輸)하여서 백성들의 정원(情願)에 따라서 우대하여 지급하고, 재목과 교환하여 조선소로 수송하여 배를 만들게 하소서.
- 一. 선장(船匠)·목수는 전례에 의거하여 경강(京江)에서 선발하되, 경기·강원도·충청도의 물가에 거주하는 사람 1백 명은 여러 고을의 군자미(軍資米)를 사용하여 공급하고 역사(役使)시키며, 조역군(助役軍) 2백 명은 충청도·강원도의 당령선군(當領船軍) 중에서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방어(防禦)의 긴만(緊慢)에 따라서 추출하여 뽑아 정하소서.
- 一. 정철(釘鐵)은 충청도의 회계에 붙인 정철을 사용하되, 들어오는데 따라서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 一. 감조 경차관(監造敬差官)은 이조(吏曹)로 하여금 간택(揀擇)하여 차정(差定)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 8년 1462년8월5일(丁卯)

각 도의 역·참을 파하고 역로를 정비하여 찰방과 역승을 두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이보다 먼저 여러 도의 참·역을 혹은 역승(驛丞)을 파하고 각각 그 부근에 합하여 하나의 길을 만들어서 찰방(察訪)을 두었으나, 관할하는 역이 많고 길이 멀리 떨어져서 찰방이 두루 살피기가 어려우므로 역로(驛路)가 조잔(凋殘)하니, 이제 다시 마감하여 대·중·소의 역로 및 원근(遠近)을 나누어서 그 전의 역승을 각 역로에 차견(差遣)하여 1찰방마다 역승 1명을 더 두게 하소서. 삼가 뒤에 갖추어 아뢰니다. 충청도의 연원역·단월역·황강역·수산역·안음역·안부역·신평역·인산역·감원역·용안역·장림역·영천역·오사호역(吾賜乎驛)·천남역 이상 14역은 연원도 찰방으로 일컫고, 울봉역·쌍수역·저산역·장양역·태랑역·시화역·증약역·가화역·도포역·순양역·화인역·전민역·덕류역·회동역·신흥역·함림역·원암역 이상 17역은 울봉도 찰방으로 일컫고, 성환역·신은역·금제역·장명역·영춘역·일신역·광정역·경천역·평천역·금사역·단평역·유구역 이상 12역은 성환도 찰방으로 일컫고, 이인역·유양역·용전역·은산역·영유역·숫홍역·신곡역·두곡역·청화역·남전역(藍田驛) 이상 10역은 이인도승(利仁道丞)으로 일컫고, 시흥역·창덕역·일흥역·화천역·장시역·순성역·홍세역·급천역 이상 8역은 시흥도승(時興道丞)으로 일컫고, 금정역·광시역·용곡역·세천역·몽용역·해문역·청연역·풍전역·하천역 이상 9역은 금정도승(金井道丞)으로 일컫을 것.

전라도 삼례역·앵곡역·반석역·우원역·갈담역·소안역·춘곡역·양재역·거산역·천원역·영원역·부흥역·내재역·이상 13역은 삼례도 찰방으로, 오수역·창활역·동도역·응령역·인월역·지신역·잔수역·양률역·낙수역·덕양역·익신역·섬거역·이상 12역은 오수도 찰방으로, 청엄역·영신역·서엄역·신안역·녹사역·가리역·경신역·광리역·오림역·영보역·단암역·

청송역· 이상 12역은 청임도 찰방으로, 제원역· 달계역· 소천역· 당령역· 옥포역· 이상 5역은 제원도 승(濟原道丞)으로, 벽사역· 진원역· 통로역· 별진역· 남리역· 녹산역· 가신역· 파청역· 양강역· 낙승역 이상 10역은 벽사도 승(碧沙道丞)으로, 경양역· 덕기역· 가휴역· 인물역· 검부역· 창신역· 대부역 이상 7역은 경양도승(景陽道丞)으로 일컬을 것.

경상도 장수역· 청통역· 청성역· 우곡역· 화양역· 압달역· 모량역· 아화역· 의곡역· 경역· 잉보역· 사리역· 조역· 구어역· 노곡역· 인비역· 이상 16역은 장수도 찰방으로, 창락역· 죽동역· 찬보역· 평은역· 도십역· 선안역· 안교역· 유동역· 안기역· 웅천역· 운산역· 송제역· 금소역· 통명역· 철파역· 청로역 이상 16역은 창락도 찰방으로, 김천역· 문산역· 추풍역· 작내역· 장곡역· 무촌역· 성초역· 성기역· 답계역· 안언역· 무계역· 설화역· 고평역· 양원역· 도안역· 양천역· 부상역· 인림역· 팔진역· 권빈역· 금양역 이상 21역은 김천도 찰방으로, 성현역· 범어역· 금천역· 수안역· 금동역· 양동역· 용가역· 유산역· 무흘역· 유천역· 매전역· 서지역· 오서역· 온정역· 일문역· 내야역· 쌍산역· 창인역· 영포역 이상 19역은 서현도 찰방으로, 유곡역· 요성역· 덕통역· 지보역· 수산역· 쌍계역· 안계역· 낙평역· 낙동역· 낙양역· 낙서역· 장림역· 난원역· 상림역· 영향역· 구미역· 안곡역· 소계역 이상 18역은 유곡도 찰방으로, 사근역· 제항역· 정곡역· 임수역· 유린역· 신흥역· 소남역· 평사역· 정수역· 안간역, 신안역· 벽계역· 울원역· 마전역· 횡보역 이상 15역은 사근도 역승(沙斤道驛丞)으로, 소재역· 부다역· 영창역· 문화역· 평기역· 덕신역· 완사역· 양포역· 관율역· 동계역· 송도역· 구허역· 배둔역· 오양역· 상령역· 지남역 이상 16역은 소재도 역승(召材道驛丞)으로, 자여역· 근주역· 양미역· 신평역· 보평역· 춘곡역· 파수역· 저강역· 성법역· 남역· 덕산역· 금곡역· 대신역· 이상 13역은 자여도 역승(自如道驛丞)으로, 황산역· 운산역· 위천역· 소산역· 휴산역· 신명역· 아월역· 간곡역· 굴화역· 부평역· 덕천역· 이상 11역은 황산도역승(黃山道驛丞)으로, 송라역· 남역· 주동역· 병곡역· 여양역· 망창역· 대송역· 화목역· 문거역· 친운역· 봉산역· 육역· 각산역· 이상 13역은 송라도역승(松羅道驛丞)으로 일컬을 것.

강원도 은계역·신안역·대창역·서운역·생차역·옥동역·건천역·용진역·신양역·원천역·방천역·함춘역·수인역·마노역(馬奴驛) 부림역(富林驛)·남교역(嵐校驛)·임천역(林川驛) 이상 17역은 은계도 찰방으로, 보안역·인람역·부창역·안보역·원창역·연봉역·천감역·창봉역·갈풍역·오원역·안흥역·유원역·단구역·안창역·시남역·신흥역·양연역·연평역·약수역·평안역·벽탄역·호성역·여량역·운교역·방림역·대화역·진부역·횡계역·고단역·임계역·이상 30역은 보안도 찰방으로, 평릉역·달효역·덕신역·수산역·홍부역·오원역·용화역·교가역·사직역·낙풍역·안인역·대창역·구산역·수계역·동덕역 이상 15역은 평릉도 역승으로, 상운역·연창역·오색역·강선역·인구역·청간역·죽피역·운근역·명파역·대강역·고잠역·양잔역·조진역·드로역·거풍역·정덕역 이상 16역은 상운도 역승으로 일컬을 것.

황해도 청단역·남산역·금곡역·심동역·신행역·망정역·금강역·문라역·우안역·이상 9역은 청단도 찰방으로, 기린역(麒麟驛)·안산역·문라역·박산역·진목역·영양역·원산역·다만역·신흥역·위라역·소곳이역(所串驛) 이상 11역은 기린도 찰방으로 일컫고, 칠참찰방(七站察訪)과 함길도·평안도의 찰방은 예전대로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점) 7집 544면

세조 12년 1466년7월12일(辛巳)

병조에서 군기를 상정하여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군기(軍器)를 상정(詳定)하여 아뢰기를,

“군기시(軍器寺)에는 향각궁(鄉角弓) 7백 40장, 녹각궁 5백 장, 착전(錯箭) 8백 80부(部), 마전(磨箭) 1천 5백 부, 통전(筒箭)-1부(部)마다 통(筒)이 1구(具)이다- 5백 부, 신기전(神機箭) 1천 4백 부, 중전(中箭) 7천 2백, 세전(細箭) 4천 8백, 중현(弓弦) 6천개, 철갑(鐵甲)-두구(頭具)도 갖추었다-16령

(鎧)·대쟁(大鎗)-망치(槌)도 갖추었다-12개, 중쟁(中鎗)·소쟁(小鎗)-망치도 갖추었다-각 20개, 대장휘(大將麾) 5개, 위장휘(衛將麾) 25개, 고(鼓) 20개, 대각(大角) 20개, 소각(小角) 10개, 대장표기(大將標旗) 1개, 위장표기(衛將標旗) 5개, 부장표기(部將標旗) 25개, 통장표기(統將標旗) 1백 개, 여수표기(旅帥標旗) 1백 50개, 대정표기(隊正標旗) 2백 5개 장표기(長標旗) 2백 50개, 유군장표기(遊軍將標旗) 5개, 영장표기(領將標旗) 25개, 만강 표기(彎強標旗), 장용표기(壯勇標旗), 과적표기(破敵標旗), 공현표기(控弦標旗), 잡류표기(雜類標旗), 사자표기(獅子標旗), 사대표기(射隊標旗), 각 1개, 잡류통장 표기(雜類統將標旗) 5개 대장초요기(大將招搖旗) 1개, 위장초요기(衛將招搖旗) 5개, 부장초요기(部將招搖旗) 25개, 유군장초요기(遊軍將招搖旗) 5개, 부장영하기(部將令下旗) 1백 개, 통장영하기(統將令下旗) 1백 50개, 여수영하기(旅帥令下旗) 2백 개, 대정영하기(隊正令下旗) 2백 50개, 유군장영하기(遊軍將令下旗), 영장 영하기(領將令下旗) 각 25개, 대발화(大發火) 4백 80개, 중발화(中發火) 1천 200개, 소발화(小發火) 6천 개, 지화(地火) 1천 200개이고, 개성부·충주·홍주·경주·안동·진주·상주·성주·김해·밀양·전주·나주·제주·광주·남원·장흥·순천·해주·강릉·함흥·길주·종성·은성·회령·경원·평양·안주·의주에는 각기 향각궁 57장, 마전 29부, 통전 28부, 장창(長槍) 22자루, 중창(中槍) 33자루, 환도(還刀) 57과(把), 궁현(弓弦) 1백 14개, 철갑 5령, 대쟁 1개, 중쟁·소쟁 각 개, 고(鼓) 2개, 대각·소각 각 3개이고, 수원·강화·남양·공주·청주·태안·울산·함양·풍기·합천·영천·홍해·청도·영해·영일·웅천·선산·창원·부안·무장·영암·영광·낙안·금산·홍양·황주·연안·장연·평산·원주·삼척·영흥·정평·경성·안변·정주·성천·숙천·영변(寧邊)에는 각기 향각궁(鄉角弓) 46장(張), 마전(磨箭)-통전(筒箭) 각 23부(部), 장창(長槍) 18자루, 중창(中槍) 26자루, 환도(環刀) 46과(把), 궁현(弓弦) 92개, 철갑(鐵甲) 3령(領), 대쟁(大鎗) 1개, 중쟁(中鎗)-소쟁(小鎗) 각 2개, 고(鼓) 2개, 대각(大角)-소각(小角) 각 2개이고, 광주·양주·여흥·한산·서천·면천·서산·임천·천안·옥천·청송·초계·진천·보은·예천·영천·양산·함안·금산·곤양·대구·의성·의령·영덕·창녕·사천·거창·거제·남해·언양·하동·장기·고성·고부·진도·순창·김제·무안·함평·옥구·광양·해남·서흥·배천·

곡산·수안·안악·풍천·용진·양양·평해·간성·북청·경흥·덕원·부령·문천·단천·강계·창성·삭주·자산·선천·순천·태천·희천·개천(价川)에는 각기 향각궁(鄉角弓) 36장(長), 마전통전(弓箭) 각 18부(部), 장창(長槍) 15자루, 중창(中槍) 21자루, 환도(環刀) 36과(把), 궁현(弓弦) 72개, 철갑 2령, 대쟁 1개, 중쟁소쟁 각 2개, 고(鼓) 2개, 대각소각 각 2개이고, 장단·교동·부평·인천·이천·양근·풍덕·안산·안성·괴산·홍산·제천·덕산·평택·직산·은진·부여·비인·결성·보령·남포·영동·온양·단양·청풍·경산·개령·삼가·하양·철원·인동·지례·안음·고령·현풍·군위·비안·의흥·영산·기장·능성·용안·함열·고산·태인·홍덕·정읍·고창·구례·곡성·장성·임실·장수·진안·무주·동북·대정·정의·담양·익산·강진·신계·신천·봉산·재령·강령·철원·통천·영월·회양·춘천·울진·홍원·이성·고원·강서·용강·삼수·함흥·영유·증산·삼등·은산·상원·중화·덕천·가산·곽산·철산·용천·벽동·이산·귀성(櫃城)에는 각기 향각궁 26장, 마전통전 각 13부, 장창 8자루, 중창 18자루, 환도 26과, 궁현 52개이고, 파주·고양·교하·통진·김포·양지·삭녕·마전·영평·용인·진위·양천·지평·포천·적성·금천·천녕·연천·음죽·음성·가평·죽산·과천·문의·회인·정산·청양·연풍·청안·회덕·진잠·연산·이산·대흥·석성·해미·강진·신창·예산·목천·전의·연기·영춘·황간·청산·아산·함창·문경·예산·청하·봉화·진해·진보·단성·용궁·산음·신녕·임피·만경·금구·용담·옥과·여산·남평·진산·창평·진원·운봉·회순·토산·문화·우봉·장련·송화·은율·강음·이천·평강·김화·낭천·홍천·양구·인제(麟蹄)·안협·고성·평창·금성·흡곡·정선·횡성·삼수·갑산·박천·운산·위원·순안·맹산·양덕에는 각기 향각궁 17장, 마전 9부, 통전 8부, 장창 7자루, 중창 10자루, 환도 17과, 궁현 34개입니다. 이상의 군기는 1년에 한번 제조하는데, 기모(旗母)는 2년만에 한번 제조합니다. 상공(上貢)하는 수량 외에는 모두 거진(巨鎭)에 간수해 두고, 갑주(甲冑)와 쟁(錘)과 고각(鼓角)은 다만 거진(巨鎭)에서만 제조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였다.

예종편

예종 1년 1469년1월18일(癸酉)

회양·금성·강화·평강·이천 등 7고을의 전세를 경창에 납입케 하다

강원도 관찰사가 아뢰기를,

“이 앞서 본도 제읍(諸邑)의 전세(田稅)를 황성·원주·영월·평창·정선·강릉·삼척·울진·평해 등 고을은 원주의 흥원창(興原倉)에 납입하고, 양양·간성·고성·통천·흡곡·회양·금성·평강·이천·안협·철원·김화·낭천·춘천·양구·인제(麟蹄)·홍천 등 고을은 경창(京倉)에 납입하였는데, 지금 새로 제정한 <대전(大典)>의 조전조(漕轉條) 주(註)에 이르기를, ‘원주의 흥원창과 춘천의 소양강창에서 모두 강원도 전세를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에 의거하여 자세히 조사하였더니, 철원은 서울과의 거리가 3일의 노정(路程)인데, 소양강은 4일의 노정이며, 김화는 서울과 소양강의 거리가 모두 3일의 노정이고, 안협과 이천은 서울과의 거리가 4일의 노정인데, 소양강은 5일의 노정이며, 금성과 평강은 서울과 소양강의 거리가 모두 4일의 노정이고, 회양은 서울과 소양강의 거리가 모두 5일의 노정이나 그 도리(道里)의 원근(遠近)은 비록 같다 하지만 서울에 이르는 길이 평탄하며, 소양강의 길은 중간에 대령(大嶺)과 대천(大川)이 있어서 몹시 험조(險阻)하고, 매

양 날씨가 매우 차서 사람과 말이 넘어지고 자빠져서 갖은 고생을 하며 발섭(跋涉)하니, 백성들이 매우 고생스럽습니다. 청컨대 회양·금성·김화·평강·이천·안협·철원 등 7고을의 백성으로 경창에 납입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를 들어주게 하소서.”

하니, 호조(戶曹)에 내려 의논하게 명하였다. 호조에서 계본(啓本)에 의하여 시행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8집 319면

성종편

성종 1년 1470년2월30일(己卯)

병조에서 지금의 군액 및 분번할 수와 3도 군정의 감액할 수 등을 기록하여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지금 전지(傳旨)를 받들건대, ‘국가가 태평한 지가 오래되니, 군액(軍額)이 점점 줄어들었다. 세조께서 국가 대계를 위하여 대신을 보내어 한산(閑散)한 사람들을 찾아 모아서 군액(軍額)을 보충하게 하였으나 초쇄(抄刷)할 때에 너무 상세한 것을 면치 못하였고, 백성들도 안일한 데에 습관이 되어 흑도피하는 자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군보(軍保)가 충실하지 못하고, 번상(番上)이 빈삭(頻數)하여 농사에 힘쓸 틈이 없어서 백성이 매우 괴롭게 여기니, 쓸데없는 군사는 도태하여 버리고, 번차(番次)를 다시 정하여 군사와 백성을 유족(有足)하게 함으로써 세조의 군사를 죽하게 하고 나라를 튼튼히 하는 뜻에 부합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신(臣) 등이 자세히 참고하건대, 제색(諸色)의 군사가 정한 액수가 너무 많아서 액수를 채우기가 쉽지 않고, 아울러 4번(番)으로 서로 교대하게 하니, 쉬는 날이 많지 않아서 점점 피폐하게 됩니다. 또 을유년에 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군사를 병적(兵籍)에 올릴 때에 말 5결로 한 정부(丁夫)에 준(准)하고, 고공(雇工)·백정(白丁)을 아울러

계산하여 보(保)를 만들었으므로, 그 액수는 비록 많으나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으니, 고쳐서 새롭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강원도·황해도·평안도·영안도(永安道) 등의 도는 그때 군안(軍案)을 미처 만들지 못하였는데, 전정(田丁)·고공·백정을 아울러 계산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군사액수의 많고 적은 것이 알맞으니, 마땅히 예전 그대로 하소서. 다만 위의 항목에 제도(諸道)·제읍(諸邑)의 군사는 정한 액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인하여 번상(番上)이 일정하지 못합니다. 지금 군액(軍額) 및 분번(分番)할 수와 3도(道) 군정(軍丁)의 감액할 수와 아울러 응당 행해야 할 사건을 가지고 개록(開錄)하여 아뢰나이다.

- 一. 별시위(別侍衛)는 2천 4백인데, 지금 1천 5백으로 정하고, 5번(番)으로 나누어 매번(每番)에 3백으로 하여 6달에 서로 교대하고, 갑사(甲士)는 2만인데, 지금 1만으로 정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2천으로 하여 6달에 서로 교대하고, 좌적위(破敵衛)는 3천인데, 지금 2천 5백으로 정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5백으로 하여 6달에 서로 교대하고, 대졸(隊卒)은 3천 4백 40인데, 지금 3천으로 정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6백으로 하여 6달에 서로 교대하고, 팽배(彭排)는 6천인데 지금 5천으로 정하고, 5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1천으로 하여 6달에 서로 교대하고, 내금위(內禁衛)는 2백인데 지금 1백으로 정하여 장번(長番)으로 하고, 응양위(鷹揚衛)는 2백인데 지금 1백으로 정하여 장번으로 하고, 친군위(親軍衛)는 40인데 전 수에 의하여 2번으로 나누고 매번에 20으로 하여 1년에 서로 교대하고, 충찬위(忠贊衛)는 정한 수가 없는데, 지금 5번으로 나누어 6달에 서로 교대하고, 충순위(忠順衛)는 정한 수가 없는데, 지금 5번으로 나누어 6달에 서로 교대하고, 족친위(族親衛)는 정한 수가 없는데 장번(長番)으로 하고, 충의위(忠義衛)는 정한 수가 없는데 장번으로 하고, 만강대(灣強隊)·장용대(壯勇隊)는 아울러 6백인데 장번으로 하고, 이미 일찍이 입속(入屬)한 자 외에는 이후로 천인(賤人)이 입속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정병(正兵)은 8만 60인데 지금 7만 4천 2백으로 정하고, 7번으로 나누어 매번에 1만 6백으로 하여 두 달에 서로 교대하고, 외방 각진(各鎭)의 유방군(留防軍)은 5천 5백이고 번상하는 군사는 5천 1백인데 절도사(節度使)로 하여금 마련하여 전례에 의하여

성적(成籍)하게 하고, 총수(總數)를 계문(啓聞)하게 하소서.

- 一. 갑사(甲士)는 전에는 4번(番) 이었는데, 지금 5번으로 나누어 16달 만에 휴식하고, 정병(正兵)은 전에는 4번이었는데 지금 7번으로 나누어 12달 만에 휴식하고, 두 달에 서로 교대하여 모두 신역(身役)을 가볍게 하여 쉬게 하며, 갑사의 봉족(奉足)은 7정(丁) 가운데에서 2정을 줄이고, 기정병(騎正兵)의 봉족은 5정 가운데 2정을 줄이고, 보정병(步正兵)의 봉족은 3정 가운데 1정을 줄이소서.
- 一. 전정(田丁) · 고공(雇工) · 재백정(才白丁) 및 제색 장인(諸色匠人)은 아울러 계산하여 보(保)를 만들지 마소서.
- 一. 번상하는 군사를 점고(點考)할 대에 호수(戶首) · 봉족(奉足)이 혹 튼튼하고 실하지 못하거나, 용기(戎器)가 혹 정련(精練)되지 못하였거나, 번상하는 군사와 유방군(留防軍)이 혹 당번이 아니거나, 혹 도(到)를 꺾하였거나, 대신 세웠거나, 혹 말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활 쏘고 말 타는 것이 능하지 못하면 범한 것의 경중에 따라 본인은 장(杖) 1백 대를 때리고, 집리(執吏)도 장 1백 대를 때리고, 전 가족을 변방에 옮기고, 여수(旅帥) · 대정(隊正)은 결장(決杖)하여 먼 변방에 충군(充軍)시키고, 수령은 파직(罷職)하여 서용하지 말고, 절도사(節度使) · 평사(評事)는 논죄(論罪)하여 파출(罷黜)하소서.
- 一. 충청도에 있어서 충주(忠州)는 제색군사(諸色軍士)가 본래 2천1백 87인데 지금 2천 1백 47로 정하고, 괴산은 3백 30인데 지금 3백으로 정하고, 연풍은 82인데 40으로 하고, 청풍은 2백 32인데 1백 90으로 하고, 영춘(永春)은 98인데 60으로 하고, 음성(陰城)은 1백 44에서 1백 10으로 하고, 단양은 55에서 35로 하고, 제천(堤川)은 2백 71에서 2백 40으로 하고, 청주는 1천 9백 9에서 1천 8백 69로 하고, 진천은 4백 60에서 4백 30으로 하고, 문의(文義)는 3백 36에서 2백 99로 하고, 보은(報恩)은 6백 88에서 6백 50으로 하고, 청산(靑山)은 3백 1에서 2백 70으로 하고, 황간(黃澗)은 2백 49에서 2백 10으로 하고, 영동(永同)은 3백 95에서 3백 60으로 하고, 청안(淸安)은 3백 19에서 2백 80으로 하고, 직산(稷山)은 150에서 1백 25로 하고, 목천(木川)은 2백 98에서 2백 60으로 하고, 천

안은 5백 51에서 5백 20으로 하고, 회인(懷仁)은 1백 88에서 1백 50으로 하고, 전의(全義)는 2백 25에서 1백 95로 하고, 공주(公州)는 2천 7백 54에서 2천 7백 30으로 하고, 정산(定山)은 2백 49에서 2백 10으로 하고, 부여(夫餘)는 1백 42에서 1백 10으로 하고, 임천(林川)은 3백 96에서 3백 67로 하고, 한산(韓山)은 2백 9에서 1백 70으로 하고, 석성(石城)은 1백에서 70으로 하고, 이산(尼山)은 2백 84에서 2백 50으로 하고, 연산(連山)은 3백 9에서 2백 70으로 하고, 연기(燕岐)는 4백 20에서 3백 90으로 하고, 회덕(懷德)은 3백 1에서 2백 66으로 하고, 진잠(鎭岑)은 1백 65에서 1백 25로 하고, 옥천은 5백 64에서 5백 30으로 하고, 은진(恩津)은 2백 90에서 2백 55로 하고, 홍주(洪州)는 1천 5백 80에서 1천 5백 45로 하고, 청양(靑陽)은 3백 55에서 3백 10으로 하고, 평택은 89에서 40으로 하고, 비인(庇仁)은 1백 14에서 80으로 하고, 온양(溫陽)은 5백 15에서 4백 60으로 하고, 신창(新昌)은 2백 74에서 2백 30으로 하고, 면천(沔川)은 3백 85에서 3백 50으로 하고, 결성(結城)은 4백 16에서 3백 80으로 하고, 보령(保寧)은 3백 83에서 3백 50으로 하고, 서산(瑞山)은 5백 63에서 5백 30으로 하고, 남포(藍浦)는 2백 96에서 2백 60으로 하고, 서천(舒川)은 2백에서 1백 80으로 하고, 홍산(鴻山)은 95에서 60으로 하고, 예산(禮山)은 2백 85에서 2백 40으로 하고, 아산(牙山)은 4백 45에서 4백으로 하고, 덕산(德山)은 4백 71에서 4백 31로 하고, 당진(唐津)은 2백 90에서 2백 55로 하고, 대흥(大興)은 4백 26에서 3백 80으로 하고, 태안(泰安)은 2백 67에서 2백 37로 하고, 해미(海美)는 2백 75에서 2백 30으로 정하였습니다. 총계가 예전에는 2만 3천 3백 84인데, 1천 9백 54를 줄이고, 지금 정한 것이 2만 1천 4백 31입니다.

전라도에 있어서, 창평(昌平)은 제색군사가 4백인데 지금 3백 70으로 하고, 곡성(谷城)은 4백 41에서 4백 10으로 하고, 함평(咸平)은 9백 16에서 8백 80으로 하고, 무장(茂長)은 1천 43에서 1천 10으로 하고, 남평(南平)은 5백 21에서 4백 80으로 하고, 무주(茂朱)는 3백 17에서 2백 70으로 하고, 광양(光陽)은 2백 59에서 2백 20으로 하고, 화순(和順)은 3백 37에서 3백으로 하고, 동복(同福)은 5백 29에서 5백으로 하고, 순천(順川)은 6백 55에서 6백 30으로 하고, 고산(高山)은 5백 79에서 5백 40으로

하고, 무안(務安)은 3백 5에서 2백 80으로 하고, 흥양(興陽)은 5백 19에서 4백 71로 하고, 진도는 1백 98에서 1백 80으로 하고, 해남(海南)은 6백 46에서 6백 10으로 하고, 만경(萬頃)은 3백 78에서 3백 30으로 하고, 임피(臨陂)는 7백 69에서 7백 20으로 하고, 옥구(沃溝)는 4백 31에서 3백 90으로 하고, 임실(任實)은 7백 48에서 7백 10으로 하고, 영광(靈光)은 1천 1백 83에서 1천 1백 50으로 하고, 금구(金溝)는 4백 58에서 4백 20으로 하고, 운봉(雲峰)은 4백 26에서 3백 80으로 하고, 장흥(長興)은 8백 81에서 8백 60으로 하고, 고창(高敞)은 3백 95에서 3백 60으로 하고, 낙안(樂安)은 2백 29에서 2백으로, 태인(泰仁)은 1천 1백 11에서 1천 80으로, 광주(光州)는 9백 29에서 9백으로, 고부(古阜)는 1천 1백 42에서 1천 1백 12로, 진산(珍山)은 2백 50에서 2백으로, 순창(順昌)은 9백 30에서 9백으로, 보성(寶城)은 백 6에서 5백 76으로, 정읍(井邑)은 4백 92에서 4백 50으로, 강진(康津)은 1천 7에서 9백 80으로, 흥덕(興德)은 4백 56에서 4백 20으로, 구례(求禮)는 1백 57에서 1백 20으로, 남원은 1천 8백 57에서 1천 8백 30으로, 나주(羅州)는 1천 4백 15에서 1천 3백 90으로, 영암(靈巖)은 2백 7에서 1백 70으로, 전주(全州)는 1천 8백 91에서 1천 8백 65로, 담양(潭陽)은 8백 10에서 7백 75로, 진안(鎭安)은 4백 18에서 3백 84로, 함열(咸悅)은 4백 36에서 3백 90으로, 장성은 5백 14에서 4백 70으로, 장수(長水)는 3백 78에서 3백 30으로, 익산(益山)은 3백 82에서 3백 30으로, 금산(錦山)은 6백 24에서 5백 90으로, 옥과(玉果)는 4백 29에서 3백 90으로, 김제는 9백 41에서 9백 10으로, 부안(扶安)은 1천 1백 61에서 1천 1백 30으로, 용담(龍潭)은 1백 14에서 80으로, 용안(龍安)은 1백 64에서 1백 19로 정하였습니다. 총계가 예전에는 3만 3천 6백 39였는데 1천 9백 53을 줄이고 지금 정한 것은 3만 1천 6백 86입니다.

경상도에 있어서, 언양(彦陽)은 제색군사가 69인데 지금 40으로 하고, 영덕(盈德)은 2백 57에서 2백 30으로, 청송(靑松)은 2백 71에서 2백 44로, 양산(梁山)은 74에서 50으로, 의성(義城)은 6백 25에서 5백 94로, 비안(比安)은 3백 60에서 3백 30으로, 경산(慶山)은 1백 55에서 1백 24로, 예천(醴泉)은 7백 8에서 6백 80으로, 봉화(奉化)는 85에서 55로, 밀양(密陽)은 7백 93에서 7백 70으로, 신녕(新寧)은 78에서 48로, 기장(機長)

은 2백 31에서 2백 3으로, 영천(榮川)은 3백 13에서 2백 85로, 영천(永川)은 5백 30에서 5백으로, 창녕(昌寧)은 3백 90에서 3백 65로, 대구는 3백 46에서 3백 16으로, 흥해(興海)는 1백 95에서 1백 65로, 하양(河陽)은 78에서 40으로, 진보(眞寶)는 1백 81에서 1백 50으로, 청하(淸河)는 1백에서 70으로, 예안(禮安)은 65에서 35로, 동래(東萊)는 2백 63에서 2백 30으로, 군위(軍威)는 2백 84에서 2백 50으로, 영해(寧海)는 3백 30에서 3백으로, 경주는 1천 4백 72에서 1천 4백 50으로, 인동(仁同)은 3백 96에서 3백 50으로, 용궁(龍宮)은 2백 62에서 2백 20으로, 풍기(豊基)는 3백 97에서 3백 60으로, 안동은 6백 86에서 6백 60으로, 울산은 1천 30에서 1천 10으로, 영일(迎日)은 2백 29에서 2백 5로, 의흥(義興)은 1백 52에서 1백 20으로, 영산(靈山)은 2백 19에서 1백 90으로, 거제(巨濟)는 2백 20에서 2백으로, 초계(草溪)는 1백 24에서 94로, 사천(泗川)은 91에서 70으로, 칠원(漆原)은 98에서 70으로, 합천(陝川)은 1백 6에서 76으로, 김해는 5백 6에서 4백 80으로, 고성(固城)은 6백 54에서 6백 25로, 웅천(熊川)은 69에서 50으로, 문경은 2백 52에서 2백 20으로, 함안(咸安)은 2백 69에서 2백 40으로, 창원은 2백 88에서 2백 60으로, 성주(星州)는 1천 5백 9에서 1천 4백 80으로, 함창(咸昌)은 2백 73에서 2백 30으로, 의령(宜寧)은 5백 41에서 5백 10으로, 지례(知禮)는 1백34에서 1백으로, 하동(河東)은 99에서 75로, 거창(居昌)은 4백 20에서 3백 95로, 고령(高靈)은 1백 30에서 1백으로, 안음(安陰)은 1백 77에서 1백 40으로, 상주(尙州)는 1천 7백 72에서 1천 7백 30으로, 금산(金山)은 5백 65에서 5백 35로, 진주는 1천 1백 1에서 1천 80으로, 삼가(三嘉)는 1백 41에서 1백 10으로, 선산(善山)은 7백 65에서 7백 35로, 곤양(昆陽)은 1백 88에서 1백 60으로, 산음(山陰)은 1백 73에서 1백 50으로, 진해는 42에서 22로, 개령(開寧)은 4백 51에서 4백 24로, 함양(咸陽)은 2백 28에서 2백 4로, 단성(丹城)은 95에서 65로 정하였습니다. 총계가 예전에는 2만 3천 8백 70이었는데, 1천 9백 53을 줄이고 지금 정한 것은 2만 1천 9백 17입니다.

경기(京畿)에 있어서, 지평(砥平)의 제색군시는 25·양천(陽川)은 21·영평(永平)은 21·김포 21·부평 2백 7·가평 51·진위(振威) 1백 36·과주 1

백 7·죽산 184·교동(喬桐) 36·과천 55·마전(麻田) 10·용인 172·양주 262·삭녕 93·양성(陽城) 218·포천 89·인천 89·안성 191·양근(陽根) 59·안산 55·수원 1249·양지(陽智) 92·적성(積城) 25·강화 250·음죽(陰竹) 147·연천 55·광주(廣州) 245·풍덕 117·남양 198·여주 231·이천 257·통진(通津) 101·교하(交河) 127·개성 728·고양 167·금천 55·장단(長端) 138인데 아울러 예전대로 하여 총계가 6천 3백 73입니다.

강원도의 회양은 제색군사가 192·고성(高城) 34·간성 58·횡성 81·낭천 50·양구 79·춘천 273·양양 100·흡곡 25·정선 44·강릉 53·평강 41·영월 130·통천 44·울진 65·평해 51·평창 51·금성 185·철원 104·삼척 63·원주 281·인제(麟蹄) 33·홍천 80·김화 55·이천(伊川) 88·안협(安峽) 78인데 아울러 예전대로 하여 총계가 2천 3백 38입니다.

황해도의 황주(黃州)는 제색군사가 281·해주는 1142·연안 602·평산 515·서흥 234·수안 231·곡산 284·안악 424·재령 348·백천(白川) 333·봉산 182·풍천 22·장연(長淵) 122·웅진 50·강령 30·우봉 215·신계 157·운물(殷栗) 66·송화(松禾) 212·문화(文化) 96·장련(長連) 80·신천(信川) 299·토산(兔山) 136·강음(江陰) 42인데, 아울러 예전대로 하여 총계가 6천 1백 3입니다.

평안도의 곡산(郭山)은 제색군사가 66이고, 선천(宣川)은 127·철산 120·용천 159·의주 868·삭주 140·창성(昌城) 236·귀성(龜城) 223·경주(定州) 231·영유(永柔) 380·삼화 234·증산(甑山) 94·함중(咸從) 266·용강 545·중화(中和) 229·순안 211·숙천(肅川) 329·평양 2천 853·강서 370·안주(安州) 288·가산(嘉山) 60·강계 824·영변 444·이산(理山) 341·영원(寧遠) 142·위원(渭原) 148·운산 58·벽동 415·자산(慈山) 158·은산(殷山) 285·덕천 240·성천(成川) 496·삼등(三登) 540·양덕 75·상원(祥原) 315·맹산 146·개천(价川) 341·순천 97·태천(태천) 64·박천(박천) 71·희천(희천) 174·아울러 예전대로 하여 총계가 1만 3천 3백 4입니다.

영안도(永安道)의 옛 길주(吉州)는 제색군사가 2백 67인데 위의 길주를 나누어 길성(吉城)·명천(明川)을 만든 뒤에 군정(軍丁)을 나누어 시행

하였으나, 회계(會計)가 이르지 않았으며, 단천(端川)은 2백 72이고 이 성(利城)은 119·북청 597·갑산 321·삼수(三水) 108·홍원(洪原) 199·함흥 620·정평(定平) 228·영흥(永興) 531·고원(高原) 141·문천 116·덕원 108·안변 324·경성 421·부령 289·회령 735·중성(鍾城) 1052·은성(穩城) 788·경원(慶源) 779·경흥(慶興) 376인데 아울러 예전대로 하여 총계가 9천 91입니다. 양계(兩界)는 그 도(道)에 부방(赴防)하여 번상(番上)으로 왕래하는 폐단이 없으니, 예전대로 4번(番)으로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는데, 총계가 11만 4백 68이었다.

〈원전〉 8집 473면

성종 3년 1472년 10월13일(丙子)

강원도 인제의 아전·관노비에 대해 아뢰다

호조(戶曹)에서 강원도 관찰사 이극돈(李克墩)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본 도의 인제현(麟蹄縣)은 아전이 조잔(凋殘)하여 고을을 지킬 수가 없으니, 청컨대 도망한 아전·관노비(官奴婢)를 연한(年限)을 계산하지 않고 본 고을로 돌려보내고, 자원해서 들어와 사는 예에 의하여 공부(貢賦)·잡역(雜役)을 면제하여 주고, 또 본 현에 사는 난신(亂臣) 남이(南怡)²⁶⁾의 노비(奴婢) 8인을 본 현에 영구히 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8집 690면

26) 남이(南怡): 1457년(世祖3년) 무과(武科)에 장원하여 세조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다. 1467년 이 시애(李施愛)의 난(亂)에 우대장(右大將)으로 이를 토벌하여 적기공신(敵愾功臣)에 오르고 선산군(宣山君)에 봉해졌고, 이어 서북변(西北邊)의 건주위(建州衛)를 정벌하고 27세의 나이로 병조판서가 되었다. 1468년 예종(睿宗)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숙직하던 어느 날 혜성(彗星)이 나타난 것을 보고 목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이 생길 징조라는 말을 했다. 평소 그의 승진을 질투하고 있던 유자광(柳子光)에 의하여 역모로 몰려 그 해 10월에 강순(姜純) 등과 함께 사형되었다.

성종 6년 1475년3월12일(辛酉)

강원도 백성들의 말채금지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을 마치자 임금이 우의정(右議政) 김질(金鎭)에게 이르기를,

“얼마 전에 경(卿)에게 반궁(泮宮)을 복구하는데 대한 여부를 살펴보게 하였으나, 다시 생각하여 보니, 공역(功役)이 증대할 뿐만 아니라 선왕(先王)께서 창축(創築)한 것을 급속하게 고칠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였는데, 김질이 말하기를,

“과연 주상(主上)의 하교(下教)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균관(成均館)의 터는 경치가 아름다웠는데, 지금 또 동반수(東泮水)를 수축하면서 서반수(西泮水)가 궁궐의 담장 안으로 들어감에 따라 이 때문에 편협(偏狹)해져 똑바르지 못합니다. 중국의 사신(使臣)이 오게 되면 문신(文臣)은 반드시 모두 알성(調聖)을 하는데 현재의 모양으로는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궁궐의 담장을 창축(創築)할 때에 신은 외방(外方)에 있었으므로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돌아와서 물어보았더니, 궁궐의 담장을 맡아서 쌓은 자가 평지에다 쌓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반수를 가로지르게 된 것이지, 세조(世祖)의 본 뜻은 반드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그 당시의 일기(日記)를 보니, 권정승(權政丞)이 반수를 가로질러 담을 쌓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하였으나, 세조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세조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지사(知事) 노사신(盧思愼)은 아뢰기를,

“신이 그 당시에 승지(承旨)로 있었으므로, 그 일을 자세하게 압니다. 그 때 권남(權攀)은 반수를 가로질러 담을 쌓는 것을 잘못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궁궐의 담장을 뒤로 물려서 쌓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므로 세조께서 옳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사신 김식(金湜)이 풍수학에 능하였는데, 성균관에 와서 보고 그 지세를 칭찬하기를, ‘인재(人才)가 배출될 만한

곳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반수의 형태를 결손(缺損)되게 하는 것은 매우 불가합니다.”

하였고, 대사간(大司諫) 정괄(鄭括)은 아뢰기를,

“〈서경(詩經)〉에 ‘아름다운 반수에서 마름(藻)을 뜯었네’ 라 하였고, 〈예기(禮記)〉에 ‘대학(大學)을 천자(天子)의 나라에서는 벽옹(辟雍)이라 하고, 제후(諸侯)의 나라에서는 반궁(泮宮)이라 한다.’ 고 하였는데, 반궁(泮宮)이란 반수가 있음으로 해서 일컬어진 것입니다. 반수는 궁궐의 담장에 있어서는 이익이 될게 없고, 성군관에 있어야만 지극히 소중한 것입니다. 만약 선왕께서 창축(創築)한 것이어서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면, 국초(國初)에 이미 반수를 축조(築造)하였으니, 이것도 선왕의 일입니다.”

하였다. 김질이 아뢰기를,

“공역(功役)은 비록 적지 않을 듯 합니다. 그러나 문신(文臣)들이 품계(品階)의 높고 낮음에 따라 종들을 양출(量出)하여 반수를 쌓기로 한 것은 이미 윤허(允許)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정에 있는 이는 모두 성군관에 자제(子弟)들이 있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신 등도 마땅히 번거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힘을 다하여 쌓도록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만약 그러하다면 마땅히 경(卿)의 말을 따르겠다. 다만 선왕께서 창축 하신 것을 차마 급속하게 헐어버릴 수는 없다. 그 궁궐 담장의 모퉁이가 여러 번 무너졌었는데, 다음 번 무너질 때를 기다렸다가 옮겨 쌓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조석문(曹錫文)이 아뢰기를,

“반수를 궁궐 담장에 들어가게 한 것은 세조의 본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순지(李純之)가 담 쌓는 책임을 맡고서 평지에 쌓으려고 하였었는데, 권남이 지나친 말로 세조의 뜻을 거슬렀으므로, 세조께서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옛 돌을 옮겨다 쓰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承旨) 김영견(金永堅)에게 명하기를,

“지난번에 살펴보기 가지 않았던 다른 원상(院相)과 다시 가서 살펴보고 아뢰라.”

하였다. 정팔이 또 아뢰기를,

“신이 들건대 내수사(內需司)에서, 강원도에서 채취하는 재목은 백성들이 사용(私用)으로 벌채하는 것을 금하였다 합니다. 강원도는 토지가 메달라서 백성들이 생활을 전적으로 재목을 판매하는 데에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금하니 백성들의 원망이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었다. 조석문(曹錫文)이 말하기를,

“양구·낭천·인제(麟蹄) 등지는 토지가 재목에는 알맞으나 오곡(五穀)에는 알맞지 않아서 그 곳 백성들의 농사 수확은 겨우 세전(歲前)밖에 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얼었을 때 나무를 베어서 강 언덕에 끌어다 놓았다가 봄이나 여름철에 물이 불어나게 되면 뗏목을 만들어 떠내려보내어 경강(京江)까지 운반하여 그 것을 팔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조 때에는 국용(國用)의 재목이 부족하다 하여 백성들이 사용(私用)으로 벌채하는 것을 금하였었는데, 그 후 6, 7년 사이에 본 도의 백성이 날이 갈수록 가난하게 되었으므로 그 까닭을 알아보았더니, 전적으로 벌채를 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즉시 벌채를 금하지 말도록 계청(啓請)하여 윤허(允許)를 받았었는데, 지금 국가의 명령도 없이 내수사(內需司)에서 임의로 백성들이 사용(私用)으로 벌채하는 것을 금한 것은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이르기를,

“관찰사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9집 208면

성종 7년 1476년5월20일(壬戌)

가뭄 해소를 위하여 향축을 내려 강원도의 명산과 대천에 기도하다

향축(香祝)을 내려 강원도의 명산(名山)과 대천(大川)에 기도하였다. 이는 강원도

의 심한 가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원전〉 9집 345면

성종 7년 1476년8월20일(庚寅)

강원도의 금년 전조를 감면하기로 하고 개간지를 검핵하기로 하다

강원도 양전순찰사(量田巡察使) 이극증(李克增)이 아뢰기를,

“강원도는 양전(量田)하는 일이 많으니, 청컨대 금년의 전조(田租)를 헤아려서 감하여 주소서. 또 신이 군·현을 돌아보니 개간한 전지가 많은데, 수령(守令)이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도에 관리를 보내어서 검핵(檢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원전〉 9집 374면

성종 7년 1476년8월20일(庚寅)

강원도 조세의 반을 감하도록 하다

호조(戶曹)에 전교하기를,

“강원도는 토지가 메마른 것이 다른 도에 비해서 더욱 심하니, 민생이 염려된다. 조세(租稅)의 반을 감하여 민력(民力)을 넉넉하게 하라.”

하였다.

〈원전〉 9집 374면

성종 8년 1477년1월24일(癸亥)

이극중의 계본에 따라 공수위전을 대로의 여에 따르게 하다

호조에서 양진순찰사(量田巡察使) 이극중(李克墿)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
기를,

“강릉(江陵)의 진부역(珍富驛)· 횡계역(橫溪驛)· 대화역(大和驛)· 임계역
(臨溪驛)과, 양양의 오색역(五色驛)· 인제(麟蹄)의 부림역(富林驛)은 극심하
게 잔폐(殘敝)하여 모든 공급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니, 청컨대 공수위전(公
須位田)을 대로(大路)의 예(例)에 따라 20결을 주어서 회복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9집 415면

성종 9년 1478년5월21일(壬午)

강원도의 토지를 양전할 수 없음을 제의하다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강(講)하기를 마치자, 집의(執義) 김춘경(金春卿)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말하기를, ‘강원도는 토지의 척박함이 다른 도에 비할 것이 아
니므로, 양전(量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저 우리 나라는 전지(田地)
를 6등으로 나누었는데, 상등(上等)의 전지는 그 자가 짧기 때문에 그 땅이
작고, 하등(下等)의 전지는 그 자가 길기 때문에 그 땅이 크며, 그것이 상등
이기 때문에 땅은 비록 작으나 소출은 많고, 그것이 하등이기 때문에 땅은
비록 크나 소출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전품(田品)이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백성의 노력도 또 한 많은 차이가 있으니, 이는 백성의 공통된 병통입니다.
그러나 경상도와 전라도의 땅은 기름진 것과 메마른 것이 서로 섞여있기 때
문에, 하등의 전지가 비록 실농(失農)하였을지라도 상등의 전지는 예전대로
먹을 수가 있어서, 백성들의 생활이 유망(流亡)하는 데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그렇지 아니하여 그 전지가 모두 하등이고, 게다가 전라도와 경상도의 하등에 미치지 못하니, 어찌 다른 도의 예(例)로 논하여 똑같은 편법(便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묻기를,

“어떠한가?”

하였다. 영사(領事) 한명회(韓明澮)가 아뢰기를,

“강원도의 폐단을 신이 자세히 알지 못하나, 국가에서 처음 양전(量田)을 행할 때에 경상도의 백성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 법을 세우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고 하였는데, 지금은 백성들이 모두 편하게 여기고, 경기(京畿)의 백성들까지도 역시 그러합니다. 강원도도 시험해 보면 민정(民情)을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등(下等)의 전지는 쌀 너 말이 나는 것이 예사인가?”

하자, 모두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강원도의 전품(田品)이 경상도·전라도와 같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사로 쌀 너 말을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니, 수량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시강관(侍講官) 이형원(李亨元)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강원도를 보니 대관령의 서쪽은 모두 산전이고, 백성들이 사는 것이 쓸쓸하였는데, 양구·낭천·인제(麟蹄)가 더욱 심하여 진실로 김춘경이 아뢴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수세(收稅)의 법이 <대전(大典)>에 실려 있으므로 진실로 고칠 수 없으며, 지금의 손실(損實)의 제도가 진실로 좋으니, 이 법을 거듭 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동지사(同知事) 서거정(徐居正)은 아뢰기를,

“<대전(大典)>에 ‘정전(正田) 2결을 묵히는 지는 수령을 죄 준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수령이 숨기고 아뢰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농사를 버렸어도 세(稅)는 그대로 있어서 이로써 근심하고 한탄하니, 이 법을 쓰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영사(領事) 윤사흔(尹士昕)이 아뢰기를,

“손실(損實)은 수령이 친히 살피는 것이 아니고, 으레 위관(委官)을 보내기 때문에, 반드시 간위(奸僞)가 생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이 폐단을 없애기도 어려우니, 장차 어떤 계책을 내야 할 것인가?”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우선 공법(貢法)을 시험하였다가 다시 의논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원전〉 9집 607면

성종 11년 1480년4월16일(丙寅)

향교에 학전을 지급하라고 하다

경연에 나아갔다. 〈강목속편(綱目續編)〉을 강(講)하다가, ‘조서(詔書)를 내려 여러 고을에 학전(學田)을 지급하였다.’는 데에 이르러 시강관(侍講官) 안침(安琛)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의 시골 학교에 예전에는 학전(學田)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생들이 비록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항상 먹을 것이 없음을 괴롭게 여기니, 청컨대 학전을 주어 양육(養育)하여 학업을 성취하게 하소서.”

하고, 검토관(檢討官) 조위(曹偉)가 말하기를,

“향학(鄉學)의 유생들이 먹을 것을 잊지 못하여 번(番)을 나누어 독서를 하니, 학업을 전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학전을 지급하여 양육한다면 사람들이 격려가 되어 성취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王)이 좌우(左右)에게 하문(下問)하였다. 영사(領事) 심희(沈滄)가 대답하기를,

“이 법이 진실로 아름다우나 다만 지급할 전지(田地)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학전(學田)은 선왕께서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줄 만한 전지(田地)가 없는데도 인가? 정말 학문에 뜻을 두었다면 어찌 먹을 것이 없다고 하여 그 학업을 중지하겠는가?”

하였는데, 심희가 말하기를,

“중(僧)들이 백성들의 전지를 많이 점거(占據)하여 처(妻)를 데리고 경작하여 먹으니, 그것을 빼앗아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동지사(同知事) 이극기(李克基)는 말하기를,

“속공전(屬公田)을 고을의 학교에 지급한다면 전지 없는 것을 걱정할 것이 못됩니다.”

하고, 집의(執義) 이덕숭(李德崇)은 말하기를,

“군·현(郡縣)의 학교에 두루 학전을 지급할 수 없더라도 만약 주(州)·부(府)의 큰 고을에 지급한다면 군·현의 유생들이 소문을 듣고 이르러 강마(講廳)하여 성취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는데, 심희가 말하기를,

“주·부에만 지급하는 것은 고르지 않습니다. 청컨대 관찰사로 하여금 주·부·군·현을 논하지 말고 전지의 있고 없는 것을 조사하여 골고루 지급하게 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하삼도(下三道)의 향학(鄉學)에서는 인재(人才)가 배출되었으니 전지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강원도도 지급할 만한가?”

하자, 이극기(李克基)가 대답하기를,

“신이 일찍이 강원도 관찰사로 있었는데, 강릉(江陵)과 원주(原州)만은 선비가 많기로 이름이 났으며, 향학에서 학업을 익혀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서로

잇따랐으나 다른 고을은 없습니다.”

하고, 심희(沈澮)는 말하기를,

“어느 지역인들 인제가 없겠습니까? 영안도(永安道)의 사람들은 문학을 일삼지 않았는데, 이계손(李繼孫)이 감사(監司)가 되면서부터 학교 진흥에 뜻을 두고 유생들을 영흥 향학(永興鄉學)에다 모아놓고 교양(教養)에 무척 힘썼으므로, 사람들이 학문에 뜻을 두고 그 길로 나아갈 줄 알아 문학을 숭상하는 기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자, 조위(曹偉)는 말하기를,

“이계손이 능숙(稟粟)을 많이 준비하여 유생을 양성하였으므로, 사람마다 학문하기를 즐겨서 비록 5진(五鎭)에 살면서도 길이 먼 것을 꺼려하지 않고 영흥까지 와서 배워 태학(太學)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기(京畿)·강원도·충청도·경상도·전라도의 향교(鄉校)에 학전을 지금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원전〉 10집 119면

성종 14년 1483년8월16일(丙子)

학교를 일으키는 방도를 곡진하게 하도록 하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기를,

“학교는 풍화(風化)의 근원이 되니 관계되는 바가 지중(至重)한데, 근년 이래로는 학교를 보기를 여사(餘事)로 여겨 생각조차 않게 되어 점점 능이(陵夷)한 데에 이르게 되니, 매우 미편(未便)하다. 학교를 일으키는 방도를 곡진(曲盡)하게 조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10집 500면

성종 16년 1485년7월2일(庚戌)

가뭄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을 경계하게 하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가뭄이 너무 심하여 여러 가지 물건이 말라가고 있다. 만약 화재가 있게 되면 박멸(撲滅)하기 어려울 것이니, 선왕의 능침(陵寢)과 진전(眞殿)이 더욱 염려된다. 공사(公私)간의 여러 곳에 금화(禁火)를 엄하게 더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11집 32면

성종 16년 1485년7월3일(辛亥)

가뭄에 대해 홍문관에 내린 어서와 부제학 안처양의 상소문

이보다 앞서 어서(御書)를 홍문관(弘文館)에 내려 이르기를,

“황천(皇天)이 나를 견책(譴責)하여 흉년들지 않는 해가 없었는데, 금년은 더욱 심하다. 내가 어두워서 죄를 얻은 단서(端緒)를 알지 못하여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삼가고 두려워하면서 깊이 스스로 가슴에 새겨 자책(自責)하는데도 정성이 부족하여 불별 더위가 더욱 기세를 부리니, 경상도와 같은 큰 도가 모두 기근(饑饉)의 재앙이 들어서 시들지 않는 풀이 없으며 한숨짓지 않는 백성이 없다. 이 천재(天災)를 규명해 보면 실로 내가 덕이 없어서이다. 내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니, 누구를 탓하겠는가? 그대들은 모두 영특하고 어진 인물로 경악(經軀)에 가까이 있으면서 혹 이름다운 계책을 아뢰고 혹은 시정(時政)에 참여하였으니, 나라에 보답하는 데 있어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지금의 한재(旱災)가 어찌 그 까닭이 없겠는가? 내가 덕이 없어 하늘의 뜻을 어겨서 이를 이르게 함인가? 대신(大臣)이 자리만 갖추었을 뿐 임금을 바로잡지 못함이 있어 이를 이르게 함인가? 소신(小臣)이 높은 이름을 뉘으려고 하늘을 속이고 웃사람을 업신여겨서 이를 이르게 함인가?

옥송(獄訟)에 원통함이 많고 벼슬아치들이 공도(公道)를 폐하고 사의(私意)를 행하여 억울함이 쌓여서 이를 이르게 함인가? 내가 불초한 몸으로 이 같은 재앙을 만나 잠을 자도 잠자리가 편치 아니하고 먹어도 입맛이 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처럼 간절한데도 좋은 보응(報應)은 이르지 아니하므로 그대들에게 묻는다. 남의 말을 듣고자 하여, 가볍게 여기지도 아니할 것이며, 고집하지도 않을 것이니, 심중에 품은 바를 서슴없이 말하라.”

하였는데, 이 때에 와서 부제학(副提學) 안처량(安處良) 등이 상소(上疏)하기를, “신 등이 삼가 어서(御書)를 보건대 자신을 책망하고 덕을 닦아 천견(天譴)을 사라지게 하시려는 뜻이 지극하십니다. 신 등은 모두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경약(經幄)에 모시면서 논사(論思)의 직책에 참여해 왔으니, 무릇 민생의 휴척(休戚)²⁷⁾과 시정(時政)의 득실을 마땅히 말해야 할 처지인데, 더구나 천어(天語)가 간곡 측달(懇曲惻怛)함이겠습니까? 신 등이 삼가 서너 차례 읽는 동안 가슴에 격정(激情)이 북받쳐서 감회가 분발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들으니, 하늘과 사람사이에는 정침(精祲)이 서로 반응을 나타내고 선악이 서로 유추(類推)함이 있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위에서 그에 대한 변(變)이 나타나 재앙과 상서(祥瑞)의 반응이 각각 그 유(類)에 따라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임금이 숙(肅)·예(乂)·철(哲)·모(謀)·성(聖)의 다섯 가지 선도(善道)를 행하면 우(雨)·양(暘)·옥(燠)·한(寒)·풍(風)의 다섯 가지 기운이 때에 따라 상서(祥瑞)의 징조가 되지만, 임금이 광(狂)·참(僭)·예(豫)·급(急)·몽(蒙)의 다섯 가지 악한 도를 행하면 우양옥한풍의 다섯 가지 기운이 항상 재앙의 징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상서와 재앙의 징조는 모두 인사(人事)의 득실(得失)로 인하여 그렇게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 전하께서는 불세출의 자질(資質)로 크게 유위(有爲)하시려는 뜻을 분발하시어 한 가지 동작도 법도에 맞지 않음이 없으시고 한가지 호령도 여망에 맞지 않음이 없었으니, 진실로 화기(和氣)를 상하여 재앙을 부를 일이 없는데도 천견(天譴)의 엄함이 이에 이르렀습니다. 신 등이 반복하여 생각해보았으나 그 연유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으

27) 휴척(休戚): 편안함과 근심걱정

이 살피건대, 전세(前世)에 한재(旱災)를 초래한 일들이 하나만이 아니었습니다. 상하가 모두 몽매(蒙昧)하여도 가물었고, 덕 있는 이가 가까이 있는데도 쓰지 않으면 가물었고, 은덕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가물었고, 형벌을 함부로 더하여도 가물었고, 갑병(甲兵)을 자주 일으켜도 가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몇 가지의 반응은 백성을 수고롭게 하며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것처럼 참혹함은 아직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노(魯)나라의 장공(莊公)이 세 번 누대(樓臺)를 쌓아 가물었고, 한(漢) 나라의 혜제(惠帝)는 장안에 성을 쌓아 가물었고, 위(魏) 나라의 명제(明帝)는 궁부(宮府)를 넓히자 가물었고, 수(隋) 나라의 문제(文帝)는 궁실(宮室)을 세우자 가물었습니다. 대저 백성이란 편안하게 해야지 수고롭게 해서는 안되며, 후하게 해야지 끈궁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하루아침에 건축의 일터로 몰아넣어 추운 자로 하여금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굶주린 자로 하여금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면, 원한 의 기운이 널리 비등하여 이것이 쌓이고 맺히며 퍼지지 못해서 천지의 화기(和氣)를 손상하게 되는 것인데, 이를 어찌 말로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어 <사방의 일들을> 밝게 보시고 밝게 들으시니, 상·하가 모두 몽매(蒙昧)하다 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 번 너그러운 은전을 행하시어 백성과 더불어 새롭게 하려 하였으니, 은덕이 행하여지지 않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죄를 다스림에 있어 의심이 가는 것은 가벼운 쪽으로 처리하여 그 덕택이 백성에게 흠족하였으니, 형벌을 함부로 더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세 방면의 변방이 평온하여 언무수문(偃武修文)하였으니, 갑병(甲兵)을 빈번히 일으켰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영선(營繕)하는 한 가지 일만은 아직도 의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하의 효성이 하늘에 닿으시어 양전(兩殿)을 봉양하심이 극진하셨고, 왕년의 창경궁(昌慶宮)의 역사(役事)는 전하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궁궐은 하늘이 만들거나 땅이 세워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공(人工)으로 이루어진 것이니, 백성의 힘을 쓴 것이 어찌 적다 하겠습니까? 근년 이래로 흉황(凶荒)이 계속되어서 콩가루나 밀기울도 오히려 공급할 수 없는 데, 서울에 부역하는 자가 천 명이나 백 명씩 무리를 지어 ‘영차, 영차!’하는 소리가 몇 리(里) 까지도 끊어지지 않았고, 또 강원도·충청도·경상도 등의 지경에 벌목(伐木)하라는 전지를 내려 주현(州縣)의 재촉하는 부첩(符帖)이

성화보다도 급하므로 마을과 시정(市井)이 소연(騷然)하여 그 폐단이 적지 않았습니다. 깊은 산의 막다른 곳과 깎아지른 듯한 벼랑 가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다가 이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자도 이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는 사람이 끌고 물에서는 때로 엮어 그 행렬이 이어져서 그치지 않았는데, 한 번이라도 늦추는 자가 있으면 매를 때리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영세한 백성은 지극히 어리석어서 더위 속의 장마나 흑심한 추위도 오히려 원망하는데, 더구나 이 같은 토목(土木)의 노고(勞苦)이겠습니까? 화기(和氣)를 손상하여 기쁨을 이르게 함이 여기에서 나왔을지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재앙을 만나자 두려워하시어 그 죄를 자신의 잘못으로 돌리시어, 경전(正殿)을 피하시고 반찬을 감하시는 등 용납할 곳이 없는 것같이 하시고 백성들이 곤궁하여 스스로 생존할 수 없음을 염려하면 그 공진(供進)을 덜어 주시며, 백성들이 억울하게 굴종하여 스스로 피지 못함을 염려하면 그 허물을 벗겨주시어, 무릇 백성을 넉넉하게 해 주는 명령과 아랫사람을 구제하는 정사를 거행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그 재앙을 없애려는 방법은 다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漢)나라 화제(和帝)가 낙양(洛陽)에 거동하여 억울한 죄수를 다스리니, 그 행차가 채 돌아오지도 않아서 하늘이 큰비를 내렸으며, 송(宋)나라 인종(仁宗)은 친히 거동하여 비를 빌었더니 얼마 안되어 비가 왔습니다. 화제와 인종 같은 임금에 한 번만 착한 마음을 가져도 그 정성이 족히 하늘에 통하여 현묘(玄妙)한 은택(恩澤)이 즉시 이르렀으니, 하늘과 사람 사이의 감응의 신묘함은 이같이 소소(昭昭)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를 바라는 정성을 비록 탕(湯)임금의 육책(六責)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전하에게 응하는 바는 도리어 두 임금에도 미치지 못함은 어찌 된 것이겠습니까? 이는 아마도 근심하고 삼가고 두려워하여 재변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심은 오직 전하 한 몸일 뿐이고, 현재의 이른바 공경 대부(公卿大夫)로부터 백료 서사(百僚庶士)에 이르기까지 봉공(奉公)하는 자는 적고 직책을 게을리 하는 자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고서 좋은 반응이 이르기를 바라는 것은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사해(四海)의 넓은 땅과 만기(萬機)의 번거로운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 능히 혼자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관직을 설치하고 직임(職任)을 나누어서 어질고 능한 이를 거기에 두는 것입

니다. 관직에 비록 크고 작음이 있고 직임(職任)에 비록 높고 낮음이 있으나, 천록(天祿)을 먹고 천직(天職)을 다스림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승전(乘田)·위리(委吏)는 가장 작고 가장 낮은 벼슬인데도 반드시 '회계는 맞아야 하고, 소와 양은 잘 자라야 한다.' 고 한 것은 그 천록(天祿)을 먹으면서 천직을 게을리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요즘 관직을 태만히 하는 것은 이루 다 논할 수 없으나, 한두 가지만을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한성부(漢城府)와 장례원(掌隸院)은 승사를 다스려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는 것인데도 그 낭관(郎官)이 된 자가 혹 그 책임자가 못 되어서 사리에 어두워 옳고 그름을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세월을 천연(遷延) 시키며 앉아서 벼슬이 옮겨지기를 기다리는 자도 있습니다. 사간원(司諫院)은 간쟁(諫諍)을 맡은 곳인데도 혹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자가 있으며, 익위사(翊衛司)는 저위(儲位)를 호위하는 곳인데도 용렬하고 무식한 자가 거의 많습니다. 안으로 조정의 반열에 있는 자가 이미 이러한데, 먼 지방 먼 고을에서 자목(字牧)의 책임을 맡은 자가 어찌 재물을 탐하여 가혹하게 거두어들여서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자가 없겠으며, 어찌 주방(廚房)과 역전(驛傳)을 성대히 꾸며서 과객(過客)의 칭예(稱譽)를 구하는 자가 없겠으며, 어찌 권귀(權貴)와 교통하여 뇌물을 주는 자가 없겠으며, 어찌 나약하고 무능하여 일을 간활(奸猾)한 아전에게 맡기는 자가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정사를 공평하게 하거나 옥송(獄訟)이 잘 다스려지지 못하여 전리(田里)에서는 근심하여 탄식하는 소리가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監司)는 한 방면을 전제(專制)하고 수재(守宰)를 출척(黜陟)하는 자이니, 책임자를 얻게 되면 한 방면이 그 혜택을 받고 책임자를 얻지 못하면 한 방면이 그 해독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대간(大諫)으로 하여금 책임자를 천거하게 하는 것은 그 인선(人選)을 중히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지금 천거도 하지 않고 전주(銓注)도 거치지 않고서 출척의 권한을 불학 무식(不學無識)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그가 어찌 능히 격탁양청(激濁揚清)하여 이익을 일으키고 폐해를 제거하여서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그 은택(恩澤)을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육조(六曹)는 곧 주(周) 나라의 육경(六

卿)과 같은 것인데, 현재 이 관직에 있는 자가 혹은 의술로써 혹은 척리(戚里)로서 보잘것없는 용렬한 무리들이 마구 섞여 나와 당치도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인망(人望)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가지고 사민(四民)의 위에 있으면서 지리(地利)를 알맞게 하고자 한 들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의정부는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곳입니다. 여기에 있는 자는 공(公)도 있고 고(孤)도 있는데, 도(道)를 논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음양의 변화를 조화시키는 것은 공의 직책이고, 공을 도와 교화(教化)를 널리 퍼서 천지의 도를 밝히는 것은 고의 직책입니다. 그 직책에 있는 자는 마땅히 나라만을 생각하고 집은 잊으며 공만을 생각하고 사(私)를 잊어서 곤직(袞職)²⁸이 비게 되면 보충할 도리를 생각하고, 음양이 고르지 않으면 조화시킬 것을 생각하며, 현명한 인재가 쓰여지지 않았으면 등용할 것을 생각하고, 간사한 자가 물러나지 아니하였으면 이를 물리칠 것을 생각하므로, 밤낮으로 자기 몸은 돌아보지 않고 그 책임에 충실하기에도 여념이 없어야 할 것인데, 어느 여가에 재산을 널리 경영하여 처자를 위한 계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공의자(公儀子)가 노(魯)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적에 가부(家婦)를 내어보내고 채소밭의 아욱을 뽑아버렸으니, 이는 백성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지 않으려는 것이었고, 왕융(王戎)이 진(晉)나라의 재상이 되었을 적에는 아주(牙籌)를 가지고 오얏의 씨를 뚫었으니, 이는 백성의 것을 빼앗아 이익을 독차지하려는 것입니다. 후세(後世)에서 공의자(公儀子)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공경하여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고, 왕융의 이름을 들은 사람은 추악하게 욕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재상이 된 자는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조정에서 으뜸의 지위에 있는 자와 대정(大政)을 돕고 있는 자로서 한 가지 좋은 계책이라도 진언(進言) 하여 임금의 덕(德)을 보필하였다 함을 아직 듣지 못하였고 한갓 거부(鉅富)로서 당시에 제일 이 되고 있으니, 이는 아마도 공의자가 채소밭의 아욱을 뽑은 이념(理念)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 자신이 경상(卿相)이 되고 집이 훈봉(勳封)을 누리게 되면 그 정도 이루기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옛날에 계문자(季文子)는 3대를 노(魯) 나라의 재상이 되었으니, 의당

28) 곤직(袞職): 임금을 보좌하는 3공(公)의 직책

부유(富裕) 할 수 있을 것인데 사사로이 축적을 하지 아니하여 곡식을 먹는 말(馬)이 없고 비단옷을 입는 첩이 없었습니다. 인신(人臣)으로서 진실로 공(公)을 먼저 하고 사(私)를 뒤로하며 재산을 경영하지 않는다면 비록 지극히 귀한 경상(卿相)의 지위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단연코 스스로 부유해질 리는 없는 것입니다.

신 등은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눈먼 자의 말을 굽어 채택하셔서, 그 현부(賢否)를 살핀 다음 진퇴(進退)시키어 천견(天譴)에 답하신다면 더할 수 없는 다행이겠습니다. 신 등은 배움이 능히 의리(義理)의 근원을 찾아서 성덕(聖德)을 비보(裨補) 하지 못하였고, 또 치란(治亂)의 자취를 강구하여 고문(顧問)에 대비하지 못하였으니, 그 직임을 다하지 못함이 신 등과 같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외람되게 구설(口舌)로 남의 과실을 말하니, 이는 마음속에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다시 가려 신 등의 직임을 대신하게 하신다면, 성덕에 반드시 비익(裨益)됨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의정부와 영돈녕(領敦寧) 이상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원전) 11집 32면

성종 16년 1485년10월15일(壬辰)

방죽 쌓는 역사의 참뜻을 백성들에게 효유하라고 전교하다

모든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이제 하유(下諭)하듯이 내(川)를 막고 방죽을 쌓는 역사(役事)는 이로운 혜택을 받게 되는 백성은 진실로 그 원하는 바이겠으나, 다만 혹 다른 고을에 거주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도 부역만 하는 자가 어찌 국가의 대계(大計)라고 생각해서 기꺼이 하겠는가? 내가 이러한 흉년을 당하여 잡자기 공역(功役)을 일으키게 되면 반드시 원망이 생긴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가물어 흉년이 드는 재앙을 미리 헤아릴 수 없으니 어찌 뒷날에 금년보다 더 심

함이 없다는 것을 알겠는가? 공역은 무리하게 힘에 겹도록 하지 말고 관개(灌漑)하는 이득을 얻을 만한 곳은 진실로 마땅히 도모하여서 후일의 가뭄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니, 경(卿)들은 모두 이 뜻을 수령(守令)에게 전파하여 모든 고을 백성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알게 하라.”

하였다.

〈원전〉 11집 62면

성종 16년 1485년10월18일(乙未)

흉년을 만난 백성을 진구하는데 노력하라고 하사하다

경기(京畿)·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영안도(永安道)의 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기를,

“도내 여러 고을의 백성이 이 흉년을 만나서 굶어 죽을까 염려되니, 경(卿)은 마음을 다하여 진구(賑救)하고,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는 숨기지 말고 아뢰어라.”

하였다.

〈원전〉 11집 63면

성종 17년 1486년4월24일(己亥)

관에서 지원하여 시집가지 못한 사람을 혼인시키라고 하사하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듣건대, 사족(士族)의 딸로서 혹은 부모가 모두 죽었거나 혹은 생계가 빈곤하여 나이가 장성하였어도 시집을 가지 못한 자가 많다고 하니, 화기(和氣)를 상(傷)하고 재화(災禍)를 부르는 것이 반드시 이런 데에서 연유되

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경(卿)은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도내의 나이
장성하고도 시집가지 못한 지는 자재(資材)를 공급해 주어 혼인하도록 해서
시기를 잃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다.

<원전> 11집 122면

성종 17년 1486년7월26일(己巳)

강원도관찰사 이유인이 도내의 장마 피해상황을 치계하다

강원도관찰사 이유인(李有仁)이 치계(馳啓)하기를,

“이번 7월13일에 도내에 큰비가 내려서, 춘천부(春川府)의 민가(民家) 3호
와 인제현(麟蹄縣)의 11호와 정선군(旌善郡)의 38호와 고성군(高城郡)의 29
호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묻혔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많습니다.”

하니, 명(命)하여 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여 그 집을 돌보게 하였다.

<원전> 11집 136면

성종 18년 1487년8월6일(癸酉)

양로에 정성을 다할 것을 유시하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諭示)하기를,

“양로(養老)는 나이 많은 이를 존대하고 치덕(齒德)²⁹⁾있는 이를 귀하게 여
기는 일이기 때문에 봄과 가을에 잔치를 베풀어 기로(耆老)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이 영갑(命甲)³⁰⁾에 실려 있다. 요사이 듣건대, 도내의 수령들이 태만

29) 치덕(齒德): 나이도 많고 덕행도 있는 젊잖은 사람을 일컫는 말

하여 마음을 다하지 않으므로 한갓 형식이 되어 있다 하니, 내가 연로한 이를 존대하고 덕(德)있는 이를 귀하게 여기는 뜻이 전혀 아니다. 경(卿)은 돈독하게 수령들을 타일러 이 뒤로는 이와 같이 말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11집 239면

성종 20년 1489년2월8일(丙申)

강원도 고성 등에서 지진이 발생하다

강원도 고성(高城)·간성(杆城)·삼척(三陟)·인제(麟蹄)·강릉(江陵)에서 지진(地震)이 있었다.

〈원전〉 11집 442면

성종 20년 1489년5월10일(丁卯)

효자·열부를 치려하도록 하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기를,

“효자(孝子)와 열부(烈婦)가 간혹 미천한 어리석은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대개 상도(常道)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민멸(泯滅)되지 않았기 때문이니, 한번이라도 격발(激發)시키는 일이 있으면 착한 마음이 즉시 싹틀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사람이 아름답게 여겨 권장하면 그것을 보고 감동하여 흥기(興起)하는 기미가 스스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근자에 도성에 계산(戒山)이란 자가 넓적다리의 살을 베어 어머니께 먹이자 어머니의 병이 즉시 나았다고 유사(有司)가 사실을 갖추어 아뢴 일이 있었다. 계산이란 자는 일개 어리석은 백성인데도 양심이 민멸(泯滅)되지 않아 고통을 참고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

30) 영갑(令甲): 법령(法令)

였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기어 즉시 포장(褒獎)하는 은전을 베풀었다. 백성을 교화(教化)하여 아름다운 습속(習俗)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이것보다 더 절실한 방법이 없으니, 효자와 열부를 널리 몰어 치계(馳啓)하라.”

하였다.

〈원전〉 11집 472면

성종 20년 1489년7월4일(庚申)

환과를 돌보고 나이 든 처녀에게 자장을 주도록 한 법을 밝혀 시행할 것을 명하다

각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기를,

“환과(鰥寡)를 돌보고 나이 든 처녀에게 자장(資裝)을 주는 법은 <대전(大典)>에 실려 있을 뿐, 받들어 거행하는 실속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제부터 더욱 밝혀서 거행하라.”

하였다.

〈원전〉 11집 499면

성종 20년 1489년12월27일(庚戌)

강원도 안협·인제·영월 등지 수령의 불법을 아뢰다

주서(注書) 강혼(姜渾)이 강원도에서 돌아와서 복명(復命)하고, 인하여 안협(安峽)·흡곡(歙谷)·영월(寧越)·평해(平海)·인제(麟蹄)·울진(蔚珍)·원주(原州) 간성(杆城) 등 고을 수령의 불법한 일을 아뢰니, 전교(傳敎)하기를,

“사헌부(司憲府)로 하여금 국문(鞫問)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원전〉 11집 556면

성종 22년 1491년3월29일(乙巳)

양맥을 저축하는데 힘쓸 것을 하사하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기를,

“지금 비록 양맥(兩麥)이 익으려 하지만 가을의 흉풍(凶豊)은 미리 알 수 없다. 그런데 백성들은 멀리 앞날을 염려하지 않고 무절제(無節制)하게 함부로 곡식을 허비하니 참으로 작은 일이 아니다. 경(卿)들은 이러한 뜻을 알고 민간(民間)에 깨닫도록 타일러서 양맥을 많이 저축하게 하고 함부로 허비하여 쓰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12집 6면

성종 22년 1491년5월26일(辛丑)

관사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다

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글을 내리기를,

“도내 여러 고을 향교(鄉校)의 제도가 옛날의 제도에 합하지 않으니, 지금부터 후에는 그 무너진 것에 따라 일체 상정제도(詳定制度)에 의거하여 수증(修葺)하도록 하고, 그것이 튼튼한 곳은 고쳐 짓지 못하게 하고, 여러 역(驛)의 관우(館宇)가 무너진 것이 너무 심한 곳은 또한 천천히 차례대로 수증(修葺)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12집 43면

성종 22년 1491년7월4일(戊寅)

복정 일정을 통지하다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 유순(柳洵)과 경기 관찰사 김제신(金楬臣)·강원도관찰사 김여석(金礪石)·충청도관찰사 홍흥(洪興)과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조숙기(曹淑沂)·전라도관찰사 김극검(金克儉)과 병마절도사 신주(辛鑄)·경상도관찰사 정승조(鄭崇祖)와 좌도병마절도사(左道兵馬節度使) 하숙부(河叔溥)와 우도병마절도사(右道兵馬節度使) 조극치(曹克治)·영안남도(永安南道) 절도사 변종인(卞宗仁)과 영안북도(永安北道)절도사 성준(成俊)에게 글을 내리기를,

“무기를 창고에 넣어 두고 학문을 닦아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것은 비록 제왕(帝王)의 성덕(聖德)이기는 하지만, 포악(暴惡)을 금지시키고 난당(亂黨)을 제거하는 것은 성인(聖人)의 의병(義兵)이니 지난 시대의 계책을 상고한다면 간책(簡策)에서 증거 할 수가 있다. 만형(蠻荊)이 원수가 되니 주(周)나라 선왕(宣王)이 채기(采芑)에서 싸움을 하였고, 힐리(詰利)가 업신여기니 당(唐)나라 태종(太宗)이 막북(漠北)에서 토벌(討伐)하여 해치웠다. 우리 조종(祖宗)께서도 또한 무공(武功)을 힘쓰셨으니, 기해년에는 동방(東方)정벌이 있었고, 계축년에는 서방(西方) 정벌이 있었으며, 경진년에도 정벌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무력을 남용한 것이었겠는가? 모두가 백성에게 해독이 되고 사직(社稷)에 근심이 되므로 마지못해서 한 것이다. 내가 기업(基業)을 계승함으로부터 문교(文教)를 크게 밝혔으니, 어찌 군사를 일으키고 군대를 동원하여 오로지 무위(武威)만을 과시(誇示)하려고 하겠는가? 교린(交隣)하고 사대(事大)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오랑캐가 우리 국경(國境)에 인접해 있는 것에 있어서도 피차(彼此)의 차별이 없이 은혜와 신의로써 무마(撫摩)했는데도 도리어 이 북쪽 오랑캐는 악한 일을 쌓아서 은혜를 저버리고서 지난해에 우리의 무이보(撫夷堡)를 침범하였다. 그러나 좀도둑은 대적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해서 내버려두고 문죄(問罪)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또 조산보(造山堡)를 침범하여 우리의 진장(鎭將)을 살해하고, 우리의 백성을 죽이고 우리의 가축을 빼앗아 갔다. 그러므로 변성(邊城)의 사람들이 밤낮으로 이를 갈면서 모두가 한 번 군사를 일으켜 나라의 위광(威光)을 잠시 보이기를 생각하고 있으니, 내가 생각하건대, 이같이 하는데도 토벌하지 않는다면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당당한 군대의 위세로써 어찌 보잘것없는 오랑캐에게 굴욕을 당하고만 있겠는

가? 마땅히 죄를 묻는 군대를 일으켜 범을 범한 자에게 대한 형벌을 빨리 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허종(許琮)을 도원수(都元帥)로 삼고, 성준(成俊)과 이계동(李季叟)을 부원수(副元帥)로 삼아, 금년 10월에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바로 그 굴혈(掘穴)을 공격하여 무찔러 없애버리고야 말겠다.

지금 병부(兵符)를 보내니, 함해 조사해서 경기(京畿)의 남양·여주·이천·지평·양근·가평·영평·포천·양주·광주·과천·금천·죽산·양지·마전·연천·인천 등의 고을 군사는 9월 초 2일에 길을 떠나서 같은 달 24일에 길성(吉城)에 도착하도록 하고, 개성부(開城府)의 군사는 9월 초 3일에 길을 떠나서 같은 달 24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고,

충청도의 서천·임천·한산·홍산·은진·이산(尼山)·영산·부여·석성·진잠·정산·남포·태안·서산·면천·당진·이산·평택·직산·천안·신창·전의·목천·보령·결성·홍주·대흥·덕산·예산·해미(海美)·온양 등의 고을 군사는 8월 23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3일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고, 공주·회덕·황간·영동(永同)·청산·옥천·연기·청주·문의·연풍·괴산·청안·보은·회인·진천 등의 고을 군사는 8월 20일 길을 떠나서 9월 22일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고, 단양·제천·영춘·청풍·충주·음성 등의 고을 군사는 8월 22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3일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고,

강원도의 원주·영월·평창·정선·횡성·춘천·인제(麟蹄)·낭천·홍천·김화·이천(伊川)·양구·회양·금성·안협·철원·평강 등의 고을 군사는 9월 초 8일 길을 떠나서 같은 달 25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고, 평해·울진·삼척·강릉·양양·간성·고성(高城)·통천·흡곡 등의 고을 군사는 9월 초 4일에 길을 떠나서 같은 달 21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고,

전라도의 영안·무안·함평·진원·장성·동북·회순·능성·남평·광산·담양·순창·창평·옥과 등의 고을 군사는 8월 12일 길을 떠나서 9월 18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고, 무주·운봉·장수·진안·용담·금산·진산·고산·남원·임실·구례·곡성 등의 고을 군사는 8월 초 9일에 길을 떠나서 9월 18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고, 무장·홍덕·고부·진주·여산·영광·고창·정읍·부안·김제·만경·옥구·임피·함열·용안·익산·태인·금구 등의 고을 군사는 8월 14일에 길을 떠나서 9월 19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고,

경상도의 함양·산음·단성·안음·진주·거창·합천·삼가·초계·의령·지례·함안·함창·상주·문경·창원·칠원·영산·창녕·현풍·고령·성주·개령·금산·김해·선산·용궁 등의 군사는 8월 15일에 길을 떠나서 9월 20일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고, 경주·홍해·언양·청하·영해·영천·영덕·신녕·하양·밀양·청도·경산·인동(仁同)·대구·등의 군사는 8월 17일 길을 떠나서 9월 21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고, 안동·예안·진보·청송·풍기·영천·봉화·의성·예천·의흥·군위·비안(比安) 등의 고을 군사는 8월 16일 길을 떠나서 9월 21일에 길성에 도착하도록 하고,

영안도(永安道) 군사의 길을 떠날 일시는 도원수(都元帥) 허종(許琮)의 절도(節度)를 듣도록 하라.

아아! 군사가 이미 나기는데 명분이 있고, 군대가 마땅히 정직하매 웅장(雄壯)하게 된다. 죄인을 잡아 신문하고 오랑캐를 잡는 것이 목적이니 내 한사람이 어찌 이오로(伊吾廬)에 분심(憤心)을 풀려고 하겠는가? 말을 쉬게 하고 전쟁을 그치게 하여 변방 백성을 북방들에서 편안하게 하고자 함이다.”

하였다.

〈원전〉 12집 63면

연산군편

연산 5년 1499년9월12일(己巳)

각종 산나물은 강원도에서 올리게 하다

전교(傳敎)하기를,

“각종 산나물은 강원도에서 연속 봉진(封進)하게 하라.”
하였다.

〈원전〉 13집 376면

연산 8년 1502년5월4일(乙亥)

기우제를 지나게 하다

향(香)과 축문(祝文)을 강원도 치악산(雉岳山) 등 여러 곳에 보내어 비를 빌게 하였다.

〈원전〉 13집 490면

연산 9년 1503년5월9일(甲戌)

충청도 · 강원도 여러 고을에 우박이 내리다.

충청도 및 강원도의 인제(麟蹄) · 춘천(春川) · 원주(原州)에 우박이 내렸다.

〈원전〉 13집 561면

중종편

중종 5년 1510년1월8일(乙丑)

안윤손이 서적을 향교에 비치할 것을 청하다

강원도 관찰사 안윤손(安潤孫)이, 서적을 여러 향교(鄕校)에 비치하여 유생들로 하여금 강습에 편하도록 할 것을 청하였다. 이 때 강릉(江陵) 사람들이 학문을 좋아하여 향해(鄕解)에 참여하는 자가 펍 많으므로 청한 것이다.

〈원전〉 14집 401면

중종 5년 1510년4월16일(辛丑)

경기·충청·강원도 관찰사에게 군사를 일으켜 왜적을 치라는 교지

경기·충청·강원 세 도 관찰사에게 교서(敎書)를 내렸다.

“국가가 태평한지 거의 백 년이 되어 백성이 전쟁을 알지 못하고, 왜노(倭奴)가 악을 쌓은 것이 하루가 아니어서 스스로 신인(神人)과 끊으려 하니, 왕병(王兵)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다. 어찌 새알을 놀려 캐치기 어렵겠는가?

이에 지나간 옛일을 상고하니, 간편(簡編)에 증거할 수 있다. <시경(詩經)>에는 6월의 사(師)가 있고, <역경(易經)>에는 어구(禦寇)의 이(利)가 나타나 있다. 이것이 어찌 군사를 끝까지 쓰고 함부로 전쟁을 하여 무덕(武德)을 더럽히는 것이겠는가. 실로, 강토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고자 함이다. 준동(蠢動)하는 이 완악한 오랑캐가 우리 조종(朝宗) 때로부터 우리 경토(境土)에 이(蠱)처럼 의탁하여 우리 농상(農商)을 입고 먹었는데, 처음에는 투화(投化) 내항(來降)하여 우리의 무육(撫育)하는 은혜를 우러러보더니, 마침내는 만연히 창궐하여 문득 시호(豺虎)의 흉한 짓을 자행하였다. 우리민 족을 죽이고 우리 변장(邊將)을 해하였으니, 한갓 좁도독질에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득 성을 도륙(屠戮)하고 고을을 점거하여 만족함이 없기에 이르렀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내 마음이 아프다. 그러므로 용감한 군사를 일으켜서 흉악한 자를 치고자 한다. 좌의정(左議政) 유순정(柳順汀)을 도원수(都元帥)로 삼으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여 우리의 봉강(封疆)³¹⁾을 정제(整齊)하면, 아마 변방 백성들이 삶을 편안히 할 것이다. 지금 병부(兵符)를 보내어 증험(證驗)을 합하니, 경기도 내의 각 고을 군사는 4월 18일까지 충주(忠州)에 이르고, 충청도 내의 각 고을 군사는 4월 29일까지 부산(釜山)에 이르며, 강원도 내의 각 고을 군사는 5월 초 하룻날까지 안동(安東)에 도착하라. 아아! 제거하고 섬멸하여 전공(戰功)을 한 북소리에 정하고, 만모(慢侮)³²⁾도 없고 괴려(乖戾)³³⁾도 없게 하여 백성을 남쪽 변경에 편히 살게 하라. 그러므로 교시(敎示)하니 알지이다.”

〈원전〉 14집 430면

중종 7년 1512년5월14일(丁巳)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이 백성의 쌓인 불합리성을 말하다

31) 봉강(封疆): 제후(諸侯)를 봉하여 내어준 땅

32) 만모(慢侮): 교만하게 남을 업신여김

33) 괴려(乖戾): 사리에 어그러져 온당하지 않음

강원도 관찰사 고흥산(高荊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러하였다.

“신이 상고(相考)하건대 <시경>에 ‘창고를 짓고 노적을 쌓고 마른 양식을 쓴다.’ 하였고, <서경>에는 ‘네 용병(戎兵)을 다스려 복종하지 않음이 없게 한다.’ 했으니, 이 두 가지를 행하면 나라가 부요(富饒)하고 군사가 강할 것입니다. 어찌 양식이 떨어짐을 걱정하며 밖의 침입을 걱정하겠습니까? 자고로 천하와 국가를 가진 자가 다 이를 중히 여겼기 때문에, 홍범(洪範)의 팔정(八政)에는 식화(食貨)를 으뜸으로 삼았고, 주관(周官)의 설직(設職)에는 사마(司馬)로 증함을 삼았으니, 그 도를 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특별히 신에게 글을 내려 군수(軍需)와 병기(兵器)의 증함을 효유(曉諭)하시니, 그 군국(軍國)의 일을 굽어 염려하심이 지극합니다. 신이 엿드려 교유(教諭)를 받고 너무 감격한 지라 이 못난 충심을 다해 만 분의 일이라도 보답해야 하겠으나, 오래 폐지하였던 일을 갑자기 바꾸기 어려워, 신이 무슨 방법을 써야 저축을 넉넉히 하고 병기를 만들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듣건대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양식은 백성의 하늘이다.’ 하였거니와, 병(兵)은 백성에서 나오나 백성은 또한 농사일도 합니다. 이렇므로 옛날 제왕이, 군수를 충실히 하려면 농사철을 빼앗지 않아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에 힘쓰도록 하였고, 군사를 정예롭게 만들려면 태평하여도 위태함을 잊지 않아 미리 사졸(士卒)을 양성했습니다.

신이 보건대 이 도는, 근년에 흉년이 들어 공공간 모두가 어려우니 어떻게 저축을 늘릴 것이며, 군·읍이 피폐하고 백성이 궁핍하여 힘이 미치지 못하니 어떻게 병기를 수선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본 도의 병기가 수선되지 못하고 군사(軍資)가 충실하지 못한 이유를 진달한 뒤에, 각 고을의 폐단을 말씀드리겠으니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각 고을의 병적에 붙여 있는 제색원군(諸色元軍)이 겨우 2천 7백 18인데, 그 중에서 활을 당길 수 있는 군사는 별시위(別侍衛)뿐이요, 기타의 군사로 말하면 정군(正軍)은 모두 몸이 나약하고 가세(家勢) 역시 빈궁하니, 어떻게 병기를 갖추어서 변고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보인(保人)은 더욱 가난하니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병졸이 정예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거니와 관고(官庫)에 간직된 군기(軍器)까지도 태평으로 인해 녹슬어 버렸습니다. 신은 주야로 걱정하여 보수하기를 재촉하고 있으나, 어교(魚膠)³⁴⁾가 본

도의 소산이 아니라 공사간에 장만하기 어려워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영동(嶺東) 각 고을은 모두 바다에 연했으므로 만약 급한 일이 생긴다면 장차 어떻게 적을 막아내겠습니까? 또 영동은, 남쪽으로 평해군(平海郡)에서 북쪽으로 흡곡현(歙谷縣)까지 사이가 8백 53리 떨어졌으며, 그 사이에 있는 9고을에 사는 백성이 4천 8백 8호이고 전답은 5천5백52결인데, 국곡(國穀)의 금년 춘등(春等)의 회계에 실린 것은, 군자별창(軍資別倉)에 현재 있는 쌀이 모두 1만 7천 3백 55석이고, 민간에 빌려준 것이 1만 3천 2백 85석 10두이며, 현재 창고에 있는 피잡곡(皮雜穀)이 모두 2만 3천 3백 82석이고 민간에 빌려준 것이 4만 6천 9백 11석 5두입니다.

영서(嶺西)는, 남쪽으로 정선군(旌善郡)에서 북으로 이천현(伊川縣)까지 역시 서로 8백 26리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 17고을에 사는 백성은 9천 4백 12호이고, 전답은 1만 6천 3백 32결인데, 국곡(國穀)은 현재 양창(兩倉)에 있는 쌀이 모두 1만 5천 58석이고, 빌려준 것이 6천 7백 89석 8두이며, 현재 창고에 있는 피잡곡(皮雜穀)은 모두 5만 4천 56석이고 흔어져 있는 것이 5만 3천 3백 14석 6두입니다.

토지가 넓지 않은 것은 아닌데 민호(民戶)와 전결(田結)이 이와 같이 적으며, 창고에 남은 곡식 숫자가 날로 감축되고 떠돌아다니는 백성은 더욱 불어나니, 백성을 구제하고 군사 먹일 양식을 미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에는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으므로 일시에 죄다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영서 각 고을은, 비와 가뭄이 때맞추지는 못하였으나 수전(水田)과 한전(旱田)이 반반이므로 아주 흉년은 아닙니다만, 영동 각 고을은 수전(水田)이 비록 많으나 토민(土民)이 수종(水種)을 힘쓰지 않고 묘종(苗種)에 전력하는데, 한재(旱災)·수재(水災)·풍재(風災)가 때없이 발작하여 이묘(移苗)의 시기를 잃으면 곡식이 여물지 않으므로, 풍년이 한 번이면 흉년은 열 번이나 되어, 국곡(國穀)이 창고에는 적고 백성에게 빌려준 것이 많습니다. 구황(救荒)할 방책을 조금도 늦출 수 없으나, 군수(軍需)의 비축은 영동이 가장 시급한데, 하물며 왜적이 이미 영남을 어지럽혔으니 어느 때 영동에 도발

34) 어교(魚膠): 부레풀. 민어의 부레를 끓여서 만든 풀로 부착력이 매우 강해서 사기나 목기(木器)를 붙이는데 많이 사용함

할지 모르는데 이겠습니까. 조치의 편부를 고로(古老)와 수군(水軍)에게 물으니, 그 둘의 말이 '40년 전 양양의 낙산사(洛山寺)와 고성(古城)의 유점사(楡岾寺)를 중창할 때, 중·소 맹선(中小孟船)으로 경상도의 미면(米麵)과 철물을 운반하여 쓰던 일이 생각난다' 고 합니다. 옛날 수로(水路)가 곧 지금의 수로인데 어찌 옛날에는 통하고 지금은 통하지 못하겠습니까. 신은 바라건대, 경상도 미곡 2만여 석을 특별으로 조운(漕運)하여 본 도 연해 아홉 고을에 분치(分置)하기를, 황해도(黃海道)의 미곡을 평안도 적로(賊路)의 각 고을에 운반하던 예와 같이하여 불우(不虞)에 대비케 하소서.

도 물산(物産)은 성쇠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는 많이 나는 것이 여기에는 적게 나기도 하며, 여기에는 적게 나는 것이 저기에는 많이 나기도 하는 것인데, 각 사(司)에 바치는 약재(藥材) 및 잡물(雜物)이 혹은 본 읍의 소산(小産)이 아닌 것이 공안(貢案)에 실렸으니, 이 어찌 상정(詳定)할 때 소산 여부를 상고하지 않고 분정(分定)하였겠습니까 마는 반드시 수시로 성쇠가 있어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비록 흥왕(興旺)하였으나 지금은 흥왕하지 못함에도 그대로 정하므로 백성이 사서 바치게 되니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본 도 각 읍의 지금 나는 물건을 다시 조사해 고쳐 정하고 바치기 편리하게 하여 그 폐단을 더소서.

또 때에 맞추어 산림을 벌채하면 그 재목을 다 쓸 수 없는 것인데, 폐조(廢朝) 때에 수변(水邊) 근처에 있는 쓸만한 재목은 다 작벌(斫伐)하여 하나도 남지 않았으므로, 지금 공안(貢案)에 실린 재목과 판자를 구해낼 만한 곳이 없거니와, 비록 궁벽한 골짜기에서 얻는다 해도 인력이 모자라는 자는 쉽게 운반할 수 없기 때문에 경강(京江)에서 사서 바치므로 그 폐가 적지 않거늘, 하물며 귀후서(歸厚署)가 사들일 가포(價布)를 백성에게 나눠주고 판자 바치기를 독촉하는데 이겠습니까. 또 강이 먼 궁벽한 골짜기에서의 벌채는 어려우므로, 혹 경강에서 무역해 바치는데 그 관가(官價)에 비해 10배나 넘으니, 이름은 무역이라 하나 백성은 실로 해를 받습니다. 재목은 궁실(宮室)을 짓는 것이라 폐할 수 없고, 관곽(棺槨)은 죽은 이를 장례하는 것이라 역시 폐할 수 없습니다. 무릇 백성의 죽음에 저마다 그 판자를 얻어 해골을 묻는 것은 은택(仁)이 지극히 흠족합니다만, 죽은 자를 장사 지낼 수 있으되 산 자가 먼저

병드니 이는 산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죽은 사람 대우하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재물을 바치는 것은 그만둘 수 없지만 판자를 무역하는 폐단은 없애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구례에 의하여 귀후서(歸厚署)의 노속(奴屬)에게 값을 주어 재물이 있는 곳에 보내어 민원(民願)에 따라 화매(和賣)³⁵⁾하여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둘 다 온전하게 하여 그 폐를 더소서.

또 인물(人物)은 성쇠가 있으므로 전에 성하던 곳이 뒤에 쇠하기도 하고 전에 쇠하던 곳이 뒤에 성하기도 합니다. 각 읍에서 기인(其人)³⁶⁾을 분정(分定)할 처음에 이 읍의 향리(鄉吏)가 전성할 때였으면 많이 정하고, 저 읍이 쇠잔할 때였으면 적게 정하였는데, 그 뒤에 전성함이 변하여 쇠잔해지고 쇠잔함이 변하여 전성해졌는데도, 기인(其人)은 전에 정한 수에 의하기 때문에, 매년 다달이 정하여 보낼 때 남아 있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도망친 서리(胥吏)를 찾아내어 채웁니다. 이 때문에 신역(身役)을 꺾(闕)하면 그 사(司)의 하복(下僕)으로 대역하는데 역가(役價)가 매우 많고 남아 있는 자도 궁하여 스스로 장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간 자의 역가를 아울러 일가에게서 거두고 일가가 없으면 절린(切隣)에게서 거두므로, 일가와 절린(切隣)도 지탱하기가 어려워 역시 도망잡니다. 기인(其人) 때문에 평민도 그 해를 입으니 폐단을 장차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인의 정액(定額)을 줄이기는 어렵겠지만 신은 바라건대 노비(奴婢)를 추쇄(推刷)하는 예와 같이하여 식년(式年)을 정하고 각 도 각 읍의 현재 신역하는 향리의 다소(多少)를 자세히 점고(點考)한 다음 이리저리 옮겨 끌고루 배정하여 그 폐를 더소서.

또 선상(選上)한 노비와 각 사의 조례(阜隸)³⁷⁾, 나장(羅將)³⁸⁾과 사복시(司僕寺)의 제원(諸員)은, 스스로 번(番)을 서지 않고 죄다 경인(京人)이 대립(代立)하되 그 값을 모두 거두는데, 월리(月利)로 하면 번가(番價) 1필(匹)에 1필을 더 거두므로, 궁하여 스스로 장만해 내지 못하면 그 일가와 절린(切隣)에게서 거두기까지 하니, 일가와 절린도 궁하여 도망쳐 열 집에 아홉이

35) 화매(和賣): 사고파는 사람 모두가 불만 없이 거래되는 행위

36) 기인(其人): 지방 관리의 자제 중에 서울의 각사(各司)에 뽑히어 와 불모로 있던 사람

37) 조례(阜隸): 관청에서 천역(賤役)종사하던 관노비(官奴婢)

38) 나장(羅將): 죄인을 심문할 때 매를 때리는 일과, 귀양 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을 맡아보던 천역(賤役)

비어 마을이 쓸쓸합니다. 그 함부로 거두는 법을 거듭 밝혀 통질히 징계하였으되, 오히려 기탄 없이 하다가 그 폐가 이런 극단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다시 별다른 과조(科條)를 세운 다음에 법으로 엄히 다스려 함부로 거두지 못하게 하소서. 또 해마다 원일(元日)³⁹⁾에 제 읍의 수리(首吏)가 쉼 문 밖에 나아가 숙배(肅拜)하는 것은 옛부터 내려오는 예절이거니와, 다만 속현(屬縣)도 다 본 읍의 예에 의해 올려보내니, 그 부 읍의 주민은 많아도 10여 호에 지나지 않고 향리 역시 3~4인에 지나지 않으며, 몹시 잔폐한 고을은 1호에 백성도 없고 1인의 아전도 없는데도 고을이라는 명목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본 읍의 아전으로 숫자를 채워 보내며, 예부(禮部)에 들이는 지지(紙地)와 수색(酬索)하는 물건을 모두 백성에게 받아내어 마련하므로 그 폐가 적지 않습니다. 신은 바라건대, 본 도 제 읍의 속현은 수참(隨參)하지 말도록 하여 그 폐를 더소서.

또 흠곡(歙谷)은 땅이 험착하고 백성이 적어 소복(蘇復)시킬 계획을 베풀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고려 때 비곡현(比谷縣)이라 불렀고, 신라 때는 습계(習溪)로 고쳐 금양군(金壤郡)에 붙였고, 고려 때는 지금 이름으로 고쳐 그대로 금양군에 붙였다가 고종(高宗) 때에 현령(縣令)을 두었는데, 본 조(朝)가 그대로 인습(因襲)하였으니, 금양군은 곧 지금의 통천(通川)입니다. 시대에 따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것은 고금의 통한 이치라 이 고을이 군현(郡縣)에 들기는 하였으나, 너무 잔폐하여 모든 공물 및 진상(進上)을 다른 곳에서 마련해다 바치니, 그 형세를 보건대 40년이 못 가서 반드시 폐기 될 것입니다. 기왕 폐기될 것이라면 백성이 다 흩어지기 전에 옛날 그대로 통천에 붙여서 양읍(兩邑)이 다 충실하게 하소서.

또 인제(麟蹄)·낭천(狼川) 양읍은 피폐하기가 흠곡과 다름없는데, 비록 고을 이름은 있으나 오히려 포실한 부락만 못합니다. 낭천은 하삼도(下三道)에서 함경으로 통행하는 노변에 있고, 인제(麟蹄)는 영동(嶺東)으로 통행하는 직로(直路)에 있어, 모두 폐치(廢置)할 수 없습니다. 춘천의 속현 기린(麒麟)은 본 부와의 거리가 1백여 리인데, 낭천·양구·인제 세 고을이 가로막아서 본 부(府)와 지경이 서로 연결되지 않고 인제(麟蹄)와 가장 가까우

39) 원일(元日): 경월 초하루. 설날.

니, 이를 만약 인제(麟蹄)에 붙인다면 인제 사람은 소복될 수 있으나, 춘천은 중앙에 위치하여 사객(使客)이 빈번하되 본부의 사방경이 그렇게 넓지 못하니, 만약 기린을 떼어 내면 몇 해 안 가서 역시 잔읍(殘邑)이 될 것이니, 어찌 동쪽을 떼어서 서쪽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낭천은 토지가 메마르지만 약간 경작할 만한 땅이 있으니, 만약 하삼도의 입거인(入居人) 백여 호를 뽑아다가 채운다면 낭천 백성도 소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안정된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요, 또한 경상(慶尙)·전라(全羅) 양도는 땅이 해도(海島)에 가까운지라, 도이(島夷)가 해를 깨치고 있어 지금 물가에 사는 백성을 이 고장에 뽑아들일 수 없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양구현(楊口縣)은, 고려 때는 양구(楊溝)라 불러 춘주(春州)에 부속했다가 뒤에 지금 이름으로 고치고 낭천감무(狼川監務)가 겸해 다스렸으니, 이는 옛날 낭천속현으로 사객이 왕래하는 요로(要路)가 아닙니다. 이 고을을 혁파하여 둘로 나누어 서남은 인제(麟蹄)에 붙이고 동북은 낭천(狼川)에 붙이면 양 읍은 폐지되기까지에 이르지는 않겠으나, 군현(郡縣)의 연혁(沿革)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니 어찌 소신의 아뢰 바르 건치(建置)를 경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옆드러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널리 중의(衆意)를 모으셔서 신충(宸衷)⁴⁰으로 재결하소서. 백성의 소원은 무궁하나 신의 진달(進達)은 여기에서 그칩니다. 그러나, 폐단에는 경중이 있고 구제(救濟)에는 쉽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상에 긴요한 방물(方物)을 신자로서 경감하여 주기를 호소하기는 어려운 것이요, 재목은 국용에 긴절(緊切)한 것이니 일시에 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위의 것을 덜어 아래에 보태주는 것은 어진 정사의 미루어 미칩시오. 때에 따라 알맞게 만드는 것은 성인의 용단인 것입니다. 신이 외람되어 방면(方面)을 지켜 한 도의 걱정을 나누고 있으니, 의당 하정(下情)을 상달(上達)하고 상덕(上德)을 선양해야 되는데, 귀로는 쌓인 폐단을 듣고 눈으로는 당시 어려움을 보면서도 만약 진상과 국용에 관계된다 하여 신충(宸聽)에 우러러 아뢰지 않으면, 백성의 쌓인 폐단은 구제할 때가 없을 것이고 많은 생민(生民)이 공궁에 이를 것이니, 바라건대 전하께서 신이 열거한 폐단을 조정에 수의(收議)하여, 없애지 않는 폐단이 없고 고치지 않는 병통이 없게 하시면, 참으로 역역(力役)

40) 신충(宸衷): 임금의 마음

이 줄어 민력(民力)이 넉넉해 질 것입니다. 민력이 넉넉하면 농사에 힘써 양식이 풍족할 것이요, 양식이 풍족하면 병기를 수선하여 사졸(士卒)이 강할 것이요, 사졸이 강하면 백성이 신임하고 적에게 달려갈 것이니, 어찌 군수(軍需)의 부족과 병기가 수선되지 않음을 걱정하겠습니까.”

〈원전〉 14집 575면

중종 10년 1515년2월7일(乙未)

강원도 원주 등지에 지진이 발생하다

강원도의 원주·영월·강릉·양양·정선·간성·인제(麟蹄)·황성에 지진(地震)이 있었다.

〈원전〉 15집 55면

중종 11년 1516년7월26일(乙巳)

각도의 잔읍을 열거하고 수령을 체차할 때에 가려서 보내라고 이조에 하교하다

이조(吏曹)에 하교(下敎)하기를,

“각 도의 잔읍(殘邑)의 수령은, 인물은 가리지 않고 으레 직질(職秩)이 상당한 자로 채워서 차임(差任)하므로 거의 마땅한 사람이 아니니, 고을이 더욱 잔폐(殘廢)해진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경기(京畿)의 마진(麻田)·적성(積城)·과천·연천·양지(陽智), 충청도의 연풍(延豐)·해미(海美)·경상도의 예안(禮安), 전라도의 진원(珍原)·대정(大靜)·황해도의 봉산·재령·문화·강원도의 인제(麟蹄)·낭천·금화·함경도의 삼수(三水)·고원(高原)·평안도의 영원(寧遠)·상원(詳原)·재천(价川)·자산(慈山)·순안(順安) 등 고을은 따로 부록(簿錄)을 두어, 체차(遞差)할 때에 혹 문신(文臣)·무신(武臣)이나 이임

(吏任)·음관(蔭官)⁴¹중에서 정하게 가려서 차임(差任)해 보내라.”
하였다.

〈원전〉 15집 203면

중종 11년 1516년8월20일(己巳)

강원도에 큰비가 내려 곡식을 해치다.

강원도에 큰비가 내려서 곡식을 해쳤다.

〈원전〉 15집 209면

중종 11년 1516년8월26일(乙亥)

강원도에 폭풍우가 일어 곡식이 상하다

강원도에 폭풍우가 일어 곡식이 상하였다.

〈원전〉 15집 211면

중종 14년 1519년8월18일(己卯)

강원도의 양전을 중지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호조(戶曹)가 아뢰기를,

“강원도는 농사를 그르침이 더욱 심하니 양전(量田)을 중지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15집 564면

41) 음관(蔭官):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의 혜택으로 얻은 관직. 생원(生員), 진사(進士), 유학(幼學)으로서 하는 벼슬의 통칭.

중종 15년 1520년2월11일(庚午)

역여 앵비 등의 계복을 듣다

계복(啓覆)을 들었다.

승지(承旨) 성운(成雲)이 역여(驛女) 앵비(鶯非)의 결안(決案)으로 진계(進啓)하니, 앵비가 간부(奸夫) 은금(銀金)과 함께 본 남편 박막산(朴莫山) 죽이기를 모의한 죄다. - 상이 심정(沈貞)을 돌아보면서 묻기를,

“은금은 박막산과 같은 마을에서 살았으니 비록 손수 해치더라도 그 형세를 보아 가능하였는데, 어찌 17세의 여인인 앵비를 시켜 도끼를 들고 죽이도록 교사(教唆)할 리가 있었겠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다.”

하매, 이유청(李惟淸)이 아뢰기를,

“여인이 나이는 비록 어리나 또한 장정의 힘을 지닌 자도 있는 것입니다.”

하고, 윤희인(尹希仁)은 아뢰기를,

“신이 감사(監司)가 되었을 때 순찰차 인제(麟蹄)에 이를 적마다 직접 이 일에 대하여 물어보았는데 ‘그 어머니는 베를 짜고 있고 박막산은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앵비가 도끼를 들고 죽이려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희인이 직접 물어본 일이니 반드시 거짓이 아닐 것이다. 율(律)에 따라 결단(決斷)하라.”

하였다.

〈원전〉 15집 621면

중종 15년 1520년4월11일(戊辰)

강원도에 눈이 내린 재변을 염려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강원도는 산이 깊으므로 일찍이 서리가 내리고 눈이 내리나, 지금 정양(正

陽)의 달인데 눈이 깊이가 7척이나 되고 또 날마다 서리가 내리니, 철이 차서(次序)를 잃은 듯 하다. 서리가 내리는 것도 두려워 할 만한데, 더구나 눈의 깊이가 7척임에랴! 근일의 재변이 이러하니 매우 놀랍다.”

하매, 지사(知事) 권균(權鈞)이 아뢰기를,

“재이(災異)가 일어난 까닭은 모르겠으나, 상하가 경구 수성(驚懼修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재변을 상서로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천심은 임금을 사랑하므로, 재변을 보이는 것은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경구(驚懼)⁴²⁾하여 수성(修省)할 줄 알게 하는 것이니 끝내 고치지 않으면 패망이 따를 것입니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함께 함은 본디 우연한 것이 아니므로, 일념이 빛나 가면 그 글러지는 것이 매우 크니, 잠깐 사이라도 경계를 다해야 합니다.”

하였다.

〈원전〉 15집 645면

중종 15년 1520년4월19일(丙子)

강원도의 춘천 등의 고을에 서리가 내리다

전라도의 여러 고을과 강원도의 춘천, 낭천, 인제(麟蹄) 등의 고을에 서리가 내렸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당세의 참상을 알 만하다. 이때부터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다. 아아!

〈원전〉 15집 650면

중종 15년 1520년6월9일(乙丑)

가뭄으로 농사 걱정을 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42) 경구(驚懼): 경외(敬畏). 공경하고 두려워 함.

“요즈음 날씨를 보면 가뭄이 매우 혹독한데, 이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어찌 되겠는가? 재변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니, 시독관(侍讀官)⁴³⁾ 표빙(表憑)이 아뢰기를,

“신이 남도(南道)에 있을 때에 보니, 5월의 서리가 풀을 죽이기까지 하고 4월의 추위가 겨울철 같기도 하였습니다. 진주(晉州)이하는 4월에 조금 비가 내린 뒤에 이제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백성이 경종(耕種)하지 못하여 마른논에 씨를 뿌린 곳이 있더라도 싹을 세우지 못하였으니, 올해의 농사가 참으로 염려됩니다.”

하였고, 상이 이르기를,

“해마다 실농(失農)하고 올해에 또 이러하니 백성이 무엇을 의지하여 살겠는가? 이제 천사(天使)가 올 때를 당하였으나, 지공(支供)할 물건을 백성에게 미리 배정하였다가 천사가 오지 않으면 거두어 모아서 도로 줄 수 없으니, 가을이 되거든 확실히 알아서 하려 한다.”

하매, 표빙(表憑)이 아뢰기를,

산대(山臺)의 재목을 베는 폐단이 농사에 매우 해로우니, 추성(秋成)⁴⁴⁾ 뒤에 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고, 장령(掌令) 정응린(鄭應麟)이 아뢰기를,

“황해도·강원도 등에 우박이 내렸습니다. 우박이 겨울에 내려도 여기(戾氣)라 하는데 5월이니 오죽하겠습니까. 또 날씨가 비 올 징조가 아주 없으니 상께서 진념하셔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산대(山臺) 기둥나무의 일은 과연 그렇다.”

하였다.

〈원전〉 15집 666면

43) 시독관(侍讀官): 조선시대 경연청(經筵廳)의 정 5품 벼슬. 또는 벼슬아치.

44) 추성(秋成): 곡식이 모두 여무는 늦가을

중종 16년 1521년4월24일(乙巳)

강원도 양구·인제와 평안도 박천에 우박이 내리다

강원도 양구·인제(麟蹄)에 우박이 내렸고, 평안도 박천(搏川)에도 우박이 내렸다. 화곡(禾穀)과 상마(桑麻)에 피해가 있었다.

〈원전〉 16집 27면

중종 17년 1522년4월3일(己卯)

강원도에 우박이 내리다

강원도 원주·회양·정선·평창·인제(麟蹄)에 우박이 내렸다.

〈원전〉 16집 110면

중종 19년 1524년4월4일(戊戌)

강원도 회양 등지에 눈이 내리다

강원도 회양·통천·고성(高城)·간성·금화·양양·양구·인제(麟蹄)·원주 등지에 눈이 내렸다.

〈원전〉 16집 296면

중종 21년 1526년8월11일(壬戌)

경기도·황해도·강원도에 서리가 내리다

경기도·강원도·황해도에 서리가 내렸다.

〈원전〉 16집 525면

중종 22년 1527년4월9일(乙卯)

강원도 간성·인제 등지에 폭설이 내리다

강원도 간성·인제(麟蹄) 등 고을에 1촌 3푼이나 되게 눈이 내렸다.

〈원전〉 16집 563면

중종 22년 1527년4월14일(庚申)

강원도의 일부 고을에 우박이 내리다

함경도의 덕원(德原)·안변·경기의 양주(楊州)·연천(漣川)·가평·황해도의 강음(江陰), 강원도의 간성·고성(高城)·인제(麟蹄) 등 고을에 우박이 내렸다.

〈원전〉 16집 565면

중종 24년 1529년5월14일(戊申)

강원도 강릉 등의 고을에 충해가 발생하다

강원도 강릉 등 아홉 고을에 검푸른 벌레가 발생하여 곡식에 해를 입혔다.

〈원전〉 17집 119면

중종 24년 1529년8월15일(戊寅)

경민 박씨 소생의 왕자군·옹주의 처우에 대한 인제 훈도 치역령의 상소문

인제 훈도(麟蹄訓導) 최억령(崔億齡)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골육(骨肉)의 은혜는 천성(天性)이므로 독실하게 해야지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왕빈(王嬪) 박씨(朴氏)는 일찍이 후궁의 선발에 참여하여 여러 번 응비(熊羆)의 상서로움을 꿈꿨고, 금지옥엽(金枝玉葉)의 왕자군과 왕주의 빼어난 광채는 온 나라 사람들이 우러르던 바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향곡(鄉曲)으로 내친 채 조그마한 은혜조차 없을 수 있겠습니까? 구중궁궐 깊은 곳에서 은미한 즈음에 일어난 일에 대한 시비와 득실은 초야(草野)에 묻힌 신이 감히 알 바가 아닙니다. 반드시 전하게서 심사숙고하신 뒤에 결단하셨을 것이니, 의당 추호의 오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평소 초야에 살면서 스스로 망령되어 생각하기를, 임금이 입던 것은 떨어진 바지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물며 왕빈과 왕자군이 하루인들 궁벽한 곳에 처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봉공(奉供)하는 물자는 끊이지 않는다고 하니, 이는 사사로운 은혜가 오히려 공의(公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 오륜(五倫)의 이치에 있어 은의(恩義)는 빼버릴 수는 없는 것인데, 은미하여 밝히기 어려운 일로 왕빈을 폐하고 아울러 왕자군까지 내쳤으니, 명(命)을 듣던 날 왕빈은 여자로서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게서는 치우침이 없는 은의(恩義)를 따르시어 속히 대신들의 의논을 모아 도성으로 맞아들이시고, 봉공(奉供)과 시위(施威)를 한결같이 권의(權宜)에 따르소서. 그렇게 한다면 왕빈과 왕자군의 한은 얼음 녹듯이 풀릴 것입니다. 그리고 옥사(獄事)에 대해서는 여러 번 소방(疏放)⁴⁵시키라는 명을 내리시어 적체(積滯)로 원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몇몇 무리가 고도(古道)를 끌어대어 서로 봉당(朋黨)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비(是非)가 뒤섞이고 호오(好惡)가 전도되어 조정을 변란시켰으니, 육형(肉刑)을 가하더라도 절대로 한 될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이 천지를 포용하시는 전하의 도량에 힘입어 가벼운 유찬(流竄)⁴⁶의 벌을 받았으니, 성은이 지대합니다. 온전히 살려 준 재생의 은혜는 비록 그 몸이 천 백이라도 충성을 다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인(惡人)의 위협에 놀려 다른 나머지 무리들로서 먼 변방에 유배된 자도 있고, 또 자신이 죄

45) 소방(疏放): 죄수를 너그럽게 다스리어 놓아 줌

46) 유찬(流竄): 유배(流配)

과를 범하여 역(驛)이나 포(浦)에 분속(分屬)된 자들도 있는데, 여러 차례 소방시키라는 명이 내렸지만 천은(天恩)을 입지 못하여 팔을 내 저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먼 지방에서 새로 거주하게 되었으므로 생활이 곤궁하여 전장(田庄)⁴⁷이나 재산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니, 그 심기(心氣)가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훈전(恤典)을 내리시어 자신이 죄를 범한 자와 악인의 억압에 눌려 따른 자들에 대해서도 부류를 나누도록 대신에게 명하여 방면(放免)할 만한 자는 방면시키고 양이(量移)할 만한 자는 양이시키고, 그대로 둘 자는 그대로 두소서. 그렇게 하여 죄가 무거운 자들은 그대로 남게되어 뒷날의 감계(鑑戒)가 될 수 있고, 가벼운 자들은 은총을 입어 처자와 즐기게 함으로써 다 같이 지극한 은택(恩澤)을 누리게 하소서. 그렇게 한다면 심기가 화평하게 되어 재앙도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살피소서.”

〈원전〉 17집 144면

중종 26년 1531년8월27일(戊申)

강원도 · 황해도 · 충청도의 여러 고을에 지진이 일어난다

강원도 삼척·낭천·간성·춘천·양구·인제(麟蹄)·평창·평강·안협·이천·고성(高城)·회양·철원·원주·횡성·홍천과 황해도 서흥·연안·곡산·토산·신계·배천(白川)·우봉·강음과 충청도 진천·음성(陰城)·평택 등 고을에 지진이 일어났다.

〈원전〉 17집 317면

중종 27년 1532년4월12일(庚寅)

정선 · 영월 · 인제 등지에 우박이 내리다

47) 전장(田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논과 밭

강원도의 정선·영월·평창·이천·낭천·인제(麟蹄)에 우박이 내렸다.

〈원전〉 17집 368면

중종 27년 1532년5월10일(丁巳)

강릉·춘천·인제 등지에 황충이 발생하다

강원도의 강릉·춘천·흡곡·인제(麟蹄)·통천 등 고을에 황충(蝗虫)이 발생하였다.

〈원전〉 17집 370면

중종 32년 1537년1월18일(戊戌)

헌부에서 정랑 오흠 등을 체직하도록 건의 하다

헌부(憲府)에서 아뢰기를,

“육조(六曹)는 중요한 곳이므로 낭관(郎官)을 가려 뽑지 않아서는 안 되는 데, 호조정랑(戶曹正郎) 오흠(吳滄)은 별로 현능(賢能)한 것이 없고 요즈음에 또한 잘못된 일이 있으므로 육조(六曹)의 낭관(郎官)에 맞지 않으니 교체 하소서. 시강원(侍講院) 이윤경(李潤慶)은 설서(設書)⁴⁸가 된지 겨우 10여 일 만에 갑자기 사서(司書)에 올랐으므로, 관작(官爵)이 외람됩니다. 풍기군수(豊基郡守) 황준원(黃浚源)은 인물이 교사(巧邪)하여 전에 수령으로 있을 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많았으므로, 백성을 다스리기에 맞지 않을뿐더러 서둘러 올려 서용(敍用)할 사람이 아닙니다. 무릇 처음으로 입사(入仕)하는 인원은 사람을 가릴뿐더러 그 문벌(門閥)과 세계(世系)도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되는데, 기린찰방(麒麟察訪) 고경진(高慶珍)은 본래의 혈계(血系)가 미

48) 설서(設書): 조선시대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정 7품 벼슬의 하나. 경사(經史)와 도의(道義)를 가르쳤음.

친하여 사람들이 다 친하게 여깁니다. 이는 미관(微官)이기는 하나 또한 입사하는 길인데, 전조(銓曹)⁴⁹⁾가 혼잡하게 주의(注擬)하여 사로(仕路)를 막지 않게 하였으니 매우 그럽니다. 고경진도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오흠(吳滄)은 전에 장례원 사의(掌隸院司儀)로 있을 때 과연 잘못된 일이 있었으나, 그 뒤에는 또한 다른 벼슬을 하였으니, 호조정랑을 어찌 할 수 없겠는가? 한 번 잘못된 일 때문에 가버히 버릴 수 없다. 이윤경의 일은 6품이 모자라므로 사서의 망(望)을 주의 할 때에 번번히 육조의 낭관으로 주의하고 그를 대신할 사람도 채워 차출하지 못하는 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윤경은 전에 한림(翰林)을 이미 오래 하였고 자급(資級)도 충분하므로 특별히 차출한 것이다. 황준원의 일은 첨정(僉正) 품계에는 군수가 될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익위(翊衛)로 주의하여 차출하였으니, 군수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고경진의 일은 내가 생각하건대 효경전의 집사(執事)가 되었던 충의위(忠義衛)인 듯한데, 서용(敍用)하라는 승전(承傳)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였으므로 낙점하였다.”

라고 하였다.

〈원전〉 18집 18면

중종 34년 1539년4월30일(丁卯)

강원도 관찰사의 서장

정원이 강원도 관찰사의 서장(書狀)을 입계(入啓)하니 즉시 예조(禮曹)에 내렸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강릉부사(江陵府使) 장계문(張季文) 등이 첩보(牒報)를 올렸는데, 금년 4월 18일 비가 내릴 때 대관령과 연근(連根) 등지의 산정에 눈이 내려 하루가 지

49) 전조(銓曹): 조선시대 문관(文官)의 전형을 맡아보던 이조(吏曹)와 무관(武官)을 맡아보던 병조(兵曹)를 통칭하던 말.

나도 녹지 않았고, 양양에서는 이 달 19일 설악산(雪嶽山)에 눈이 내렸고, 고성(高城)에도 같은 날 금강산 중턱에 눈이 내렸고, 철원에서는 18일 비가 내릴 때에 산정에는 눈이 내렸고, 간성과 양구에서도 같은 날 여러 산에 눈이 내렸는데, 강설량이 5~6촌이나 되었으며, 금화·인제(麟蹄)·낭천에도 같은 날 산정에 눈이 내렸는데 강설량이 3척이나 되었습니다. 보리·밀 외에 다른 곡식들은 아직 싹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부근 여러 고을에도 또한 눈이 내렸는지의 여부를 공문을 보내 조회하여 물어 보는 중입니다.”

〈원전〉 18집 287면

중종 36년 1541년3월20일(丙午)

왕자의 제택이 크다는 것. 혼인의 사치·인납 등의 일에 대하여 전교하다

조강(朝講)에 나아갔다. 상이 이르기를,

“국가의 큰일은 제사(祭祀)보다 더 중대한 것이 없다. 봉상시(奉常寺)의 관원이 삼가지 않아 그르침은 일이 있으면 대관(大官)이 당연히 규찰하여 단속할 것으로 어제 이미 의논하였다. 대저 모든 제사에 삼가지 않거나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정성과 공경스러움이 결여되어 신(神)이 흠향(歆饗)하지 않는다. 전사관(典祀官)이 준례대로 직접 제물을 받아서 정중하게 가지고 가지 않고 하인들에게 맡기고 먼저 가기도 하고 나중에 가기도 하니, 제물이 정결하지 않은 것은 필연적인 형세이다. 또 제관(祭官)이 재계(齋戒)하는 곳에서 술을 마시고 더러 쓰러지는 자가 있다고 하니, 대관이 마땅히 철저히 규찰하여 만일 조심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법사(法司)에 보고하여 다스리게 해야 한다.

가뭇의 재해가 지금처럼 심한 때가 없다. 어찌 3월 전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낸 때가 있었겠는가. 재변이 이와 같은데다 여역(癘疫)마저 한창 치성하여 사

람만 병들어 죽은 게 아니고 희생(犧牲)도 많이 죽었다. 요즈음에는 흑우(黑牛)도 병에 전염되어 죽는데 제향(祭享)하는 물건이 이러하니 매우 염려스럽다. 만약 병이 들어 죽은 숫자를 민간에게 배정하여 수를 채우게 한다면 폐단이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큰 근심거리다.

재변을 불러들인 연유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원통한 옥사(獄事)를 심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금부(禁府)에 갇혀 추문(推問)받고 있는, 베(布)를 납부해야 할 사람이 돌러가면서 서로 끌어낸 사람이 60여 명에 이르렀다. 지금 형벌을 신중히 해야 하는 때를 맞아 오랫동안 조옥(詔獄)에 가두어 체류시켜서는 안 된다. 으레 형관(刑官)이 있어 추문할 수 있기 때문에 형조(刑曹)로 넘기게 하였다. 그 가운데 죄가 있는 자는 그만이었으나 사건(事干)은 빨리 분간하여 보방(保放)도 하고 처결도 하여 원통한 것을 자세히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경외의 죄수 중 의심스러운 일로 형벌을 받은 자가 자못 많으니, 만약 의심스러운 옥사(獄事)가 있으면 서계(書啓)하게 하여 대신들과 의논해야 한다. 그리고 혼인(婚姻)과 상사(喪事)를 지나치도록 사치스럽게 하는 폐단은 상하 그 누가 모르겠는가? 다만 혼인하는 집안의 일은 상세하게 알 수 없어서 금지시킬 방법이 없으니, 죄다 금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조(禮曹)로 하여금 금지하게 하라.”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홍섬(洪暹)이 아뢰기를,

“위에서 재변을 당하여 폐단을 제거하고 간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하문(下問)하기를 좋아하니 지극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이 시종(侍從)과 대간(大諫)의 말을 들으니, 위에서는 미진한 일이 없는데 왕자(王子)의 제택(第宅)의 인납(引納)하는 폐단을 통렬하게 개혁하지 않으므로 이것이 격정스럽고 민망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 폐단을 개혁하지 않는다면 성치(聖治)에 커다란 누(累)가 될 것입니다. 즉위한지 오래 되었으니 지금은 바로 정치와 교화가 크게 일어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정사(政事)에 아직도 결점이 많으니, 신은 아마도 미진한 일이 많은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늘 글을 올려 극력 진달하려고 하였지만 천청(天聽)이 아득히 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사냥하며 즐기는 것도 없고 음악과 여색(女色)도 끊으셨는데, 오로지 이 일만은 폐단을 바로잡지 않으시니 아마도 성덕(聖德)에 누(累)가 될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제택(第宅)에 대한 일은 재목과 칸수가 모두 법도(法度)로 정해져 있다. 그동안 무엇 때문에 제도에 지나쳤는지 모르겠다. 다시 거듭 밝혀서 그것을 금하게 해야 한다. 인납(引納)⁵⁰⁾하는 일은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내(大內)에서 쓰는 데는 이런 일이 없다. 지난 번 중국 사신이 왔을 때와 제향(祭享) 때는 어쩔 수 없어서 한 것이요, 대내에서 인납하게 한 것이 아니다. 저자에서 무역하는 것은 긴급하지 않은 것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는 호조(戶曹)에서 짐작해서 할 일이다.”

하였다. 영사 윤은보(尹殷輔)가 아뢰기를,

“재목이 생산되는 각 고을에도 재목이 이미 없어서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으니, 칸수를 제도에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청도인 경우는 조령(鳥嶺)을 넘어가서 베어 와야 하고, 강원도의 경우는 미시파(彌時坡)⁵¹⁾를 넘어가서 베어 오니, 모두 끌고서 높은 재를 넘어 운반하게 됩니다. 한 개의 나무를 운반하는 데서 생기는 폐단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목이 생산되는 각 고을의 주민들이 정치 없이 떠나버려 거의 비어 있는 성(城)이 많습니다. 만약 칸수와 재목의 척수(尺數)를 줄인다면 그러한 폐단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나무는 그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활용해야 된다.”

〈원전〉 18집 450면

중종 36년 1541년6월10일(乙丑)

강원도의 황장목을 남벌한 사람에 대해 경옥까지 잡아오지 말도록 임금부에 말하게 하다

간원(諫院)이 아뢰기를,

50) 인납(引納): 조세(租稅)나 공납(貢納)을 미리 받아드림

51) 미시파(彌時坡): 현재의 미시령

“강원도의 황장목(黃腸木)을 남벌(濫伐)한 사람을 진고(進告)한 자와 척간인(擲奸人)⁵²⁾ 등, 사건(事干)을 잡아다가 조사 할 일을 전교(傳敎)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재(旱災)가 이미 극도에 이르렀고 농사일이 한창 바쁜 시기인데 먼 지방의 궁한 백성을 경옥(京獄)까지 잡아오려면 역로(驛路)에 폐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농사일이 낭패될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힐문(詰問)할 만한 단서가 있으면 이문(移文)으로 왕래하더라도 조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고(陳告)한 사람을 붙잡아다가 추문까지 한다면 진고한 자가 도리어 그 피해를 받을 것이므로 고발을 받아 범인을 잡는 길이 이로부터 좁아질 것이니, 경옥(京獄)까지 붙잡아 오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대답하기를,

“아뢴 뜻이 지당하다. 그 일을 의금부(義禁府)에 말하라.”

하였다.

〈원전〉 18집 474면

52) 척간인(擲奸人): 난잡한 죄상이 있고 없고 를 조사하는 사람

명종편

명종 2년 1547년4월19일(庚巳)

서울·경상·강원도 등지에 우박과 눈이 내리다

서울에 우박이 내렸다. 경기의 광주(廣州)에 우뢰가 진동하고 우박이 내렸으며, 양근(楊根)에는 서리가 내렸다. 청홍도(淸洪道) 보령과 경상도 안음(安陰)·개령·성주(星州)·지례·거창·삼가(三嘉)·함양·선산(善山)에 우박이 내리고 대구에는 서리가 내렸다. 강원도 양양·설악산(雪嶽山)·고성(高城)·금강산에 눈이 내리고 정선에 우박이 내렸다. 전라도 임피·옥구·함평·영광·진안·장수(長水)에도 우박이 내렸다. 평안도 강계에도 우박이 내렸다.

〈원전〉 19집 498면

명종 2년 1547년9월10일(戊午)

각도의 환과고독을 조사하고 각별히 구휼하도록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傳敎)하였다.

“올해는 수재(水災)가 없는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내가 민망히 여기는 뜻을 팔도(八道)의 감사(監司)에게 하유(下諭)하라.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궁민(窮民)중에서도 더욱 심한 자들이니, 도사(都事)로 하여금 조사하여 치계(致啓)하라. 각 고을로 하여금 양료(養料)를 지급하여 각별히 구휼하게 하라.”

〈원전〉 19집 527면

명종 2년 1547년9월11일(己未)

팔도 관찰사에게 인정을 베포라는 하서

팔도관찰사에게 하서(下書)하였다.

“하찮은 내가 덕이 없어서 덕화(德化)가 하늘에 미치지 못하므로 하늘이 내려다보고 이에 견고(譴告)를 거듭 내리었다. 가뭄과 황충(蝗虫)으로 기근(饑饉)이 들었으니, 바야흐로 굶어 죽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며, 잇달아 홍수가 범람하니 빠져 죽지나 않을까 하는 근심이 간절하다. 불쌍한 우리 백성들이 죽은 이를 장사지내고 재해를 당한 자를 도우며 지내다가 드디어 재산을 떠내려보내고 살 곳을 잃게 되어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이 겨울 추위를 당하면 반드시 얼어죽는 자가 많을 것이다. 말이 여기에 미치니 가슴이 도려내는 듯이 아프다. 비록 편안하게 지내는 평상시라고 하더라도 인정(仁政)은 반드시 곤궁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부터 먼저 구제해야 하는 것인데, 더구나 모두 죽을 재앙에서 살아 남은 목숨에 대해 구제하는 정책을 늦출 수 있겠는가. 경(卿)은 속히 도사(都事)로 하여금 직접 조사해서 사실대로 수를 파악하여 치계(致啓)하도록 하라. 그리고 관에서는 양식을 지급하고 지성으로 돌봐 주어 얼어죽거나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 내가 그들을 물 속에 밀어 넣은 것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나의 뜻을 전하라.”

〈원전〉 19집 528면

명종 2년 1547년10월30일(丁丑)

중종·인종의 상에 복을 입은 개성의 박성림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개성유수(開城留守) 김명윤(金明胤)이 장계(狀啓)하기를,

“개성부에 사는 유생 박성림(朴成林)은 중종과 인종 두 대왕의 상(喪)에 복(服)을 입었으니 매우 가상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무지한 궁촌의 백성이 임금을 위하여 것처럼 자극히 거상(居喪)하였다니, 유언겸(兪彦謙)의 예효행으로 인제현감(麟蹄縣監)에 천서되었다에 의하여 직(職)을 제수(除授)하라.”

하였다.

〈원전〉 19집 545면

명종 3년 1548년6월24일(丁卯)

강원도에 전염병이 돌아 2백 29명이 죽다

강원도에 전염병이 돌아 죽은 사람이 2백 29명이었다.

〈원전〉 19집 600면

명종 3년 1548년10월22일(癸亥)

인제현감 유언겸의 자금을 올리고 현직에 임용토록 하다

전교(전교)하기를,

“인제현감(麟蹄縣監) 유언겸(兪彦謙)에게 한 자금을 더하여 주고 교체되어

을 때에 현직(顯職)⁵³에 초승(超陞)하라.”

하였다. 대체로 유언점은 관리가 되어 청렴하고 공평하며 백성 돌보기를 자식같이 하여 온 경내가 심복하고 온갖 폐단이 모두 바로잡아졌다. 본래 효행(孝行)으로 서용(敍用)되었는데 또 국휼(國恤)에 심상(心喪)을 행하였으므로 표창한 것이다.

〈원전〉 19집 618면

명종 4년 1549년4월30일(己巳)

경기와 강원도에 여역이 만연하여 죽은 자가 많다

경기와 강원도에 여역(癘疫)이 만연하여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원전〉 19집 636면

명종 4년 1549년8월11일(戊申)

강원도에서 사람이 압사 당한 사건에 대해 살펴볼 것을 명하다

정원에 전교(傳敎)하였다.

“근래 풍채(風災)와 수재(水災)의 피해가 외방(外方)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강원도의 서장(書狀)을 보건대, 사람이 압사(壓死)당하기까지 하였다니 어찌 이러한 일이 있단 말인가? 사람이 압사 당한 곳과 피해 입은 곳을 그도의 도사(都事)가 직접 가서 살핀 후 치제하라.”

〈원전〉 19집 656면

53) 현직(顯職): 달관(達官). 높은 관직

명종 4년 1549년10월22일(戊午)

정조의 방물을 봉진하지 말 것을 명하다

정원에 전교(傳敎)하였다.

“금년에는 재변(災變)이 잇따르는 데다가 흉년까지 겹쳐 백성들이 곤궁하니 팔도(八道)에 하유(下諭)하여 정조(正朝)의 방물(方物)을 봉진(封進)하지 말게 하라.”

〈원전〉 19집 674면

명종 6년 1551년4월2일(庚申)

실농이 심한 강원도의 감사에게 염장을 계속 대주도록 전교하다

전교(傳敎)하기를,

“강원도는 지난해 가장 심하게 실농(失農)하여 산군(山郡)의 백성이 굶어 죽는 자가 많을 것이니 감사(監事)에게 하서(下書)하여 각 고을에 신칙(申飭)하고 염장(鹽醬)을 계속 대주어서 생활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원전〉 20집 19면

명종 9년 1554년2월24일(乙未)

토목 공사를 계속할 뜻을 전교하다

전교(傳敎)하기를,

“영선(營繕)의 폐단을 경연(經筵) 석상에서 시끄럽게 아뢰고 있는데 이러한

흉년에 백성들을 토목 공사에 부역시키는 것을 나 역시 미안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지금 중지시켰다가 뒤에 다시 일으키면 이미 해놓은 일을 다시 새로 해야 하므로 중지시킬 수가 없다. 강원도의 나무를 운반하는 군인(軍人)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공부(貢賦)를 당감해 줄 것을 해조(該曹)에 이르라.”

하였다.

〈원전〉 20집 185면

명종 9년 1554년5월14일(癸丑)

강원도에 전염병이 치성하다

강원도에 전염병이 치성(熾盛)하여 죽은 자가 대략 1백여 명이었다.

〈원전〉 20집 197면

명종 9년 1554년 8월9일(丁丑)

구황을 미리 조치하도록 해조에 이르라고 정원에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傳敎)하기를,

“지금 강원도 관찰사의 서장(書狀)을 보니 수해(水害)가 지극히 참혹하다. 구황(救荒)하는 모든 일을 미리 조치하도록 해조(該曹)에 이르라.”

하였다.

〈원전〉 20집 224면

명종 10년 1555년5월25일(戊午)

밤에 화기가 있고 경기. 강원 지역에 비와 우박이 내리다

밤에 곤방(坤方)⁵⁴ · 손방(巽方)⁵⁵ · 동방(東方)이 화기(火氣)같았다. 경기(京畿) 양천(陽川)에서는 한 남자가 벼락을 맞아 죽었고, 장단(長湍)에서는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크기가 콩만 하였다. 강원도 인제(麟蹄)에는 비와 우박이 섞여 내렸는데 큰 것은 새알만 하고 작은 것은 개암만 했고, 하루가 지나도 녹지 않았다.

〈원전〉 20집 276면

명종 10년 1556년10월17일(壬寅)

정원에 실농한 이유로 방물을 면제하도록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傳敎)하기를,

“금년의 실농(失農)은 경기와 강원도가 더욱 심하고 평안도와 황해도가 그 다음이다. 그러니 오는 정사년의 방물(方物) 가운데, 황해도와 평안도는 정조(正朝)의 방물을, 경기와 강원도는 정조와 탄일(誕日)의 방물을 바치지 말게 하라.”

하였다.

〈원전〉 20집 368면

명종 17년 1562년6월11일(癸亥)

강원도에서 발생한 말레의 해에 대한 대책을 조처하라고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傳敎)하기를,

54) 곤방(坤方): 방위의 하나로 남서쪽을 말함

55) 손방(巽方): 바위의 하나로 남동쪽을 말함

“강원도에 충재(蟲災)가 심한 것 같다. - 통천·흡곡·간성·양양·삼척·인제(麟蹄)·강릉에 청흑색(靑黑色)의 벌레가 발생하여 기장·피·콩·조를 거의 다 먹어 치웠다. 양양이 더욱 심하여 논밭에는 빈 줄기만 남아 있고, 들의 잡초까지 먹었으며, 도로에 이리저리 쌓이고 흩어져 인마(人馬)가 짓밟고 다니니 그 악취가 사람의 코를 찼다. 또 집에까지 날아 들어와 방문을 뚫고 벽을 기어다니니 그 쏘는 독기가 온 몸에 가득하여 견뎌낼 수가 없었다. 근래에 연속해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반드시 자연적으로 점차 없어지겠지만,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를 널리 상고하여 재해(災害)를 없애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한 백성 구할 대책을 조치하도록 하라. 또 원주(原州) 경내에 여역(癘疫)이 크게 발생해서 일찍 죽는 백성이 많다고 하니, 따로 명의(明醫)를 보내도록 하되 약품을 가지고 가서 치료하게 하라고 예조(禮曹)에 이르라.”

하였다.

〈원전〉 20집 623면

명종 17년 1562년8월3일(乙卯)

풍재와 수재가 심한 강원도에 홀전을 거행하라고 전교하다

정원에 전교(傳敎)하기를,

“근래 각도에 풍재(風災)와 수재(水災)가 있는데 강원도가 더 심한 듯하니 홀전(恤典)을 거행할 것을 호조(戶曹)에 이르라.”

하였다.

〈원전〉 20집 626면

명종 17년 1562년12월15일(乙丑)

흉년 피해가 큰 경기·강원 등에 다음해 대전·중궁의

탄일 등에 물건을 봉진하지 말도록 하다

정원에 전교(傳敎)하기를,

“금년에 흉년이 들었는데, 경기·강원·황해도가 더욱 심하니, 내년 계해년에 대전·중궁의 탄일(誕日)과 왕세자 생신의 물선(物膳)들을 모두 봉진(封進)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20집 633면

린조편

선조 13년 1580년9월18일(乙酉)

재상 답험에 착오를 범한 수령을 파직시켰다

경기우도(京畿右道)의 양주(楊州)·삭령(朔寧), 충청좌도(忠淸左道)의 온양·청풍, 충청우도(忠淸右道) 결성(結城), 경기좌도(京畿左道) 여주, 황해도 봉산, 강원도 인제(麟蹄)의 수령을 재상 답험(災傷踏驗)의 착오로 모두 파직시켰다.

〈원전〉 21집 367면

선조 22년 1589년7월3일(戊申)

도내의 역질이 발생한 고을을 보고하다.

강원감사 유영길(柳永吉)이 서장(書狀)을 올렸다.

“도내의 역질(疫疾)이 발생하여 금화(金化)·홍천·안협(安峽)·횡성·영월·회양(淮陽)·인제(麟蹄)·양구·평해(平海)·간성 등의 고을에 앓거나 사망한 자가 속출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원전〉 21집 458면

선조 26년 1593년1월11일(丙寅)

각 도에 있는 병마의 수

답보(答報)하면서 헤아려 개진한 것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강화부(江華府)에 주차(駐箭)한 전라도 절도사 최원(崔遠)의 군사 4천 명. 경기도 순찰사 권징(權徵)의 군사 4백 명.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의 군사 3천 명. 의병장(義兵將) 우성전(禹性傳)의 군사 2천 명. 수원 부에 주차한 전라도 순찰사 권율(權慄)의 군사 4천 명. -이상은 왕경(王京)의 서쪽에 있으며 경성(京城)과의 거리는 1일 정(程)이다-

양주(楊州)에 주차한 방어사(防禦使) 고언백(高彦伯)의 군사 2천 명. 양근군(楊根郡)에 주차한 의병장 이일(李軼)의 군사 6백 명. -이상은 왕경 동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1일 정이다-

여주(驪州)에 주차한 경기 순찰사 성영(成泳)의 군사 3천 명. 안성군(安城郡)에 주차한 조방장(助防將) 홍계남(洪季男)의 군사 3백 명. -이상은 왕경에 있으며 1일 반 정이다-

충청도 직산현(稷山縣)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이욱(李沃)의 군사 2천 8백 명. 평택현(平澤縣) 등 처의 장관(將官)들이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합해서 약 3천여 명. 각 처의 의병이 각각 수백 명을 거느리고 있는데 합해서 약 5천여 명이다. -이상은 왕경 남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2~3일 정이나 4~5일 정이다-

경상좌도(慶尙左道) 안동부(安東府)에 주차한 본도 순찰사 한효순(韓孝純)의 군사 1만 명. 울산군(蔚山郡)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박진(朴晉)의 군사 2만 5천 명. 창녕현(昌寧縣)에 주차한 의병장 성안(成安)의 의병(義兵) 1천 명. 영산현(靈山縣)에 주차한 의병장 신갑(辛甲)의 군사 1천 명. 경상우도(慶尙右道) 진주(晉州)에 주차한 본도 순찰사 김성일(金誠一)의 군사 1만 5천 명. 창원부(昌原府)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김시민(金時敏)의 군사 1만 5천 명. 합천군(陝川郡)에 주차한 의병장 정인홍(鄭仁弘)의 군사 3천 명. 의령현(宜寧縣)에 주차한 의병장 곽재우(郭再祐)의 군사 2천 명. 거차연(居昌

縣)에 주차한 의병장 김면(金沔)의 군사 5천 명. -이상은 왕경의 남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7~8일 정이나 12일~13일 정이다-

전라도 순천부(順天府) 앞 바다에 주차한 본도 좌수사(左水師) 이순신(李舜臣)의 수군(水軍) 5천 명. 우수사(右水師) 이억기(李億祺)의 수군 1만 명 및 각 처에 나누어 주둔한 조비군(措備軍) 1만 명. -이상은 왕경 남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8~9일 정이나 13일~14일 정이다-

함경도 함흥부(咸興府)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성윤문(成允文)의 군사 5천 명. 경성부(鏡城府)에 주차한 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의 군사 5천 명. 안변부(安邊府)에 주차한 별장(別將) 김우고(金友皐)의 군사 1백 명. 조방장 김신원(金信元)의 군사 1백 명. -이상은 경성 북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15~16일 정이나 24~25일 정이다-

강원도 인제현(麟蹄縣)에 주차한 본도 순찰사 강신(姜紳)의 군사 2천 명이다. -왕경 동쪽에 있으며 경성과의 거리는 4일 정이다-

평안도 순안현(順安縣)에 주차한 본도 절도사 이일(李鎰)의 군사 4천 4백 명 중 사수(射手) 1천 2백 80명. 법흥사(法興寺)에 주차한 본도 좌방어사(左防禦使) 정희운(鄭希雲)의 군사 2천 명 중 사수 2백 23명. 포수(砲手) 50명. 의병장 이주(李柱)의 군사 3백 명 안에 사수 70명. 소모관(召募官) 조호익(曹好益)의 군사 3백 명. -이상은 평양부 동쪽에 있으며 본부와는 1일 정이다-

용강현(龍崗縣)에 주차한 우방어사(右防禦使) 김응서(金應瑞)의 군사 7천 명 안에 사수 7백 70명. 조방장 이사명(李思命)의 군사 1천 명 안에 사수 90명. 대동강 하류에 주차한 수군장(舟師將) 김억추(金億秋)의 군사 3백 명 안에 사수 1백 20명. -이상은 평양부 서쪽에 있으며 본부와의 거리는 1일 정이나 반일 정이다-

황해도 황주(黃州)에 주차한 본도 좌방어사(左防禦使) 이시언(李時言)의 군사 1천 8백 명. 재령군(載寧郡)에 주차한 우방어사(右防禦使) 김경로(金敬老)의 군사 3천 명. 연안부(延安府)에 주차한 본도 순찰사 이정암(李廷巖)의 군사 4천 명이다. -이상은 왕경에서 서북쪽, 평양부에서 남쪽에 있으며 왕경과의 거리는 7~8일 정이며 평양성과의 거리는 1~2일 정이나 4~5일 정인데

모두 대동강 남쪽에 잇달아 있다

위의 각 처 군마(軍馬)는 합계가 17만 2천 4백 명인데, 적의 항방과 기회에 따라 진격하므로 주둔하거나 가는 곳을 확실하게 지적 할 수 없으며 또한 군사 수효도 첨가하거나 나뉘어져서 많고 적음이 일정하지 않다.

(원전) 21집 602면

선조 26년 1593년6월5일(戊子)

왜노에게 침탈 당한 도와 침범 당하지 않은 도에 대한 상세한 기록

경략이 이자(移咨)하였는데,

“본국의 팔도 중에 어느 도 어느 읍은 모두 왜노(倭奴)가 점거하였고, 어느 도는 침범 당하였으며, 어느 도는 아직 침범 받지 않았고, 어느 곳 어느 도는 전혀 지경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을 갖추어 기록하여 자복(咨復)하도록 하십시오.”

하였는데, 회자(回咨)하기를,

“평안도 평양부성(平壤府城) 및 중화(中和)·상원(詳原) 등의 군은 모두 분탕과 점령을 당하였고, 영변·숙천·성천·정주·안주·구성·삭주·창성·의주·강계 등의 부진(府鎭)과 덕천·순천·회천·운산·가산·곽산·선천·철산·용천·위원·벽동·박천·이산·영원·자산·개천 등의 군(郡)과 증산·함흥·강서·영유·용강·삼화·순안·강동·삼등(三登)·양덕·맹산·태천·은산 등 현(縣)은 모두 적이 아직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황해도 황주·해주·서흥·평산·풍천 등 부진(府鎭)과 봉산·곡산·수안·신천·인악·재령·배천(白川) 등의 군(郡)과 신계·우봉·문화·송화·장연(長淵)·웅진·강령·은율·강음·장련(長連)·토산 등 현(縣)은 모두 분탕과 점령을 당하였고, 단지 연안부(延安府) 한 성(城)만은 수신(守臣)이 굳게 지켜 용전(勇戰) 분투하여 적의 사기가 크게 꺾인 채 도주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여주·과주·양주·수원·부평·이천·인천·장단·남양·등 부진(府鎭)과 양근·풍덕·가평·안산·삭령·안성·마전·고양 등의 군(郡), 그리고 용인·진위·영평·양천·김포·지평·포천·적성·과천·금천·통진·교하·연천·음죽·양성·양지·죽산 등 현(縣)은 모두 분탕을 겪었고 또한 점거된 일도 있었으며, 강화·교동 등의 부현(府縣)은 아직 적이 지경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강원도 원주·회양·양양·춘천·삼척·강릉·철원·등 부진(府鎭)과 통천·평해·정선·고성(高城)·간성·영월·평창·등의 군(郡)과 금성·울진·흡곡·이천·(伊川)·평강·금화·낭천·홍천·양구·횡성·인제(麟蹄)·안협 등 현(縣)은 모두 적변(賊變)을 겪었고 또한 점거도 당하였습니다.

경상도 경주·성주(星州)·안동·창원·김해·밀양·선산·대구·동래 등의 부진(府鎭)과 초계·울산·양산·청도·예천·영천·홍해·금산·함안·합천·등의 군(郡)과 경산·고성(固城)·거제·의성·사천·진해·개령·삼가·고령·의령·하양·용궁·언양·칠원·인동·문경·함창·지례·현풍·군위·비안·의흥·신령·영산·창녕·기장·웅천 등 현(縣)은 모두 분탕과 점거를 당하였고, 청송·영해·등의 부(府)와 영천·풍기·함양·등의 군(郡)과 남해·영덕·거창·봉화·하동·청하·안음·단성·예안·영일·장기·진보 등 현(縣)은 모두 적이 아직 지경에 들어오지 않았고, 단지 진주성(晉州城)에만 침범이 있었으나 본진(本鎭) 수관(首官)이 고수하여 항거하였으며, 참살(斬殺)한 것도 매우 많아 적은 마침내 패주(敗走)하였습니다.

함경도 안변·덕원·종성·경흥·등 부진(府鎭)과 문천·고원·삼수·단천·등 군(郡)과 홍원·이성(利城)·명천·등 현(縣)은 적변을 겪었고 또한 점거하였다가 물러간 곳도 있습니다.

충청도 충주·청주·등 진(鎭)과 청풍·단양·괴산·등 군(郡)과 문의·제천·회덕·연풍·음성·청안·진천·영춘·보은·영동(永同)·황간·등 현(縣)은 모두 분탕을 겪고 또한 점거 당하였던 곳도 있으며, 공주·홍주·등 진(鎭)과 임천·태안·한산·서천·면천·천안·서산·옥천·온양·등의 군(郡)과 홍산·덕산·평택·직산·정산·청양·은진·회인·진잠·연산·이산(尼山)·대흥·부여·석성·비인·남포·결성·보령·해미(海美)·당진·신창·예산·

목천·전의·연기(燕岐)·청산·아산·등 현(縣)은 적이 아직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진산·금산·등 군(郡)과 용담·무주·등 현(縣)은 모두 분탕과 노락을 겪었고, 그 외의 나주·광주·남원·장흥·순천·담양·제주·등 부진(府鎭)과 보성·익산·고부·영암·진도·순창·김제·여산·영광·낙안·등 군(郡)과 창평·임피·만경·금구·능성·광양·용안·함열·부안·함평·강진·대인·옥구·남평·홍덕·정읍·고창·무장·무안·동복·회순·홍양·해남·구례·곡성·장성·진원·운봉·임실·장수·진안·대정·정의(旌義) 등 현(縣)은 모두 적이 침입하지 않았고, 다만 전주부(全州府)만이 적이 성(城) 밑에 왔다가 수비가 완고함을 보고 침범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하였다.

〈원전〉 22집 4면

선조 28년 1595년5월8일(庚辰)

강원도에 서리가 내려 벼가 모두 말라죽다

강원도에 서리가 내려 벼가 모두 말라죽었다.

〈원전〉 22집 496면

선조 29년 1596년11월16일(戊申)

장연·청양의 현감과 배천 군수 등의 임명에 대해 이비에 전교하다

이비(吏批)⁵⁶⁾에 전교(傳敎)하기를,

56) 이비(吏批): 이조(吏曹)에서 임금에게 주청(奏請)하여 윤허(允許)를 받은 벼슬.

“장연현감(長淵縣監)은 선전관(宣傳官) 허증(許增)이 해주(海州) 사람이니 그를 시키고, 청양현감(靑陽縣監)은 본도의 군공(軍功)이 있고 힘껏 싸운 자를 찾아서 시키고, 배천군수(白川郡守)는 전일 김협(金軻)처럼 힘껏 싸운 자를 시키고, 강화부사(江華府使)는 병조참지(兵曹參知) 서성(徐省)이 재주가 있으니 그를 시키고, 인제현감(麟蹄縣監)은 본도의 군공(軍功)이 있는 자를 찾아서 시키라.”

하였다.

〈원전〉 23집 109면

선조 32년 1599년2월20일(庚午)

사간원이 시임 대간을 외방에 차임하지 말 것을 아뢰다

사간원(司諫員)이 아뢰기를,

“국가가 대간(大諫)을 설치하여 언론의 책임을 주고 결원이 생기면 즉시 차출하여 하루라도 비워두지 않는 것은 이목(耳目)의 책임이 극히 중한 것으로 진언(眞言)하는 길을 넓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니, 그 뜻이 실로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군량을 감독하여 운반하는 일로 인하여 양사(兩司)의 관원이 계속 나가서 일을 보게 하니 이는 비록 그 책임을 중하게 여기고 그 일을 급하게 여기는 뜻이기는 하지만 이미 어사(御史)로 칭호한다면 이 또한 분사(分司)의 법관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어찌 반드시 시임(時任) 대간(大諫)이라야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안팎의 사정을 헤아려 볼 때 경중이 크게 다른 데다 일을 논의할 때 인원이 적어 문견(聞見)이 넓지 않을 뿐 아니라 좌기(坐起)하고 서경(署經)하는 등의 일에 있어서도 다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이 매우 구차하니 극히 온당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시임 대간은 외방(外方)에 차임하지 마시옵소서.

전주 판관(全州判官) 기경헌(奇敬獻)은 본디 우매하고 망령된 사람으로 패려(悖戾)한 행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백성을 다스리는 직임(職任)을 줄 수 없으니 파직(罷職)하소서. 본주(本州)는 직로(直路)의 큰 관부(官

府)로서 지금처럼 중국 장수가 머물고 오기는 때에는 지공(至恭)하는 임부가 더욱 중요하니 그 후임을 각별히 골라 차임하소서. 인제현감(麟蹄縣監) 허영(許鏞)은 본디 비루하고 잔단 사람으로 탐오(貪汚)한 일을 자행합니다. 백성을 부려 인삼을 캐서 서울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뿐만 아니라 색목(色目)을 교묘히 만들어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무거우므로 이민(吏民)이 고통스럽게 여겨 흩어져서 몇 가호(家戶) 안 되는 쓸쓸한 고을이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파직하소서.”

하니, 모두 아뢴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3집 581면

선조 36년 1603년5월23일(戊寅)

춘추관에서 〈실록〉 판각에 쓸 주자에 대해 아뢰다

춘추관(春秋館)이 아뢰기를,

“교서관(校書館)에 현재 보존되어 있는 주자(鑄字) 중에서 을해자(乙亥字)⁵⁷가 수요도 꽤 넉넉하고 크지도 작지도 않아 〈실록〉을 인출하는 데 적당합니다. 그러나 글자가 부식(腐蝕)되어 흠이 많으므로 새겨서 보충하지 않는다면 일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교서관에서 요사이 책을 인출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황양목(黃楊木)이 매우 부족한 데 갑자기 준비하기가 어려우니, 황해도·평안도·강원도 등 황양목이 나는 곳에서 각각 큰 것으로 40주씩 형편에 따라 작별(斫伐)하여 시급히 올려보내도록 각도의 감사(監事)에게 하유(下諭)하심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많은 듯하니 평안도에는 시키지 않아도 무방하겠다.”

하였다.

〈원전〉 24집 484면

57) 을해자(乙亥字): 세조 1년(1455)에 주조한 구리 활자로 강희안(姜希顔)의 서체를 자본(字本)으로 하였다.

선조 36년 1603년5월7일(壬戌)

강원도에 서리와 우박이 내리다

강원도 금성(金城)에는 3월에 서리가 내리고, 인제(麟蹄)·정선(旌善)에는 4월에 우박이 내려 벼와 곡식이 모두 손상되었다. -사신은 논한다. 봄부터 여름까지 가뭄이 기승을 부려 팔도가 모두 종자를 뿌리지 못하였고, 순양(純陽)의 달인 4월에 우박이 내려 곡식을 손상하였다. 천재(天災)는 공연히 생기는 법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원전〉 24집 476면

선조 37년 1604년6월24일(癸卯)

강원도 관찰사가 관내에 재해가 심해 구황 준비를 해야함을 보고하다

강원도 관찰사 서인원(徐仁元)이 장계(狀啓)하였다.

“간성(杆城)에 흑충(黑虫)이 생겼는데 토충(土虫)보다 크고 모양이 세 잠을 잔 누에만 합니다. 이것들이 화곡(禾穀)을 갹아먹어 짝이 서지 못하게 된 데가 절반입니다. 고성(高城)에는 부종(付種)한 뒤부터 서늘한 바람에 찬비가 내려 서리가 내리는 가을처럼 쓸쓸하였습니다. 6월 3일에는 크게 뇌성 치며 비가 내렸는데, 황홍색의 비황(飛蝗)이 전답에 두루 깔려 남김없이 다 갹아먹었으므로 며칠 동안에 전야(田野)가 불타버린 땅과 같게 되니, 온 정내의 노약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강릉 이북의 양양·통천·흡곡 등지에도 굶은 비가 달을 넘기도록 내려 온갖 곡식이 손상되었고, 삼척에는 싸늘한 바람이 잇따라 불다가 혹독한 가뭄이 닥쳤으므로 모맥(麩麥)이 말라 보기도도 참담합니다. 원주·횡성·금화·회양·홍천·인제(麟蹄)·춘천·정선과 여타의 각 고을은 모두가 큰 가뭄 끝에 이런 큰비를 만나기는 했지만 전답이 이미 모두 타버려서 비가 내렸어도 추수할 가뭄이 없습니다. 올해는 큰

흉년이 들게 되었으니 구황(救荒)할 절차를 미리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원전〉 24집 622면

선조 37년 1604년10월1일(丁未)

강원도 어사 송보가 서계하였다

강원도 어사(江原道御史) 송보(宋驥)가 서계(書啓)하였다.

“철원부사(鐵原府使) 조인징(趙仁徵)은 평해군수(平海郡守)로 있을 적에 자기 아들을 본 부인인 김극성(金克愷)의 누이동생에게 장가들었는데, 본부에 체수되자 데려다가 관아에 거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횡성현감(橫城縣監) 이언좌(李彦佐)는 자신의 처형인 최영경(崔永慶)의 처를 데리고 와 있습니다. 영경이 옥중에서 억울하게 죽자 의탁할 곳이 없어서 언좌에게 얹혀있었으니, 그 정경이 눈물겹다. 그리고 전자에 국가에서 횡성현에다 영경의 제사를 지내주게 하였으니, 이렇게 본다면 조정에서 이미 허락하여 준 것이다. 그런데도 송보가 법에 의거하여 아뢰었으니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

인제현감(麟蹄縣監) 박충생(朴忠生)은 술가(率家)해서는 안 되는데도 어미를 데리고 갔으니 또한 법에 어긋납니다. 충생은 효도 때문에 파직(罷職)당했다고 할 수 있다.

통천군수(通川郡守) 한우신(韓禹臣)은 행검(行檢)이 있고 백성을 잘 다스렸으며 잘못 된 일을 하려는 마음이 없었으니 일대의 선인(善人)이라고 할 수 있다. 통천에 있을 적에 더욱 성예(聲譽)가 있었다. 전 감사(監司) 서인원(徐仁元)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서 모든 복정물(卜定物)⁵⁸⁾이 다른 고을의 배나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들 우신(禹臣)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신은 사람들의 비평을 면하기 위해 측근 신하들을 잘 섬기느라 많은 토산(土產)

58) 복정물(卜定物): 조선시대 관청에서 지방의 산물을 징수하던 일로 강제성을 띄었으며, 지정한 사물에 대하여 변동할 수 없이 반드시 실행하여야 했다.

을 허비하므로 한 번 올려보내는 물건이 거의 10여 바리나 된다고 합니다. 신이 듣기로는, 우신은 학행(學行)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의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은 모두 실상(實狀)이 없는 일인데 송보가 어디서 전해 들었는가?

평릉찰방(平陵察訪) 이현담(李玄聃)은 외람되이 어미와 처를 데리고 가서 본역(本驛)의 역졸들에게 폐단을 끼치고 있고, 춘천부사(春川府使) 신보(申葆)는 딸 하나가 있는데 관아에 데리고 와서 살고 있습니다.

양양부사(襄陽府使) 홍여성(洪汝誠)은 성심으로 정사(政事)를 하여 시끄러운 일이 전혀 없고, 회양부사(淮陽府使) 엄인술(嚴仁述)은 도임한 지 오래지 않았는데 백성 사랑하는 정사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평해군수(平海郡守) 이희성(李希聖)은 군량(軍糧)으로 쌀과 콩 각 50석과 장전(長箭)·편전(片箭) 각 50부(部)를 별도로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홍천현감(洪川縣監) 조국필(趙國弼)은 데리고 있는 식솔이 매우 간소하여 전혀 폐단을 끼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민간의 고통 가운데 자못 말 할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하교(下教)하신 것이 아니므로 감히 서계(書啓)하지 않겠습니다.”

(원전) 24집 673면

선조 37년 1604년10월10일(丙辰)

사헌부가 수령이 법을 어긴 여를 아뢰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수령이 가솔을 지나치게 데리고 가는 일은 이미 국법에 저촉되므로 위에서 특별히 어사(御史)를 파견하여 적발, 치죄(治罪) 하도록 하였으니 치적(治績)을 이유로 용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춘천부사 신보(申葆)는 성혼(成婚)한 딸을 데리고 와서 부질없이 오랫동안 관아에 머물게 하는 것이 온전치 못하다고 여겨 내보냈다고는 하나 아직도 그대로 본부의 경내에 있습니다. 그가 지나치게 데리고 가서 폐단을 끼친 죄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율(律)에 해당되는 데도 홀로 죄벌을 면하였으므로 물정이 매우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파직하소서.

인제현감(麟蹄縣監) 고응잠(高應潛)은 인물이 용렬하고 나이도 노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관원에는 합당하지 않으니 체차(遞差)시키소서. 의원감(義原監) 이역(李揆)은 성품과 행실이 패려하여 미천한 찬기(娼妓)를 간음하는 등 여염(閭閻)에 폐단을 끼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심지어 밤에 사대부(士大夫)의 집에 돌입하여 칼로 위협하며 잡아간 사실이 정소(呈訴)에 드러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드러나는 대로 통렬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윤허(允許)한다고 답하였다.

〈원전〉 24집 675면

선조 37년 1604년10월12일(戊午)

황시·이효원·최철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시(黃是)를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효원(李效元)을 가선대부(嘉善大夫)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최철견(崔鐵堅)을 춘천부사(春川府使)로, 유영성(柳永成)을 청풍군수(淸風郡守)로, 윤동로(尹東老)를 울산판관(蔚山判官)으로, 심관(沈關)을 함흥판관(咸興判官)으로, 김백추(金百秋)를 흥덕현감(興德縣監)으로, 이유경(李有慶)을 인제현감(麟蹄縣監)으로, 홍견(洪堅)을 군기시정(軍器寺正)으로, 안준(安璿)을 감찰(監察)로 삼았다.

〈원전〉 24집 676면

선조 37년 1604년12월20일(乙丑)

헌부가 송관 등의 파직 추고를 청하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신들이 구성(具歲)을 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미 극진히 논열하였는데도 오래도록 윤허(允許)를 내리지 않으시니, 이는 성상께서 특별히 공신을 대접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까. 신들도 성상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왕법(王法)이 지엄하고 공론이 더욱 격렬해지니 신들이 논하는 것도 부득이해서입니다. 모함하여 옥사를 일으켜 선량한 선비를 죽이고자 한 자는 정철(鄭澈)⁵⁹⁾이고 맨 먼저 재국(再鞠)하지는 논의를 주창해 간악한 정철의 뜻을 이루어 준 자는 구성입니다. 권간에게 빌붙어 선비를 죽인 죄는 만세를 두고도 용납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일시 호종(扈從)한 약간의 노고를 가지고 완전히 석방하여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속히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시약청(侍藥廳)의 상가를 개정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미 극진히 논열하였는데도 윤허(允許)를 내리지 않으시니 물정이 더욱 놀라워하고 공론이 더욱 격렬해집니다. 신들이라고 어찌 속직을 하고 분주했던 노고가 있는 이상 치유된 공로에 보답하는 상전(賞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신자들로서의 직분에 불과한 만큼 거기에 상당하는 상전이 나뉠대로 있을 것인데, 어찌 꼭 승반(崇班)의 중질(重秩)을 함부로 주고 외람되어 받은 뒤에야 시상한 것이 되겠습니까. 관작(官爵)이 외람되어 명기(名器)가 지극히 천시되는 것이 근래에 큰 폐단입니다. 더구나 의국(醫局)에는 몇 개월 사이에 중상(重賞)이 거듭 내려졌는데 이겠습니까. 무한정도로 계급을 뛰어넘고 있으니 신들이 논하는 것도 부득이 해서입니다. 시약청의 상가를 모두

59) 정철(鄭澈): 본문에는 ‘옥사(獄事)를 일으켜 선량한 선비를 죽이려고 한’자로 묘사되고 있으나, 사실과는 다른 듯하다. 그는 1562년(明宗17)에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하고, 지평(持平), 전적(典籍)등을 거쳐 함경도암행어사를 지냈다. 1575년(宣祖8)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1578년 장악원정(掌樂院正)에 기용되고, 사간(司諫), 집의(執義), 직계학(直提學)등을 거쳐 승지에 올랐다. 1583년 형조, 예조판서를 역임하고 이듬해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으나 동인(東人)의 논척(論斥)으로 고향에 돌아가 4년 동안 있으면서(사미인곡) 〈성산별곡〉 등 수많은 가사와 단가(短歌)를 지었다. 1589년 우의정(右議政)에 발탁되어 정여립(鄭汝立)의 모반 사건을 다루게 되자 서인(西人)의 영수(領袖)로 철저히 동인(東人)들을 추방하였는데, 뒤에 동인들의 모함으로 사직하고 강화(江華)의 송정촌(松亭村)에 우거(寓居)하였다. 당대의 가사문학의 대가로서 윤선도(尹善道)와 함께 한국시가사상(韓國詩歌史上)쌍벽으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따라서 본문은 동인들의 입장에서 기록되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개정할 것을 명하소서.

각사(各司)의 관원이 초기(草記)를 올린 뒤에 발락(發落)을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나가버리는 만홀(漫忽)한 습성은 지극히 놀라우니, 정원이 중하게 처벌할 것을 계청(啓請)한 것은 본디 당연합니다. 그러나 정원은 제서(制書)에 대해 용법(用法)하는 곳이 아닌데도 사사로이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로 단정해 계하(啓下)하였으니, 이것만도 이미 잘못되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윤희(允許)를 받고 난 이상에는 즉시 본부로 승전을 받들어 용법(用法)하는 관원으로 하여금 알아서 준봉(遵奉)하도록 했어야 마땅한데도 막연히 승전을 받들지도 않고 있다가 호조(戶曹)좌랑 김문보(金文輔)의 추고(推考) 전지(傳旨)를 받을 때에야 ‘전날 정원의 계사(啓事)대로 추고하여 치죄 하라,’고 하였으니, 앞뒤로 살피지 못한 실수가 많습니다. 색승지(色承旨)의 추고를 명하소서. 김문보의 추고 공사를 지금 조율(照律)해야 하겠는데 정원이 계청(啓請)한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은 종전에 이런 죄상에는 쓰이지 않았으니, 이는 새로운 법을 세우는 것인 듯합니다. 법대로 의의(擬議)하여 서경(署經)한 뒤 조율 단정하여 이조(吏曹)가 각 사의 관원을 패초(牌招)하여 법전(法典)을 고강(考講)케 하는 것은 늘 행해오던 격례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각 사의 관원이 태만이 하는 버릇이 생겨 병을 핑계 대고 나오지 않는가 하면, 심지어 여러 번 불러도 끝내 나오지 않으니, 면할 죄를 내어 교묘히 회피하는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기시(軍器寺)주부 송관(宋瑄), 내자시(內資寺)주부 윤언서(尹彦恕)를 모두 파직하소서.

법전의 포핍(褒貶) 조항을 보면 외관(外官)은 50일이 차야 등제(等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제현감(麟蹄縣監) 이유경(李有慶)은 11월 10일에 사조(辭朝)⁶⁰하였으니, 법으로 말한다면 근무한 날 수가 모자라므로 등제(等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죄벌(罪罰)이 있을 경우 계문(啓聞)해서 파출(罷黜)할 수는 있겠지만, 등제(登第)를 하게 되면 법전을 어기게 되어 뒷날의 폐단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감사(監司) 윤유기(尹惟畿)를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60) 사조(辭朝): 관직에 새로 임명된 사람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드리는 일.

“공신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병이 나온 경사에 상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모두 따를 만한 일이 아니다. 그만 번거롭게 하는 것이 좋겠다. 추고 이하는 윤희(允許)한다.”

하였다. -유기는 본디 인망(人望)이 가벼운 사람으로 관찰사의 직임(職任)을 맡기까지 하였는데 처사가 이와 같으니 어떻게 추고를 면할 수 있겠는가.

〈원전〉 25집 13면

선조 37년1604년12월26일(辛未)

유근·박홍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유근(柳根)을 우찬성(右贊成)으로, 박홍로(朴弘老)를 지중추부사(知中樞府使)로, 남이신(南以信)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오억령(吳億齡)을 대사성(大司成)으로, 이수광(李睟光)을 안변부사(安邊府使)로, 이덕형(李德涇)을 시강원 보덕(侍講院報德)으로, 박동선(朴東善)을 사복시정(司僕寺正)으로-재주가 범상하다- 이수준(李壽俊)을 승문원 판교(承文院判校)로-사람됨이 부잡(浮雜)하다- 조정립(趙正立)을 홍문관 응교(弘文館應教)로, 박진원(朴震元)을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이정협(李廷諫)을 군자감 정(軍資監正)으로, 이지완(李志完)을 병조 정랑(兵曹正郎)으로, 이덕온(李德溫)·이신원(李信元)을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로, 이민성(李民成)·민여임(閔汝任)을 병조 정랑(兵曹正郎)으로, 임연(任兗)을 병조 좌랑(兵曹佐郎)으로, 허흔(許昕)을 사섬시 부정(司贍寺副正)으로, 권형(權涇)을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으로, 원옥(元彧)을 군기시 첨정(軍器寺僉正)으로, 윤경(尹綱)을 형조 정랑(刑曹正郎)으로, 박대겸(朴大謙)을 예조 좌랑(禮曹佐郎)으로, 한양(韓瀆)을 형조 좌랑(刑曹佐郎)으로, 윤수(尹燧)를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로, 송석경(宋錫慶)·윤시용(尹時勇)·최송(崔嵩)을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으로, 이유연(李幼淵)을 익위사 사어(翊衛寺司禦)로, 김덕순(金德純)을 감찰(監察)로, 이사주(李士宙)를 경원부사(慶源府使)로, 이신(李愼)을 광산군수(郭山郡守)로, 이책(李策)을 청도군수(淸道郡守)로, 김치(金緻)를 경성관판(鏡城判官)으로, 이유청(李幼淸)을 김포현령(金浦縣令)으로, 이경하(李擊廈)를 우봉현령(牛峯縣令)으로, 김각(金覺)을 온성관판(穩城判官)으로, 남궁간(南宮欄)

을 함평현감(咸平縣監)으로, 이경조(李慶祚)를 인제현감(麟蹄縣監)으로, 권식(權植)을 옥구현감(沃溝縣監)으로, 김흥상(金興祥)을 적성현감(積城縣監)으로, 박익(朴益)을 하동현감(河東縣監)으로 삼았다.

〈원전〉 25집 16면

선조 38년 1605년 7월 1일(癸酉)

관동에 유례에 없던 홍수가 지다

영남(嶺南)과 관동(關東)에 홍수가 졌다. 영남의 인동·영산·안동·군위·창원·의흥·용궁·고령·상주·예안·초계·의령·김해·함안과, 관동의 회양·양양·금성·간성·평강·홍천·양구·철원·춘천·횡성·영월·정선·평창·인제(麟蹄) 등의 재해(災害)가 더욱 혹심하였다. 산사태가 나고 죽은 사람과 가축의 숫자를 헤아릴 수 없었으며, 관청과 민가가 거의 떠내려가고 깊은 산의 큰 나무들도 뿌리 채 뽑혀 한강과 낙동강으로 떠내려왔다. 모두 예전에 일찍이 없었던 재해라고들 하였다.

〈원전〉 25집 696면

선조 38년 1605년 7월 23일(乙未)

강원도의 수재 상황을 열거하다

강원도 영서(嶺西)의 영월·정선·춘천·평창·인제(麟蹄)·원주·횡성 등 고을에 이 번 7월 17일부터 동풍(東風)이 매일 같이 크게 불더니, 바다의 갈매기 떼가 까맣게 날아왔는데, 보기에 매우 놀랍고 괴이하였다. 20일 밤에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니 갑자기 큰 호우가 저 객사(客舍)와 관청, 군기(軍器)·창곡(倉穀)을 휩쓸어 버렸고, 크개는 사찰(寺刹)과 작개는 촌락이 물이 지나친 곳은 모조리 쓸려나갔으며 우마(牛馬)와 가재 도구도 남김없이 모두 익사하거나 떠내려갔다. 춘천은 소양정(昭陽亭) 누각이 부서지고 인물(人物)과 여사(廬舍)가 모두 매몰되었으며, 백곡이 손상되고 사

석(沙石)이 뒤덮였다.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면 통곡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고, 떠내러가는 지붕 위에서는 닭이 울고 개가 짖어대며, 칼을 쓴 죄인이 물에 떠내려오기도 하였다. 영월은 인가(人家)가 3백 39채나 떠내려갔다.

영동(嶺東)은 강릉부(江陵府) 5리 밖에 남대천(南大川)이라는 냇가 있어, 전에 물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냇가에 나무를 심고 제방을 튼튼히 쌓았는데, 본부(本府)가 설립된 이후 남문(南門) 밖에서 관노비(官奴婢) 1백여 호와 기타 백성들의 사노비(私奴婢)가 많이 살고 있었다. 갑자기 큰물이 덮쳐 내를 막은 수구(水口)를 파괴하고 평음을 내며 천지를 삼킬 듯이 밀어닥치니 1백여 호의 관노비들은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지붕이나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나무가 뽑히고 집이 부서지니 일시에 떠내러가 처자와 형제 등 일가족이 줄줄이 비끄러맨 채 죽기도 하였다.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하여 차마 듣고 보지 못할 지경이었는데, 부사(府使) 김홍미(金弘微)는 직접 남성(南城)에 가서 크게 통곡만 하고 있을 뿐이었다. 전담은 천여 석 지기가 모래에 뒤덮였고, 가옥은 크고 작은 것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침수되어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었다. 대관령에서 해변에 이르기까지 기름진 넓은 벌판에는 까마득히 백사(白沙)만 보일 뿐이고 익사한 우마(牛馬)가 부지기수였다.

인제(麟蹄)는 1백 2채가 떠내려갔으니 수재가 영서 지방에서 더욱 참혹하였다. 관사(官舍)·공해(公廩)·향교(鄉校)·창고(倉庫)가 모두 떠내려갔고, 관아에서 5리 거리에 있는 수 백년 된 소나무가 부러지고 뿌리 채 뽑혀 모두 떠내려갔고, 허다한 전담은 백사장과 연못이 되었다. 양양은 부내(府內)의 백여 호의 대소(大小) 인가(人家)가 재산과 가족이 일시에 물에 잠기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부모와 자녀, 또는 부부·형제 온 가족이 물에 빠지거나 산사태에 압사하여 여염 거리에는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해변에는 시체가 즐비하게 쌓였다. 고원(高原)은 표몰된 인가가 1백 7채이고, 우마(牛馬)와 여러 가축들이 대부분 익사했다. 금성·간성·평강·홍천·양구·철원도 수재가 참혹했다.

경상도 안동부(安東府)는 이 달 20일 강물이 크게 범람해서 끝없이 아득한 물바다를 이루더니 부성(府城)에 들어와 남문(南門)의 객사(客舍)와 대청·관사가 모두 침몰되었다. 동남 쪽 근교에 거주하는 관인(官人)과 백성들의 가옥이 모두 산산이 부서져 떠내려갔는데, 가재 도구를 전혀 건져내지 못하여 비로 쓴 듯이 되었고 삼문의 자성(子城)도 붕괴되었다. 영호루(映湖樓)는 흔적도 없이 떠내려갔고, 여강서원(廬江

書院)도 완전히 떠나려갔으며, 대가 세족(大家世族)의 백 년 된 가옥들이 남김없이 떠나려갔으니, 이 번 수재는 개벽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경주는 부내(府內)가 큰 바다로 변하여 민가(民家)가 완전히 침수되었고, 선산(善山)은 들이 온통 물바다로 변했으며 인동·영산·군위·창원·예천·영일·의흥·용궁·고령·상주 등도 첩보한 내용이 한결같았다. 예안·안동·영산·초계·의령·김해·창원·한안 등은 피해가 더욱 참혹하였다. 강변의 공해(公廩)와 민가는 부서져서 강을 뒤덮고 떠나려가고 등등 떠다니는 시체가 부지기수였으며 통곡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닿았다.

옛날 홍수가 난 상황을 표현할 때 산을 덮고 언덕을 넘쳤다고 하거나, 육지가 잠기고 산이 파묻혔다고 하였으나, 이처럼 형언할 수 없었던 적은 없었을 것이니, 잔파(殘波)된 상황이 임진년 적화(賊火)에 분탕질 당했을 때보다도 더 심했다.

〈원전〉 25집 92면

선조 38년 1605년8월1일(癸卯)

영월·춘천·인제 등 폭우로 인한 참상을 한덕원이 아뢰다

강원도 감사 한덕원(韓德遠)이 아뢰기를,

“영월군수 이유훈(李有訓)이 첩정(牒呈)에 ‘이 달 17일부터 비가 오락가락 하고 동풍이 연일 사납게 불더니 바다의 갈매기 떼가 까맣게 날아왔는데 보기에 매우 해괴했다. 그 후 22일 다시 큰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바람이 거세 지더니, 불시에 고을을 덮쳐 관사(官舍)·군기(軍器)·및 공해(公廩) 등 여러 채가 일시에 침수되었고 군수는 간신히 피해 나왔다. 이튿날 아침 물이 빠졌는데 관사의 상방(上房)과 동루(東樓)만 겨우 남아 있고 다른 대소 공해는 모두 휩쓸려 갔으며, 인가 1백 39채도 역시 떠나려갔다. 소·말·개·닭 등은 대부분 익사하고 곡식과 나무는 뿌리 채 뽑히거나 말라붙어 완전히 백사장으로 변한 것이 말할 수 없이 참혹하다.’고 했고, 정선군수 이여기(李汝機)의 첩정에는 ‘이달 20일 밤 불시에 큰물이 넘쳐 관사·공아(公衙)·사창(司倉)·향교(鄕校) 및 읍내의 인가 40여 채가 모두 떠나려갔고, 20여 명이 익사했으며, 읍내의 옛터가 온통 백사장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춘천부사 최철건(崔鐵堅)의 첩정에는 ‘이달 20일 밤 산에서 급류가 쏟아져 내리면서 소양강가의 정자를 휩쓸어 무참히 부수어 버렸는데 보기에 참담하였다. 그리고 물이 범람하여 사람들이 휩쓸려 가기도 하고 집채는 전부 파손되었으며, 백곡은 매몰되어 모래와 자갈로 뒤덮여서 살아 남은 풀 포기가 하나도 없고 물에 휩쓸려 등등 떠 있는 집채가 부지기수였다. 상류 지역의 수재(水災)도 필경 이와 같을 것이다. 물에 떠있는 집채 속에서 닭이나 개가 우짖고 칼(枷)을 쓴 죄인이 익사한 채 떠내러오기도 했다. 갈매기는 날개가 쳐져 날지 못하고 멍하게 앉아 있거나 거꾸로 쳐 박혀 있어 매우 측은한 모습이었다.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곡성(哭聲)이 가득하였다. 이번 수재는 경오년(庚午年)보다 만 배나 참혹하다.’했고, 평창군수 김호(金浩)는 ‘이 달 20일 큰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동북풍이 거세게 불어 물가의 민가 10여 채가 전부 떠내려갔고, 올 곡식과 늦 곡식이 모두 손상되어 추수할 가망이 없게 되었으니 변이가 비상하다.’했다.

원주목사 김정목(金庭睦)-위인이 평이하다-의 첩정에는 ‘19일 폭우가 내리고 동북풍이 사납게 불어 나무가 뽑히고 모래가 흩날리며 기왓장이 전부 날아가고 경내의 벼가 몽땅 손상되었으며 강가의 민가가 떠내려가는 등 피해가 전에 없이 참혹하다. 횡성(橫城)·인제(麟蹄) 등의 고을도 역시 풍수(風水)의 재해가 참혹하다.’고 했습니다.”

하였는데, 해사(該司)에 계하(啓下)하였다.

(원전) 25집 101면

선조 38년 1605년8월7일(己酉)

수재로 인한 백성들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아뢰다

행도승지(行道承旨) 홍식(洪湜)이 예조(禮曹)에 말로 아뢰었다.

“이 달 4일 조강(朝講)에서 영사 유영경(柳永慶)이 ‘이번 풍수의 재변은 근고(近古)에 없던 것으로 영동(嶺東)·영서(嶺西) 지방의 피해가 가장 혹심하여 인민이 죽거나 부상을 당하고 가옥이 침수되거나 떠내려 가는 등 들리는 소

문이 매우 참혹합니다. 가엽게 여겨 구제해 주는 은전을 잠시도 늦출 수 없으니 속히 거행하소서.’ 라고 아뢰자, ‘윤희(允許)한다.’고 전교(傳敎)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진관(特進官)⁶¹ 홍가신(洪可臣)은 ‘근래 민생이 어느 곳을 막론하고 곤궁한데 풍수의 재변이 닥치자 피해가 더욱 혹심하니, 오늘날의 급선무는 민심을 수습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엽게 여겨 구제해 주는 은전을 거행하지 않는다면 조정에서 불쌍하게 여기고 성상께서 소생시켜 주는 은택(恩澤)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관(該官)으로 하여금 홀전(恤典)을 속히 시행토록 하소서.’ 라고 아뢰자 ‘윤희한다.’고 전교(傳敎)하셨습니다.”

〈원전〉 25집 108면

선조 38년 1605년8월8일(庚戌)

정선·인제 지역의 홍수 피해 상황을 아뢰다

강원도 감사 한덕원(韓德遠)이 치계(致啓)하기를,

“정선군수 이여기(李汝機)의 첩정에 ‘7월 24일에 뜻하지 않게 홍수가 나서 현재 본 군 향교의 동재(東齋)·서재(西齋)와 명륜당(明倫堂)이 전부 떠내려갔고 성전(聖殿)만 남아있다. 성전도 내부의 사면 벽은 모두 무너져 내렸고 위판(位版)은 모두 떠내려갔으며 사직위판(社稷位版) 및 각종 여제(厲祭) 위판도 모두 떠내려가고, 8월 5일의 석전제(釋奠祭)와 6일의 사직제(社稷祭)는 형세 상 실행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제현(麟蹄縣) 삼공형(三公兄)⁶²의 문장(文狀)에 ‘7월 20일 큰물이 넘쳐 향교가 떠내려갈 때 숙직하던 유생 김경시(金景時) 등이 각 위판(位版)을 지고 나와서 성황사(城隍祠)에 이안(移安)하였다.’ 하였습니다. 올해 수재(水災)의 변이 이처럼 참혹하여 정선군은 성전의 위판이 모두 떠내려가고, 인제군은 겨우

61) 특진관(特進官): 일반 규례를 벗어나서 특별한 공로의 대가로 받는 벼슬

62) 삼공형(三公兄): 이조 때 각 고을의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의 세 관속을 일컬음

위관을 이안하였으나 성전이 떠나려가고 없어서 성황사에 불안하였으니 몹시 미안합니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예조에 계하(啓下)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지난 번에 억수 같이 퍼붓는 폭우가 내려 큰물이 덮쳐서 양 읍의 관사와 성전이 전부 떠나려갔으며, 심지어 성전의 위관을 성황사에 이안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만고에 없던 변이다.

〈원전〉 25집 108면

선조 38년 1605년8월8일(庚戌)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보고하다

강원도 감사 한덕원(韓德遠)이 아뢰기를,

“강릉부사 김홍미(金弘微)-사람됨이 평이해서 본래 일궈올 만한 점이 없었
다-의 첩정(牒呈)에 ‘이 달 19일부터 20일까지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
고 태풍이 심하게 불어 사람이 서있지 못하였고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갔
으며, 모래가 날리고 나무가 뽑혔으며, 낮인데도 어두컴컴하였다. 수전(水
田)의 올벼와 늦벼는 이삭이 패었다가 모두 떨어졌으며 논밭의 각종 곡식도
모두 손상되었다. 이는 근고(近古)에 없던 변으로 가을에 추수할 가망이 없
어졌다. 대계 대관령으로부터 계곡을 지나 해변에 이르기까지 50여 리에 남
대천 이라고 하는 시내가 있는데, 부(府)에서 5리쯤 되는 방수천(防水川)가
에 전부터 나무를 심고 독을 튼튼하게 쌓아 제방이 몹시 견고하였다. 본부
(本府)가 설립된 뒤에 남문(南門)밖에서 남대천 사이에 관노비(官奴婢) 1백
여 호가 그곳에서 살았는데, 옛 방천 수구(水口)가 있는 곳에서 요란한 굉음
소리와 함께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뒤집을 듯한 형세로 두 물줄기가 양쪽
에서 덮쳐와 천지를 뒤흔들 기세였다. 그 사이에 살던 관노비 1백 여 호는
갑자기 물난리를 만나 많은 사람들이 어찌 할 바를 몰랐다. 이에 각자 지붕
위로 올라가거나 나무 위에 올라갔다 나무가 뽑히고 집이 무너지는 바람
에 한꺼번에 떠나려갔는데, 각자 머리를 풀어헤치고 처자와 동생(同生). 온
가족이 옷으로 한데 묶고 죽었다. 곡하는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져 차마

보고 듣지 못할 지경이었다. 내가 친히 남쪽 성(城)에 가서 통곡을 하고 돌아왔다. 부(府)의 아래쪽 들판 1천여 섬지거나 되는 전답이 매몰되었고, 대소의 민가가 전부 떠나려가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게 되었다. 대관령 아래서부터 해변에 이르기까지 전지(田地)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흰모래만 가득히 널려 있으며 익사한 우마(牛馬)도 부지기수였다.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없어 몹시 참혹하니 비상한 재변이다.’ 하였습니다.

인제(麟蹄)·양양(襄陽)·고성(高城)·금성·간성·삼척·회양 등의 고을도 마찬가지로 재변을 입었다고 하는데, 도로가 끊겨 아직까지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였는데, 예조(禮曹)에 계하(啓下)하였다.

〈원전〉 25집 109면

선조 38년 1605년8월21일(癸亥)

수재로 사망한 자들에게 여제 지내줄 것을 아뢰다

좌부승지 구의강(具義剛)이 비변사(備邊司)의 뜻으로 아뢰기를,

“강원도는 수재가 더욱 극심하여 각 고을의 사람이 떠나려 가 사망한 곳에 사제(賜祭)하는 한 가지 조목을 더 넣자고 입계(入啓)하였더니 ‘빠져 죽었다니 참으로 불쌍하다. 그러나 나라일에 죽은 것이 아닌데 사제까지 하는 것은 발론(發論)한 것이 중도에 맞지 않은 듯하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라. 명령이 일단 내려지면 유사가 즉시 명심하여 충실하게 봉행(奉行)할 것이고, 또 수령들로 하여금 각자 삼가서 감히 불법행위를 하지 말게 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탬이 안 되는 빈말이 아무리 절실하더라도 무슨 이익이 되겠는가.’ 라고 전교 하셨습니다. 지난번 강원도 수재가 비상하여 떠나려가 죽은 자가 매우 많았으니, 극히 참혹합니다. 수재·화재나 도적에게 죽음을 당했을 경우 여제(厲祭)를 베풀어 제사하는 것은 사전(祀典)에 실려 있습니다. 이번에 어사(御史)를 파견해 은덕을 내리는 뜻을 선포하여 살아남은 백성들을 위무(慰撫)하고 아울러 제단을

설치해 제사를 지낸다면, 민심이 감동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빠져 죽은 원혼들도 조금은 위안이 될 것입니다. 신들의 구구한 뜻으로 이 한 조항을 교서(敎書)가운데 삽입하고자 했는데 지금 하교(下敎)를 받드니 나라일에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시었으므로 신들은 감히 다시 이될 말이 없습니다. 오직 상의 재결(裁決)에 달려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옛날 역사를 보아도 수재가 있거나 황하의 독이 터져 빠져 죽은 자가 수만 호였지만 제사지낸 일은 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기억하지는 못하겠다. 이번엔 관원을 보내어 제사지내는 것은 여단(厲壇)에 대한 사전의 규정과는 다를 듯하다. 모든 수재·화재나 도적에게 죽은 자들에게 반드시 제사를 지낸다면 그 죽은 자가 어찌 한이 있겠는가. 모두 나의 동포 백성이니 죽은 경우에도 똑같이 예를 행해야 한다. 누구는 지내주고 누구는 제사를 지내주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러나 아뢴 뜻은 좋으니 굳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뢴 대로하여 제사를 지내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원전〉 25집 114면

선조 38년 1605년9월5일(丙子)

호조에서 각 지방의 곡식 피해를 조사하도록 하유할 것을 건의하다

좌승지 유인길(柳寅吉)이 호조(戶曹)의 말로 아뢰기를,

“금년 화곡(禾穀)이 극히 무성하였는데 결실의 시기에 이르러 갑자기 재변을 만나 극심한 곳에는 그 참혹함을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근래 왕래하는 인편을 통하여 그 실상을 상세히 탐지해 보니, 평안(平安)과 전라(全羅) 이 두 도는 전연 피해가 없이 지난해 보다 결실이 더 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은 급재(給災)⁶³하지 말고 하지중(下之中) 이상을 많이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강원도의 극심한 곳은 인제(麟蹄)와 홍천(洪川)의 접경지대인데 인제는 피해가 아주 심하나 홍천은 그런 대로 괜찮다고 하니, 같은 경내라도 피해의 정도가 이처럼 고르지 않습니다. 충청도와 황해도도 피해처가 본래 적고 또 약간 결실된 고을이 많으나 다만 평안도·전라도에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경기(京畿)의 피해는 강원도에 버금하는데 그 경중이 고르지 못한 것이 또한 위에 논(論)한 바와 같습니다. 지금 범연히 일괄적으로 피해를 논하고 방방곡곡의 깊은 산간을 두루 살피지 않으면 반드시 간교한 이민(吏民)에게 속는 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세입(稅入)이 감소되고 경비가 핍절(乏絶)될 것이니 실로 작은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각별히 각도 경차관(敬差官)에게 하유(下諭)하여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실력을 다해 하나하나 살펴 조사하여 허위로 조작하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允許)한다고 전교(傳敎)하였다.

〈원전〉 25집 116면

선조 39년 1606년4월19일(丁巳)

강원도 관찰사 유인길(柳寅吉)이 바람에 곡식이 망가진 사실을 보고하다

강원도 관찰사 유인길(柳寅吉)이 장계(狀啓)하기를,

“삼척(三陟)·고성(高城)·인제(麟蹄) 등지에 3월 15일 진시(辰時)에 서풍(西風)이 크게 불어 기왓장이 모두 날아갔습니다. 동남풍(東南風)이 이따금 불기도 하였는데 날마다 크게 불어 모래와 흙이 하늘에 자욱히 날리고 전답이 매몰되는가 하면 곡식의 뿌리가 뽑혀 말라비틀어지는 바람에 다시는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모두 쓸어버려 농사를 망치고 말았으므로 간신히 살

63) 급재(給災): 재해를 입은 논밭의 세납(稅納)을 면제하여 주던 일

아남은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뜰에 가득합니다. 이런 변고는 근고(近古)에 없던 일입니다.”

하였는데, 호조(戶曹)에 계하(啓下)하였다.

〈원전〉 25집 185면

선조 40년 1607년4월4일(丙申)

벌목의 노역에 폐단이 극심함을 아뢴 상소

강원도 도사 최광필(崔光弼)이 상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이 삼가 살피건대 한 문제(漢文帝) 때에는 태평했다고 할 수 있는데도 식견이 있는 선비는 오히려 쌓인 쉼에 불을 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늘날의 형세를 살펴본다면 안으로는 조정의 정사(政事)가 날로 문란하여지고 밖으로는 흉측한 도적이 창궐하니, 마땅히 경외(敬畏)하고 수성(修省)하여 하늘의 꾸중에 보답하고 백성을 보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천재(天災)가 혹독하여 백성이 탄식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궁궐이 넓지 못함을 걱정하여 지난해부터 영건(營建)의 논의가 시작되어 올 봄에는 마침내 토목공사를 일으켰습니다. 도감(都監)의 엄중한 명령이 성화(星火)보다 급하니 공사는 큰데 힘은 미약하여 백성이 떠도는 것이 날이 더욱 심하여져서 신이 영서(嶺西)에서부터 강릉(江陵)까지 오는데, 아내와 자식을 부축하며 껴안고 가는 이가 도로에 끊이질 않았고 열에 이홉 집은 비어 있어 기상이 참담하였습니다. 이 일이 어찌 그만둘 수 없어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신이 삼가 살피건대 강원(江原) 일로(一路)는 토지가 척박하고 백성이 빈한한 것이 팔도에서 가장 심한데, 동량(棟梁)의 큰 재목이 모두 이곳에서 생산되는 까닭으로 재목을 분정(分定)한 것이 다른 도에 견주면 제일 많습니다. 산봉우리는 험준하고 돌길은 거칠어서 절정(絶頂)에서 벌채하여 물가에까지 운반하자면 장정은 산에 들어가고 노약자는 먹을 것을 나르느라 사자(士子)와 노비(奴婢)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손발이 부르뜩니다. 가정에 남정(男

丁)이 없으매 품꾼을 사서 부역을 대신 보내는 데 1개월의 값이 거의 10여 곡(斛)이고, 품꾼이 혹 중도에 도망하거나 압사를 당하면 또 다른 사람을 사게 되는 것이 비밀비재하여 결국은 집안이 기울어 파산하고 말기 때문에 추위와 굶주림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영동(嶺東)의 이흠 고을과 영서(嶺西)의 강(江) 연안은 지난해 수재로 민생이 모두 익사하였고 비옥하던 벌판은 모래사장으로 변하였으니, 죽은 이를 조문하고 급복(給復)하는 것이 당연한 조처입니다. 그런데 재목의 수요는 더욱 많고 길 또한 요원하여 3~4일의 노정에 양식을 싸 가지고 수백 리 밖으로 재목을 나르니, 공역(功役)이 백 배나 더 들어 원성이 높는데, 지금 또 특별히 경차관(敬差官)을 파견하여 강물 따라 내려보내도록 엄하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토에서 농사일을 시작하여야 할 때에 목재를 나르는 역사(役事)를 하고 있고, 위문하고 진휼(賑恤)하여야 할 시기에 다그치는 노역(勞役)을 시켜 농사일을 버려 두게 하여 농사철을 어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기가 아직도 추위 봄물이 생기지 않은 탓으로 작은 개울이 줄줄 흐를 뿐이라서 우람한 돌과 깎아지른 바위가 치솟아 있어 풀 다발도 띄워서 내려보내지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거대한 재목을 내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얇은 여울에 목재를 띄우는 것은 육지에서 배를 끄는 것과 같아서 나무하나 운반하는 데 1백 여명의 장정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래도록 물 속에서 있다가 죽거나 상(傷)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단 쇠잔한 작은 고을만 밥 짓는 연기가 끊겼을 뿐 아니라 큰 고을까지도 안팎이 마침내 황폐되어 버렸으니, 신은 백성들이 신음하다가 난동을 일으키고 외적이 그 틈을 타게 되면 망하는 화를 구원할 수 없게 될까 걱정입니다. 아! 중흥의 근본이 궁관(宮官)을 건립하는데 있는 것이 아닌데 전하의 명철하심으로 이러한 거조(舉措)가 계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삼사(三司)가 전하의 좌우에 있으면서 일찍이 한 마디도 아뢰지 아니하고, 대신은 전하의 수족이면서도 이러한을 살피지 아니하고, 전하는 조종(祖宗)의 기업을 지키면서도 더욱 살피지 않는다면, 종묘사직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국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강원도의 굵은 재목 2만 1천여 본을 이미 벌채하였다고 경차관(敬差官) 유경충

(柳慶宗)이 치계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최광필(崔光弼)은 혼암하다는 것으로 한 때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그가 논한 것이 정확히 시폐(時弊)를 적중시켰다. 아! 민생이 괴로움에 시달려 고통당하는 정상을 이 한 장의 상소를 가지고도 그 나머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말을 폐하니 애석하다.

〈원전〉 25집 320면

광해군편

광해 원년 1608년8월18일(壬申)

강원도 어사 정광성의 서계로 인하여 전교하다

강원도 어사 정광성(鄭廣成)의 서계(書啓)로 인하여 전교(傳敎)하였다.

“평강현감 안복선(安復善)에게는 가자(加資)를, 원주목사 임취정(任就正)에게는 옷감 한 벌씩을 지급하고, 흡곡현령 이성(李晟)·월송 만호(萬戶) 장추(張樞) 등은 승진시키고, 평해군수 박안도(朴安道)·안협현령 조령(趙玲)·평릉 찰방(察訪) 김진(金璉) 등은 나국(拿鞠)하고, 영월군수 김정룡(金廷龍)과 인제현감(麟蹄縣監) 이경조(李慶祚)는 먼저 파직을 하고 나서 추문하고, 회양부사(淮陽府使) 심종도(沈宗道)와 낭천현감 장희윤(張希尹)은 파직을 할 것이며, 서계(書啓)내에 보인 병폐 등에 대해서는 해조(該曹)에 내려보내어 회계하도록 하고, 불법 문서는 사헌부(司憲府)에 내려보내어 처치하도록 하라.”

〈원전〉 31집 342면

광해 원년 1608년9월4일(戊子)

장령 박건이 관물을 도둑질한 상황 등에 대해 아뢰다

장령(掌令)박건(朴健)이 아뢰기를,

“신들이 강원, 충청 두 도의 암행 어사가 조사한 불법문서를 고찰하였는데, 그 가운데 미곡(米穀)과 잡물(雜物)을 나누어 먹고 사용(私用)한 곳이 있으니, 이것은 당연히 각 도에 행이(行移)하여 추고로 처치하여야 됩니다. 영월 군에는 은(銀)을 산 무명에 관한 건기(件記)가 한 장 있는데, 은값의 무명이 20필에 이르렀으나 이 은을 어느 곳에 사용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은을 사는데 필요한 무명을 백성들에게 받아들였으니, 극히 해피합니다. 인제(麟蹄)에는 두 장의 건기(件記)가 있는데, 한 장은 노비안(奴婢案)에 올라 있지 않은 노비신공(奴婢身貢)을 거두어 바친 것입니다. 각시(各寺)의 노비는 간사한 아전이 피를 부린 연유로 공안(貢案)에서 누락되었으나, 거두어 들인 무명은 당연히 해조(該曹)에 수송하여야 되는데도 감히 20필이 되기까지 하였으니, 이는 관물(官物)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새로 종묘와 대궐을 짓는 역사(役事)를 겪느라 우리 나라의 민력(民力)이 다하였습니다. 한 그루의 재목을 베어 끌어내어도 그 폐단이 무궁한데, 감히 쇠잔한 백성을 못살게 굴면서 재목을 운반하여 권귀(權貴)의 집에 사사롭게 보낸 것이 8곳에 이르렀으며, 1백 99그루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백성을 괴롭혀서 임금의 측근에게 아첨하여 섬기는 모습은 지극히 통분(痛憤)스러우니, 이는 남에게 장물을 준 것입니다.

근래 조정에 탐욕을 부리는 풍습이 성행하여 사사로이 필요한 온갖 물품을 마음 내키는 대로 강제로 긁어 들이는데, 이것이 모두 백성들에게서 나오니 백성들이 어찌 곤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드러나는 대로 법을 살펴서 벌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월군수 김정룡(金廷龍)과 인제현감 이경조(李慶祚)를 잡아 가두고, 은(銀)을 사서 사용한 곳과 신공(身貢)을 거두어 사적(私的)으로 사용한 연유와 재목을 보낸 곳에 대하여 낱낱이 엄하게 국문하고 법에 따라 처치하여, 한 편으로 탐욕을 부리는 나쁜 풍속을 경계시키고 한편으로 남을 주거나 자기에게 납입하는 법을 엄히 하소서.

한 번 난리를 겪게 되자 사람이 궁하면 넘치게 되어서, 이름난 선비들이 간혹 이득과 욕심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각 영(各營)의 방납(防納)·각역(各驛)의 납마(納馬)·경영(京營)의 쇄마(刷馬)와 기타

사소한 이익에 머리가 터지도록 다투고들 있습니다. 심지어 공물의 방납은 국법이 지극히 엄한데도 사대부(士大夫)들이 몸은 시정(市井)의 일을 직접 하면서도, 혀로는 사대부의 의논을 막힘 없이 하면서 옷깃을 여미고 앉아 조금도 부끄러운 기색이 없습니다. 민생의 괴롭고 피곤함이 실로 여기에서 연유하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이는 팔도의 전결을 공물의 값으로 따져 헤아려서 균일하게 쌀로 바꾸어 매기자고 하고, 어떤 이는 각 도 각 고을로 하여금 본색(本色) 상납하는 것을 제외한 이외의 것은 방납하지 못하게 하고 혹은 쌀. 혹은 베로 참작하여 값을 정하고 조문(條文)을 작성하여 상납하게 하여 공물로 바칠 물품을 사서 쓰는데 공급하므로써, 한편으로 방납의 폐단을 혁파하고 한편으로 민생의 위급함을 구원하자고 합니다. 선혜청(宣惠廳)으로 하여금 장점을 따라 익히 강론(講論)하고 속히 거행하도록 하소서.

번곤(藩閫)⁶⁴의 직임(職任)에 있는 신하는 감히 담당 경계를 넘어 진(鎭)을 떠나지 못하도록 규제를 극히 엄히 한 것은 뜻한 바가 있어서이니, 사정이 있더라도 진실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전라 병사 정기룡(鄭起龍)은 감히 개인적인 일로 버릇없이 상소하였으니, 조정을 가볍게 여기고 공의를 멸시한 모습이 지극히 경악스럽습니다.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여 무부(武夫)의 교만하고 버릇없는 습관을 깨우치소서.”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하라. 정기룡의 상소는 자식으로서 애뜻한 정에서 나온 것이니, 어떻게 죄로 다스리겠는가. 윤허(允許)하지 않는다.”

하였다.

〈원전〉 31집 350면

광해 원년 1608년11월5일(戊子)

지평 윤인이 장오조의 형벌을 엄하게 할 것을 아뢰다

64) 번곤(藩閫): 감사(監司), 병사(兵使), 수사(水使)의 총칭.

지평(持平) 윤인(尹訥)이 아뢰기를,

“장오죄(贓汚罪)는 죄 중에서 가장 사면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런데 근래 장오죄를 범한 무리는 대부분 옥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방면되는 은전을 입고 있으니, 상께서 옥사(獄事)를 신중히 처리하는 뜻이 지극합니다만, 죄를 저질렀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는다면 법이 폐지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전 인제현감(麟蹄縣監) 이경조(李慶祚)는 어사에게 두 건의 불법문서를 압수 당하였는데, 하나는 대장에 오른 노비(案付奴婢)들의 신공봉상(身貢捧上)에 관한 문서였고, 또 하나는 집을 지을 재목들을 나누어 운송시킨 것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공천(公賤)의 신공(身貢) 26필을 사사로이 쓴 것은 관물(官物)을 도적질 한 것이고, 백성들을 괴롭혀 무려 2백 주(株)에 이르는 목재를 실어다 권력 있는 신하들에게 귀염을 사고자 여러 곳에 나누어 보낸 것은 훔쳐서 남에게 준 것입니다. 법의 조문을 상고해 보건대, 이러한 죄는 장오죄에서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한데도 그가 감히 전하를 속이고서 끝까지 바른 대로 말하지 않았고, 형문(刑問)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차례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는 명이 내려지더니, 마침내는 벼슬만을 갈아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금부(禁府)의 열 차례 형문(刑問)으로는 장오죄를 범한 큰 죄인을 징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람들이 떠나 없이 매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경조를 다시 잡아다가 추국(推鞠)하고, 본부에서 올린 그가 저지른 문서들을 금부에 넘겨 자신이 차지한 것과 남에게 준 물건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며 끝까지 추국(推鞠)해 법대로 처치함으로써, 장오(贓汚)에 대한 형벌을 엄히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이 때 전 목사 이응번(李應燾)도 장오(贓汚)에 대한 논의로 금부에 하옥되었는데, 상이 명하여 형문(刑問)을 중지시키고, 벼슬살이 하면서 신중히 하지 않았다는 형률(刑律)을 적용하였다. 말년에 가서는 발각된 장물이 있어도 혹 되돌려 주기도 하였다.

광해 2년 1610년3월21일(丁酉)

강원도관찰사가 목재를 운반하는 일로 건의하다

강원도 관찰사 홍서봉(洪瑞鳳)이 치계(致啓)하였다.

“영건청(營建廳)에서 정한 새 책방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갖가지 목재는 신이 강원도에 도착한 즉시 인제현감(麟蹄縣監) 이풍(李馮)을 차사원(差使員)으로 정하고 도감(都監)의 차관(差官)인 유결(兪潔)과 협조하여 일시에 운송을 독촉하여 춘천의 재목 2백 10조(條), 양구의 1백 41조, 영월의 60조, 횡성의 31조, 홍천의 40조, 원주의 1백 50조를 지금 수로(水路)로 보냈고, 그 나머지 보내지 못한 목재는 뒤미처 계속해 보내도록 독촉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큰 강 근처에 있는 관청들은 인력 사용이 비록 적더라도 수송하기가 쉽고 강 어구에서 먼 관청들은 당초 벌목하는 것이 반드시 골짜기가 깊고 물이 얇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수송할 때에도 사석(沙石)사이에 걸려 있으므로 재목 하나 운반하는 데 비록 인부 1백 명을 사용하더라도 능히 끌어내리지 못하니, 매우 염려됩니다. 큰 재목은 물이 불어나는 것을 기다려 일시에 수송하겠습니다.”

〈원전〉 태백산본

광해 4년 1612년12월12일(辛丑)

강원도에 의원과 제사를 위한 시중신을 파견하도록 전교하다

예조(禮曹)가 아뢰기를,

“강원도에 여역(癘疫)이 매우 성해 점점 전염되어 곳곳이 모두 그러하니, 특별히 의원을 파견하여 마음을 다해 구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그리고 별도로 시종신(侍從臣)⁶⁵을 파견하여 경건하게 제사를 지내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32집 145면

광해 6년 1614년7월7일(丁巳)

시사청에 나가 경상감사 장만을 인견하다

사시(巳時)에 왕이 시사청(視事廳)에 나아가 경상 감사 장만(張晩)을 인견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남쪽 변방의 방비가 날이 갈수록 더 해이해지니, 주사(舟師)⁶⁶ 등에 대한 일과 왜영(倭營)의 행상(行商)을 금할 일을 착실하게申明(申明)하여 거행하라.”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소신이 임인년 간에 체찰 부사(體察副使)가 되어 부산과 동래를 잠시 돌아 보았고, 계묘년에는 전라 감사가 되었는데, 그 뒤 10년이 지났으나, 주사의 일이 점점 처음만 못해지고 있습니다. 대개 처음에는 조정이 주사에 온 힘을 기울여 호남(湖南)의 전선(戰船)이 이미 40여 척에 찼고, 기계와 노 등의 물품도 매우 정밀하고 예리하였으며, 경상도의 주사도 매우 견고하고 치밀하여, 적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적할 만하였지 오늘날처럼 엉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주사는 반드시 격군(格軍)과 군량을 갖추어야 만 변고에 대비할 수 있는데, 근차에는 물력(物力)이 점점 전만 못하니, 이것이 가장 우려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어떤 이유로 전일과 현격하게 달라졌는가?”

하고 묻자, 장만이 답하기를,

65) 시종신(侍從臣): 왕을 모셔 호종(扈從)하는 신하

66) 주사(舟師): 수군(水軍)의 별칭

“그 당시에는 상번(上番)하는 군사가 모두 주사에 예속되었고, 각사(各司)의 노(奴)와 내노(內奴) 또한 주사의 격군이 되었는데, 근래에는 상번하는 군사와 각사의 노(奴)는 모두 상납하게 하였고, 왜국의 사신이 올 때에도 응접하는 일이 많아 물력이 고갈되었습니다. 배 숫자가 전날 보다 적어지지는 않았으나 군사와 물자가 이토록 영성하니, 혹시 사변이 생길까 더욱이 걱정됩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도망간 여러 역적들을 체포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라.”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그 적을 여태까지 잡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의아스럽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땅이 매우 좁으니 도망간 자가 잡히지 않으려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자, 왕이 이르기를,

“중국이나 이웃 나라를 빼고 하늘로 올라갔거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찌 붙잡지 못하겠는가. 이는 필시 방백과 수령들이 마음을 다하여 잡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신하의 의리상 어찌 하루라도 그 역적들과 천지간에서 함께 살려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북의 호(胡)나 남의 월(越)로 달아나지 않았다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산과 생각이 미치는 곳까지 어찌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승지(承旨) 권진이 아뢰기를,

“도망간 역적을 잡지 못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법이 엄하고 상(賞)이 중한데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도망간 곳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그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국가가 불행하여 역옥(逆獄)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지난날 정여립(鄭汝立)은 자살하기를 하였으나 급박한 형편에서 나온 것이어서 자결한 것과 비교할 수 없으며, 이 경생(李景生)의 죽음도 급박한 상황에서 나왔고, 변승복(邊崇福)의 죽음에 있어서도 자결한 것이 아니고 정여립의 무리가 복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찌 이 죄인만이 과감하게 자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팔방에 알려 상(賞)을 걸고 급하게 잡는데도 아직 잡히지 않고 있으니, 이는 아마도

전에 몰래 역모⁶⁷⁾를 계획할 때에 미리 몸을 숨길 장소를 만들어 놓았다가 일이 발각되자 그곳으로 숨어, 포위망에서 벗어나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이 미치는 것은 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장만이 아뢰기를,

“이 죄인이 왜국으로 들어가 투항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으므로 혹시 북쪽의 호지(胡地)로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니, 권진이 아뢰기를,

“이 죄인이 잠상(潛商)으로 부산에 왕래하다가 혹시 왜국으로 들어갔을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하자, 장만이 아뢰기를,

“소신이 서북 지방에 있을 때에 늘 오랑캐의 실정을 지켜보았는데, 우리 쪽에서 약탈당한 소나 말 등 사소한 것들은 간혹 되돌려보낸 적이 있었지만, 중대한 물품에 있어서는 조금도 돌려보낼 기색이 없었습니다. 전일 회령(會寧) 보을하(甫乙下)의 관노(官奴)가 오랑캐 진영으로 도망갔는데 그 관노는 칼을 만들 수 있는 자였습니다. 우리 쪽에서 그들이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문서를 통하여 보내달라고 누차 청하였지만 매번 회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적도 만일 물화(物貨)를 갖고 들어가서 오랑캐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절대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절대로 자살하였을 리는 없고, 오랑캐 쪽으로 도망가지 않았다면 필시 변장을 하고 도피하고 있을 것이다. 경은 백성들에게 잘 설명하여 기필코 잡도록 하라.”

하자, 장만이 아뢰기를,

“마땅히 신이 순찰하는 곳마다 마음을 다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이 역적이 왜국으로 도망하였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굳이 죄인의 성명을 밝

67) 역모(逆謀): 영창대군을 옹립하고 인목대비로 하여금 수렴정정을 이루려 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이첨 등 대북파의 중심세력들이 영창대군을 몰아내려는 모함이었다.

혀 왜인들이 알게 하지 말고 은밀히 기찰하도록 하라.”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만약 중하게 상(賞)을 내린다는 뜻으로 설명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힘을 쓸 것입니다.”

하자, 권진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상(上)께서 상(賞)을 걸고 잡는 뜻을 모르고, 혹시 애당초 죄인을 접대하였다가 지금 와서는 죄를 받을까 염려하여 이 역적을 보더라도 관가에 와서 고발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염려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죄인을 접대 하였던 사람을 너무 심하게 치죄하지 말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권장시키고, 단지 중한 상을 걸고 잡아오게 하면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역적을 접대한 죄는 면하게 하고 잡아오는 데 대한 상을 후하게 하여 권장이 되게 하라.”

하자, 장만이 아뢰기를,

“승지의 말이 옳습니다. 다만 외방의 신하가 임의대로 상을 내걸 수 있는 규례가 없으니, 사목(事目)을 만들어 하달(下達)한다면 마음을 다하여 봉행할 것입니다.”

하자, 권진이 아뢰기를,

“앞서 여러 차례 사목을 하달하였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모든 적국의 정세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야 되니, 경이 내려가서 상세하게 탐지하여 치계하라.”

하자, 장만이 아뢰기를,

“적국의 정세는 알 길이 없습니다. 왜관에 머무르고 있는 왜인을 통하여 간혹 은밀하게 탐지하는 일이 있으나 그 외에 다른 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였다. 권진이 아뢰기를,

“역적 박치인⁶⁸)이 노래를 잘 부르고 활을 만들 줄 아는 등 재능이 없지 않으니, 오래가 땅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잡아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오랑캐 땅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의심하는가?”

하고 묻자, 권진이 아뢰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우리 나라 영토 안에는 종적을 찾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랑캐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신이 본 바로는 인제(麟蹄)·양양(襄陽) 등 일곱 고을 중에는 은신할 만한 깊은 산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험준한 고개가 중첩되어 있는데, 넘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는 거주하고 경작할 만한 땅이 있기 때문에 타도의 사람들이나 본 읍의 사람들이 더러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소금이나 간장이 떨어져 살아갈 수 없게 된 뒤에 다시 나오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역적이 일찍이 벌목상(伐木商)으로 춘천(春川)·기린(麒麟) 지역을 왕래한 적이 있었으니, 이 지역에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다시 하유(下諭)하라. 혹시 경기도 양주(楊洲) 쪽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되지 않는가?”

하자, 권진이 아뢰기를,

“사람들은 대부분 먼 지역만 찾고 가까운 지역은 소홀하게 여기는데, 가까운 지역에 숨지 않았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 감사에게도 하유(下諭)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였다.

(원전) 32집 321면

68) 박치인: 박유람의 서자(庶子)로 영의정을 지낸 박순의 서자 박용서, 심전의 서자 심우영, 목사를 지낸 서익의 서자 서양갑, 평난공신(平亂功臣) 박충간의 서자 박치, 북병사를 지낸 이제신의 서자 이경준, 서얼 허홍인 등 7명은 허균, 이사호, 김장생의 이복동생 김경손 등과 사귀면서 스스로를 죽림칠현(竹林七賢) 또는 강변칠우(江邊七友)라고 자칭하였다. 이들은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서얼의 차별을 없애달라는 상소를 한 바 있는데, 이것이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1613년 초부터 경기도 여주 남한강변에서 당을 조직하였다. 그리고 윤리가 필요 없는 집이라는 뜻의 무륜당(無倫堂)을 짓고 그곳을 근거지로 하여 화적질을 일삼다가 문경새재에서 상인들을 죽이고 돈을 약탈하였다. 이 때 피살된 상인의 노비가 포도청에 고발하여 일망타진되었다. 이를 '칠서(七庶)의 옥(獄)'이라 하는데, 이는 단순한 강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이첨 등 대북파의 중심 세력들에 의하여 영창대군을 몰아내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

광해 7년 1615년8월15일(己未)

체포하지 못한 죄인을 속히 체포하도록 전교하다

소명국(蘇鳴國)의 상소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이 상소에 대하여 의논하여 아뢰라. 양사(兩司)의 장관도 같이 참석하여 의논해 아뢰게 하라. 환어사(喚御史)는 서울에 있었고 고언백(高彦伯)의 자식이 기읍(畿邑)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도 오래도록 체포하지 못했었고, 홍적 치의(致毅)는 도망쳐 여러 해가 되도록 주류(誅戮)를 피하고 있으니 이미 신인(神人)의 분노가 극에 이르렀다. 그런데도 마음을 다해 잡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방백과 수령들이 무사안일로 세월만 보내고 삼가지 않음을 알 만하다. 각 도의 감사를 추고하고, 다시 더 오가통법(五家統法)⁶⁹⁾을 강화하여 방방곡곡을 샅샅이 기찰해서 기어이 체포하도록 하라. 좌우 포도대장을 아울러 패초(牌招)⁷⁰⁾하여 도성 안팎을 날날이 기찰해서 기일을 정해 놓고 체포해 들이도록 유지하라.”

〈원전〉 32집 419면

광해 11년 1619년8월12일(壬戌)

신궐 도감이 홍수로 떠내려오는 재목의 습득을 아뢰다

신궐 도감이 아뢰기를,

“금년에는 큰 홍수로 국가와 개인의 목재가 떠내려가는 우환이 있었기 때문에 부장(部長) 이봉(李鵬)을 양천(陽川)·김포(金浦)로 보내 일일이 건지게 하였습니다. 지금에 김포 현령 민응회(閔應恢)의 장계를 보니, 재목 91조(條), 누주(樓柱) 10조, 소부등(小不等) 8조, 대연(大椽) 16개, 대토목(大吐

69) 오가통법(五家統法): 다섯 집을 한 통(統)으로 삼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 자치적인 인보제도(隣保制度)

70) 패초(牌招): 명(命)자를 쓴 목패(木牌)에 불러들일 신하의 이름을 써서 원예(院隸)를 시켜 보내던 증패(證牌)

木) 1조, 중연(中椽) 4백 개가 떠내러가는 것을 건졌는데, 인제(麟蹄)에 사는 박응춘(朴應春)이라는 자가 자기 물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정확히 누구의 물건인지는 모르더라도 혹시라도 주인이 있으면 역시 값을 주고 사다 써야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주인이 있으면 빠짐없이 값을 주어 백성의 원망을 시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속히 경덕궁(慶德宮)으로 실어다 쓰거라. 앞으로 떠내려오는 재목들도 모두 건져내어 쓰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33집 255면

광해 12년 1620년10월7일(庚戌)

단양·춘천·인제 등 14개 읍의 조세 실수를 책으로 작성할 것을 명하다

새 궁궐 영건(營建)도감이 아뢰기를,

“명년에 쓸 목재는 공홍(公洪)⁷¹⁾·강원(江原) 두 도의 재목이 생산되는 각 고을의 공물(貢物) 값과 전세(田稅)로 바칠 쌀을 목재로 환산해서 받는다는 데 대하여 지난번에 이미 아뢰어 윤희를 받았습니다. 각 고을의 공물 값으로 정해진 목필(木匹)의 수량을 도감으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차관(敬差官) 이목(李榮)을 시켜 각 고을의 값을 내는 규정을 조사하여 책으로 작성해 오게 하였는데 그 작성된 책을 보았더니 각 고을이 내는 값들이 다과(多寡)가 일정하지 않아 혹 사실대로 책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물 중에는 목재로 환산하기 어려운 제향물(祭享物)이나 어공물(御供物)도 있기 때문에 같은 고을의 공물을 혹은 공물 그 자체로도 받고 혹은 목재로 환산해서 받기도 하면 결국 흐리멍덩하게 뒤섞일 폐단이 있

71) 공홍도(公洪道): 조선 인조(仁祖) 때 충청좌·우도를 공청도(公淸道)로 하였다가 이어 공홍도(公洪道)·충홍도(忠洪道)로 각각 개칭하였었는데 뒤에 다시 충청도로 하였다.

습니다. 따라서 관동(關東)의 백성들은 실지 혜택은 입지 못하고 목재로 환산하는 제도를 도리어 원망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신들이 두 도의 목재가 생산되는 고을에 대해 조사해 보았는데, 단양·청풍·제천·영춘·춘천·횡성·원주·정선·평창·영월·인제(麟蹄)·낭천·양구·홍천 등 14개 읍의 금년 치 전세의 쌀과 콩·그리고 삼수량(三手糧)과 별수미(別收米)를 무오년에 마련한 수조안(收租案)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쌀과 콩이 모두 합해 2천 3백여 만 석이 됩니다. 쌀은 2말에 목재 하나, 콩은 4말에 목재 하나로 환산하면 목재 1만 2천 7백여 개가 되니, 이렇게 하면 국가로서는 목재 구입이 유리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조세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몫의 쌀과 콩은 하삼도(下三道)에서 도감에 바쳐야 할 다른 종류의 쌀과 콩으로 바꾸어 해조(該曹)에 옮겨 보낸다면 양쪽이 다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앞에 열거한 14개 읍의 금년 치 조세 실수(實數)에 대해 해조로 하여금 책으로 작성하여 도감에 보고하게 하여 이쪽에서 일하는데 증빙자료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기에 감히 아뢰는 바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태백산본

인조편

인조 1년 1623년6월22일(辛丑)

강원도에 홍수가 저서 산이 무너지고 민가가 떠내려가다

강원도에 큰물이 저서 산이 무너지고 30여 곳의 민가(民家)가 떠내려갔다.

〈원전〉 33집 537면

인조 2년 1624년3월21일(乙亥)

황치경을 탄핵하는 인제현감 윤형각의 상소

인제현감(麟蹄縣監) 윤형각(尹衡覺)이 상소하기를,

“신이 지난번 역변(逆變)이 일어난 처음에 군사를 거느리고 서울에 올라와 본도 감사 윤안국(尹安國)에게 넘겨주고, 대가(大駕)가 도성을 떠날 때에는 신이 감사를 따라 춘천(春川)에 가서 군사를 모으는 일을 상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사 황치경(黃致敬)이 말하기를, ‘이곳의 군사는 죄다 서로(西路)로 갔다가 이미 무너져 흩어졌으므로 이제 뽑을 만한 백성이 없다.’ 하기에 신이 황치경에게 말하기를 ‘이 부(府)에는 품관(品官)이 많이 있으므로 그들의 노복(奴僕)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니 또한 군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하였더니, 황치경이 말하

기를 ‘이 곳의 인심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불러 모집하려 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데에야 어찌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이날 밤에 감사와 신이 각 고을에 전령(傳令)을 나누어 보내어 빨리 행제소(行在所)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과 감사는 죽음을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신이 의병을 일으키는 격문(檄文)을 작성하고 있을 때에 황치경이 밖에서 들어오면서 놀라는 빛이 있기에 신이 말하기를 ‘부시는 어찌하여 겁내는가. 나는 의병을 일으킨 사람이므로 죽을 것을 이미 결심하였다. 와언(訛言)이 사실이라면 좌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하였더니, 윤안국이 말하기를 ‘죽음이 있을 뿐이다.’ 하였는데, 황치경은 말하기를 ‘나는 전에 겪어본 경험이 있다. 왕년에 반정(反正)할 당시 강화(江華)에 있었는데 전라 감사에 제수(除授)되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고서 배사(拜辭)하고 부임하였다. 오늘날의 일도 전과 같이해야 할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적이 만약에 참람(僭濫)한 호칭을 쓴다면 의리상 죽어야 할 것이겠으나, 적이 왕자(王子)를 옹립하고 자전을 모신다면 인심이 진정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들이 그의 말이 패망(悞妄)한 것을 괴이하게 여겼으나, 다른 것은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고 시사(時事)에 대해 언급하자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으므로, 신은 ‘늙고 실성한 사람으로서 절조를 지키지 못하고 죽고 사는 데에 동요되어 자신도 모르게 이런 패망스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 여겨 다시 논변(論辨)하지 않았고 또한 남에게 전파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망언이 이미 공회석상에서 나왔으니 어찌 어찌 전파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듣건대, 황치경의 원정(原情)⁷²⁾에 감사와 신을 무함(誣陷)한 것이 낭자하기 그지없을 뿐더러 ‘계책을 장차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말이 신들의 입에서 나왔다 고까지 하여 스스로 모면할 계획을 하였으니, 참으로 한 번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가 말을 꾸미고 반복하면서 참여하여 들은 사람을 스스로 원척(元隻)으로 만들어 변명할 여지로 삼으려 하였으니, 그 계획이 교묘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곡직(曲直)과 진위(眞僞)에 대해서는 밝으신 주상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신이 무슨 말을 다시 하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72) 원정(原情): 사정을 하소연함

“상소의 사연을 잘 알았다.”
하였다.

〈원전〉 33집 601면

인조 5년 1627년8월4일(丁酉)

강원도 원주·홍천 등지에 연일 비바람이 치다

강원도 원주·홍천·횡성·고성(高城)·금성·이천(伊川)·평강·인제(麟蹄)·영월 등지에 연일 크게 비바람이 쳐서 초목이 부러지고 산릉(山陵)이 붕괴하였다. 원주에 서는 물가의 민가(民家) 30여 호가 동시에 물에 잠겼다.

〈원전〉 34집 218면

인조 6년 1628년10월17일(甲辰)

사헌부가 군관을 사창하고 민간을 노략질한 일로 아뢰다

헌부(憲府)가 아뢰기를,

“경이문(京衙門)의 크고 작은 공사는 반드시 방백을 관유(關由)한 연후에 각 고을에 통지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법례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포도청이 남의 무고로 인하여 인제현(麟蹄縣)에 직접 통관하고, 군관이라 일컫기도 하고 사령이라 일컫기도 하는 자들이 골짜기를 횡행하며 양민(良民)을 체포하여 간교한 무리로 하여금 그 원한을 갚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대장 이진(李璘)을 파직하고 나서 추고하소서. 군관이라 가칭하고 민간에 노략질한 자는 해조(該曹)로 하여금 적발하여 법대로 죄주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진은 추고하라. 그리고 작폐한 사람은 이미 법에 따라 죄를 정하게 했다.”
하였다.

〈원전〉 34집 299면

인조 11년 1633년 7월 12일(壬寅)

이판 최명길(崔鳴吉)이 관리등용의 시정을 요구하자, 이조에서 거행 사목을 올리다

이조(吏曹) 관서 최명길(崔鳴吉)이 차자(筭子)를 올려 청하기를,

“신이 삼가 듣건대 조종조(祖宗朝)의 문무관은 으레 녹을 붙여주어 까닭 없이 한산(閑散)이 되게 하지 않았으니 이는 문무를 권장하는 일이며, 음관수령(蔭官守令)으로 만기가 된 자는 으레 경직(京職)에 부쳤으니 이는 유공자를 보답하는 뜻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근년이래 문·무관으로서 한산에 있는 자가 적어도 1백여 인에 밀돌지 않습니다. 그중 사람과 직위가 맞지 않거나 죄과가 있거나 혹은 나이가 많아 직책을 주기에 불합리한 자 이외에 두드러지게 쓸 만한데도 자리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녹을 받지 못하는 자가 또한 적지 않고 심지어 참상음관(參上蔭官)으로 현저한 명망이 있는 자와 수령으로 만기가 되어, 아직 보직되지 않은 자가 무려 70~80명에 이릅니다. 참하(參下)는 8~9년 동안 실직(實職)의 경력을 쌓은 후에 비로소 6품으로 오르게 되는데, 한번 물러나 산관(散官)이 되면 앞서의 직함으로 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대부분 억울하다 하며 그 허물을 이조(吏曹)로 돌리고 있으나, 자리가 너무 부족하여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또 조종조(祖宗朝)의 세족 자제가 독서를 부지런히 하는 것은 그 목적이 과거에 오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과(文科)를 공부하여 이루지 못하면 문과를 포기하고 무과(武科)를 취하며, 반드시 이 문·무과 두 가지를 모두 이루지 못한 후에 비로소 음재(蔭才)로 진출하였습니다. 그 경중의 차이가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근래에 와서 보면 문과의 경우 등과(登科)한 자 중에 독서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고 무과에는 서파(庶派)⁷³⁾거나 외방인이 많기 때문에 조정에 들어와 직무를 담당하는 문·무관 가운데 그 성적이 음관(蔭官)만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신이 항상 이 두 가지를 꾀이하게 여기면서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대개 그럴만한 연유가 있었습니

73) 서파(庶派): 서자(庶子)의 자손

다. 도목(都目) 때마다 6품에 오르는 자가 18, 19명인데 문신 4관(四館)과 무신 3관(三館)·3청(三廳) 10명 외에 그 나머지는 모두 음관입니다. 1년 중 두 차례의 도목에서 승진하는 수는 무려 40명에 이르는데, 음관 초임사의 인원수는 경의의 참봉(參奉) 70명, 금부 도사(禁府都事) 10명, 별좌(別坐) 29명, 선공 감역(繕工監役) 6명, 동몽 교관(童蒙敎官) 4명, 내시 교관(內侍敎官) 2명, 수운 판관(水運判官) 2명, 찰방(察訪) 27명이고, 이 밖에 임시 설치한 천문(天文), 지리(地理), 명과(命課)의 교수(敎授), 치종 교수(治腫敎授)·도안청 낭청(都案廳郎廳)을 합하여 모두 1백 65명입니다.

이들은 만약 사대부들과 교류(交遊)하여 명예를 취한 자가 아니면 필시 부형을 빙자한 자로서 세력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벼슬길을 트면 좋은 관직에 저절로 이르게 됩니다. 그 수가 이미 이와 같이 많고 그 형세 또한 스스로 떨칠 수 있으니, 세족으로서 교만과 태만에 빠진 자가 글읽기와 검술에 근실하지 않고 음사(蔭仕)로 진출하기 좋아할 것은 필연적인 사세입니다. 그런데 도목(都目) 때마다 각각 승진하는 것이 저절로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차례로 전보하여 동쪽으로 옮겨 서쪽에 보임하며 6품의 자리만 만들고 다시 사람의 기국(器局)⁷⁴⁾의 타당 여부를 묻지 않으니, 경의의 제수가 혹시 그 사람이 아니거나, 전직이 만기되어도 관직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또한 괴이할 것이 없습니다.

신이 <대전(大典)>의 이전(史典)을 상고하니, 금부(禁府)의 경력(經歷)이 종 4품·도사(都事)가 종 5품이며, 각사(各司)의 별좌(別坐)가 5품·별제(別提)가 6품인데, 포폄조(褒貶條)에 의하면, 수령으로서 열 번 고과에 두 번 중등을 받으면 무록관(無祿官)에 서용 한다 하였으니, 이른바 무록관이란 도사와 별좌를 지칭한 말입니다. <대전>의 제작이 세조(世祖) 때 시작하여 성묘조(成廟朝)에 완성되었는데, 그 당시 각 능의 참봉이 지금에 비하여 절반 밖에 되지 않고 각도 찰방의 절반은 또 서리(書吏)로 차출하여 그를 역승(驛丞)이라 불렀으며, 도사·별좌가 모두 참상직(參上職)이 되니, 초입사원(初入仕員)은 그 숫자가 적고 참상원의 숫자는 몹시 많았습니다.

74) 기국(器局): 기량(器量), 사람의 도량과 재간

그러므로 문·무관과 만기가 된 수령을 조치할 자리가 넓고 넓어 여유가 있었으나, 지금은 도사·별좌·역승이 모두 음관 초사(蔭官初仕)로 돌아가고 기타 선공 감역 및 교수 등 별설 인원의 숫자가 또한 많고 참상은 정(正)이하 감축된 수가 무려 60여 명에 이르니, 그 형세가 진실로 조종조와 상반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정과(正科)⁷⁵를 권장하여 음사(蔭仕)를 억제하고 벼슬길을 막게 하여 요행을 막아 조종의 구전을 회복하려고 하나 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도사와 별좌는 한결같이 <대전>에 의하여 참상 문음(文陰)의 임기가 찬 수령 및 전직자 중 쓸만한 자로 대처하고, 외방의 마관(馬官) 및 수운판관(水運判官)은 문·무 및 참상·참하를 막론하고 모두 능력이 있는 자로 제수하고, 관상감(觀象監)의 3학 교수(三學教授)·도안낭청(都案郎廳)·관왕묘 수직(關王廟守直) 등 잡기(雜歧)를 통해 정사(正仕)에 오른 자를 일체 막고 오직 그 중 공로가 있고 사람의 기국(器局)이 합당한 자만 특별한 예로 서용 하되 일정한 규례로 만들지 않는다면 앞서 열거한 여러 가지 폐단을 10에 7, 8은 제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난(亂) 후에 관원을 감축한 것은 경비를 절약하려는 목적이었는데, 근래 임시 설치한 아문 낭청(衙門郎廳) 및 비국문랑청(備局文郎廳)·문겸선전(文兼宣傳) 등의 관직은 대부분 과거 한산에 있는 자가 하게 되니,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름만 있을 뿐, 비용을 절감한 실속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백관의 감손(減損)이 조정의 체모만 손상시켰을 뿐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난(亂) 후 임시 감축한 관원을 그 수를 헤아려 설치하고 잉국(剩局)의 낭청과 문겸(文兼) 등의 관은 모두 실직과 무록관(無祿官)⁷⁶으로 하며 이어 약간의 녹아(祿兒)를 감하여 비용을 절감한 실효가 있게 하면 사리에 편리하고 유익할 것 같습니다. 신이 외람 되게 정조(政曹)에 있으면서 아침저녁 생각하고 구구한 소견이 있기에 감히 진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차자(筭子)의 말이 매우 타당하다. 대신에게 의논하라.”

75) 정과(正科): 문·무과를 통칭하는 말인 동시에, 과거(科擧)를 통하여 입사(入仕)함

76) 무록관(無祿官): 조선시대 녹봉(祿俸)이 없는 벼슬아치로, 의금부(義禁府)의 당하관(堂下官) 및 제거(提擧)·제검(提檢) 등이 이에 속하였으며, 360일의 재직 기간이 끝나면 품계를 올려 주었다.

하였다. 영의정 윤방은 가하다 하고 좌의정 김류는 불가하다 하니, 상이 윤방의 의논에 따랐다. 이조(吏曹)가 복계(覆啓)하기를,

“법전에는 금부도사·별좌가 5품이고 별제·찰방이 6품입니다. 그것을 초임사(初入仕)로 제수하는 규례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임기가 찬 수령을 별좌로 제수하는 일은 연로한 조사(朝士)중에는 또한 목격하여 아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말한다면 이 제도의 폐지가 또한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서열 규정은 도사가 5품위에 앉고, 별좌가 주부(主簿)의 위에 앉고, 별제가 직장(直長)의 위에 앉고, 찰방이 현감의 위에 앉습니다. 사리로 말한다면 처음 입사한 자가 어찌 도리어 6품의 위에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규례가 이와 같은 것은 대개 옛 법을 오히려 다 폐지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최명길이 차자(箚子)에 말한 뜻은 본래 경솔히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과는 다릅니다. 또 이 법의 회복을 좋아하는 자가 또한 많습니다. 문·무관 및 종전 직함으로 나가기가 쉽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 중 좋아하지 않는 자는 다만 세족의 자제로서 벼슬을 구하는 무리이니, 초사(初仕)의 길이 좁아짐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자가 많고 좋아하지 않는 자가 적다면 이것으로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전 폐지의 유래가 이미 오래되어 이목(耳目)에 익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갑자기 고친다면 사람들이 아마 의아하게 여길 것입니다. 대신이 의논드린 가운데 하나는 인정에 불편함이 없지 않다 하였고 또 하나는 다시 신중을 가하여 점차적으로 시행하자고 했던 것은 모두가 신중히 하자는 의도입니다. 신 등 역시 한꺼번에 시임 관원(時任官員)을 도태시켜 일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빈자리를 따라 메우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여 수년이 지나기를 기다린 후에 그 효과를 보자는 것입니다.

이어 생각하건대, 개정할 때 불편한 일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대략 거행의 사목(事目)을 만들어 위에 아뢰고 시행하여 미진한 아쉬움이 없게 하였으면 합니다.

1. 법전 내에는 금부(禁府)의 경력(經歷)이 4품, 도사(都事)가 5품인데, 근래의 예는 모두 참하(參下)로 차출하니, 자못 법전의 본의가 아닙니다.

지금 일체 법전에 의하여 시행해야겠습니다만, 5품 이상은 대부분 오랫동안 벼슬을 한 자들이므로 분주함을 꺼릴 뿐 아니라 인재를 얻기도 어려울까 염려되오니 5, 6품을 구애할 것 없이 오직 참상 중 합당한 자로 하고, 문관은 참하 중 합당한 자를 의차(疑差)하여 20개월이 찬 후에 6품으로 옮길 것.

- 一. 법전 내에는 별좌가 5품, 별제가 6품이며, 사포서(司圃署)·빙고(氷庫) 별제 외에 도 별검(別檢)이 있어 8품 관이 되었는데, 지금은 통틀어 별좌(別坐)라 이르고 모두 참하로 하니, 실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문·무관 음관(蔭官)을 구애할 것이 없이 참상으로 의차하고 5품을 지내면 별좌, 6품을 지내면 별제라 칭할 것.
- 一. 법전에 의하여 시행하되, 다만 빙고(氷庫)·전설(典設)·금화(禁火) 등의 사(司)는 가장 잔미한 곳이니 처음 입사하면 괴로움을 참고 직무에 이바지하여 6품으로 오르기를 구하지만, 참상은 혹시 회피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3사는 참하인으로 교대로 차임(差任)하여 그대로 별검으로 칭할 것.
- 一. 대군 사부(大君師傅)·내시 교관(內侍敎官)·동몽교관(童蒙敎官)은 법전에 원래 오직 경학(經學)에 조예가 있는 자로 의차할 것.
- 一. 수운 판관(水運判官)은 그 소임이 몹시 중하니, 문·무관·음관을 구애할 것 없이 반드시 참상으로 제수하고 문관에 있어서는 또한 참하로 교대로 차임하되 전보의 규정은 상례에 의하여 시행할 것.
- 一. 각 역(驛)의 찰방은 문·무관·음관·참상·참하를 구애할 것 없이 모두 교대로 차임할 것.
- 一. 관상감(觀象監)의 천문·지리·명과(命課)의 3학 교수(三學敎授), 치종 교수(治腫敎授), 도안청 낭청(都案廳郎廳), 관왕묘 수직(關王廟守直) 등은 모두 정직(正職)이 아닌데도 도목(都目)에서는 으레 승진하니 이것이 사로(仕路)가 막지 못한 한 가지 원인입니다. 그러나 전연 서용하지 않으면 또한 원망하게 될 것이니, 임기가 찬 후 군직 6품에 서용하되 그 재주를 헤아려 임용할 것.

- 一. 신하로서 관직에 제수 되었을 때 사은하는 것은 예법에 당연한 것인데, 도사·별좌·사부·교관 등의 직(職)은 사은 숙배(肅拜)하는 예가 있지 않으니 사리에 몹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임명하는 것을 한결같이 겸관(兼官)의 예에 의해 시행하여 그 일을 중히 할 것.
- 一. 찰방 중 양재(良才)·연서(延曙)·대동(大同)·어천(魚川)·금교(金郊)·은계(銀溪)·고산(高山) 등 역(驛)은 전례에 모두 문관 참상으로 제수 하였기 때문에 겸찰방(兼察訪)이라 칭합니다. 경외의 제수는 원래 구애하는 바가 없으나 기타는 대부분 참하로 제수하기 때문에 겸찰방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참하 문관이 적체된 까닭으로 인하여 찰방의 빈자리가 있으면 모두 문관으로 차출하므로 사람들이 대부분 통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만약 외관에 구애되어 다른 관직을 제수 할 수 없다면 또한 인재가 적체되는 걱정이 없지 않을 것이니, 문관 중 청망(淸望)에 합당한 자는 구애하지 말고 겸찰방의 예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금부도사와 수운판관(水運判官)은 참하관으로 교대로 차임하지 말고, 관상감 교수 이하의 정직(正職) 승진은 그 의도가 범연한 것이 아니니 이것 한 가지는 전례에 의해 시행하라. 또 각 역의 찰방을 범연히 교대로 차임하는 것으로 규례를 정하면 끝내는 필시 모두 참하인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또한 별검(別檢)의 예에 의하여 참하의 조처 숫자를 참작 규정하여 후인(後人)이 준수할 소지를 만들고, 참하 문관 찰방은 만약 구애되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지주 바꾸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이 한 가지 일은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라. 무록관(無祿官) 중 참하(參下)는 임명되었을 때 숙배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조(吏曹)가 또 아뢰기를,

“각 역 찰방 참하에 대해 계하(啓下)한 분부는 성상께서 생각하신 바가 실로 지당합니다. 대신과 상의하여 참하 찰방 31명에 대해 그 잔(殘)과 성(盛)을 나누어 평구(平丘)·율봉(栗峯)·성환(成歡)·이인(利仁)·유곡(幽谷)·김천(金泉)·안기(安奇)·장수(長水)·소촌(召村)·송라(松羅)·창락(昌樂)·사근(沙斤)·삼례(參禮)·오수(葵樹)·벽사(碧沙)·청단(靑丹)·보안(保安)·상운(祥雲)·평릉(平陵) 등 19역은 참상인원으로 제수하고, 주임(重林)·경안(慶安)·

도원(桃源)·연원(連源)·금정(金井)·자여(自如)·황산(黃山)·성현(省峴)·청암(靑巖)·경양(景陽)·제원(濟原)·기린(麒麟) 등 12역은 참하 인원으로 제수하는데, 이번 변동하는 일은 오로지 초입사자(初入仕者)가 너무 많아서 취하는 조치이고 보면 반드시 참하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고 많은 참상 중 합당한 자가 있으면 더러 교대로 차임하는 것도 불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참하 문관 차방을 자꾸 바꾸는 폐단도 실로 성상의 하교하신 바와 같습니다만 일체 청선(淸選)의 길을 막는다면 인재가 아깝습니다. 신 등의 생각에는, 한림주서(翰林注書)로서 본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구애할 것 없이 의망(擬望)⁷⁷⁾ 하고, 그 나머지 옥당(玉堂)⁷⁸⁾, 춘방(春坊)⁷⁹⁾의 관(官)은 수령의 예에 의하여 계청(啓請)한 후에 비로소 의망(擬望)하는 것이 또한 양쪽이 다 편리할 것 같습니다. 또 대신의 생각은 '관상감, 삼학교수, 치중교수가 정직(正職)으로 승진하는 것은 일시적 하교(下教)에서 나온 것이지, 법전에 실린 규정이 아닙니다. 능 참봉(陵參奉)은 생진(生進)으로 제수 되어 7,8년이 된 후에야 비로소 6품으로 오르게 되는데 비해, 이들은 잡술(雜術)로 입사하여 겨우 30개월이 지나면 참상의 정직을 받게 되니 실로 미안하다. 전의 사목(事目)에 의하여 서반(西班) 6품을 서용할 때에는 재주에 따라 임용하고, 그 중 드러난 성과가 있어 쓸만한 인재는 특별히 승진을 허락해야 온당하겠다.'고 합니다.

도안청낭청(都案廳郎廳)에 대해서는 병조(兵曹)가 누차 참상으로 제수 해야 한다는 뜻으로 계품(啓稟)하였으나, 왕왕 사정에 치우쳐 혹은 참하로 차임해 채우니 몹시 불합리한 일입니다. 앞으로 본 조로 하여금 전의 계하(啓下)에 따라 반드시 참상으로 차출하여 그 책임을 중시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관왕묘 수직(關王廟守直)에 이르러는 광해(光海)때에 훈련원(訓練院)의 권지(權知)로 나누어 차임하여 12개월이 지난 후 6품으로 승직(陞職)시켰으나, 실로 따라 행할 만한 예가 아니었기 때문에 때로는 버려 두고 살피지 않았습니니다. 반정(反正) 후 11년 사이에 6품으로 올라 온 자가 겨우 두어 사람 뿐이었으니 폐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를 폐지하면 본

77) 의망(擬望): 비의(備擬)·관원을 임명 할 때, 이조(吏曹)·병조(兵曹)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를 추천하던 일

78) 옥당(玉堂): 홍문관(弘文館)을 달리 일컫던 말.

79) 춘방(春坊):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을 달리 이르는 말

묘(本廟)의 수직이 없게 되므로 또한 허술할 것 같습니다. 병조(兵曹)로 하여금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 본 원의 권지참군(權知參軍) 이상으로 나누어 차임하고 30개월이 지난 후 전례에 의하여 서반(西班) 6품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기에 감히 이렇게 여쭙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하라. 3학 교수는 앞서의 하교(下敎)에 의하여 권장하는 제도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원전〉 34집 527면

인조 13년 1635년8월28일(乙巳)

강원도에 서리가 내리다

강원도에 서리가 내렸다.

〈원전〉 34집 610면

인조 15년 1637년4월23일(辛酉)

강원도 흙곡 · 인제 등에 연일 눈이 내리다

강원도 흙곡(歙谷) · 고성(高城) · 인제(麟蹄) 등지에 연일 눈이 내렸다.

〈원전〉 34집 687면

인조 18년 1640년5월6일(丙戌)

강원도 일대에 우박이 내리다

강원도 철원(鐵原) · 안협(安峽) · 평강(平康) · 인제(麟蹄) 등지에 크게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렸다.

〈원전〉 35집 87면

인조 19년 1641년9월17일(庚寅)

인제현에 지진이 일다

강원도 인제현(麟蹄縣)에 지진이 있었다.

〈원전〉 35집 123면

인조 20년 1642년3월12일(辛巳)

강원도에서 오천국이 어사를 사칭하다

강원도에서 오천국(吳天國)이란 자가 어사(御使)를 사칭하고서 역마(驛馬)를 타고 각 고을을 횡행하다가 일이 발각되었는데 본 도로 하여금 복주(伏誅)할 것을 명하였다.

〈원전〉 35집 132면

인조 24년 1646년3월28일(乙亥)

강원도의 열 네 고을에 큰물이 지다

강원도의 열 네 고을에 큰물이 졌다.

〈원전〉 35집 270면

인조 24년 1646년7월11일(乙卯)

강원도와 전남도에 큰물이 지다

강원도와 전남도에 큰물이 졌는데 감사가 보고하였다.

〈원전〉 35집 281면

인조 25년 1647년5월18일(戊午)

강원도에 큰 가뭄이 들고 서리가 내리다

강원도에 큰 가뭄이 들고 서리가 내렸다.

〈원전〉 35집 302면

인조 26년 1648년 6월4일(丁酉)

강원도에 큰물이 지다

강원도에 큰물이 졌다.

〈원전〉 35집 326면

효종편

효종 1년 1650년6월21일(癸卯)

강원도에 황충이 발생하다

강원도에 황충(蝗虫)이 발생하였다.

〈원전〉 35집 435면

효종 1년 1650년9월7일(戊午)

강원도에 큰물이 지다

강원도에 큰물이 졌다.

〈원전〉 35집 451면

효종 4년 1653년2월22일(己未)

강원도에 전염병이 크게 번지자 약물을 보내고 진국을 나눠주게 하다

강원도에 전염병이 크게 번졌다. 예조(禮曹)가 약물을 넉넉하게 보내고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진곡(賑穀)을 나누어주어 구제하게 할 것을 청하니, 상이 내국(內局)에 명하여 제도(諸道)에 약물을 나누어 보내게 하였다.

〈원전〉 35집 618면

효종 5년 1654년5월3일(壬辰)

강원도에 큰바람이 불다

강원도에 큰바람이 불었다.

〈원전〉 35집 670면

효종 5년 1654년6월5일(癸亥)

강원도에 황충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얼마 뒤에는 큰물이 지다

강원도에 황충(蝗虫)이 발생하였는데, 얼마 뒤에는 큰물이 졌다.

〈원전〉 35집 672면

효종 5년 1654년11월7일(癸巳)

강원도에 오얏과 복숭아 꽃이 피다

강원도에 오얏과 복숭아 꽃이 피었다.

〈원전〉 35집 690면

효종 6년 1655년5월30일(癸丑)

강원도 · 전남도에서 우박이 내리다

강원도 · 전남도(全南道) · 평안도에서 우박이 내렸다.

〈원전〉 36집 15면

효종 6년 1655년8월21일(壬申)

황해 · 평안 · 강원 세 도에 우박이 내리다

황해 · 평안 · 강원 세 도에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주먹만하였다.

〈원전〉 36집 28면

효종 7년 1656년2월9일(戊午)

강원도에 기근이 들다

강원도에 기근(饑饉)이 들었다.

〈원전〉 36집 43면

효종 7년 1656년5월15일(癸巳)

강원도에 큰바람이 불다

강원도에 큰바람이 불었다.

〈원전〉 36집 55면

효종 7년 1656년5월28일(丙午)

강원도와 경상도에 우박이 내리다

강원도와 경상도에 우박이 내렸다.

〈원전〉 36집 56면

효종 7년 1656년6월1일(戊寅)

강원도와 함경도에 큰물이 지다

강원도와 함경도에 큰물이 졌다.

〈원전〉 36집 58면

효종 7년 1656년8월9일(甲申)

강원도에 기근이 들다

강원도에 기근(饑饉)이 들었다.

〈원전〉 36집 62면

효종 7년 1656년9월8일(癸丑)

강원도에 비바람이 심하게 불다

강원도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많은 비가 내렸다.

〈원전〉 36집 63면

효종 7년 1656년9월26일(辛未)

강원도에 큰바람이 불다

강원도에 큰바람이 불었다.

〈원전〉 36집 67면

효종 8년 1657년8월16일(丙戌)

강원도에 홍수가 나다

강원도에 홍수(洪水)가 났다.

〈원전〉 36집 106면

현종편

현종 3년 1662년6월12일(癸丑)

강원감사 이홍연이 비와 황충의 피해를 치계하다

강원감사 이홍연(李弘淵)이 치계(致啓)하였다.

“10일 동안 큰비가 내린 나머지 포구의 촌락에 모래가 뒤덮이는 재해(災害)가 발생하였는데 온 도가 모두 그러합니다. 그리고 영동(嶺東) 몇몇 고을에 서는 황충(蝗虫)이 많이 발생하여 봄에 경작한 각 곡식이 모조리 손상 당하였습니다.”

〈원전〉 36집 336면

현종 4년 1663년9월20일(甲申)

강원도와 충청도에 우역이 돌다

강원·충청·양도(兩道)에 우역(牛疫)이 크게 번져 죽은 소가 매우 많았다.

〈원전〉 36집 382면

현종 4년 1663년12월13일(丙午)

강원도에 우역이 돌다

강원도에 우역(牛疫)이 크게 돌아 1천 7백 70여 마리가 죽었다.

〈원전〉 36집 391면

현종 5년 1664년4월5일(丁酉)

강원도에 전염병이 번지다

강원도에 전염병이 크게 번져 현재 앓는 이가 1만 5백 84명, 사망(死亡)이 87명이었다.

〈원전〉 36집 407면

현종 5년 1664년5월6일(丁卯)

강원도에 염병이 돌았다

강원도에서 염병(染病)으로 65명이 사망하였다.

〈원전〉 36집 411면

현종 5년 1664년6월20일(辛亥)

강원도 강릉 등에 염병이 크게 번지다

강원도 강릉(江陵) 등의 15개 읍에 염병(染病)이 크게 번졌다.

〈원전〉 36집 417면

현종 10년 1669년11월16일(庚戌)

원양감사 정익의 장계로 재해 입은 지역의 부담을 감해준다

원양감사(原襄監司) 정익(鄭楹)이 올린 장계(狀啓)로 인하여, 본 도 동래(東萊)에서 상례로 납부하는 응연(鷹連)을 가격을 따져 호조(戶曹)에 보내는 일을 과하였고, 또 인제(麟蹄)·양구(楊口) 두 읍의 도감 둔전(都監屯田)을 과하였으며, 제반 신역 중 징수할 대상이 없는 경우는 조사하여 탕감하였다. 영동(嶺東)·울진(蔚珍)·평해(平海)·강릉(江陵)·양양(襄陽) 등 7개 고을에서는 추수할 때까지 서복민 쇄환(刷還)을 정지하라고 하였는데 재해를 특히 심하게 입었기 때문이었다.

〈원전〉 36집 608면

현종 11년 1670년11월20일(癸酉)

강원감사 김익경이 진휼을 청하다

강원감사 김익경(金益鏡)의 장계(狀啓)에 따라 춘천·횡성·낭천·원주 등 4개 읍의 콩 1백 73석과 양구·인제(麟蹄)·홍천·정선·평해·울진·고성(高城) 등 7개 읍의 세포(稅布) 3동(同) 30필을 본 도에 지급하여 진휼(賑恤)할 밀천에 보태게 하였다.

〈원전〉 38집 41면

현종 12년 1671년1월17일(己巳)

원양도에서 여역으로 사람이 죽다

원양도(原襄道)⁸⁰에서 여역(羸疫)으로 죽은 자가 67명이고, 소의 돌림병도 줄곧

80) 원양도(原襄道): 강원도의 이명(異名)으로 효종(孝宗) 때 개칭하였으나 뒤에 다시 강원도로 하

치열하였다.

〈원전〉 36집 686면

현종 12년 1671년8월15일(癸巳)

원양도에서 여역으로 사람과 소가 죽다

원양도(原襄道)에서 염병(染病)으로 죽은 자가 3백 36명이고 74명이 아사(餓死)하였으며, 죽은 소는 3백 35두였다.

〈원전〉 36집 704면

현종 12년 1671년10월29일(丁未)

서울의 여역이 가라앉다

이 달에 서울에서 여역(癘疫)이 조금 가라앉았다. 서울에서 죽은 자가 10여 명이었고, 각 도에서 보고한 사망자도 5백 40명이었다. 그러나 각 도의 우역(牛疫)은 점점 치성해지고 있는데, 양남(兩南)과 원양도(原襄道)가 더욱 심하였다.

〈원전〉 36집 709면

였다.

숙종편

숙종 5년 1679년6월5일(戊辰)

함경도·강원도 등 여러 도에 황충이 일어나다

함경도·황해도·강원도 등 여러 도에 황충(蝗虫)이 있었다.

〈원전〉 38집 416면

숙종 7년 1681년4월7일(庚寅)

강원도와 평안도에 흙비가 내리다

강원도에서 3월 그믐부터 3일 동안 계속해서 토우(土雨)가 내려 옷에 맞으면 황색(黃色)을 이루었는데, 보면 바로 혼탁(混濁)한 황토 물이었으며, 밤낮으로 안개가 끼어 어두웠다. 평안도에서는 3월 19일에 눈이 내렸고, 구성(龜城)·강서(江西) 등지에 서는 토우(土雨)가 내려 초목(草木)을 적시니 모두 황색이었다.

〈원전〉 38집 524면

숙종 7년 1681년5월11일(癸亥)

강원도 여러 고을에서 지진이 일어난다

강원도에서 지진(地震)이 일어났는데, 소리가 우뢰와 같았고 담 벽이 무너졌으며, 기와가 날아갔다. 양양(襄陽)에서는 바닷물이 요동쳤는데, 마치 소리가 물이 끓는 것 같았고, 설악산(雪嶽山)의 신흥사(新興寺) 및 계조굴(繼祚窟)의 거암(巨巖)이 모두 붕괴되었다. 삼척부(三陟府) 서쪽 두타산(頭陀山) 층암(層巖)은 옛부터 돌이 움직인다고 하였는데, 모두 붕괴되었다. 그리고 부(府)의 동쪽 능파대(凌波臺) 수중(水中)의 10여 장(丈)되는 돌이 가운데가 부러지고 바닷물이 조수(潮水)가 밀려가는 모양과 같았는데, 평일에 물이 찻던 곳이 1백여 보(步) 혹은 5, 6보 가량 노출되었다. 평창(平昌)·정선(旌善)에도 또한 산악(山岳)이 크게 흔들려서 암석이 추락하는 변화가 있었다. 이후 강릉(江陵)·양양·삼척·울진·평해·정선 등의 고을에서 거의 10여 차례나 지동(地動)하였는데, 이때 8도에서 모두 지진이 일어났다.

〈원전〉 38집 529면

숙종 7년 1681년10월9일(戊子)

강원도 고을의 진휼에 관한 비국의 복주

강원도 관찰사 정시성(鄭始成)이 장계(狀啓)로 각 고을에서 재해를 입은 상황을 진달하고, 인해서 구실을 줄이고 백성을 진휼(賑恤)하는 일로 적당한 것을 논하자, 비국(備局)⁸¹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영동(嶺東)에서 매우 심하게 재해를 당한 일곱 고을의 경우는 제반 신역(身役)을 전부 감해 주고, 영서(嶺西)에서 재해를 매우 심하게 당한 여섯 고을의 경우는 제반 신역의 절반을 감해주며, 단지 당해 연도의 적곡(糶穀)은 절반만 거두어 바치게 하고, 신역으로 당연히 한 필(匹)반을 바쳐야 할 지는 반 필을 감해주고, 당연히 한 필을 바쳐야 할 지는 논하지 말며, 대동미(大同

81) 비국(備局): 비변사(備邊司), 군국(軍國)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

米) 열 말인 경우는 다섯 말을 감해주소서. 영동(嶺東)에서 매우 심한 고을의 세폐목(歲幣木)⁸²과 대동포(大同布)는 아울러 전부 감해주고, 어부(漁夫)와 염한(鹽漢)⁸³에게서 거두어들이는 세금도 해당 조(曹)와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특별히 감해 주도록 하소서. 영동과 인접하여 있는 영서(嶺西)의 조금 풍년이 든 여러 고을에서 바치는 적곡(糶穀)은 본 도로 하여금 참작해서 수효를 정하여 영동으로 옮겨서 진휼(賑恤) 하도록 하고, 원주(原州) 등 세 고을은 금년에 진휼청(賑恤廳)에서 지급한 쌀 5백 석을 상납(上納)하지 말도록 하고, 바치는 대로 모아서 진휼 하는데 보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38집 555면

숙종 7년 1681년11월1일(庚戌)

재해를 입은 강원도 고을의 신역을 감하다

강원도 영동(嶺東)과 영서(嶺西)의 재해가 든 고을은 일체 신역(身役)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원전〉 38집 560면

숙종 9년 1683년6월12일(癸未)

인제현에 서리가 내리다

강원도 인제현(麟蹄縣)에 서리가 내렸다. 임금의 하교(下教)하기를,
 “유월에 서리가 내린 것은 실로 비상(非常)한 대 이변(大異變)이니, 놀라운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생각하건대 재앙은 까닭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82) 세폐목(歲幣木): 매년 음력 10월 중국에 가는 사신이 공물로 가지고 가는 무명

83) 염한(鹽漢): 소금 굽는 사람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이니, 이는 반드시 크게 억울하고 원통한 기운이 위로 천화(天和)를 범하여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대 방백(方伯)은 모름지기 나의 뜻을 체념(體念)하여 무릇 재앙을 불러일으킨 단서에 관계된 것을 따로 채방(採訪)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38집 650면

숙종 10년 1684년5월25일(庚寅)

강양도의 인재 등 네 고을에 황충이 성하다

강양도(江襄道)⁸⁴의 인재(麟蹄) 등 네 고을에 황충(蝗虫)이 성하였다.

〈원전〉 38집 690면

숙종 12년 1686년8월8일(庚申)

인제현과 철원부에 비와 우박이 내렸다는 장계가 들어오다

지난 7월에 인제현(麟蹄縣)에 서리가 내리고 큰바람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비와 우박이 번갈아 내렸고, 철원부(鐵原府)에도 비와 우박이 많이 내렸는데 큰 것은 계란만 하였고 작은 것은 새알만 하였다. 감사(監司)가 이를 보고했는데, 여러 도에서도 대개 그러했으므로, 장계(狀啓)가 연달아 들어 왔다.

〈원전〉 39집 74면

84) 강양도(江襄道): 강원도의 이명(異名)으로 숙종(肅宗) 때에 개칭하였으나, 뒤에 다시 강원도라 하였다.

숙종 20년 1694년7월25일(辛卯)

강원도 · 충청도에 밤마다 서리가 내리다

강원도 · 충청도 · 전라도 3도에 밤마다 서리가 내렸다.

〈원전〉 39집 341면

숙종 23년 1697년6월25일(癸酉)

강원도에 장마가 한 달이 지나도 계속되었다

강원도에 장마비가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 내려 날씨가 음산하고 차가우며 대관령(大關嶺) 동쪽의 아홉 고을과 서쪽의 열 한 고을이 모두 수재(水災)를 당하였다고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하였다.

〈원전〉 39집 463면

숙종 23년 1697년7월3일(辛巳)

성현 등의 네 자리에는 승문원 · 성균관의 참하관을 차임하여 파견하게 하다.

이조(吏曹)에서 아뢰어 음관(蔭官) · 교관(敎官) · 감역(監役)으로 일찍이 높은 품계(品階)의 녹봉을 받다가 도사(都事)나 별검(別檢)으로 옮겨서 임명된 자에 대해서는 12개월만에 6품 참하찰방(參下察訪)으로 승진시켜 내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성현(省峴) · 황산(黃山) · 청엄(靑巖) · 경양(景陽) 네 자리에는 승문원(承文院) · 성균관(成均館)의 참하관을 차임하여 파견하고, 주임(重林) · 경안(慶安) · 도원(桃源) · 기린(麒麟) · 금정(金井) 다섯 자리에는 음관(蔭官)의 자리로 삼도록 청하니, 그대로 윤허(允許)하였다.

〈원전〉 39집 464면

숙종 28년 1702년7월4일(癸丑)

지진이 있었다

경기(京畿)·충청도·강원도·전라도·경상도 5도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지진(地震)이 있었다.

〈원전〉 39집 691면

숙종 29년 1703년7월11일(乙卯)

이조판서 이유가 수령의 도목정을 고칠 것을 청하다

이조판서 이유(李濡)가 아뢰기를,

“수령(守令)을 가려서 보내라는 전교(傳敎)가 매년 있었습니다만 형편상 행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도목정(都目政)⁸⁵의 경우 실직(實職)이 아니면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조용(調用)할 길이 없습니다. 대개 처음 입사(入仕)하는 길은 전에 비해 점차 넓어졌습니다만, 종사(從仕)한 후에는 순서대로 승천(陞遷)하기 때문에 참상(參上)의 자리가 매우 모자라 옮겨서 차례대로 수가 없습니다.

최석정(崔錫鼎)이 일찍이 능참봉(陵參奉)의 달수(月數)를 고쳐서 15개월로 하려 하였고, 또 재랑(齋郎)을 고쳐 직장(直長)과 봉사(奉仕)로 만들려 하다가 실행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경외(京外)에서부터 조금씩 변동하여 참하(參下) 수 십 자리를 줄여 참상(參上) 십여 자리를 늘리면 적체될 우려도 없고 탁용(擢用)할 도리도 있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드디어 관제(官制)를 조금 고쳤는데,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참하(參下) 5원(員) 중 3원은 경력(經歷)으로, 빙고 별검(氷庫別檢) 4원 중 2원은 별제(別提)로, 전설 별검(典設別檢) 3원 중 2원은 별제(別提)로, 중림(重林)·도

85) 도목정(都目政): 매년 음력 6월과 12월에 관원의 치적을 종합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좌천·파면을 시키던 일.

원(桃源)·금정(金井)·기린(麒麟)의 찰방(察訪)을 모두 참상(參上)으로, 장원(掌苑)·사포(司圃)의 별감 각 2원을 하나는 직장(直長)으로 하나는 봉사(奉仕)로, 사옹(司饗)·사직(社稷)의 참봉 각 2원을 하나는 직장(直長), 하나는 봉사(奉仕)로, 전옥 참봉(典獄參奉) 1원을 봉사(奉仕)로 올렸다.

〈원전〉 40집 37면

숙종 29년 1703년11월2일(癸卯)

경기도 등에 천둥 번개가 치고, 속천에 지진이 있었다

밤에 번개가 쳤다. 경기(京畿)·강원·평안 등의 도(道)에 큰비와 함께 천둥과 번개가 쳤다. 속천(肅川)에는 지진(地震)이 일어나고, 청천강(淸川江)·대동강(大洞江) 두 강에서는 물이 넘쳤다.

〈원전〉 40집 53면

숙종 32년 1706년2월24일(癸丑)

인제의 서화천에 흐르는 물이 끊어졌으므로 도신이 알리다

춘천(春川)의 소양강(昭陽江)과 인제(麟蹄) 서화천(瑞和川)의 물이 끊어졌으므로,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로써 알러왔다.

〈원전〉 40집 188면

숙종 32년 1706년4월12일(己亥)

강원도에서 서리와 눈으로 인한 재해를 장계로 알리다

강원도에서 또 서리와 눈이 온 재해(災害)를 장계(狀啓)로 알렸다.

영의정(領議政) 최석정(崔錫鼎)이 임금이 뜰을 뜨는 일로 입시(入侍)할 때에 이 일로써 진계(陳啓)하니, 임금이 유의(留意)한다는 것으로써 답하였다.

〈원전〉 40집 192면

숙종 40년 1714년8월23일(壬辰)

정언 조명겸이 양구현 백성들이 백토를 채굴하는 폐단에 대해 상소하다

정언(正言) 조명겸(趙鳴謙)이 양구현(楊口縣)에서 소명(召命)을 받들고 들어와 양구 백성들이 백토(白土)를 채굴하는 폐단에 대하여 상소로 진달하기를,

“백점토(白粘土)는 높은 산 가운데에 있는데, 양구의 부역(赴役)에 응하는 민호(民戶)는 5백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5백호의 백성으로 천 길이나 되는 높은 산꼭대기를 타고 뚫게 하여 겨우 토맥(土脈)을 찾으면 언덕이 바로 무너져 압사(壓死)하는 역부(役夫)가 없는 해가 없습니다. 수개월의 공력을 들여 5백 석의 정토(正土)를 겨우 채취한 뒤 춘천·홍천·인제(麟蹄)·낭천·양구 다섯 고을에서 각기 인부(人夫)를 내어 선소(船所)로 운반하여 분원(分院)에 상납하는데, 춘천·홍천·인제·낭천 네 고을은 당초 채굴하는 역사(役事)에는 참여하지 않고 다만 운납(運納)하는 수고로움만 담당하는데도 오히려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더욱이 이 양구 고을에는 지토선(地土船)도 없이 백토를 채굴하는 중역(重役)을 홀로 떠맡고 있는데, 또 운납(運納)하는 큰 역사(役事)를 더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그 소(召)를 사용원(司囊院)에 내렸다.

〈원전〉 40집 538면

숙종 40년 1714년8월25일(甲午)

강원도 일대에 서리가 내리다

강원도 원주 등 여덟 고을에 서리가 내렸다.

〈원전〉 40집 538면

숙종 43년 1717년9월2일(癸丑)

강원도 수재민에게 홀전을 거행하다

강원도 각 고을에 큰물이 저서 가사(家舍)가 물에 떠내려가거나 전복(顛覆)된 것이 28호이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1백 47명이고 승려들이 깔려서 죽은 것이 16명이었다. 세자(世子)가 특별히 홀전(恤典)을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40집 674면

숙종 44년 1718년10월3일(丁未)

강원도의 염병으로 죽은 자의 수효를 도신이 아뢰다

강원도의 백성으로 염병(染病)에 걸려 죽은 자가 3백 80여 명이고, 온 집안 사람이 전부 죽은 집이 22가호(家戶)라고 도신(道臣)이 아뢰었다.

〈원전〉 41집 39면

숙종 44년 1718년11월26일(庚子)

염병으로 인한 사망자와 환자의 수효를 도신이 아뢰다

강원도의 각 고을 백성으로 염병(染病)에 걸려 사망한 자가 1천 30여 명이며, 전라도는 염병이 조금 그치기는 했으나 사망한 자는 그래도 1백여 명이라고 도신(道臣)이 아뢰었다.

〈원전〉 41집 44면

숙종 45년 1719년8월13일(癸丑)

강원도에서 민가가 물에 잠기다

강원도에서 민가(民家) 1백 수 십 호가 표몰(漂沒)되었는데,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였다.

〈원전〉 41집 78면

경종편

경종 1년 1721년5월28일(戊子)

대사헌 이재의 상소

소대(召對)를 행하여 <절작통편(節酌通編)>을 강(講)하였다. 애초에 대사헌(大司憲) 이재(李縉)가 상소(上疏)⁸⁶⁾하기를,

“왕위에 오르신 이래로 무릇 모든 시조(施措)⁸⁷⁾가 위미(萎靡)하고 태예(怠豫)하여 마침내 한 마디의 말, 한 가지의 일도 천심(天心)에 보답하고 백성의 기대를 위로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친히 제사 지내시는 일에 대해 간(諫)한 자들은 많았지만 천청(天聽)을 감동시켜 돌리지 못하여 중외(中外)의 근심과 답답함이 날로 심하던 차에 어제 내리신 비망기(備忘記)는 조금

86) 이재(李縉)의 상소(上訴): 경종(景宗)은 건강이 좋지 않아 항상 병환에 시달렸고 후사(後嗣)마저 없다. 그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모친 희빈 장씨가 사약을 받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들이 보고싶다고 하여 그녀에게로 나가자 갑자기 희빈 장씨가 그의 하초(下焦)를 움켜쥐고 잡아당겨 버리는 바람에 기절을 하였었다는 설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시름시름 앓으며 남자구실을 못했다고 한다. 또 당시는 소론(小論)과 노론파(老論派)의 당쟁이 끊이지 않던 때라, 노론측은 경종이 병약하여 정사를 주관할 수 없다며 연잉군(英祖)으로 하여금 대리청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론측은 왕을 보호해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거세게 반발하였으나 경종은 와병 중 이어서 세계청정(世弟聽政)을 받아들였지만 소론의 강력한 반발로 다시 거두어 들였다. 그 후에도 경종은 세계청정을 명했다가 다시 거두어들이기를 반복하였다. 이러한 경종의 처사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경종의 친정(親政)을 촉구하기 위하여 올린 상소였다.

87) 시조(施措): 시행하고 처리함

군하(群下)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성상의 하교(下敎)가 아니었더라도 여러 신하들은 진실로 그것이 이와 같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전하께서 어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신의 근심은 오히려 감히 갑자기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성인(聖人)이라도 편하지 못한 것인데, 전하께서는 위로 종사(宗社)와 자성(慈聖)을 위하여 마땅히 스스로 몸을 가볍게 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그 애통(哀慟)·참달(慘怛)이 천성(天性)에서 나오니 억누르고자 하여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배례(拜跪)할 즈음에는 능히 예(禮)대로 못하신다 하더라도, 스스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침전(瞻展)·곡읍(哭泣)의 예절이 있을 뿐인데, 개세(開歲) 이후로 오히려 한 번도 성배(省拜)하지 않았고, 크고 작은 제사에 걸핏하면 '제사 지내지 않은 것 같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근력이 미치지 못함은 진실로 어찌할 수 없지마는, 마음에 숨긴다면 그것이 과연 스스로 편안하시겠습니까? 전하의 전후 하교(下敎)는 번번이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뜻이 있으므로, 양심이 진절(真切)하고 착한 단서가 발현하여 샘물이 팔팔 솟아나고 불길에 활활 타오르는 것 같은 기세가 있으니, 여기에 나아가 채워간다면 마땅히 현인(賢人)이 될 것입니다.

아! 세월은 덧없이 흐르고 효성스런 생각은 다함이 없는 것인데, 가는 것은 붙잡을 수 없어도 오는 것은 오히려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구나 연제(練祭) 지내기 이전의 은전(殷奠)은 유독 이번 달 초하루가 있을 뿐인데, 침을 맞으시는 것도 정지하시고, 다리 부위의 시리고 아픈 증세도 또한 조금 없어졌으니, 전하께서 이번에 전애(展哀)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어느 때를 기다리겠습니까?

지난번에 사향(四享)의 정식(定式)은 이미 사체(事體)와 예전(禮典)에 아주 어긋났는데, 전하께서 또 능히 그 말씀을 한 번도 실천하지 않으셨으니, 지금 와서 개도(改圖)한다면 일식(日食)·월식(月食)이 다시 복원(復圓)하는 것보다 더욱 빛이 있을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조속히 분명한 하교(下敎)를 내리셔서 친히 삭전(朔奠)을 행하소서. 만약 배례(拜跪)하기가 어려우시면 관천(裸薦)의 한 절차는 대신(大臣)으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하시고, 지금부터 이후로는 향사(享祀)도 반드시 근력을 헤아려 거행하셔서 반드시 스

스로 성상의 심정에 다하도록 하신다면, 중외(中外)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고 신인(神人)의 희망을 영구히 매어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만 말씀하시기를, ‘전일의 비망기(備忘記)가 충분히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였다.’ 하여 번번이 대신 행하게 할뿐이고, 여러 신하들도 또 따라서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위에서는 사람들의 간(諫)함을 막아버리고 아래에서는 군주의 허물을 이루어 주는 것이 됩니다. 신은 이 때문에 감히 함부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경계를 진달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서찰(恕察)하소서.

군주는 구중 궁궐에 깊이 거처하니, 그 본원(本源)의 은미한 것을 쉽사리 엿보아 헤아리지 못할 것 같으나, 안에 있음으로 해서 밖으로 나타나는 바는 스스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조정(朝廷)에 나와 정사를 보실 적에 오로지 연묵(淵默)⁸⁸만을 숭상하시고, 무릇 시비(是非)·흑백(黑白)의 사이에 거의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는 것처럼 하시며, 크고 작은 정령(政令)을 일체 유유범범(悠悠泛泛)한 지경에 방치하여 마치 일개의 몸과 마음으로 더불어 서로 관섭(關涉)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아래에서 봉승(奉承)하는 자들도 안일에 젖어서 재물이나 탐내고 구차하게 시일(時日)을 보내어, 멩하니 마치 깊은 샘물 가운데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아서는 능히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전하께서도 시험삼아 전사(前史)를 보소서. 어찌 일찍이 임어(臨御)한 초기에 한 해가 다 가도록 한 번도 개강(開講)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까? 승선(承宣)이 입대(入對)하는 규정이 드디어 폐지되어 진현(進見)은 더욱 뜸해졌고, 전강(殿講)이나 친정(親政)하는 일이 간혹 있었으나, 느리게 하고 다급하게 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빈청(賓廳)의 차대(次對)는 나라의 중대한 일인데도 하전(夏甄)⁸⁹의 우불(吁沸)⁹⁰이 하나의 ‘유(唯)’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이와 같이 하고서 그만둔다면 비록 하루에 세 번을 인접하는 부지런함도 또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구중궁궐 깊은 곳에 팔짱을 끼고 계시면서 신료(臣僚)들을 드물게 접견하시니,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평소 친

88) 연묵(淵默): 아무생각 없이 잠잠히 있음

89) 하전(夏甄): 입금이 거처하는 곳. 경연청의 별호.

90) 우불(吁沸): 불찬성을 뜻하는 말

근하게 하는 지는 누구이며,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군주의 마음을 좀 먹고 덕(德)을 잃게 함은 비단 성색(聲色)·치빙(馳騁)만이 그런 것이 아니며, 한 생각을 이기지 못하면 죽히 나라를 잃는 근저(根柢)가 되는 것이니,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아! 천재(天災)는 날마다 이르고, 인심은 날로 떠나가며, 사의(私意)는 날로 더욱 방자해지고, 의리(義理)는 날로 더욱 문란해지며, 기강은 날로 더욱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갑자기 망(亡)하는 데 이르지 않는 것은 다만 선왕(先王)의 덕택(德澤)이 사람들에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그것을 믿고 스스로 안일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종전의 예태(豫怠)의 습관을 덕음(德音)을 깊이 발하여 엄격히 스스로 잘 질책하소서. 여러 신하들의 주장(奏章)에 이르러서는 간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성상의 비답(批答)도 가납(嘉納)하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끝내 채용(採用)하였다는 실상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거의 ‘기뻐하면서도 근본을 추구하지 않고 따르면서도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 신의 진달 하는 바는 삼가 ‘먼저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의리’에 붙이는 바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또 말씀하시기를, ‘유의(留意)하겠다.’고 할뿐이라면 신은 다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고, 이어서 체직(遞職)해서 해면(解免)해 주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세월이 덧없이 흘러 상기(祥期)가 어느덧 임박하였다. 애통(哀痛)한 가운데 경(卿)이 상소하여 진달 한 것을 보니, 경계하여 가르친 것이 지극히 간절하고 지극히 정성스러우므로, 내가 가납(嘉納)한다. 경의 말이 이와 같으므로 본직(本職)은 지금 우선 체직(遞職)을 허락한다. 경은 사직하지 말고 들어오라.”

하였다.

이재(李縉)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며 청명(淸名)이 있었다. 과거에 급제하여 추천으로 예문관(藝文館)에 들어가 검열(檢閱)이 되었고, 자리를 옮겨 시독(侍讀)에 이르렀으며, 호당(湖堂)에 사가(賜暇)받았다.

계사년에 공경(公卿)들이 숙종에게 존호(尊號)를 올렸을 적에 이재가 ‘존호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여 외직(外職)으로 나가서 북도(北道)의 평사(評事)가 되

었다. 이미 돌아온 후에 그 어머니 민씨(閔氏)가 이재에게 말하기를,

“내 나이가 이미 많아서 늙고 다른 자식이 없는데, 너는 왕사(王事)에 종사하니, 내가 밤낮으로 외롭게 집안에 있다. 너는 어찌하여 종양(終養)한다고 진정(陳情)하지 않느냐?”

하였다. 이재가 이로 말미암아 감히 종사(從仕)하지 못하고, 그 뒤에 균전사(均田使)가 되었을 적에도 굳이 사양하여 나아가지 않았다. 성상 원년(元年)에 김일경(金一鏡)이 대대적으로 충량(忠良)한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재의 중부(仲父) 이만성(李晩成)도 하옥(下獄)되어 죽었다. 이재가 그의 어머니와 더불어 인제(麟蹄)의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유학(儒學)을 공부하며 힘써 실행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으니, 이름이 당세(當世)에 높았고, 사방(四方)의 학자들이 스승으로 존경하였다.

〈원전〉 41집 344면

경종 2년 1722년2월21일(丙子)

처사 김창흠의 즐기

처사(處士) 김창흠(金昌翕)이 졸(卒)하였다. 김창흠의 자(字)는 자익(子益)인데, 김수항의 아들이다. 젊어서부터 지기(志氣)가 탁월하여 가시(歌詩)를 즐겨 지었는데, 〈시경(詩經)〉 3백 편에서부터 아래로 성당(盛唐)의 이백(李白)·두보(杜甫)와 송(宋)·명(明)나라의 제가(諸家)에 이르기까지 절중(折中)하지 않은 것이 없어 우뚝하게 가시(歌詩)의 종장(宗匠)이 되었다.

음직(蔭職)으로 주부(主簿)에 제수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가화(家禍)를 당하고서부터 상복(喪服)을 벗었어도 거적자리에서 자면서 주육(酒肉)을 먹지 않았는데, 갑술년에 신복(伸復)되자 비로소 상식(常食)을 회복하였으나, 그래도 오히려 외침(外寢)에서 거처하다가 일생을 마쳤다. 성리학을 즐겨 읽어서 만년에 다시 깊고도 높은 조예(造詣)를 이룩했다. 설악산(雪嶽山) 아래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연신(筵臣)의 말에, ‘그의 높은 풍도(風度)와 절조(節操)는 넉넉히 나약(懦弱)한 사람에게 뜻을 확립시키고, 재리(財利)를 탐내는 자의 마음을 청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한 말이 있었다.

숙종(肅宗)이 임조(臨朝)하여 오랫동안 차탄(嗟歎)하던 끝에 여러 차례 집의(執義)·진선(進善)으로 승천(陞遷)시켰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았다. 이 때에 이르러 동교(東郊)에서 졸(卒)하니, 그의 나이 70세였다. 품질(品秩)을 정경(正卿)으로 추증(追贈)하고 시호(諡號)를 문강(文康)이라고 내렸다.

〈원전〉 41집 362면

경종 2년 1722년12월28일(己卯)

강원도에 세 차례 큰 눈이 내리다

강원도에 세 차례나 큰 눈이 내려 고갯길이 막히고, 개천과 우물이 메말라서 백성이 모두 눈(雪)을 취하여 밥을 지었다.

〈원전〉 41집 273면

경종 4년 1724년5월24일(丙寅)

경기·강원도에 황충이 일다

경기(景畿)·강원도에 황충(蝗虫)이 일었다.

〈원전〉 41집 321면

경종 4년 1724년6월4일(乙亥)

강원도에 큰물이 지고 황충이 발생하다

강원도에 큰물이 지고, 황충(蝗虫)이 생겼다.

〈원전〉 41집 322면

영조편

영조 1년 1725년9월5일(己亥)

강원도에 흉년이 들었으므로 전세를 감해주다

삼남(三南)과 강원도에 전곡(田穀)이 참혹한 흉년이 들었으므로 전세(田稅)에서 결(結)마다 1두(斗)를 감하고, 양주(楊州)는 서울에 가까이 있으면서 여러 능침(陵寢)을 받들게 되어 민역(民役)이 치우치게 고달프므로 대동미(大同米)를 결(結)마다 3두를 감하여 주라고 명하고, 기역(畿驛)도 잔폐(殘廢)하였으므로 받아들이지 못한 환상공(還上穀)을 감하여 주라고 명하였다.

〈원전〉 41집 551면

영조 3년 1727년4월1일(丁亥)

강원도에 서리와 큰 눈이 내리다

강원도에 서리와 큰 눈(雪)이 내렸다.

〈원전〉 41집 630면

영조 7년 1731년6월4일(乙未)

강원도에 가뭄과 우박의 피해가 있었다

강원감사(江原監司)가 장계(狀啓)로 본 도의 가뭄 및 우박의 정상을 아뢰고, 또 관북(關北)에서는 단천(端川) 이남의 한재(旱災) 및 삼수·갑산에서는 5월에 서리가 내렸다고 계문(啓聞)하였다.

〈원전〉 42집 260면

영조 7년 1731년9월19일(己卯)

사간 김정윤이 감찰 이우명의 정배 토산현감 백태운과 박태번의 일을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사간원(司諫院)-정언(正言) 김정윤(金廷潤)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前) 감찰 이우명(李遇命)은 사람됨이 요사하고 간악하며, 행동이 음흉하고 비밀스러워 박성건(朴成建)의 공초(供摺)에서 긴박하게 나왔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또 이태(李太)의 공초(供摺)에서 나왔으니, 박도창(朴道昌)과 서로 일을 주선하였음을 이에 의거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청컨대 아주 먼 변방에 정배(定配)하소서.

정배한 죄인에게는 마음대로 말미를 주지 못하는 법인데, 지금 듣건대 인제현(麟蹄縣)의 토산(兔山)에서 정배 된 죄인 박태번(朴泰蕃)이 배소(配所)에 도착한지 얼마 안되어 곧바로 말미를 받고 돌아와서 편안히 집에 있어도 오랫동안 돌아오기를 독촉하지 않는다고 하니, 청컨대 토산현감(兔山縣監) 백태운(白泰運)을 파직하여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박태번은 본 도로 하여금 다른 도에 이배(移配)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전계(前啓)의 윤봉조(尹鳳朝)의 일은 정계(停

啓)⁹¹하였다.

〈원전〉 42집 278면

영조 13년 1737년4월20일(戊寅)

강춘도 양양에 서리가 내려 보리를 손상시키다

강춘도(江春道)⁹² 양양(襄陽)에 서리가 내려 보리를 손상(損傷)시켰다. 설악산(雪嶽山)에 눈이 겨울처럼 쌓였으므로, 초목이 모두 얼어죽었다.

〈원전〉 42집 545면

영조 13년 1737년6월4일(辛酉)

강춘도에 서리가 내리다

강춘도(江春道)에 서리가 내렸다.

〈원전〉 42집 553면

영조 21년 1745년3월29일(辛丑)

장령 치규태가 상소하여 관리의 신칙과 관동의 공삼· 황장묵의 남벌을 논하다

장령(掌令) 최규태(崔逵泰)가 상소하기를,

“수령(守令)들이 탐묵(貪墨)한 지는 진급할 매개(媒介)가 되고, 청개(淸介)한 지는 버림을 당하며, 가호간 관리가 음형(淫刑)을 하여 함부로 사람을 죽이니,

91) 정계(停啓): 전계(傳啓)에서 죄인의 이름을 지워버림

92) 강춘도(江春道): 강원도의 이명(異名)

마땅히 양리(良吏)를 뽑아 쓰고 탐학(貪虐)한 관리를 내쳐야 합니다. 관동(關東)의 공삼(貢蔘)은 고르지 못한 폐단이 있으니, 마땅히 도신(道臣)에게 분부하여 양전(量田)을 독촉하고 삼공(蔘貢)의 분정(分定)을 한결같이 결수(結數)에 따르게 해야 합니다.

황장목(黃腸木)의 금산(禁山)에 귀후서(歸厚署) 및 각 영(各營)의 차인(差人)이 공문(公文)을 가지고 열읍(列邑)에 줄달아 많이 왕래하면서 함부로 베고 있으니, 마땅히 유사(攸司)에 신칙(申飭)해 후일의 폐단을 막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원전〉 43집 178면

영조 22년 1746년1월11일(戊寅)

장령 민수언과 사간 유언술이 명리 추구를 비판하고 피험 등을 진달하다

장령(掌令)민수언(閔洙彦)이 상고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세도(世道)가 날로 무너져 요행을 바라는 문이 크게 열렸기 때문에, 명리(名利)를 추구하는 길에는 머리통이 깨질 정도이고, 분경(奔競)하는 마당에는 장막을 걷어 터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청관(淸官)과 미질(美秩)을 공공연히 간구(干求)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풍요롭고 큰 고을은 많은 뇌물을 주면 얻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얻을 경우에는 스스로 능하다고 여기고 얻지 못할 경우에는 도리어 수치스럽게 여기니, 양전(兩鎗)에 신칙(申飭)하여 반드시 조금하듯 경진(競進)하는 작태를 억제해야 합니다.”

하고, 사간(司諫) 유언술(兪彦述)도 상소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아! 근래 정원(政院)에서 주의(注意)하는 사이에 사의(私意)가 난무하여 청도(淸道)의 극선(極旋)에 있어 우서(友壻)의 혐의를 피하지 않고 멋대로 통의(通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관동(關東)의 좋은 고을을 당숙(堂叔)인 친척을 위하여 손을 빌어 차임 하였으므로, 공의(公議)가 놀라고 비웃지 않

는 이가 없습니다. 대신이 그의 방자함을 지적(指斥)했는데도 보지도 듣지도 않은 것처럼 하면서 지금까지 자처(自處)하지 않고 있으니, 청컨대 견벌(譴罰)을 가하여 스스로 경계할 줄 알게 하소서.

재령(載寧)의 백성들이 천 명씩 백 명씩 무리를 지어 영문(營門)에서 울부짖으며 통곡했는데, 듣건대 사치(査治)할 즈음에 염성(廉姓)을 가진 양반의 부녀(婦女)가 이졸(吏卒)에게 참혹한 구타를 당하였으므로, 그 분함을 견딜 수 없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모진 아전을 징계시키고 완악한 백성을 면려(勉勵)시키는 방도에 있어 한번 엄히 조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린역촌(麒麟驛村)에서 남편을 시해(弒害)한 변에 대한 정절(情節)이 낭자한데도, 핵검관(覈檢官)은 엄히 조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어사(御史)를 보내어 안핵(按覈)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대개 정휘량(鄭暉良)과 이조참의(吏曹參議) 심성진(沈星鎭)은 우서(友婿) 관계인데 부제학(副提學)에 통의(通擬)하였으며, 이담(李潭)은 곧 이조판서(吏曹判書) 이주진(李周鎭)의 당숙(堂叔)인데 삼척부사(三陟府使)에 제수했기 때문이다. 상소를 봉입(捧入)하자, 임금이 엄한 비답(批答)을 내렸다. 이어 하문(下問)하기를,

“대신은 누구인가?”

하니, 영의정(領議政) 김재로(金在魯)가 말하기를,

“우상(右相)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재령(載寧)은 누구인가?”

하니, 동부승지(同副承旨) 이창수(李昌壽)가 말하기를,

“정석백(鄭錫百)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부교리(副校理) 오언유(吳彦儒)가 말하기를,

“민수언(閔洙彦)의 상소는 머리를 감춘 채 불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윗 조항에서 논한 것은 그 죄과가 어떠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말초(末梢)로 감률(勘律)하여 신칙(申飭)해야 한다는 것에 불과했으니, 그의 의도는 오로지 험잡(挾雜)에서 나온 것으로 별이 없을 수 없습니다. 파직(罷職)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이 민수언을 파직시키고 유언술을 체차(遞差)시켰다.

〈원전〉 43집 202면

영조 22년 1746년4월17일(壬午)

강원감사가 장계하여 호환과 불에 타 죽은 자를 보고하다

강원 감사가 장계(狀啓)하여 도내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과 불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은 사람이 모두 84명이라고 한 것으로 인하여, 훈전(恤典)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43집 210면

영조 22년 1746년10월28일(庚寅)

지중추 부사 이재의 졸기

지중추 부사(知中樞府事) 이재(李緯)가 졸(卒)하였다.

이재(李緯)의 자(字)는 희경(熙卿)이요, 본관은 우봉(牛峯)이니, 고 상신(相臣) 이숙(李勣)의 손자였다. 품성이 맑고 순수하며 어려서부터 문장으로 이름이 났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인망이 당대에 뛰어났었다. 신축년·임인년의 화가 일어났을 적에 그의 숙부인 판서(判書) 이만성(李晩成)이 무옥(誣獄)에 연루되어 죽자, 드디어 어머니를 모시고 인제(麟蹄)의 설악산(雪嶽山)으로 은퇴하여 벼슬길에 생각을 끊고 성리학(性理學)을 깊이 연구하였다.

을사년 경화(更化) 이후에는 누차 부름을 받았으나, 단 한 번 서울에 들어와서 임금(이)을 뵈고 만언(萬言)의 봉사(奉事)를 올려 입을 다물고 어물어물하기만 하는 시론(時論)의 폐단을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 때에 임금(이)이 바야흐로 탕평책에 뜻을 기울이고 있는 참이어서, 그의 말을 등한히 여겨 받아들이지 않자, 드디어 용인(龍仁)으로

물러나 살았다. 이에 사방에서 배우러 찾아온 자가 매우 많았고, 근세의 모든 선비들이 그를 종장(宗匠)으로 삼았다. 한원진(韓元震)은 선정 권상하(權尙夏)의 문인인데, 그가 심성(心性)을 논한 말이 이재의 말과 합치되지 않자 이재가 시(詩)를 지어 변론하기도 하였다. 이 때에 와서 죽으니, 나이 67세였다.

학자들이 도암 선생(陶菴先生)이라고 일컬었다.

〈원전〉 43집 226면

영조 29년 1753년2월5일(辛卯)

장례원의 업무와 황장목에 대해 아뢰다

왕세자가 대신·비국 당상을 소집하였다. 좌의정(左議政) 이천보(李天輔)가 아뢰기를,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직책을 나누어 놓았으므로 각기 관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례원(掌隸院)은 전적으로 노비를 관장하는데 근래 노비의 사송(詞訟)을 모두 추조(秋曹)⁹³⁾, 경조(京兆)⁹⁴⁾로 나아가 송사(訟事)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원은 하나의 용관(冗官)⁹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뒤로는 노비에 관한 송사를 본원(本院)을 경유하지 않고서 먼저 추조, 경조로 나아가 제소(提訴)하는 것은 청컨대 일체 시행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우의정(右議政) 김상로(金尙魯)가 아뢰기를,

“조정에서 황장목(黃腸木)을 관동(關東)과 영남(嶺南)에 봉치(封置)한 것은 그 사체가 매우 엄중한 것인데 근래 혹 봉표(封標) 밖이라고 일컫기도 하고 혹 사사roi이 기른 것이라고 일컫기도 하면서 공문(公文)을 내기를 도모하여 마구 빼어내고 있으므로 곳곳의 봉산(封山)이 모두 민등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컨대 삼척·강릉·양양·고성(高城)·인제(麟蹄) 등 다섯 고을은 봉표 밖이나 사사roi이 기른 것이나를 막론하고 비록 경사(京司)⁹⁶⁾의 공문이 있다

93) 추조(秋曹): 형조(刑曹)를 달리 일컫는 말

94) 경조(京兆): 서울

95) 용관(冗官): 공중에 우뚝 솟음

고 하더라도 청컨대 일체 시행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3집 478면

영조 34년 1758년9월4일(丁亥)

관동지방의 인삼 결역과 상정법에 속한 연호전을 감하고 선혜청에서 충당하는 절목

선혜청(宣惠廳)의 초기(草記)에 의하여, 관동(關東) 지방의 인삼 결역(結役) 가운데 가장 무거운 곳과 연호전(煙戶錢) 가운데 상정법(詳定法)에 들어가는 것을 헤아려서 감한 뒤에, 경청(京廳)으로부터 대신 충당하도록 구획(區劃)하는 일은 이미 정탈(定奪)하였었다. 강릉·삼척·정선·울진의 네 고을에서 혹은 ‘인삼 결역’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혹은 ‘연호전’이라고 칭하기도 하면서 임시로 나누어 징수해서 그 원래 정해진 숫자를 충당하므로, 궁핍한 백성들이 지탱하기가 어렵고 나라의 체면도 손상되는 것이 이것보다 심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결역(結役)을 감할 적에 한두 가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곧 도신(道臣)의 청한 숫자대로 충분히 상량(商量)하였다. 강릉에서 감한 전(錢)은 1천 87냥 영(零)⁹⁷이었고, 삼척에서 감한 전은 9백 73냥 영이었고, 정선에서 감한 전은 3백 98냥 영이었고, 울진에서 감한 전은 3백 93냥 영이었는데, 결역과 연호전은 고르게 계산하여 나누어 배정하고 감해서 지급하였다. 심지어 상정법(詳定法)에 이르러서는, 양양에서 매 결(結)마다 감한 전(錢)이 4전 영이었고, 간성에서 매 결마다 감한 전이 5전, 조(租)가 3두(斗) 영이었고, 흡곡에서 매 결마다 감한 전이 6전이었고, 그 나머지 고을에서는 그대로 두었다. 연호전(煙戶錢)은 평창이 7백 16냥 영이었고, 낭천(狼川)이 4백 33냥 영이었고, 인제(麟蹄)가 5백 90냥 영이었고, 금성이 2백 67냥 영이었는데 전부 감하였으며, 도합 감한 전(錢)이 5천 6백 냥 영이었고, 조(租)가 1백 47석 영이었다. 금년 가을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에 의

96) 경사(京司): 서울에 있는 각사(各司)

97) 영(零): 수가 아무 것도 없는 것.

하여 시행한다. 간성군(杆城郡)의 잡역조(雜役條) 가운데 종전에 ‘연호전’이라고 일컫던 것은 아울러 감할 수가 없으므로, 다른 고을의 예에 의하여 ‘시탄가(柴炭價)’라고 고쳐서 이름을 붙이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받아서 사용하며, 각 고을에서 대신 지급하면, 본 도에서 다른 상납(上納)할 수량으로 서로 바꾸어 줄 방도가 없을 경우에 균역청(均役廳)의 상납할 전(錢)을 그대로 머물러 두어 충당하여 지급한 다음에, 그 경청으로부터 대신 충당한 수량을 계산하여 이첩(移牒)보고해서 절목(節目)을 만든다.

〈원전〉 43집 698면

영조 44년 1768년12월1일(乙卯)

홍봉한이 직명을 거두어 줄 것을 청하고, 이장도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備局)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저번 밤에 잠깐 천안(天顔)을 우러러 뵈고 지금 다시 우러러 뵈니 성체(聖體)가 더욱 강녕(康寧)하십니다. 이것은 건공(建功)의 덕입니다. 전 영의정의 근력이 신보다 갑절 나으니 삼가 원하건대 신의 직명(職名)을 도로 거두시고 다시 어질고 덕이 있는 이를 임명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말은 경의 충서(忠恕)의 도(道)가 부족한 것이다.”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이미 신을 배척하지 않으셨다면 신의 말을 어찌 듣고 쓰지 아니하십니까? 금년의 철악(撤樂)은 이미 지났고, 오늘은 바로 초길(初吉)이며 곤전(坤殿)⁹⁸이 궁(宮)에 들어 오신지 11년이 되니, 하례와 연회를 아울러 행한 연후에야 신들이 항안(抗顔)할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98) 곤전(坤殿): 중궁전(中宮殿)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의정은 오늘 세손(世孫)을 보았는가?”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가까스로 이미 승후(承候)하였습니다. 예교(睿教)가 먼저 이에 언급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뭇다.”

하였다. 홍봉한이 말하기를,

“곧 마땅히 다시 청할 것입니다.”

하였다.

조엄(趙嚴)을 선혜청 당상(宣惠廳堂上)으로 도로 차하(差下)하도록 명하고, 훈련 대장 정여직(鄭汝稷)을 체차(遞差)하도록 명하였으며, 김시묵(金時默)을 정경(正卿)에 특별히 올리도록 명하니, 모두 홍봉한이 아뢴 바이다. 수찬(修撰) 이명빈(李命彬)이 윤광찬(尹光縑)·조재민(趙載敏)의 서용(敍用)하는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유시(諭示)하였으니 그만 두라.”

하였다. 강원감사의 분등 장계(分等狀啓)를 읽고 아뢰기를 명하여, 인제현감(麟蹄縣監) 이현백(李顯白)과 회양 부사(淮陽府使) 이의철(李宜哲)을 모두 체차(遞差)하고, 심발(沈撥)을 회양 부사로, 홍검(洪檢)을 인제현감으로 삼을 것을 명하니 두 고을은 다 우심(尤甚)한 고을이기 때문이었다. 이장오(李章吾)를 훈련 대장으로, 구선복(具善復)을 금위 대장으로, 원중회(元重會)를 수원 부사로 삼았다.

〈원전〉 44집 311면

영조 44년 1768년 12월 9일(癸亥)

인제·회양 등의 고을에 대해 조세 징수를 연기할 것을 명하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備局) 당상(堂上)을 인견(引見)하였다. 하교(下敎)하기를, “저번에 선전관(宣傳官)이 왕래한 뒤에 하교하려고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다. 어찌 상례(常例)에 따르겠는가? 받을만한 것은 받고 받기 어려운 것은 활협(闊狹)⁹⁹할 것이다. 관동(關東)의 인제(麟蹄)· 회양(淮陽) 등의 고을과 경기(景畿)의 교동(喬東)· 풍덕· 통진 등 고을과 북도(北道) 남북(南北)의 우심한 고을 등은 이 예에 의하여 조세(租稅) 징수를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연기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44집 312면

영조 49년 1773년5월11일(己巳)

김상복이 인제의 조를 소미로 절가하여 대신 받을 것 등을 청하다

김상복(金尙福)이 강원감사의 장계(狀啓)로 인하여 인제현(麟蹄縣)의 조(租) 8백 90여 석을 소미(小米)로 절가(折價)하여 대신 받기를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김상복이 말하기를,

“전최(殿最)¹⁰⁰에 거상(居上)한 수령이 혹 수의 어사(御史)의 서계(書啓)에 서는 도리어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되기도 하고, 거중(居中)한 수령이 도리어 어사의 포상을 청하는 서계에 들기도 하는데 한 사람의 치적이 앞뒤가 다를 수는 없을 듯합니다. 마땅히 도신(道臣)에게 신칙(申飭)하여 무릇 치적을 고과(考課)할 때에는 더욱 사실을 자세히 조사하는 정사에 힘쓰도록 하여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김상복이 또 말하기를,

“이제는 큰비를 얻었으니, 어공(御供)을 전례대로 봉진(奉進)하고 제도(諸

99) 활협(闊狹): 잘못된 점을 너그럽게 봐주는 관대한 마음

100) 전최(殿最): 관원들의 근무성적을 심사하여 우열을 메기는 일.

道)의 물선(物膳)도 봉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의 대답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44집 454면

영조 50년 1774년1월1일(乙卯)

팔도에 유시를 내려 백성에게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다

팔도(八道)와 양도(兩都)에 유시(諭示)를 내려 백성에게 농사와 양잠을 권장하고 신칙(申飭)하도록 하였다.

〈원전〉 44집 469면

영조 50년 1774년12월21일(庚子)

새로 임명한 수령·변장과 처음 벼슬하는 사람들을 소견하다

임금이 집경당에 나아가 새로 임명한 수령, 변장(邊將)과 처음 벼슬하는 사람들을 소견하였다. 인제현감(麟蹄縣監) 이국형(李國亨)에게 녹비(鹿皮)를 특별히 하사하였으니 고인이 된 사부(師傅)의 손자인 까닭이요, 참봉(參奉) 최경(崔暹)과 봉사(奉事) 이익찬(李益燦)을 특별히 육품직에 승진시켰으니 그들의 나이가 많은 때문이었다. 참봉 조종철(趙宗喆)은 충익공(忠翼公) 조태채(趙泰采)의 손자이므로 직장(直長)으로 뽑아 쓰도록 명하였고, 현계인(玄啓寅)은 죽은 의관(醫官) 현제강(玄齊綱)의 손자인 까닭에 역시 육품직에 승진시키도록 명하였다.

〈원전〉 44집 484면

정조편

정조 1년 1777년9월6일(戊辰)

수재가 있었던 관동에 수의를 보내 위로하다

관동(關東)에 큰물이 저 인제(麟蹄) 등 네 고을에 침몰한 인가가 4백 70여 호나 된다 고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였다. 임금(君)이 놀라고 측은하게 여겨 대신을 소견(召見)하고 구제해 갈 계책을 물으며,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기유년과 을해년의 북관(北關)과 관서(關西)의 전례대로 따로 수의(繡衣)를 보내 위로하여 안정시키도록 하기를 청하니, 옥당(玉堂)에 명하여 유서(諭書)를 지어 올리도록 명하고, 심풍지(沈豐之)로 위유어사(慰諭御史)¹⁰¹를 삼아 달려가서 선포(宣布)하고 민간의 실정을 살펴보고 오도록 했다. 뒤이어 회양(淮陽)의 수재도 심풍지에게 일체 위유(慰諭)하도록 하였다.

〈원전〉 4집 693면

정조 2년 1778년5월5일(甲子)

경기·호서·영남·관동 4도의 진휼을 마치다



101 위유어사(慰諭御史): 지방에 천재지변(天災地變)이 있을 때 어명(御命)으로 백성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던 임시 벼슬

경기(京畿)·호서(湖西)·영남(嶺南)·관동(關東) 4도의 진제(賑濟)를 정월부터 시작하여 설시(設施)하다가 이에 이르러 진휼(賑恤)을 마쳤다. -경기의 광주·수원·여주·남양·죽산·이천(利川)·음죽 등의 고을과 화량진(花梁鎭)은 기민(饑民)의 총수가 6만 4천 24구(口)이고, 진곡(賑穀)이 4천 2백 25석이었다. 호서(湖西)의 대흥·한산·예산·덕산·당진·태안·천안·임천·서산·은진·직산·석성·서천·신창·해미·평택·온양·면천·아산·충주·서원·홍주·음성 등의 고을과 성환(成歡)·율봉(栗峰) 등의 진(鎭)은 기민이 2만 9천 5백 31구이고 진곡이 2만 3천 3백 97석이었다. 영남(嶺南)의 공진(公賑)은 지례·비안·하동·금산·개령·예천·용궁·안동·대구 등의 고을을 구급(救急)하였고, 상주·성주·인동·선산·경주·진주·곤양·영천·삼가·예산·거창·칠곡·초계 등의 고을은 기민이 1만 3천 2백 83구이고 진곡이 9천 5백 27석이었다. 관동(關東)의 인제(麟蹄)·고성(高城) 두 고을은 기민 총수가 7백 84구이고 진곡이 1백 석이었다.

〈원전〉 45집 26면

정조 6년 1782년 8월 2일(丙寅)

강원도를 원춘도로 명칭을 바꾸다

강원도를 원춘도(原春道)로 삼았다. 이는 이택징(李澤徵)¹⁰²이 살았던 도이기 때 문에 명칭을 고친 것이다.

〈원전〉 45집 324면

102) 이택징(李澤徵):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경민(景民)이며, 호는 자호제(自好齋)로, 성산군(星山君) 이조년(李兆年)의 후손인 첨추오위장(僉樞五衛將) 흥상(興商)의 아들이다. 영조 11년(1735)에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지방관을 역임하여 치적을 남겼다. 용의(容儀)가 좋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임금의 손을 잡은 은혜를 입기도 하였다. 한 때 모함으로 귀양살이를 하였지만, 풀려서 공조참의(工曹參議)를 지내기도 하였다. 정조 1년(1777)에 폐비(廢妃)의 모의가 있을 때 이를 반대하는 상소(上疏)로 형을 받았지만 뒤에 신면(伸冤)되었다.

정조 8년 1784년1월1일(丁亥)

원춘도 봄철 조련을 정지하다

원춘도(原春道)의 봄철 조련(調練)을 정지하였는데, 도신(道臣)이 장계(狀啓)하여 청하였기 때문이다.

〈원전〉 45집 419면

정조 8년 1784년5월11일(乙丑)

관동의 진휼을 마치다

관동(關東)에 진휼(賑恤)을 설행(設行)하였는데 정월에 시작하여 이 때에 이르러 진휼(賑恤)을 마쳤다. -공진(公賑)으로 강릉·양양·간성·고성(高城)·통천·흡곡·삼척·울진·평해·정선·평창·회양·인제(麟蹄)·양구·낭천·영월 등의 고을 총 기민(飢民)은 2만 4천 7백 77구(口)이고, 진곡(賑穀)은 2만 1천 7백 35석 영(零)이었으며, 춘천·원주·평강 등의 고을에 기민(飢民)은 총 7백 25구이고, 진곡(賑穀) 6백 54석이였다.

원춘도신(原春道臣)이 진휼(賑恤)을 마쳤다는 장계(狀啓)를 올리니, 양양형감 구세적(具世勳)에 우직을 조용(調用)하고, 춘천부사 이득신(李得臣), 원주 판관(原州判官) 조광규(趙光逵)에게는 상현궁(上弦弓)을 사급하였으며, 평강현감 박예원(朴禮源)에게는 아마(兒馬) 1필을 하사하고, 사사로이 진휼한 사람 및 원납인(願納人) 등에게는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원전〉 45집 443면

정조 14년 1790년3월28일(戊申)

대사간 김익휴를 순흥부사로 특보하다

대사간(大司諫) 김익휴(金翊休)를 특별히 순흥부사(順興府使)로 보임하였다. 익휴가 장령(掌令) 심갱(沈鏗), 정언(正言) 이석제(李奭濟)와 더불어 연명(聯名)으로 유언호(兪彦鎬)를 석방할 것에 대한 명을 취소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모두 외직(外職)에 내보낸 것이었다. 심갱은 경안찰방(慶安察訪)으로, 석제는 기린찰방(麒麟察訪)으로 내보냈다.

〈원전〉 46집 116면

정조 15년 1791년12월23일(癸亥)

정언 이명연과 김달순에게 서경을 받기 전에 공무를 집행하라고 명하다

대신과 수령을 불러 보았다. 정언(正言) 이명연(李明淵)과 김달순(金達淳)에게 서경(署經)을 받기 전에 공무를 집행하라고 명한 뒤 불러보고 효유(效諭)하기를,

“그대들은 처음 대성(臺省)에 올랐으니, 새로 수령에 임명될 사람 가운데 위 의(威儀)가 잘못된 자들을 규찰(糾察)하라.”

하였다. 명연(明淵)이 기린찰방(麒麟察訪) 채지영(蔡趾永)과 고성현령 임무원(林懋遠)은 추고하고, 양덕현감 이윤길(李潤吉)은 개차(改差)하며, 횡성현감 조운구(趙雲衢)와 한신군수 정지덕(丁志德)은 파직하기를 청하니, 모두 허락하였다.

〈원전〉 46집 270면

정조 16년 1792년5월22일(己未)

인제현의 전세를 돈으로 납부하게 하다

인제현(麟蹄縣)의 전세(田稅)를 영월 등 고을의 예에 의하여 돈으로 만들어 상납하라고 명하였다.

〈원전〉 46집 314면

정조 21년 1797년7월12일(己卯)

향교·서원의 위전에 대한 면세를 청하다

강원도 관찰사 서유방(徐有防)이 장계(狀啓)를 올려, 흙곡·인제(麟蹄)·철원의 향교(鄕校) 및 서원(書院)의 위전(位田)에 대해 면세(免稅)를 청하니, 임금이 호조판서(戶曹判書) 김화진(金華鎭)에게 이르기를,

“궁방(宮房)과 향교 및 서원에서 걸핏하면 기준에 차지 못한 결전(結田)이 있다고 핑계대고 혹은 공한지(空閑地)라고 하면서 확인 증명을 받아내려고 하는가 하면 진황지(陳荒地)라고 하면서 새로 개간한 땅을 매입하고는 한다. 바야흐로 지금 백성들의 수효가 날로 변성해져서 전지(田地)가 모두 개간되었는데, 어찌 주인이 없는 토지가 있어 아직도 토지의 이익을 빠뜨림이 있겠는가. 그리고 대금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도 어찌 다 믿겠는가. 지금 만일 일체 거짓으로 농간을 부려 간사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제도(諸道)의 향교와 서원에서 떼어 달라고 청하지 않는 해가 없게 될 것이다. 호조(戶曹)의 원결(原結)이 점차 줄어드는 것이 애당초 이러한 곳에서 말미암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하였다.

〈원전〉 47집 33면

순조편

순조 9년 1809년11월11일(辛未)

강원도 암행어사 이상우가 이종효 · 홍경두 등의 실정을 탄핵하다

강원도 암행어사 이상우(李尙愚)가 서계(書啓)를 올려 인제현감(麟蹄縣監) 이종효(李宗孝) 삼척부사 홍경두(洪景斗), 통천(通川)의 전 군수(郡守) 최수형(崔壽亨), 영월부사 윤효관(尹孝寬)이 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경중에 따라 감죄(勘罪)하였다. 별단(別單)으로 삼(蔘)에 대한 폐단, 바다에 대한 폐단, 화전(火田)·사찰(寺刹) 등에 대한 폐단을 진달 하였는데,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좋은 계책을 따라 채택해서 시행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상우를 소견(所見)하고 별단 이외의 폐막(弊膜)에 대한 유무(有無)와 수령의 치부(治否)에 대해 순문(詢問)하였다.

〈원전〉 47집 617면

순조 22년 1822년8월6일(丁未)

강원도 암행어사 홍학연이 서계를 올리다

강원도 암행어사 홍학연(洪學淵)이 서계(書啓)를 올려, 평해 전전 군수(平海前前郡守) 이유경(李有暉), 춘천부사 한기유(韓耆裕), 강릉부사 이진연(李晉淵), 회양현

감 조종진(趙琮鎭), 정선 전 군수(旌善前郡守) 임중백(林重白), 낭천 전 현감(狼川前縣監) 채홍운(蔡弘韻), 평해 전 군수(平海前郡守) 남석중(南錫中), 인제현감(麟蹄縣監) 이도헌(李度憲), 양구현감 홍취영(洪就榮)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에 따라 처벌하게 하고, 또 동천군수 서병순(徐秉淳)의 치적을 논하니, 승서(陞敍)의 은전을 시행하라고 하였다. 별단에 군정(軍丁)·전결(田結)·환상(還上)의 세 가지 정사 및 해안 호구에서 삼(蓼)을 공납하는 등의 폐단에 대해 개진하였는데,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좋은 방도를 채택하여 시행하라고 하였다.

〈원전〉 48집 207면

순조 33년 1833년8월3일(辛丑)

암행어사 홍희석이 서계하다

황해도 암행어사 홍희석(洪羲錫)이 서계(書啓)하여, 안악(安岳)의 전 군수 조충식(趙忠植), 해주(海州)의 전 판관 김초순(金初淳), 풍천(豐川)의 전 부사 윤제홍(尹濟弘), 전전 부사 이남식(李晩植), 장연 현감 이인영(李仁泳), 전 현감 김성익(金星翼), 송화 현감 김상의(金尙義), 강령 현감 박민한(朴民翰), 서흥 부사 김영석(金永錫), 기린찰방(麒麟察訪) 이치오(李致五), 전 수사(水使) 백항진(白恒鎭) 등의 잘 다스리지 못한 실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을 나누어 감치(勘處)하게 하였다. 또 배천군수(白川郡守) 정세익(鄭世翼), 풍천 부사 이원서(李元緒)의 잘 다스린 실상을 말하니, 정세익은 승서(陞敍)하는 은전을 베풀고, 이원서에게는 아마(兒馬)를 주게 하였다. 별단을 올려 전정(田政)에서 묵은 것을 조사하여 이정(釐正)¹⁰³할 것과 군정(軍政)의 잘못된 것을 고쳐 정할 것과 환정(還政)에서 석수(石數)를 헤아려 균등하게 나눌 것과 해로(海路)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신칙(申飭)할 것과 봉산(封山)에서 기르는 소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엄하게 밝힐 것 등의 일을 말하니, 모두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좋은 점을 따라 채택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원전〉 48집 399면

103) 이정(釐正): 문서나 글을 다시 정리하여 바로 잡음

철종편

철종 1년 1850년3월18일(庚戌)

김상우 등을 탄핵한 황해도 암행어사 신석회를 불러 보다

황해도 암행어사 신석회(申錫禧)를 불러 보았으니, 전 병사 김상우(金相宇), 봉산(鳳山) 전 군수 조희찬(趙羲贊), 강령(康翎) 전전 현감 최달수(崔達洙), 연안 부사 민치구(閔致久), 기린찰방(麒麟察訪) 조명귀(趙名龜), 황주(黃州) 전전 목사 박현규(朴顯圭), 수안(遂安) 전 군수 이희창(李羲昌), 재령 전 군수 한필교(韓弼教), 문화(文化) 전 현령 홍형모(洪衡謨), 은률(殷栗) 전 현감 김응하(金應夏)를 죄 주어야 한다고 서계(書啓)한 때문이었다.

〈원전〉 48집 555면

철종 8년 1857년11월28일(乙巳)

강원도 암행어사 이경호를 불러 보다

강원도 암행어사 이경호(李京鎬)를 불러서 접견하고 서계(書啓)에 의하여 간성(杆城)의 전 군수 이용학(李容學), 통천 군수 오치기(吳致箕), 평해 군수 홍우석(洪祐錫),

전 군수 오규환(吳奎煥), 울진 현감 서우순(徐瑀淳), 회양의 전 부사 유흥길(柳興吉), 양양의 전 부사 김상일(金商一), 영월의 전 부사 김진우(金鎭右), 인제(麟蹄)의 전 현감 김현초(金顯初), 상운(祥雲)의 전 찰방 김병주(金秉周) 등은 죄주고, 삼척부사 조병문(趙秉文)은 포장(褒獎)하여 승서(陞敘)하였다.

〈원전〉 48집 622면

麟蹄縣地圖

麟蹄縣



제2부

세종지리지

春川棋界

豆色霜在湯界

강원도

본래 예맥(濊貊)의 땅인데, 뒤에 고구려의 소유로 되었다. 고려 때에 이르러 영동(嶺東)은 성종(成宗) 14년 을미-송나라 태종 지도(至道) 원년에 삭방도(朔方道)라 불렀고, 명종(明宗) 8년 무술-송나라 효종 순희(淳熙) 6년에 연해명주도(沿海溟州道)라 불렀으며, 원종(元宗) 4년 계해-송나라 이종(理宗) 경정(景定) 4년에 강릉도(江陵道)라 불렀었다. 공민왕 5년 병신-원나라 순제 지정(至正) 16년에 강릉삭방도(江陵朔方道)라 불렀고, 또 다음해 정유에 강릉도라 불렀다가, 또 4년 경자에 삭방강릉도(朔方江陵道)로 불렀고, 또 7년 병오에 다시 강릉도라 불렀다.

영서(嶺西)는 명종(明宗) 8년 무술에 춘주도(春州道)로 불렀고 그 뒤 혹은 동주도(東州道)로 불렀으며, 원종(元宗) 4년 계해에 교주도(交州道)라 하였다가, 공양왕 원년 무진-대명(大明) 홍무(洪武) 21년에 영동과 영서를 합쳐서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라 하고, 충주 소관(所管)의 창평군(昌平郡)을 내속시켰다. 공양왕 3년 경오에 경기(京畿)를 더 넓힘에 따라, 철원과 영평(永平)을 분할하여 경기에 옮겨 붙이고, 본조 태조 4년 을해에 이르러 비로소 강원도라 일컫고, 도관찰사의 관청을 원주에 두었는데, 공정왕(恭靖王) 원년 기묘에는 원주의 암내 영춘(永春)과 충주 소관 영월이 개이 빨처럼 들쭉날쭉하다 하여 서로 바뀌 불렀다. 태종 13년 계사에 또 가평(加平)과 조종(朝宗)을 분할하여 경기에 이속(移屬)하였다.

동쪽은 양양 바다 어귀에 이르고, 서쪽은 경기 가평현에 이르면, 남쪽은 충청도 영춘현에 이르고, 북쪽은 철령(鐵嶺)에 이르는데, 동서가 2백 50리, 남북이 5백 58리이

다. 관할은 대도호부가 1, 목이 1, 도호부가 4, 군이 7, 현이 11이다.

명산(名山)은 치악(雉岳)이 원주 동쪽에 있고, 거슬갑산(踞瑟岬山)이 속칭 백덕산 - 원주 임내 주천현(酒泉縣) 북쪽에 있으며, 의관령(義館嶺)이 회양부 북쪽에 있고, 금강산이 일명 개골, 또는 풍악이라 한다. 회양 임내 장양현 동쪽에 있으며, 오대산이 강릉부 서쪽에 있고, 팔봉산이 홍천현 서쪽에 있으며, 태백산이 삼척부 서쪽에 있다.

대천(大川)은 소양강이다. 그 근원은 인제현(麟蹄縣) 이포소(伊布所)에서 시작하여 서화·양구현을 지나 춘천부 북쪽에 이르러 소양강이 되었다. 모진(母津)은 그 근원이 회양 임내 장양현 경계 금강산에서 시작하여 화천현(和川縣)을 지나 회양부 북쪽에 이르러 덕진명소(德津溟所)가 되고, 금성 임내 기성현 북쪽에 이르러 보살진(普薩津)이 되며, 낭천현(狼川縣) 남쪽에 이르러 남진(南津)이 되고, 춘천부 북쪽에 이르러 모진이 되며, 남쪽으로 흘러 소양강의 물과 합하여 경기 양근군(陽根郡) 서쪽에 다다라 용진(龍津)이 된다. 섬강(蟾江)은 그 근원이 황성 덕고산(德高山)에서 시작하여 황성현을 거쳐서 원주 이천. 갑곶이(甲串)를 지나 흥원창(興原倉)에 이르러 섬강이 되어 여강(驪江)으로 들어간다. 이천 덕진명소는 그 근원이 함길도(咸吉道) 안변 임내 영풍현 경계 방장동(防牆洞)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경기 안협현에 이르러서 황포(黃浦)가 되니, 곧 임진강의 상류이다. 금장강(錦障江)은 그 근원이 오대산동(五臺山洞) 금강연에서 시작하여 진부역(珍富驛) 수다사(水多寺)골을 지나 정선군에 이르러 광탄(廣灘)이 되고, 고을 남쪽에 이르러 대음강(大陰江)에 들어가 두 물이 합하여, 가탄(加灘)에 흘러 들어가고, 평창군 동쪽에 이르러 연화진(淵火津)이 되며, 영월군 동쪽에 이르러 금장강이 된다. 가근동진(加斤同津)은 그 근원이 강릉 영서 죽원(竹源)과 금천(金川) 등지에서 시작하여 향며촌(向旸村) 방림역(芳林驛)을 지나 평창군 북쪽에 이르러 용연진(龍淵津)이 되고, 영월군 서쪽에 이르러 가근동진이 되며, 고을 남쪽에 이르러 금장강과 합하여 충청도 영춘현을 지나 충주에 이르러 연천(淵遷)이 된다.

호수가 1만 1천 84호요, 인구가 2만 9천 단(單) 9명이다. 군정(軍丁)은 시위군이 2천 2백 76명이요, 선군이 1천 3백 84명이요, 수성군(守城軍)이 11명이요, 진속방패(鎭屬防牌)가 25명이다.

간전(墾田)이 6만 5천 9백 16결이다.

구실은 범쌀·좁쌀·누른콩·녹두·붉은팥·기루장·참밀·메밀·참깨·참깨기름·들기름·정포(正布)이다.

공물은 꿀·밀·잣·개암·감·오배자·겨자·모과·호도·배·대추·조피나무열매·밤·지초·잇·송화·괴화·석이·느타리·웃·바다웃·쇠가죽·말가죽·여우가죽·살괭이가죽·담비가죽·범가죽·표범가죽·사슴가죽·갈·수달피·해달피(海獺皮)·돼지가죽·어피(魚皮)·노루가죽·곰가죽·표범꼬리·여우꼬리·곰털·돼지털·사슴포·말린 돼지 고기·문어·대구·연어·상어·숭어·물고기 기름·전복·홍합·전복껍데기·쇠뿔·가뢰·백단향·자단향·안지(鞍枝)·나무그릇·박·생삼·익힌삼·참바·새끼·틀가락바·송진·유지·달래·사기그릇·질그릇·종이·휴지·자리·잡깃·고리·포도·다래·갈피·자작나무·장작개비·나무활·책판나무·재목·숯·송연·마의(馬衣)·주토(朱土)·토끼젖·산사슴·토끼·집돼지·미역이다.

약재(藥材)는 범의 뼈·웅담·우황·소의 쓸개·산양이뿔·돼지쓸개·소유(酥油)·오소리기름·담비쓸개·녹각교·누에허물·녹각·범의 정강이뼈·아교·선달 토끼대加里·고슴도치 가죽·산무애백(白花蛇)·두꺼비·매미허물·범부채·말벌집·도마뱀·석결명·거머리·오징어뼈·등에(虻虫)·공청(空靑)·해구신·오미자·괴쫂나무열매(枸杞子)·측백나무열매·조피나무열매·탱자껍더기·모란뿌리껍질·괴쫂나무뿌리껍질(地骨皮)·뽕나무뿌리껍질·황경나무껍질·복신(茯神)·복나무진·다린송진·송진을 구운 것이다·말린 웃·백복령·살구씨·으름덩굴·적복령·측백잎·백태목·댕댕이덩굴·닥나무잎·뽕나무겨우살이·산이스랏씨(郁李仁)·복숭아씨·인삼·쓴너삼뿌리(苦蔘)·삼주뿌리·바디나물뿌리·끼무릇뿌리(半夏)·단너삼뿌리(黃耆)·하늘타리뿌리·검산풀뿌리·쇠귀나물·승검초뿌리·배암도랏씨·망초뿌리·쑤뿌리·수자해쫂뿌리(天麻)·족도리풀뿌리·쇠무릎지기·쪽·칠·수취나물·도라지·외나물뿌리·파리·두릅뿌리·끼절가리뿌리(升麻)·바곳·산해박·흰 함박꽃뿌리·붉은 함박꽃뿌리·바다말·마뿌리·연밥·병풍나무뿌리·자주연꽃·대왕풀·가위툽(白斂)·검회뿌리껍질(白鮮皮)·구리떼뿌리·삼주덩이뿌리·나리뿌리·양귀비열매껍질·검데뿌리·겨우살이꽃·하국·절국대·장리공뿌리·두루미냉이씨·흰대쪽·석창포·창포·회초미뿌리·송나물·쥐방울·버들웃·겨우살이덩굴·매자기뿌리·오랑캐꽃·다시마·현삼·수자해쫂꽃(赤箭)·새박뿌리·궁궁이·속새·두여미조자기·오독도기·나팔꽃씨·고무딸기열매·초결명씨·질경이씨·박새·석고·속돌·자석·붉은

돌이다. 심는 약재는 우영·생지황·삼씨·해바라기씨·차조기·누른국화·백변두·장군풀·나팔꽃씨·노가주나무·정가이삭·영생이(薄荷)이다.

진(鎭)이 2이니 삼척과 간성이다.-태조6년 정축에 비로서 진 둘을 두었으나, 진에 유방군이 없어, 일이 있으면 시위패로 충당한다- 병마 도절제사의 영(營)을 강릉에 두고, 도관찰사가 겸한다. 수군만호수어처(水軍萬戶守禦處)가 6이니, 월송포가 평해 동쪽에 있고, -배가 1척 군사가 70명이다- 속초포가 양양 북쪽에 있고, -배가 3척 군사가 2백 단 10명이다- 강포구가 고성 남쪽에 있으며, -배가 3척 군사가 1백 96명이다- 삼척포가 부 동쪽에 있고, -배가 4척 군사가 2백 45명이다- 수산포가 울진 남쪽에 있으며, -배가 3척 군사가 1백 91명이다- 연곡포가 현 동쪽에 있다. -배가 3척, 군사가 1백 91명이다-

역승(驛丞)이 3인이니, 보안도승(保安道丞)의 관할 역이 20이요, -보안·인람·부창·원창·연봉·천감·연평·약수·평안·여량·창봉·갈풍·오원·벽탄·호선·안흥·유원·신흥·양연·단구- 대창도승(大昌道丞)의 관할 역이 28이요, -대창·안인·진부·구산·횡계·대화·방림·운교·목계·고단·대강·고잠·등로·악풍·임계·동덕·인구·연창·상운·강선·청간·죽포·운근·명파·양진·조진·거풍·진덕- 평릉도승(平陵道丞)의 관할 역이 9이다. -평릉·사직·교가·용화·옥원·홍부·수산·덕신·달효-

춘천도호부

사(使) 1인, 유학 교수관 1인

본래 맥국의 땅인데, 신라 선덕왕 6년에 우수주(牛首州)로 하였고, 곧 당나라 태종 정관(貞觀) 12년인데, 문무왕 13년에 수약주(首若州)를 두었다고도 한다. 경덕왕이 삭주(朔州)로 고쳤다. 수차약(首次若)이라고도 하고, 오근내(烏根乃)라고도 한다. 고려 성종 14년 을미에 춘주 단련사(春州團練使)로 고쳐 안변(安邊)에 붙이었는데, 고을 사람들이 길이 험하여 왕래하기에 곤란하였으므로, 신종(神宗) 6년 계해에 이르러 권신(權臣) 최충헌(崔忠獻)에게 뇌물을 주어 안양 도호부로 승격하게 하였다. - 남송 영종 가태(嘉泰) 3년 뒤에 지춘주사(知春州事)로 강등하였고,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는데, 태종 13년 계사에 춘천군으로 고쳤다가, 15년 을미에 도호부(都護府)로 고쳤다. 별호는 수춘(壽春)이다. - 순화(淳化) 때 정한 것이며, 또 별호를 광해(光海)·봉산(鳳山)이라 한다. 속현이 1이니, 기린(基麟)은 본래 고구려의 기지군(基知郡)인데, 고려에서 기린으로 고치고,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향(鄉)이 1이니, 사탄(史呑)이다.

진산(鎭山)은 봉산(鳳山)이다 -부의 북쪽에 있다-

모진(母津)-부의 북쪽에 있다- 소양강 -부의 북쪽에 있는데, 모두 건너는 배가 있다-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홍천에 이르기 43리, 서쪽으로 경기 가평에 이르기 38리, 남쪽으로 경기 양구에 이르기 60리, 북쪽으로 양구에 이르기 55리이다.

호수가 1천 1백 19호요, 인구가 1천 9백 50명이며, 기린의 호수가 1백 단(單) 8호

요, 인구가 2백 51명이다.

군정(軍丁)은 시위군이 2백 98명이요, 선군이 1백 34명이다.

토성(土姓)이 3이니, 최·박·신(辛)이요, 망성(亡姓)이 1이니, 허요, 속성(續姓)이 8이니, 김·함창에서 왔다·임(林)·윤·주천에서 왔다·지(池)·충주에서 왔다·석(石)·계천에서 왔다·안·원·원주에서 왔다·전(全)이요·정선에서 왔다, 망래성(亡來姓)이 2이니, 함·한이며, 사탄(史呑)의 성이 1이니, 송(宋)이요, 망성이 8이니, 한(翰)·정(程)·박·양(楊)·서·길·이·전이며, 기린(基麟)의 속성이 1이니, 박(朴)이다. 인물은 찬성(贊成) 박항(朴恒)이다.·충렬왕 때 사람이다

땅이 메마르며, 기후가 차다. 간전이 5천 7백 37결이요,·논이 10분의 1에 넘는다·토의(土宜)는 오곡과 뽕나무·삼·왕골·배·밤·닥나무·칠(漆)이다.

토공(土貢)은 꿀·밀·갓·오미자·오배자·철(鐵)·느타리·석이·여우가죽·삼팽이가죽·노루가죽·돼지가죽·갈·수달피·표범꼬리·돼지털·곰의 털이요,

약재는 인삼·쥐꼬리망초 뿌리·복령·승검초뿌리·바다나물뿌리·궁궁이·나팔꽃씨·대왕풀·백교향·속새·부처손이다.

토산(土產)은 금(金)이 부의 서쪽 40리쯤 되는 소로리(所串里)에서 난다.

도기소(陶器所)가 1이니, 부의 남쪽 13리 창로리(倉老里)에 있다.·하품(下品)이다·용화산 석성(龍華山石城)이 부의 북쪽 60리에 있다.·둘레 4백 52보 4척이며, 작은 샘이 셋 있는데, 가물면 마른다·소양정·부의 북쪽 봉산 아래에 있는데 강물에 굽어 임한다·역(驛)이 5이니, 보안·원창·안보·인람·부창이다. 관할은 현이 3이니, 낭천(狼川)·양구(楊口)·인제(麟蹄)이다.

양양도호부

사(使) 1인

본래 고구려의 익현현(翼峴縣)인데, 이문현(伊文縣) 이라고도 한다. 신라 때에 익령(翼嶺)이라 고쳐서 수성군(守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 고종 8년 신사에 글안 군사를 잘 막았다 하여 양주 방어사(襄州防禦使)로 승격하였으나, 남송 영종(嘉定) 14년-44년 정사에 적에게 항복한 까닭으로 덕녕 감무(德寧監務)로 강등하였고, 남송 이종(寶祐) 6년 원종(元宗) 원년 경신에 지양주사(知襄州事)로 회복하였다. 본조 태조 6년 정축에 외향(外鄉)이라 하여 부로 승격하고, 태종 13년 계사에는 예에 의하여 도호부로 고쳤고, 16년 병신에 양양(襄陽)으로 고쳤다. 별호는 양산(襄山)이라 한다. 속현이 1이니, 동산현(洞山縣)은 본래 고구려의 혈산현(穴山縣)인데, 신라 때에 지금 이름으로 고쳐서 명주(溟州)의 영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현종 9년 무오에 익령현(翼嶺縣) 임내에 이속시켰고,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명산은 설악(雪嶽)이다. 부 서쪽에 있는데, 신라 때 소사(小祀)로 하였다.

동해 신사당(東海神祠堂) 부 동쪽에 있는데, 봄·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중사(中祀)로 제사지낸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바다 어귀에 이르기 7리, 남쪽으로 강릉 임내 연곡에 이르기 50리, 서쪽으로 인제(麟蹄)에 이르기 36리, 북쪽으로 간성에 이르기 33리이다.

호수가 8백 57호요, 인구가 1천 2백 77명이고, 동산현의 호수가 1백 25호요, 인구가 2백 18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73명이고, 선군이 1백 95명이다.

토성이 2이니 김·이요, 망성이 4이니, 손·박·하(河)·정(鄭)이며, 속성이 3이니, 장·임(林)·윤이다. 동산현의 성이 4이니, 박·김·최·진(陳)이요, 내성(來姓)이 1이니, 임(林)이요, 망성이 1이니, 이(李)이다.

땅이 메마르고, 풍속이 바다에서 나는 것으로 생업을 하며 무예(武藝)를 숭상한다. 간전이 1천 8백 33결이요, -논이 5분의 2가 넘는다-

토의는 오곡과 뽕나무·삼·왕골·감·배·밤·닥나무·칠(漆)이다.

토공은 꿀·밀·잣·호도·복나무충영·지초·석이·여우가죽·삼괘이가죽·노루가죽·대구·문어·상어·연어·전복·홍합·숭어·상목·자리·시우쇠요,

약재는 인삼·오미자·승검초뿌리·복령·복나무 진·쥐꼬리망초 뿌리·궁궁이·산무애뱀·웅담·병풍나물·다린 송진·대왕풀·모란뿌리껍질이요, 토산은 가는 대이다. 석철(石鐵)이 부 서쪽 10리 철굴산(鐵掘山)에서 난다. 염분(鹽盆)이 22이요, 동산현의 염분이 18이다.

읍 토성(邑土城)-둘레가 1천 88보이다- 옹금산 석성(擁金山石城)이 부 북쪽에 있다. -둘레가 1천 9백 80보이며, 비가 오면 바위 새에 물이 솟아 흘러서 샘이 된다-

역(驛)이 4이니, 연창. 상운, 강선, 인구이다. -동산현에 있다- 요해(要害)¹⁰⁴는 본부 서쪽으로부터 인제(麟蹄) 경계 바드라재¹⁰⁵로 가는데 36리이다.

봉화(烽火)가 4곳이니, 수산(水山)이 부 동쪽에 있고, -남쪽으로 임내 동산의 광정에, 북쪽으로 부 덕산에 응한다- 덕산-북쪽으로 간성 죽도에 응한다-, 양야산(陽也山)이 동산현 남쪽에 있으며, -남쪽으로 연곡 주을문에, 북쪽으로 광정에 응한다- 광정(廣汀)이 부 북쪽에 있다. -남쪽으로 양야산에, 북쪽으로 덕산에 응한다-

104) 요해(要害): 요해처(要害處)의 준말. 지세가 험준하여 적을 막고 자기편을 지키기에 편리한 지점.

105) 바드라재: 한자로는 소동나령(所冬羅嶺), 소등나령(所等羅嶺)으로도 표기한다. 현재 한계령의 옛 지명이다.

인제현

감(監) 1인.

본래 고구려의 저족현(猪足縣)인데, -오사회(烏斯回)라고도 한다- 신라에서 회제현(狔蹄縣)으로 고쳐 양록군(楊麓郡)의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에서 인제현(麟蹄縣)으로 고치어, 처음에는 춘주(春州)에 붙이었다가, 뒤에 회양(淮陽)에 붙였고, 공양왕 원년 기사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르다가, 태종 13년 계사에 예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칭하였다. 속현이 1이니, 서화(瑞和)는 삼국사(三國史)에는 화(禾)로 되었다- 본래 고구려의 옥기현(玉岐縣)인데, 신라에서 치도(馳道)로 고쳐서 양록군(楊麓郡)의 영현으로 하였고, 고려에서 서화로 고쳐, 처음에는 춘주 임내로 하였다가, 뒤에 회양에 붙였다. 별호는 서성(瑞城)이라 한다. 소(所)가 1이니, 이포(伊布)이다.-예전에는 춘천에 붙였었는데, 금상(今上) 6년 갑진에 함께 내속(來屬) 시켰다-

복룡산(伏龍山)-현의 북쪽에 있는데, 현의 사람들이 진산으로 삼는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양양에 이르기 41리, 서쪽으로 양구에 이르기 27리, 남쪽으로 홍천에 이르기 32리, 북쪽으로 간성에 이르기 69리이다.

호수가 1백 25호요, 인구가 2백 단 7명이며, 서화의 호수가 72호요, 인구가 1백 91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69명이요, 선군이 4명이다.

토성이 2이니, 박·허요, 망성이 2이니, 조(曹)·손이며, 서화(瑞和)의 성이 1이니 최요, 망성이 4이니, 현·이·곡(谷)·소(郡)이다.

땅이 메마르며, 기후가 차다. 간전이 1천2백 33결이요, 논이 겨우 14결이다-

토의는 조·피·팥·보리·뽕나무·삼·배·밤이다.

토공은 꿀·밀·자석·잣·오배자·석이·느타리·지초·칠·사슴포·여우가죽·
살괘이가죽·노루가죽·곰가죽·돼지털·곰털·시우쇠요,

약재는 복령·오미자·승검초뿌리·인삼·바디나물뿌리·함박꽃뿌리·나팔꽃씨·
쥐꼬리망초 뿌리·복나무 진·백교향·산무애뱀·산양이뿔·웅담이다.

한계산 석성(寒溪山石城)이 2이니, 현의 북쪽 15리에 있다.-상성은 둘레가 7백 29
보이며, 한샘이 있는데, 가물면 마르고, 하성은 둘레가 1천 8백 72보이며, 세 골짜기
물이 합쳐 흘러서, 한 작은 냇가 되었는데, 잘 마르지 아니한다-

역(驛)이 4이니, 부림(富臨)·마노(馬奴)·임천(臨川)·남교(嵐校)이다.-위의 두 역
은 모두 서화에 있다-

양구현

감(監) 1인

본래 고구려의 양구군(楊口郡)인데, -요은홀차(要隱忽次)라고도 한다. 신라에서 양록군(楊麓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양구현으로 고쳐서 춘주 임내로 하였다가, 예종(睿宗) 원년에 비로소 감무를 두었다. -자세한 것은 낭천(狼川)에 있다. 속현이 1이니, 방산(方山)은 본래 고구려의 삼현현(三峴縣)인데, 신라에서 삼령(三嶺)으로 고쳐서 양록군의 영현으로 하였고, 고려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소(所)가 1이니, 해안(亥安)이다. -방산은 예전에 회양부에 속하고, 해안은 춘천에 속하였는데, 금상(今上) 6년에 함께 이에 내속 시켰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인제(麟蹄)에 이르기 25리, 서쪽으로 낭천(狼川)에 이르기 23리, 남쪽으로 춘천에 이르기 25리, 북쪽으로 회양 임내 문등현(文登縣)에 이르기 50리이다.

호수가 2백 97호요, 인구가 6백41명이며, 방산의 호수가 20호요, 인구가 50명이며, 군정은 시위군이 87명이다.

토성이 2이니, 유(柳)·장이요, 망성이 1이니, 김이요, 속성이 2이니, 이·양(梁)이며, 방산의 성이 1이니, 미(米)요, 망성이 3이니, 최·유(兪)·전(田)이다.

땅이 메마르며, 기후가 차다. 간전이 1천 7백 97결이요, 논이 겨우 1백 3결이다.

토의는 기장·조·피·콩·보리·뽕나무·삼·배·밤·칠이다.

토공은 꿀·밀·시우쇠·지초·오배자·느타리·석이·시슴포·여우가죽·삼괭이가죽·범의가죽·수달피·노루가죽·여우꼬리·돼지털·곰의 털이요.

약재는 인삼·복령·승검초뿌리·바디나물뿌리·쥐꼬리망초 뿌리·모란뿌리껍질·대왕풀·백교향·산무애뱀·오미자이다. 자기소(磁器所)가 2이니, 하나는 현의 북쪽 건천(乾川)에 있고, 하나는 방산 동쪽 장평(長平)에 있으며, -모두 중품이다. 도기소(陶器所)가 1이니, 현의 북쪽 저을리(貯乙里)에 있다. -하품이다. 역(驛)이 2이니, 수인(水仁)·함춘(含春)이다.

간성군

지군사(知郡事) 1인

본래 고구려의 수성군(守城郡)인데, 가라홀(加羅忽) 이라고도 한다. 신라에서 수성군(水城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간성 현령(杆城縣令)으로 고쳤다가, 뒤에 군으로 승격하고 고성(高城)을 겸임하게 하였는데, 공양왕 원년 기사에 갈라서 2군(郡)으로 하였으며,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별호는 수성(水城)이라 한다. 속현이 1이니, 열산(烈山)이다. 본래 고구려의 승산현(僧山縣)인데, 신라에서 장산(章山)으로 고쳐서 수성군의 영현으로 하였고, 고려에서 열산현으로 고쳤으며,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별호는 봉산(鳳山)이라 한다.

막지라산(莫只羅山) 一군 서쪽에 있는데, 고을 사람들이 진산으로 삼는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바다 어귀에 이르기 6리, 서쪽으로 인제(麟蹄) 임내인 서화(瑞和)에 이르기 42리, 남쪽으로 양양에 이르기 40리, 북쪽으로 고성 임내 안창(安昌)에 이르기 48리이다.

호수가 2백 27호요, 인구가 3백 13명이며, 열산(烈山)의 호수가 1백 단(單) 5호요, 인구가 2백 54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72명, 선군이 1백 40명, 진군(鎭軍)이 11명이다. 진(鎭)-지군사로 침철제사를 겸하게 하며, 방패군은 10명이다

토성이 2이니, 송·이요, 망성이 3이니, 유(柳)·장·문(文)이요, 속성이 11이니, 김·이·평창에서 왔다·함(咸)-양근에서 왔다·윤(尹)-영춘에서 왔다·남(南)-영양

에서 왔다 · 김-음죽에서 왔다 · 전(全)-정선에서 왔다 · 장(張)-단양에서 왔다 · 안(安)-제천에서 왔다 · 손(孫)-평해에서 왔다 · 박-영덕에서 왔는데, 모두 향리(鄕吏)이다. 열산(烈山) 성이 1이니, 최요, 망성이 2이니, 마(馬) · 황보(皇甫)요, 속성이 5이니, 김 · 전(全)-정선에서 왔다 · 손(孫)-평해에서 왔다 · 박(朴)-보성에서 왔다 · 임(林)-울진에서 왔다. 전 · 손 · 박 · 임의 4성은 모두 향리이다. 이다.

땅이 메마르고, 기후가 차며, 풍속이 해산물로 생업으로 하고, 무예를 숭상한다. 간전이 1천3백 2결이요, -논이 2분의 1에 넘는다-

토의는 오곡 · 뽕나무 · 삼 · 배 · 밤 · 닥나무 · 왕골이다.

토공은 꿀 · 밀 · 토끼 · 시우쇠 · 오배자 · 호도 · 지초 · 느타리 · 칠 · 여우가죽 · 삿갓 이가죽 · 노루가죽 · 어피(魚皮) · 돼지털 · 문어 · 대구 · 송어 · 상어 · 연어 · 전복 · 홍합 · 전복껍데기 · 미역 · 조피나무 열매요,

약재는 오미자 · 복령 · 승검초뿌리 · 바다나물뿌리 · 나팔꽃씨 · 매자기뿌리 · 다시마 · 백교향 · 대왕풀 · 산무애뱀 · 오징어뼈이다.

토산은 가는 대 · 왕대 · 송이이다.

염분(鹽盆)이 17이요, 열산(烈山)의 염분이 6이다. 음성(邑城)-석성의 들레가 2백 95보요, 토성은 86보이다. 옛 성산 석성(城山石城)이 군의 남쪽에 있다. 들레가 1천 1백 40보이며, 안에 작은 샘이 하나, 작은 못이 하나 있는데, 크게 가물면 마른다. 만경정(萬景亭)-군 남쪽 30리 남빈(南濱)에 있다-

역(驛)이 4이니, 청간(淸澗)-옛 이름은 청간(靑間)이다 · 죽포(竹苞) · 운근(雲根) · 명파(明波)이다. 위 두 역은 모두 열산(烈山)에 있다. 요해(要害)는 소읍과령(所邑破嶺)이 군의 남쪽 42리 97보에 있다. 봉화(烽火)가 3곳이니, 죽도산(竹島山)이 군의 남쪽 15리에 있고, -남쪽으로 양양 덕산에, 북쪽으로 정양수에 응한다. 정양수(正陽水)와 북쪽으로 임내인 열산 수산에 응한다. 수산(戍山)이다. 북쪽으로 고성 · 임내 · 안창의 구장천(仇莊遷)에 응한다-

관할은 군(郡)이 2이니, 고성(高城) · 통천(通川)이요, 현이 1이니, 흠곡(歙谷)이다.

경기

도관찰 출척사(道觀察黜陟使) 1인, 수령관(首領官) 1인, 의학 교유(醫學教諭)·검률(檢律) 각각 1인. -다른 도도 이와 같다-

본래 고구려의 땅이다. 고려 성종 14년 을미에 곧 송나라 태종 지도(至道) 원년-개주(開州)를 개성부(開城府)로 승격시켜 적현(赤縣) 6, 기현(畿縣) 7을 관할하게 하다가, -고사(古史)에 다만 현의 수만 기록하고 이름을 적지 아니해서 자세히 상고할 수 없다- 현종 9년 무오에 곧 송나라 진종 대중상부(大中祥符) 11년-개성부를 과하고 개성현령(開城縣令)으로써 정주·덕수·강음의 3현을 관할하게 하고, 장단 현령(長湍縣令)으로써 송림·임진·토산·임강·적성·파평·마전의 7현을 관할하게 하고,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켜 경기(京畿)라 일렀다. 문종 16년 임인에-송나라 인종 가우(嘉祐) 7년- 다시 개성부로 승격시켜 도성에서 관장하던 11현을 모두 붙이고, 또 서해도의 평주 임내인 우봉군(牛峯郡)을 떼어 이에 붙였으며, 그 후 다시 개성 현령을 두어 개성부에 붙이었다. -연대는 알 수 없다- 공양왕 2년 경오에 곧 명나라 태조 고험제 홍무(洪武) 23년- 경기(京畿)를 갈라 좌·우도로 하여, 장단·임강·토산·임진·송림·마전·적성·파평현을 좌도로, 개성·강음·해풍·덕수·우봉을 우도로 하고, 또 경기를 더 넓혀서 양광도의 한양·남양부·인주·안산군·교하·양천·금천·과주·포주·서원·고봉현과 교주도의 철원부·영평·이천·안협·연주·삭녕으로써 좌도에 붙이고, 양광도의 부평·강화부·교동·김포·통진현과 서해도의 영안부·평주·배주·곡주·수안군·재령·서흥·신은·협계현으로써 우도에 붙이

고, 각기 도관찰 출척사를 두고 수령관으로써 돕게 하다가, 4품 이상은 경력을 삼고, 5품 이하는 도사를 삼는다. 우리 태조 3년 갑술에 곧 홍무 27년 도읍을 한양부(漢陽府)에 정착하게 되며, 그 이듬해 을해에 평주·수안·곡주·재령·서흥·신은·협계는 새 서울에 가는 길이 멀므로 도로 서해도에 붙이고, 양광도의 광주·수원부·양근군·쌍부·용구·치인·이천·천령·지평현을 갖다 이에 붙이고, 광주·수원의 팔할인 군·현을 갈라서 좌도로 하고, 양주·부평·철원·영안의 관할인 군·현을 우도로 하고, 7년에 또 충청도의 진위현(振威縣)을 떼어서 좌도에 붙이었다가, 태종 2년 임오에 곧 홍무 35년 두 도를 합하여 경기 좌·우도라 하고, 성관찰사(省觀察使)·수령관 각각 1인씩을 두었다. 13년 계사에 곧 명나라 태종 문황제 영락(永樂) 11년 사방 길의 멀고 가까움을 참작하여 연안·배주·우봉·강음·토산을 도로 풍해도에, 이천을 도로 강원도에 붙이고, 충청도의 여흥부·안성군·양지·양성·음죽현과 강원도의 가평현을 떼어다가 이에 붙이고, 좌·우도로 나누지 않고 다만 경기 도관찰사라 일컫고 사(司)를 수원에 두었다. 동쪽은 강원도 춘천과 원주에 이르고, 서쪽은 황해도 강음과 배천(白川)에 이르며, 남쪽은 충청도 죽산과 직산에 이르고, 북쪽은 황해도의 토산과 강원도 이천에 이르러서, 동서가 2백 64리요, 남북이 3백 64리가 된다.

목(牧)이 1이요, 도호부가 8이요, 군이 6이요, 현이 26이다.

명산으로 말하면, 삼각산(三角山)은 도성의 진산이 되며, 백안 북쪽에 있고, 성거산(聖居山)은 옛 서울의 송악(松嶽) 동북쪽에 있으며, 화악(花岳)은 가평현 북쪽에 있고, 겸악(鉗岳)은 적성현 동쪽에 있으며, 용호산(龍虎山)은 임강현 남쪽에 있고, 오관산(五冠山)은 임강현의 임내인 송림 북쪽에 있으며, 마리산(摩利山)은 강화부 남쪽에 있다.

대천으로 말하면, 한강은 그 근원이 강원도 오대산으로부터 나와 영월군 서쪽에 이르러 여러 내를 합하여 가근동진(加斤同津)이 되고, 충청도 충주의 연천을 지나서 한결같이 서쪽으로 흘러 여흥을 지나 여강(驪江)이 되고, 천령에서 이포(梨浦)가 되며, 양근에서 대탄(大灘)이 되고, 또 사포(蛇浦)와 용진(龍津)이 되었으며, 한 줄기는 인제현(麟蹄縣)의 이포소(伊布所)로부터 나와 춘천에 이르러 소양강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가평현 동쪽에서 안판탄(按板灘)이 되고, 양근 북쪽에서 입석진(立石津)이 되며, 또 양근(楊根) 남쪽에서 용진도(龍津渡)가 되고, 사포로 들어가서 두 물이 합하여 흘러 광주 경계에 이르러서 도미진(渡迷津)이 되고, 다음에 광나루가 되었으며,

서울 남쪽에 이르러 한강도(漢江渡)가 되고, 서쪽에서 노도진(露渡津)이 되며, 서쪽에서 용산강이 되었는데, 경상·충청·강원도 및 경기 상류에서 배로 실어 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치어 서울에 다다른다. 강물이 도성 남쪽을 지나 금천 북쪽에 이르러 양화도(楊花渡)가 되고, 양천 북쪽에서 공암진(孔岩津)이 되며, 교하 서쪽 오도성(烏島城)에 이르러 임진강과 합하고, 통진 북쪽에 이르러 조강(祖江)이 되며, 포구곶이(浦口串)에 이르러서 나뉘어 둘이 되었으니, 하나는 곧장 서쪽으로 흘러 강화부 북쪽을 지나 하원도(河源渡)가 되고, 교동현 북쪽 인석진(寅石津)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니, 황해도에서 배로 실어 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치어 서울에 다다른다. 하나는 남쪽으로 흘러 강화부 동쪽 갑곶이(甲串) 나무를 지나서 바다로 들어가니, 전라·충청도에서 배로 실어 온 곡식이 모두 이곳을 거치어 서울에 다다른다. 임진강은 그 근원이 함길도 안변의 임내인 영풍현 방장동으로 부터 와서 이천·안협·삭녕 경계를 지나 연천에 이르러, 물이 비로소 커져서 징파도(澄波渡)가 되고, 마전을 지나 적성에 이르러 이포진(梨浦津)이 되며, 장단에서 두지진(豆只津)이 되고, 임진현 동쪽에 이르러 임진도(臨津渡)가 되며, 서쪽으로 흘러 임진현 동남쪽에 이르러서 덕진이 되고, 남쪽으로 흘러 교하현 서쪽에 이르러서 낙하도(洛河渡)가 되며, 봉황바위를 지나 오도성에 이르러 한강과 합하여 함께 바다로 들어간다.

호수가 2만 8백 82호, 인구가 5만 3백 52명-본조는 인구의 법이 밝지 못하여, 문적에 적힌 것이 겨우 열의 한 돌이 되므로, 나라에서 매양 바로잡으려 하나, 너무 인심을 잃게 되니, 그러저럭 이제까지 이르렀으므로, 각도 각 고을의 인구수가 이렇게 되었고, 다른 도들도 모두 이렇다- 이요,

군정은 시위군이 1천 7백 13명, 선군이 3천 8백 92명이다.

간전은 20만 3백 47결이다.-밭이 12만 4천 1백 73결 남짓하고, 논이 7만 6천 1백 73결 남짓하다- 그 부세(賦稅)는 쌀-멥쌀·흰쌀·세경미·점경미·조미가 있다·직미·콩-콩·팥·녹두가 있다·보라-보리·밀·메밀이 있다·지마-속명 참깨·꿀·밀·지마유-속명 참기름·소자유-속명 법유·가루장·겨자·모시·다섯새베(正五升布)-대개 군 읍의 구실이 머나 가까우나 모두 같으므로, 다시 고을 밑에 적지 아니한다- 등이다.

토공은 모과·개암씨·상수리·밤·감·대추·느타리·짜리버섯·황각·산삼·도라지·마른 멧돼지고기·토끼 젓·물고기 젓·송어·민어·젓·질그릇·사기그릇·목

기·버들그릇·갈소쿠리·참빗·왕골속·노화지·잡깃·갓·새·마의·짚·풀·새끼·삼노·소나무 그늘음·송진·주토·갈탄·향나무·백잔향·지단향·역목이 있다. 굴가루·명아주재·황회·지초·단풍나무잎·영선 잡목·자작나무·은행나무·피나무·뽕나무·앵도나무·장작이다.

약재는 소의 쓸개·범의 장강이뼈·곰의 쓸개·돼지쓸개·수달피쓸개·고슴도치 쓸개·선달토끼머리·고슴도치가죽·아교·말벌집·지네·누에나비·누에허물·가뢰·매미허물·뱀허물·두꺼비·청개구리·자라껍데기·뽕나무벌레·마른 잉어·잉어쓸개·굴조개껍질·누에똥·오가피·황경나무껍질·뽕나무뿌리껍질·느릅나무속껍질·산이스랏씨·복숭아씨·살구씨·탱자·회화나무열매·회화나무꽃·송진·연밥·조피나무열매·오배자·복령·붉은 것과 흰 것 두 종류가 있다·복신·안식향·산골·돌고드름·하늘타리·새삼씨·고무딸기열매·오미자·나팔꽃씨·흰 것과 검은 것의 두 가지가 있다·질경이씨·찔레씨·백부자·백출·창출·창포말·석창포·쥐방울·쇠비름·붓꽃·부들꽃·택사·도라지·탱알·삼주·큰 것과 작은 것 두 종류가 있다·수지해쫄뿌리·수지해쫄싹·가희톱·삿갓풀뿌리·검삼풀뿌리·절국대뿌리·박새·죽도리풀뿌리·쑥뿌리·석죽화·외나물뿌리·승검초뿌리·마뿌리·하늘타리뿌리·버들웃·자리공뿌리·검화뿌리껍질·매자기뿌리·여우오줌풀뿌리·나리뿌리·감대뿌리·두릅뿌리·두여미조자기·쇠무릎·사자말속·도꼬마리·시호·끼절가리뿌리·함박꽃뿌리·붉은 것과 흰 것 두 가지가 있다·호본·구리때뿌리·끼무릇뿌리·현삼·쓴너삼뿌리·더위지기·진봉·현호색·부처손·참외뿌리·속서근풀·단너삼뿌리·으름덩굴·으름·낙석·지모·회초미뿌리·수취나물뿌리·바곳·방장초·살남람·들쭉·머래뿌리·이리어금니·하국·겨우살이꽃·금등화이다. 이상의 잡공 및 약재를, 이제 토산의 희귀한 것은 각기 그 고을 밑에 기록하고, 그 각 고을마다 나는 것으로서, 다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은 다시 기록하지 아니한다.

재배하는 약재는 백변두·양귀비·차조기·영생이·소야기·악실·겨자·삼씨·회향·생지황·장군풀·청목향·정가·해바라기씨·무씨·순무우씨·참외꼭지·맨드라미꽃·붉은 것과 흰 것 두 종류가 있다·감국·홍화(紅花)·울무이다. 이상의 약재는 각 고을의 풍토에 맞는 것을 따라 의원으로 하여금 심어 기르게 한다. 이것은 본래 산이나 들에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각 고을 밑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무릇 한 물건이 밭구실·토공·약재 따위에 거둬 나온 것이 많이 있으나, 이제 그 거둬

된 것을 좇고, 오직 꿀·밀 따위는 다만 토공에 기록하고, 인삼·오미자 따위는 다만 약재 난에 기록하여, 다시 거듭 나오지 않게 하였다.-

